

업무매뉴얼

2018

세외수입 업무매뉴얼

경기도 세외수입 규모에 맞게 업무초보자도 활용할 수 있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전반의 실무설명서를 집필 배부함으로써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경기도 재정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세외수입 부과규모는 2016년 결산기준 9조 8,034억원으로 전국 세외수입 총 부과규모 34조 6,515억원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 규모에 맞게 그간 세외수입 징수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 징수율제고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80%수준으로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세외수입은 개별법령과 개별적인 정보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각 실과소에서 부과·징수 업무를 하고 있으나 세외수입업무를 부가업무로 취급하고 있어 신규임용자를 배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업무초보자가 쉽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설명서 배부와 교육은 안정적 세외수입 부과·징수 여건 마련에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본 매뉴얼은 지방세외수입 업무체계 확립 및 효율적인 세외수입 업무수행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본 매뉴얼은 3개 분야로 구성하여 지방세외수입 강론에서 세외수입의 전반적인 해설을 하고, 체납처분별 매뉴얼에서 체납처분을 12개 분야로 구분하여 실무적용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과목별 해설은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부과현황이 있는 141개 과목의 특성별 해설로 작성되어 지방세외수입 실무전반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선 현장업무로 바쁘신 가운데도 매뉴얼 검토 작업에 참여해 주신 경기도내 시·군 세무부서 공무원들의 노력과 정성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본 매뉴얼이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에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우익리**

편저자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세정과장 노찬호

세외수입징수팀장 최원삼

주무관 임상빈, 주무관 윤정인, 주무관 이현우,

주무관 구종배, 주무관 조정의

검토위원

곽희현(수원시), 김은정(고양시), 문혜연(용인시), 윤지선(성남시)

김정선(부천시), 이명종(안산시), 이주희(화성시), 김혜정(남양주시)

윤은숙(안양시), 허성련(평택시), 전경아(의정부시), 채은정(파주시)

반종수(시흥시), 최은정(김포시), 최승영(광명시), 한광일(광주시)

송정석(군포시), 곽대섭(이천시), 김향이(오산시), 이정우(하남시)

이상욱(양주시), 한지윤(구리시), 김광일(안성시), 양아영(포천시)

주혜영(의왕시), 장석찬(여주시), 양승백(양평군), 이동우(동두천시)

원대식(연천군)

CONTENTS

세외수입 충실	1
I. 세외수입의 개관	3
1. 세외수입	5
2. 세외수입의 특징 및 유형	7
3. 세외수입의 정의 및 연혁	15
4. 세외수입 관련 법령	22
5. 세외수입 운영	25
II.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	51
1. 부과 및 징수 절차	53
2. 개별 지방세외수입관계법 상 부과·징수 절차	63
3. 조례에 의한 세외수입금의 부과·징수 절차	73
III.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87
1. 세외수입 일반	89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92
3. 지방세외수입징수법	96
IV. 세외수입 업무시스템 운영 현황	105
1. 표준세외수입업무시스템	107
2. 새올행정정보시스템	111

3. 지방자치단체 개별 업무시스템	113
4. 수기관리 및 정보시스템 개선	114
5. 업무시스템 통합 필요성 및 방안	115

세입수입 체납

.....	119

I. 독촉장 송달	121
1. 독촉장 송달	123
2. 주요해석사례	127
II. 반송(공시송달)	129
1. 반송(공시송달)	131
2. 주요해석사례	133
III. 체납고지서	135
IV. 체납안내문	139
V. 체납 또는 결손처분의 자료 제공	143
1. 자료제공의 의의	145
2. 신용정보자료 요구자	145
3. 자료제공 범위	146
4. 자료제공 절차	148
5. 타 법 입법례와 비교	152
6. 주요해석판례	153
VI. 차량등록번호판 영치	155
1. 번호판 영치	157
2. 영치 대상 및 요건	158
3. 번호판 영치절차	162

4. 변호판 영치후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165
VII. 재산조사	167
1. 재산조사 개요	169
2. 종류별 재산조사 방법	169
VIII. 압류	175
1. 압류의 기본사항	177
2. 압류의 절차	179
3. 압류의 효력	182
4. 교부청구	183
5. 참가압류	186
6. 압류해제	190
7. 주요해석사례	192
IX. 압류재산의 매각	195
1. 매각	197
2. 공매의 절차	200
3. 공매의 취소	207
4. 매각의 결정	208
5. 주요해석사례	213
6. 관련법령	213
X. 결손처분	215
1. 결손처분	217
XI. 관허사업의 제한	219
1. 관허사업의 제한	221
2. 관허사업의 제한 업무절차	226
3. 타 법 입법례와 비교	227
4. 제한대상과목	228

4. 주요해석사례	231
XII.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241
1.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공개	243

세외수입 과목별 업무 매뉴얼	251

I. 과태료	253
1. 주정차위반과태료	255
2.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259
3.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264
4.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272
5. 도로법에의한과적위반과태료	275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	279
7. 특정경유자동차검사위반과태료	284
8.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태료	287
9.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태료	292
10. 도시가스사업과태료	297
1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태료	304
12. 소방기본법위반과태료	319
13.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과태료	323
14.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과태료	328
1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과태료	333
16.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과태료	337
17. 위험물안전관리법과태료	345
18.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과태료	350
19.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태료	356

20.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360
21. 건축법위반과태료	367
22.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370
23. 광업법위반과태료	375
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378
25. 주택법위반과태료	381
26.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	384
27.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396
28.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398
29. 건설기술관리법위반과태료	406
30. 공인중개사업법위반과태료	410
31. 공중위생관리법과태료	414
32. 금연구역흡연위반과태료	418
33. 대기환경보전법과태료	421
34. 먹는물관리법과태료	426
35.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432
36. 물류정책기본법위반과태료	435
37. 민방위기본법과태료	438
38.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442
39. 부동산거래신고위반에따른과태료	447
40. 소음진동관리법과태료	453
4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457
42. 식품위생법과태료	463
43.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과태료	469
44.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과태료	478
45.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과태료	482
46. 응급의료법위반과태료	488

47. 정보통신공사업등록위반과태료	492
48. 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	495
4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과태료	498
50. 택시발전법위반과태료	504
51. 환경관련법위반과태료	508
52.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511
53.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514
5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태료	518

II. 과징금 533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	535
2. 자동차관리법과징금	547
3.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553
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	558
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위반과징금	560
6. 건설업법위반과징금	563
7. 축산물위생관법위반과징금	573
8. 방문판매등에관한 과징금	579
9. 화학물질관리법위반과징금	580
10. 할부거래에관한과징금	581
11. 영유아보육법위반과징금	582
1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징금	585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징금	593
14. 전기공사업법과징금	597
15. 마약류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	601
16.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징금	604

1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과징금	611
18.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	616
1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	622
20.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과징금	636
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	639
22. 사료관리법위반과징금	645
23. 농수산물유통등관련과징금	650
24. 먹는물관리법위반과징금	655
2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	658

III. 부담금 671

1. 수질개선부담금	673
2. 농지전용부담금	677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78
4. 환경개선부담금	692
5. 교통유발부담금	698
6. 개발부담금	701
7. 하수도원인자부담금	705
8. 기반시설부담금	709
9. 상수도원인자부담금	711
10. 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	714

IV. 이행강제금 717

1. 농지처분이행강제금	719
2. 주차장법위반이행강제금	722
3. 건축법이행강제금	724

4.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법률 위반이행강제금	728

V. 기타세외수입 731

1. 지장전주이설잔액환불금	732
2. 감사지적분	734
3. 자연배상금	735
4. 그외수입	737
5. 관급자재 환불금	740
6. 강씨봉시설사용료	741
7. 휴양림사용료	743
8. 체육시설사용료	745
9. 여성회관사용료	747
10. 수목원주차료	749
11. 강씨봉위약금	753
12. 변상금	755
13. 도유재산변상금	758
14. 국공유재산변상금	760
15. 자연이체변상금	762
16. 강씨봉입장료	764
17. 수목원입장료	766
18. 자연휴식지입장료	768
19. 휴양림입장료	770
20. 기타수수료	772
21. 수입대체경비	775
22. 폐기물관리에 관한수수료수입	777
23. 민원발급수수료	779

24. 여권발급수수료	788
25. 정보이용수수료	790
26. 심의수수료	794
27. 공유재산임대료	797
28. 시도유재산대부료	799
29.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802
30. 배출부과금	803
31. 인증비용증지	805
32. 증지판매수입	808
33. 묘목생산수입	810
34. 사업장생산수입	812
35. 공공예금이자수입	814
36. 기타이자수입	816
37. 기타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818
38. 일상경비이자	820
39. 도로사용료	822
40. 하천사용료	827
41. 수산자원조성금	831
42. 기부금	834
43. 불용품의매각대금	837
44. 공유재산매각수입(시도유재산, 시군구재산)	838
45.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840
46. 국고보조금사용잔액	842
47. 매당금수입	843
48. 소송회수비용수입	844



세외수입 총론

I . 세외수입의 개관

01. 세외수입

1.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거나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위탁받아 부과·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크게 정의할 수 있다.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법 중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및 지방채를 제외한 일체의 자체 수입으로 지방세와 함께 중요한 자주재원의 근간이다.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포괄된다.

이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분담금을 지방세외수입금이라 부르고 있다. 물론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 및 징수·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까지 세외수입금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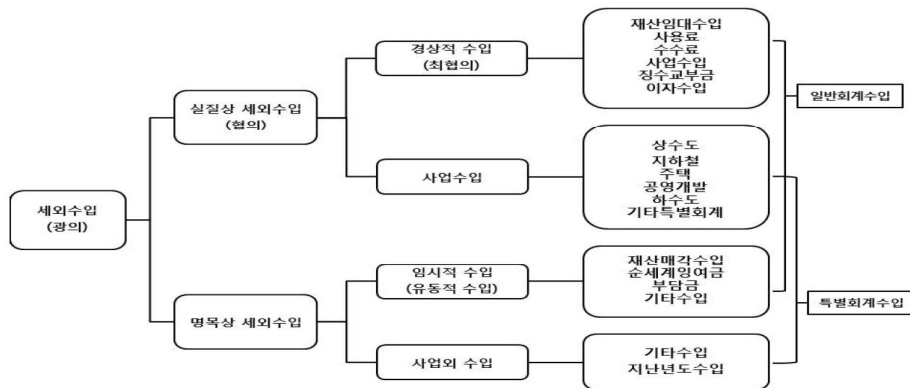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는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들은 그들이 받은 서비스의 대가를 지방정부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처럼 지방정부는 기업과 유사하게 고객인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판매한 수입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갖는다. 하지만 일반기업과는 달리, 지방정부는 판매수입이 아니라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세금은 지방정부가 제공한 서비스 이용의 크기와 명확한 연관성 없이 단지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수단으로 사용된다. 조세 이외의 지방정부의 수입원은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수입, 정부 간 이전수입, 보전수입 등으로 다양하다.

지방세외수입은 2016년 당초예산 기준 21.8조원으로 자체수입 중 2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대비 지방세외수입의 비중은 2014년도의 12.6%에서 2016년도의 11.8%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2,000여종의 항목들이 개별 부서에 분산 관리 되어 징수율이나 신장성 등이 다른 세입항목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2. 세외수입의 구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¹⁾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에 대하여“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감안하여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하면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중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을 제외한 일체의 자체수입을 의미하고, 이를 일반적으로 광의의 지방세외수입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세외수입의 구분>



자료 : 최원구(2016), p9.

세외수입이라는 용어는 그 포괄범위에 따라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세외수입의 종류와 내용은 지방정부재정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모두 지방세외수입을 통해 재원의 일부를 조달한다. 행정자치부(2016)의 지방세외수입연감은 지방정부 세외수입의 종류와 내용을 정리하여 제공하는데 세외수입을 일반회계(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분류한다.

1)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①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감안하여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와 수수료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정부의 공공서비스에 대해 가격의 형태로 대가를 지불하는 모든 정부수입을 의미한다. 즉, 세외수입은 수익자부담원칙 혹은 원인자부담원칙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정부 서비스를 받기 위해 고객들이 지불하는 대가를 통칭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 및 수수료와 사업수입,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부담금을 모두 포함하며 공기업특별회계의 사업수입도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세외수입의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벌금·과태료·몰수금 등도 포괄한다.

02. 세외수입의 특징 및 유형

1. 세외수입의 특징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나 부과 및 징수근거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과 다르고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류되며,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 증대가 가능한 수입원이다. 따라서 지방세외수입의 특징을 연구자²⁾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지방세외수입의 특징들을 5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세외수입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제약을 받는 지방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항목의 설정과 운영에 있어 비교적 자유로운 수입원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과 절차에 의해 충분히 세입 증대가 가능한 잠재적인 수입원이다.

둘째, 세외수입은 종류가 많고, 징수근거, 성격 및 형태가 몹시 다양하다. 징수근거로는 법령, 조례 또는 사법상의 계약 등으로 다양하고, 종류에 있어서는 행정서비스의 대가로 징수되는 수수료나 사용료, 경제활동에 의한 재산임대수입 및 사업수입, 행정별적인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이 있다.

2) 이원희(1996), 손희준(2001), 유태현(2003), 김대영(2014) 등에서 소개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의 특징임

셋째,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수입이나, 지방세의 목적세와 같이 그 수입원이 법적근거에 따라 사용처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공원사용료수입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관리나 비용에 지출되며, 하천사용료 수입은 하천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 그러나 보통의 지방세외수입은 일반재원으로 분류되어 그 사용처가 엄격하게 제한되지 않는다.

넷째, 세외수입의 징수형태는 현금으로 징수하는 것 이외에 수입증지 등의 금권으로 징수되기 한다.

다섯째, 세외수입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응익적 성격이 강해 조세수입과 달리 주민들의 저항이나 마찰이 적다. 다시 말해,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공공시설물의 사용이나 각종 서비스를 향유함으로써 그 반대급부 또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대가없이 국가의 재정권에 의해 징수되는 지방세에 비해 주민들의 저항이 비교적 적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운영, 수입근거와 형태 및 징수형태의 다양성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외수입 예산과목의 세목은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추가되어 왔으며, 그 결과 2015년 기준으로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상의 지방세외수입 세목은 2,868개에 달하고 있다.

2. 세외수입의 유형

가.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방법

현대의 정부의 공공서비스에 대가를 지불할 때 편익에 기초한 세외수입과 일반적인 조세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세외수입은 조세와 구분되는 중요한 특성을 갖는다. 지방정부가 민간부문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다양한 방법들의 특성을 미국의 ACIR³⁾(1987)은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방법과 특성>

구 분	특 성	사 례
공공요금 utility charges	민간시장가격과 유사하며, 편익을 얻는 개인이 식별가능하고 부담액은 소비수준에 따라 달라짐	상하수도 요금, 공공전기요금

3) 미국의 정부간자문위원회(ACIR)

사용료·수수료 user charges and fees	민간시장가격과 유사하지만 특정한 사용자에게 보조금을 포함할 수 있으며 부담액은 개인의 소비수준에 따라 달라짐	공공수영장/공공박물관의 입장료, 쓰레기수거비용, 보건서비스비용
특별분담금 special assessments	정부의 투자 혹은 서비스로 얻는 명확한 편익에 대해 부동산에 과세하는 강제적인 부담액임. 이론적으로는 정부비용을 개인별 편익에 따라 분담시켜야 하며 개발부담금이 이에 속함	보도, 도로포장 및 가로등, 소방비용의 지역분담액
면허수수료와 면허세 licence fee and taxes	민간부문의 행위에 대한 정부규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부담액으로 합당한 규제비용을 초과한다면 물품세로 간주되어야 함	자동차검사료, 건축허가 및 검사료, 전문면허수수료
협익의 편익조세 narrow based benefit tax	일반적으로 공공시설 사용에 간접적으로 연관된 특정 행위나 구매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며 그 수입은 특정부문의 지출에 배정됨	자동차세 및 연료세 (도로건설에 지출 배정)
일반조세 general tax	일반정부지출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강제적인 부담액으로 특정부문의 정부서비스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음	판매세, 소득세, 재산세

자료: ACIR(1987)

나. 가격으로 기능하는 세외수입

정부의 재원조달유형 중 민간부문의 시장가격에 가장 근접한 것은 공공요금 (utility charges)과 사용료·수수료이다. 예를 들면, 상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등이 공공요금이며, 대중골프장 및 공원 등의 여가시설 이용료와 쓰레기수거료 등이 사용료·수수료에 포함된다.

공공요금과 사용료·수수료는 정부가 제공한 재화 및 서비스의 직접적인 소비에 기초한 자발적인 부담액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소비 한 단위당 가격이 설정되어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총부담액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므로 각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공공요금 및 사용료·수수료의 총부담액은 각자의 소비량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이에 속하는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지출은 재정수입과 직접 연계된다.

공공부문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부과하는 공공요금 및 사용료·수수료의 사용자부담금은 지방정부에게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재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민간부문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로 사용자부담금은 서비스를 시장에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인 주민들이 원하는 수량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 선호의 정보를 지방정부에게 제공해준다. 또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제약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한다. 부연하면, 사용자부담금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낭비를 억제할 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장기적 투자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방정부가 사용자부담금으로 재원을 조달할 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출은 해당 공공서비스 소비자들의 총지불의사 금액으로 총공급비용을 총당하는 수준까지만 이루어질 것이다. 그 결과, 사용자부담금에 의한 재원조달은 지방정부의 정치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달성시킬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을 사용자부담금으로 조달할 때에도 사용자부담금 수준, 즉 가격 수준을 서비스제공을 위한 평균비용보다 낮게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관찰된다. 만일 공공서비스 소비의 편익이 해당 소비자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민들까지 간접적으로 편익을 누리게 된다면, 그 서비스 공급비용의 일부를 조세수입으로 보조할 수 있다. 이러한 보조 때문에 공공서비스 소비자가 평균비용 이하의 낮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그 서비스의 소비량은 가격수준에 따라 변동할 것이므로 여전히 사용자부담금은 수요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격으로 기능할 것이다.

일반 조세는 사용자부담금과 달리 공공서비스의 재원을 조달하는 강제적인 부담액이므로 특정 공공서비스의 소비수준과 관계없이 부과된다. 조세는 개인들이 특정 정부서비스로부터 받는 편익과 그들의 실제 부담액을 직접 연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수입은 특정한 공공서비스의 바람직한 공급수준에 대한 유용한 시장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설령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세를 교육서비스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조세의 일부를 명시적으로 특정 정부서비스를 위해 지출하더라도 개별 주민 입장에서는 조세부담액이 해당 정부서비스로부터 얻는 편익과 직접 연계되지 않으므로 주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선호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모든 연구자들이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ACIR(1987)은 사용료와 수수료를 구분 없이 사용하는 반면, Bird and Tsiopoulos(1997)는 이들을 엄격히 구분한다. 먼저 사용료를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소비하는 주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비의 자발성과 편익 귀착의 개별성이 보장되는 사용자부담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해당 서비스의 경쟁적 공급자들 중 하나일 수 있으며 사용료 수

준은 당연히 비용을 고려하지만 동시에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지불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반면에 수수료는 공공목적을 위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가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이용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 공공서비스의 대가라는 측면에서 편익조세와 다르며, 정부가 그 서비스의 독점적인 공급자이므로 개인이 수수료 지불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사용료와 다르다. 예를 들면, 사망증명 수수료처럼 정부가 독점력을 갖거나 자동차등록 수수료처럼 주민이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용료와 다르다.

다. 가격기능 세외수입 개념의 확장

1) 특별분담금

먼저 특별분담금(special assessments)의 일반적인 형태는 지리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 위치한 개별 부동산을 특정하여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특별분담금은 조세처럼 강제적으로 부담해야하는 특성을 갖지만, 부담수준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편익을 얻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그들이 획득한 편익과 밀접한 연계를 갖는다. 특별분담금은 정부의 특정사업에 의해 개인들이 얻는 편익과 그들의 부담수준이 연계된다는 측면에서 재산세와 구분된다.

전통적으로 특별분담금은 보행도로 설치, 도로포장, 가로등 설치 등의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그 사업에 인접한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 부동산소유자들에게 가치상승 편익의 크기와 연계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의 법률개정안 제13호(proposition 13) 이후, 특별분담금은 새로운 주거단지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을 개발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개발자분담금(builder exactments) 형태로 급격히 확장되었다.

개발자분담금은 공공시설 건설을 위한 자본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민간 개발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부담은 개발업자가 분담금을 지방정부에게 지급하는 방식 이외에도 개발업자의 토지 기부 혹은 공공시설의 직접 건설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도로, 상하수도, 공립학교 및 여가시설 등을 건설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한다. 개발자분담금을 지지하는 논리는 개발지역에 대한 투자비용을 공공시설 투자로 편익을 얻는 개발업자에게 그들의 편익에 비례하여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개발자분담금은 토지의 기부 혹은 공공시설 직접 건설의 형태로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의 규제정책을 포함한 행정서비스와 치안서비스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

해 개발부담금(development fee or impact fee) 형태로 발전하였다. 새로운 주택 개발에 따라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면 정부는 공공서비스에 의한 편익의 귀착을 식별하여 그 편익의 크기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개발부담금은 이론적 논거에 의해 일종의 사용료·수수료로 간주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 정액으로 납부하는 자본비용 형태의 개발부담금을 지방정부가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제공할 공공서비스에 대해 미래의 각 시기에 지불할 사용료의 현재가치와 동일한 금액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면허수수료와 면허세

면허수수료와 면허세(licence fee and taxes)도 넓은 의미에서 사용료·수수료와 유사한 세외수입에 포함시킬 수 있다. 민간부문은 사업을 수행하거나 특권을 행사하려면 필요조건으로서 사전에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면허세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일종의 수수료이다. 그 사례로 결혼면허, 직업면허, 택시면허, 기타 사업면허를 들 수 있다. 정부는 면허세를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한다. 하나는 정부가 민간부문활동을 규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정부가 부여한 특권의 보유자가 특권을 이용하여 얻은 이득을 배분하는 것이다.

면허 관련 정부수입을 조세와 수수료 중 어느 쪽으로 분류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 먼저 이를 세외수입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르면, 면허 관련 수입은 면허를 획득하여 이득을 얻는 수혜자에게 정부의 면허부여 및 규제 관련 행정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일종의 수수료라고 판단한다. 반면에 이를 조세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르면, 면허부여 및 규제에 따른 편익은 면허를 획득하도록 규제 받는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귀착되는 것인데 규제 받는 기업이 면허 관련 재원을 부담하므로 수수료가 아니라 조세로 간주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와 무관하게, 실제 징수하는 면허수수료 혹은 면허세 부과액이 면허부여 및 규제를 위해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초과한다면 이를 일반조세로 분류하여야 한다. 재정부담액과 소요비용과의 관계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는 건축허가 수수료이다. 건축허가 수수료는 규제비용을 세외수입으로 분류할 때 발생하는 잠재적인 문제점을 잘 나타낸다. 캘리포니아 등 지방정부들은 1970년대 후반 이후 건축허가 및 검사 수수료(building permit and inspection fee)를 크게 인상시켜왔다.

이처럼 새로운 주택건설 등에 대해 높은 건축허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건축 규제의 편익을 기존 거주자들이 아니라 신규 거주자들이 향유한다는 가정에 입각

한 것이다. 그런데 건설업자들은 건축허가 및 검사 수수료가 이 업무를 위한 실제 소요비용을 초과하여 지방정부의 경상경비까지 부담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만일 이 주장이 맞다면, 건축허가 수수료가 건축규제의 한계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외수입이 아니라 기업활동에 부과하는 조세의 특성을 갖는다. 건축허가 수수료 총액을 허가업무에 필요한 행정비용인 세외수입 부분과 행정비용을 초과하는 조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ACIR(1987)에서는 전체 금액을 조세로 분류한다.

정부의 면허 관련 재정수입이 면허 부여에 따른 행정비용을 초과한다고 그 부분을 항상 세외수입에서 제외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면허 혹은 허가권을 부여하는 시점에 충분히 큰 세외수입을 부과하여 추후에 그 면허 및 허가권의 사용을 관리하는 행정비용으로 지출한다면 이와 관련된 재정수입 총액을 세외수입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 사례로 가두행진 동안의 군중을 통제하는 경찰서비스부담금, 공공시설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개발자분담금, 그리고 이혼 후 생계수단을 잃는 주부들(displaced homemakers)을 위한 프로그램 비용을 조달할 목적의 이혼수수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수수료 수입으로 공급되는 정부서비스는 그 수수료의 납부자들에게 직접적인 편익을 제공하므로 이를 가격기능 세외수입으로 간주해야한다.

3) 세외수입과 조세의 구분 및 구분원칙의 한계

세외수입과는 다른 형태로 부과하지만, 편익과 연계하여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협의의 편익조세(narrow based benefit taxes)로 분류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물품세(excise tax)인 자동차연료세를 들 수 있다. 고속도로요금은 도로이용에 직접 부과하는 방식인 반면, 물품세는 도로이용의 보완재인 차량연료에 과세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도로이용에 과세하는 것이다. 교통운송 관련 조세와 사용료의 용도를 도로건설·보수비용으로 지정한다면, 도로건설·보수의 총비용과 도로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총수입을 대체로 일치시킬 수 있다. 이처럼 개략적으로 지출과 수입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는 개인별 도로이용과 그에 따른 공공부문의 비용을 직접 연계시키지는 못한다. 따라서 도로투자 재원확보를 위한 재원을 세외수입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도로이용자들의 개인별 실제 편익정보가 필요한데 자동차연료세 등 자동차 관련 물품세들은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조세로 분류된다.

정부의 특정 재원을 물품세 혹은 세외수입으로 분류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원부담과 지출에 관해 논의할 때도 중요한 과제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등의 지방정부는 지역개발세(development tax)를 부과한다. 지역개발세는 조세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그 재원을 지출할 때 지리적 범위 혹은 수혜자 범위 등에 대해 제한받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개발세는 세외수입이 아니라 조세로 간주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보편적인 정부의 재원조달 수단은 일반조세를 논의한다. 일반조세의 납부의무는 강제적이며 정부의 특정 공공서비스 제공과 연계되지 않는다.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이에 속한다. 세외수입과 구분되는 일반조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조세를 납부한 개인과 그 재원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편익을 연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일반조세의 지출용도는 재분배 목적의 복지지출, 일반 공공서비스, 사회정치적 목적의 보조금 등으로 재원의 부담자와 편익의 수혜자들이 직접 연계되지 않는다.(Bird and Tsiopoulos, 1997) 일반적으로 재원에 대한 부담의무를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면 세외수입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세로 분류하지만 이러한 구분방법은 여전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술을 소비하지 않음으로써 주세를 회피할 수 있으며 소득을 벌지 않음으로써 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세와 세외수입을 자발적 선택 여부로 확실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우며 오히려 자발성 강도의 차이로 이들이 나누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재원의 지출측면으로 보완함으로써 이들을 구분할 때 발생하는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즉, 특정 공공서비스의 대가로 확보한 재원을 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한다면 세외수입으로 분류하고 포괄적인 용도로 지출이 이루어진다면 조세로 분류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세외수입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세외수입과 정부지출의 관계는 다음의 두 가지 특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정부지출의 편익을 일반대중이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원을 부담한 것으로 식별된 개인들이 향유한다. 둘째, 세외수입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을 공공서비스 소비에서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이러한 특성들을 충족시킨다면 적어도 기술적으로 세외수입의 활용성은 확보된다. 이러한 특성에 의해 세외수입을 가장 넓게 정의하면, 사용료·수수료, 공공요금, 특별분담금, 면허수수료와 면허세, 그리고 협의의 편익조세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편익 관련 부담금(benefit-related charges)’이라는 본질적으로 모호한 표현의 사용을 회피하기 위해 ACIR(1987)은 세외수입의 범위를 사용료·수수료, 공공요금, 그리고 특별분담금으로 제한한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재원은 개인별 부담액과 공공서비스로부터 받는 직접적인 편익이 밀접하게 연계된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갖는다. 또한 이러한 세외수입은 대체로 경제주체가 자발적으로 소비하는 공공서비스에 부과된다.

03. 세외수입의 정의 및 연혁

1. 세외수입 종류 및 내용

가. 일반회계(기타 특별회계)

1) 경상적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 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 세외수입 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수입으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세 목
사용료 수입	공공시설의 사용으로 인하여 얻는 편익에 대하여 보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개별적인 보상원칙에 의거 징수하는 점에서는 수수료와 같으나,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에 부과되는 데 반하여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개인·단체 등이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경우 부과하는 점이 다르다.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하수도사용료, 상수도사용료, 시장사용료, 도축장사용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수수료 수입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특정 사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주민서비스 향상의 요청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양적으로도 증가하고 있다.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기타수수료
재산임대 수입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국공유재산을 매각·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제외되며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로 구분된다.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사업수입	사업수입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종축장·임업시험장·원종장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매각 수입과 주차장 운영수입 및 보건소 진료수입 등이 있다.	사업장 생산수입, 주차요금수입, 통행료수입, 청산금 수입, 분담금수입, 매각사업수입, 배당금수입, 의료사업수입, 기타 사업수입
징수교부	국세·도세·하천사용료 및 도로사용료 등을 시·군이	징수교부금수입

금수입	위임을 받아 징수할 경우 징수위임기관인 국가 또는 도에서 교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징수 교부금은 형식적으로는 위임한 세입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상하는 성질의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와 시·군 간의 재원배분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자수입	자치단체가 그 세입금(자금)을 예치·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수입을 말한다.	공공예금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통화금융기관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공사공단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 임시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대체로 규모는 크나 수입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세입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

구 분	내 용	세 목
재산매각수입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라 공유물건인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얻는 수입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국유재산 법령에 의하여 은익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의 부동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때에 지급받게 되는 보상금 및 재산교환에서 발생하는 교환차익수입이 포함된다.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사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 금,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부담금	자치단체간 부담금과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일반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일반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의무위반 사항 등을 각 개별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기타수입	재산매각수입 및 부담금 이외의 수입을 일괄한 것으로, 불용품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체납처분수입, 시도비반환금수입, 거부금 등이 있다.	불용품 매각대, 체납처분 수입, 보상금수납금, 시·도 비 반환금수입, 기부금, 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징수결정된 수입금이 당해연도의 출납폐쇄기한(12월말)까지 수납되지 않고 그 후에 수납되었을 때에는 그 납부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하고 이를 지난년도수입으로 정리한다.	지난년도 수입

나. 공기업 특별회계

1) 사업수입

일반회계(기타 특별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유사한 개념으로, 상수도사업의 급수수익, 하수도사업의 사용료수익, 공영개발사업의 용지매출수익,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 이자수입 등이 해당된다.

2) 사업외수입

일반회계(기타 특별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과 유사한 개념으로, 고정자산 매각수입, 투자자산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세외수입 관련제도 변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주재원인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의 법령 및 제도운영의 변화속도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산재해 있는 법령과 개별적인 부과·징수 정보시스템의 운영이다. 특히, 부과부서가 지방세와 같이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관련부서에서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를 중요업무로 취급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기	주요 내용
1950년대 이전	세외수입을 맨 처음 규정한 고종 32년(1895년) 4월 5일자 칙령 제71호 「수입예규」는 「조세외수입」을 「관유 재산수입, 관업수입, 벌금, 몰수금, 환약금과 기타 국고에 수납함이 가한 수입금 등으로서 법률, 칙령 또는 구 관행에 따라 토지, 호구, 제반 영업 및 물건 등에 부과하여 국고에 수납하는 조세 이외의 제수입을 말한다」고 개념을 규정하고 당시에는 「조세외수입」이란 용어로서 조세수입과 구분하였다.
	192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전라남도령 제16호로 제정·공포한 「전라남도지방비제수입징수규칙」에서는 「제수입」이라 하였고 「지방세 이외의 지방비 수입을 제수입」이라고 개념 짓고 있었다.
1950년대	6.25전쟁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재정이 국민복지보다 전쟁수행으로 집중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등한시되고, 세외수입을 분리하여 관장할 필요성이 없었다.
	1950년대 후반에 국가위임사무의 격증 등으로 국가업무의 대부분이 일선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처리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임무인 주민복지의 증진 등이 크게 확대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했으므로 지방재정의 중요

	성은 날로 고조되어 갔으며 독립된 정치·경제적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재정적 기초인 지방재정의 자립이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며 이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이 시대적 요청으로 등장하였다. 1951년도 당시에는 재산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교부금, 기부금, 전입금, 이월금, 재산매각대, 과년도수입, 지방채 및 잡수입 등 10종으로 분류하였고 여기에는 기타 특별회계수입까지를 일괄하였다.
1960년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원을 확충하고 재정자립도의 제고를 위하여 조세수입과 구분되는 「세외수입」을 별개의 개념으로 정립하고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1961년도의 세제개혁과 더불어 1962년 1월 1일 내무부 본부에 지방세과를 신설한 후부터이다. 1960년대의 지방재정은 그 취약성을 면치 못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입은 주민의 납세저항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조세를 통한 지방재정확충은 한계점에 이르러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유로 되어 있는 기본재산의 생산적 관리를 통한 재산수입, 공영 또는 공기업적 사업의 합리적 경영을 통한 사업수입, 기타 사용료·수수료수입 등 주민의 부담증가나 조세저항이 적은 세외 수입원의 확대개발 내지 자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66년도에는 특별회계의 수입을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구분하였고 잡수입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장수입과 이자수입을 잡수입에서 분리·구분하였다.
1970년대	1970년 3월 24일 내무부칙령 제179호로 지방세과에 세외수입계를 설치하고 1970년 5월 20일 각 시·도 재정과에 세외수입계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세외수입 업무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1972년도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을 사용료와 수수료로 분리·구분하였다. 1970년대는 부동산가격 폭등문제가 크게 제기되어 토지공개념 도입제기와 더불어 자치단체별로는 단순·보편적인 세외수입에서 발상의 전환을 모색하였는바 그 첫 번째가 모래·자갈채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소위 경영수익사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1980년대	1980년대는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복지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재정수요는 계속팽창이 불가피한데 반해 세원은 한정된 상황에 부딪히게 되어 세외수입의 증대가 더욱 요구되었으며, 이의 타개책으로써 경영수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지방재정확충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그동안 시행하여 오던 토지개발 방법이 토지자원에 대한 부당한 독점결과를 초래하였고, 개발과정에서 발생된 막대한 개발이익이 사회에 환원되지 않는 등 토지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그르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되어 지방화시대에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하여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영개발사업을 1988년부터 시작하였으며, 1989년 1월에는 사업추진을 전담한 공영개발사업단을 11개 시·도에 설치하였고,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와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등 공영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하였다. 1984년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금수입에서 분리 구분하였으며 1988년 5월 1일 직할시에 자치구가 설치됨에 따라 자치구조례 12건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다.
1990	1991년 지방의회구성예 의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어

	지방재정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게 되었다.
	1991년 초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확보를 위하여 공영개발과 민관공동출자방식에 의한 사업추진원리를 전반적으로 도입 추진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주 수입인 세외수입 증대노력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지방의회를 대신하여 내무부에서 일괄 조정해오던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수료의 요율조정이 각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실정을 감안한 신축적인 요율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3년 8월에는 지방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의 주종을 이루는 「도로 점·사용료」의 징수근거가 되는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과거에 한전이나 전기통신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의 금고 이체기간을 수납일로부터 1~44일이던 것을 7일 이내로 단축하여 이자수입을 연간 400억 원 이상 증대하게 되었다.
년대	1994년 8월에는 행정서비스의 대가로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수납방법을 지방수입증지만으로 한정하던 것을 인증기를 통한 현금수납도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함으로써 행정의 질적 향상과 증지제조비 절감 등의 예산절약 효과를 거두었다.
	1994년~1995년에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무주택서민을 위한 택지의 저렴한 공급과 개발이익의 지역 내 환수를 위한 공영개발사업 추진이 부진하였다. 그러나 민선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자치단체에서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높아 1994년말 현재 9개 시·도에 사업단이 설치되었으며 46개 시·군에는 사업소가 설치되었다.
	1995년에는 그동안 물가인상 억제 등에 따라 장기간 미조정상태에 있던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처와 시·도에 개선토록 하였다.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계획은 1995년 3월부터 6월까지 자치단체별로 기초조사와 원가분석을 실시하였는 바 그 종류가 1,542종(수수료 1,056종 사용료 486종)이었으며, 원가보상수준이 평균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 829종 중 588종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징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물가와 사회적 영향을 고려 1996~1999까지 연차별 현실화·유료화 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2000년대	경영수익사업의 다각화를 도모하고자 2000년부터 지역의 유·무형자산을 활용한 향토지적자산을 중점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울러 지방재정확충을 도모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성과분석을 통해 경영 수익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 수지분석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 적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부과징수·채납관리 업무의 전산관리를 통한 업무방식 개선 및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2002년도에는 전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2003년에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하여 2005년까지 224개 기관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2004년에는 기존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보완하여 자치단체간 정보공유 및 관련 정보시스템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전국통합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03년부터는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시·도에 세외수입확충 연구모임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외수입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상호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에는 징수율이 40%를 밑도는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를 제고를 위해 자진납부제, 신용정보 등록, 인터넷 납부 등 징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에서 과태료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법무부에서 입안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에 자치단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였다. 2005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 및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288개 수수료에 대해 14개 관련부처와 각 자치단체에 법령 및 조례를 정비하도록 권고하여, 중앙부처의 협조 하에 수수료 현실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06.1.11.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제139조 단서에 수수료 표준요율의 제정근거를 두었으며, 이에 따라 같은 해 6.29.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의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자치단체간 편차가 심하고 원가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주요수수료 현실화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조직과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세외수입 업무추진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2006.6.9.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자치정보화조합과 공동으로 세외수입 발전기획단을 구성, 세외수입 관련 제도 및 정보화 전반에 관한 현안사항들을 연구하여 실무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세외수입 전산징수부 운영지침과 과오납환부처리지침 등이 확정되었으며, 그 외에도 세외수입 실무매뉴얼(안), 세외수입 관련 서식 정비(안) 등이 마련되었다. 2007.10.4. 지방자치법 제139조 단서에 따른 수수료 표준요율 규정을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 공포하여 수수료의 전국적 통일을 도모하였으며, 2007년도에도 세외수입 혁신추진단을 구성하여 세외수입 현안사항을 연구, 토론하여 세외수입 실무운영에 기여하였으며, 세외수입 부과·징수의 근거마련을 위한 세외수입징수절차법(가칭)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세외수입 제도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8년도에는 노후 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기능을 대폭 향상시키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자치단체 및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2008.6.2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어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게 되었다. 2009년에는 가상계좌 도입, 신용카드 납부 등 민원편의를 위한 납부시책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세외수입 관련제도 및 정보화 등 현안사항을 연구하는 모임인 세외수입 성과기획단에서 세외수입 실무 책자를 발간하였다. 2010년에는 C/S기반의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Web기반으로 전환하는 고도화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7개 시범기관에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단서에 따른 수수료 표준요율 규정을 15종에서 27종으로 확대 공포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소지가 적은 단순·증명교부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하였다.
	2011년에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완료하여 전자납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였다. 또한 과태료 징수를 제고를 위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개정하였다.
	2012년에는 민원불편 해소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지난 60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수수료 납부 시 사용되어 온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토록 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단서에 따른 수수료 표준요율 규정을 27종에서 182종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자체간 수수료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2013년에는 지방세외수입 징수관리를 위한 일반법으로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독촉 등 체납절차,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체납자대금지급 정지 등 제재수단, 과세자료의 제공 등을 명문화하였다.

	2014.8.7.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역할로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입정보과를 신설(2014.4.1.)하였다. 또한 지자체에도 체납 징수 등에 전문성이 있는 세무부서의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여 개별부서별로 산재한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세외수입 납부편의 위해 간단 e납부 서비스의 확대 시행(12.15.)을 통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하수도 요금 등을 고지서 없이 은행 ATM,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여 납부가능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2013.7.29.시행)에 따라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편성 시 부터는 세입예산과목 구분이 변경되어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융자금 원금, 전입금, 예수금 및 예탁금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의 별도 과목으로 신설되어 세외수입 항목에서 제외되었다. 2015년에는 세외수입 전담조직 설치 독려를 위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결과 전담조직 설치 자치단체 수가 당초 54개에서 139개 자치단체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세입 확충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열악한 세외수입 운영체계에 대한 관심도 제고에 기여하고 자율적으로 세외수입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2016년에는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경우 그 체납행위와 관련된 사업의 허가 등을 거부하거나, 고액의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6.5.29.)하여 간접강제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5년에 처음 실시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보완·개선하여 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고, 징수율 제고 및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였다.

자료 : 2017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행정안전부

04. 세외수입 관련 법령

1.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에 관한 부과·징수, 체납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와 달리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200여 개에 이르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체납처분은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토록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명확한 징수나 체납 처분 절차가 미비하여 적극적인 징수가 곤란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3년 8월 6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14년 11월 19일 시행하게 되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세외수입금을 현재 지방세외수입 중 징수율이 낮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부과형 지방세외수입을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부과형 세외수입 중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그 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법에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중요한 기여는 지방세외수입금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처분은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용토록하고 있었는데, 동법에서 체납률이 높은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를 독촉(제8조), 압류의 요건(제9조), 질문권 및 검사권(제11조), 체납처분의 중지(제16조)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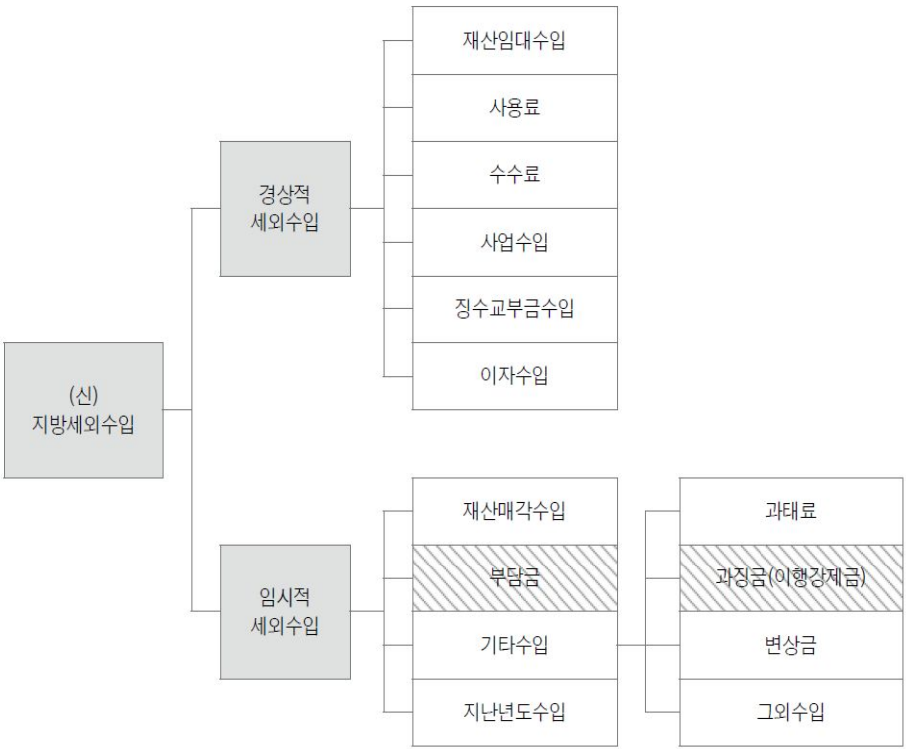
그리고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상태 파악이 용이하도록 과세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조). 이 규정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보다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동법 제6조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 장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요구가 있을 때, 체납자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7조에서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게 대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제도 도입을 통해 체납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17조), 지방세외수입정보망을 설치·운영하고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세외수입금 수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방세외수입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였다(동법 제20조부터 제22조).

<지방세외수입 및 지방세외수입금 구분>



자료: 안전행정부 내부자료

주: 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세외수입금'으로 정의함

2. 기타 관련 법률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외에도 징수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도시교통촉진법」 등 다양한 법령과 소관부처별로 징수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 징수절차 관련 법률의 체계>

구 분	법 명	적용대상	주요내용	소관부처
부분 통합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과징금, 이행 강제금, 부담금	-행정상 제재 -체납처분절차	행정안전부 (세입정보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성립요건, 부과 및 징수 -재판 및 집행, 행정상 제재	법무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용료(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요율산정, 강제징수 -연체료·변상금 징수 등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지방재정법 (제10장 채권관리)	지방세외수입 (과태료 등 제외)	-부과 및 독촉 -강제이행 및 보전조치 등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지방자치법 (7장3절 수입과지출)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부과징수, 이의신청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개별법	도시교통촉진법 등	다양	-일부 부과징수 규정(독촉, 가산금) 포함	각 소관부서

05. 세외수입 운영

1. 세외수입 운영진단

세외수입의 문제점은 (1)불안정성, (2)비효율성, (3)비노력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불안정성은 세외수입의 낮은 신장성과 구조의 불건전성으로, 비효율성은 비효율적 관리체계로, 그리고 비노력성은 낮은 징수율로 정의된다. 매뉴얼에서는 이와 같은 세외수입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방 자율성 확대에 기여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세외수입 운영진단제도'를 제안하였다.

<2017년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지표 종합>

분야	분야	분석지표	산정방식	분석기간
총량 지표 (100점)	신장성 (40점)	① 지방세외수입 증감률 (20점)	지방세외수입 징수액의 전년도대비 증가율 * 재산매각수입, 그 외 수입 제외	2년
		② 경상적 세외수입 신장성(일반) (20점)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액의 연평균 증가율 * 일반회계, 매각사업수입, 이자수입 제외	4년
	징수관리 (45점)	③ 징수관리의 실효성 (25점)	현년도 징수액 / 현년도 징수결정액 * 징수결정액 또는 징수액 중 지난년도수입의 징수결정액과 징수액을 제외한 현년도	단년도
		④ 체납액 축소 노력도 (20점)	[(2015년도말 누적 체납액 - 2016년도말 누적 체납액) / 2015년도말 누적 체납액] * 누적체납액 = 징수결정액 - 결산징수액 - 불납결손액 = 세외수입 통계연감 상의 미수납액	2년
	정책관리 (15점)	⑤ 시스템 표준화율 (5점)	2016년도 시스템징수결정액 / 2016년도 총징수결정액 * 시스템 부과액 = 표준지방세외수입시스템 및 새울시스템으로 부과한 세외수입금액 - 징수교부금(215) - 이자수입(216)	단년도
		⑥ 조직의 완비성 (10점)	(0.7 x 전담조직설치여부) + (0.3 x 세외수입전담기간)	단년도
중점관리 세목	징수율 중점 관리	⑦ 징수율	징수율이 특히 낮은 지방세외수입 종류를 몇 가지 선정하여 이들의 관리 현황을 살펴봄	최소 향후
		⑧ 부과금액	우수 사례 및 미흡 사례를 찾아보고 자치단체 개선 방안 컨설팅 및 중앙경부차원의 정책 제언을 시도함	3년

자료 : 이희재(2017), p58

세외수입 운영진단제도의 도입은 향후 지자체의 세외수입 현황 및 추이, 운영실태 및 개선노력을 파악하고, 특정 목표에 따른 지자체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종합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할 것이며, 또한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 유형별 달성도를 제시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세외수입 운영 상황을 점검·학습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높은 성과를 유도하는 장치로도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2. 세외수입 신수입원 발굴

현대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급격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은 조세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저항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지 않으면서도 재정수요의 확충과 공공서비스 배분의 형평성 및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지닌 재원조달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공공서비스로부터 수혜자별 편익을 기준으로 공공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사용자부담금(User Charge)⁴⁾ 조세 자체를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건전한 공공비용부담원칙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지방정부 재정 확충에 기여를 하고 있다(S. J. Bailey, P. K. Falconer and S. Mcchlery, 1993: 13). 이와 같이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노력 여하에 따라 확대 가능성이 높은 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지방세와 달리 비교적 법적 제한이 적어 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수입의 확충 및 부과대상의 확대가 용이하고 중요한 잠재적 수입원이다.

세외수입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여러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한 연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연구,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에 대한 연구,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대한 연구, 신규 세외수입원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등이 대부분이다. 또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과 우수사례의 확산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세입증대 분야의 우수 사례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부여, 세입증대 기법의 공유 등을 통해 자치단체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다방면의 세외수입 확충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규모 및 성장세는 정체상태에 있다. 지방세외수입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성장성이 떨어지며, 특히 세외수입 중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 수입원인 경상

4) 일반적으로 사용자부담금(user charges)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사용료(user charge) 및 수수료(fees)로 구분하고 있지만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사용자부담금(user charges, 또는 user fees)으로 통칭하고 있다.

적 세외수입의 비중이 낮다.

2016년 결산 순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수입을 제외한 지방세입은 104조 2,213억원이며 세외수입은 28조 6,896억원으로 27.5%이다.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12조 7,15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5조 9,746억원이고 일반회계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조 7,174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입 비중의 5.5%수준이다. 2016년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액 증가율은 7.7%수준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율 12.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외수입 회계별 징수액 및 증감률>

(단위 : 억원, %)

구 분		2015 징수액(A)	2016 징수액(B)	증감액 (C=B-A)	증 감 률 (C/A)
합 계		265,630	286,896	21,266	8.0
일반회계	소 계	115,128	127,150	12,022	10.4
	경상적 수입	53,093	57,174	4,081	7.7
	임시적 수입	62,034	69,976	7,942	12.8
특별회계		150,503	159,746	9,243	6.1

이는 자치단체별로 자연·관광·향토문화자원, 지역기반시설자원 등 세외수입원으로 발굴·활용할 수 있는 지역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신규세외수입 발굴을 함에 있어 기준과 원칙의 미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세외수입 활용의 장점으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세외수입은 민간시장의 가격처럼 작동하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한다. 둘째, 세외수입은 공공서비스로부터 편익을 얻은 수혜자들이 그 공급비용을 지불하므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재원조달 방법이다. 셋째, 세외수입은 일반조세의 대안으로 재정수입 확충의 잠재력을 갖는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사적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질 때 세외수입을 활용할 수 있다. 즉, 편익의 수혜자를 식별할 수 있어서 비수혜자의 재원분담을 배제

할 수 있으며 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충분히 낮다면 공공서비스에 대해 세외수입의 부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수직적 형평성 과제, 세외수입의 소득공제 불가능성, 상위정부에 의한 제도적 제약, 상위정부의 법률적인 제약으로 세외수입 활용의 확대는 여러 문제가 있다.

세외수입의 활용여부 결정 기준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일반 조세보다 세외수입의 가격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첫째, 공공서비스의 편익이 특정 개인에게 국한됨으로써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여도 외부편익의 감소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공공서비스의 수요가 어느 정도 가격에 반응하는 탄력성이 유지되어서 가격기구의 이용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유도되고 공공서비스의 과도한 이용이 억제되어야 한다. 셋째, 세외수입 부과로 초래될 저소득계층에 대한 불공평성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넷째,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비용이 비교적 저렴해야 한다.

3. 공공서비스의 특성과 세외수입 부과방법

ACIR(1987)과 Due and Friedlaender(1981)는 세외수입 활용여부 결정 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재원조달방법으로 세외수입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해서는 안 되는 영역과 세외수입을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해야 하는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Bird and Tsiopoulos(1997) 및 Bird(2004)는 이러한 구분을 위해서 지방정부 활동의 본질과 해당 공공서비스 관련 시장의 본질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들에 따르면, 공공서비스는 양쪽 극단인 순수공공재와 순수사적재의 연속성 상에 위치하며 이는 대체로 일반 조세와 세외수입에 의한 가격의 연속성과 대응시킬 수 있다. 그런데 공공재와 사적재의 구분이 세외수입의 활용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유일한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성은 완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은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때 세외수입 적용의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특성을 제시하고 세외수입의 수준 및 다양한 부과방법을 논의한다.

가. 공공서비스의 특성과 세외수입 부과의 적합성

1) 공공성 혹은 비경합성

특정 재화 및 서비스의 공공성(publicness) 혹은 비경합성(non-rivalry)은 그에 대한 추가적 이용자의 소비가 다른 모든 이용자들의 소비에 미치는 효과로 측정한다

다. 이 특성의 양쪽 극단에는 순수공공재와 순수사적재가 위치하며 많은 재화 및 서비스는 이 극단 사이의 연속선상에 위치한다. 먼저 순수공공재는 한 사람이 특정 재화를 소비하더라도 다른 모든 이용자들의 소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화이며, 순수사적재는 한 사람이 그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은 그 재화를 전혀 소비할 수 없는 재화를 의미한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정부의 중요한 존재이유는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신호등, 도로 등처럼 정부 제공 서비스가 공공성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재 공급은 순수공공재부터 순수사적재까지 광범위하게 걸쳐져있다. 지방정부 수준에서 순수사적재 성격의 정부활동으로 상수도공급, 공공버스서비스 등을 예시할 수 있다.

2) 배제불가능성

배제가능성(excludability)는 특정 개인에 의한 서비스의 소비를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특정 서비스의 배제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그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의 소비를 제한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하여 소비로부터 배제하는 비용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공버스 이용 배제는 수월하지만 신호등 이용 배제는 거의 불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한 공공서비스의 비경합성은 세외수입에 의한 가격 설정의 바람직성을 결정하는 반면, 배제가능성은 가격설정의 실행 가능성을 결정한다. 즉, 경합적일수록 세외수입 이용의 바람직성이 높아지며, 배제가능성이 높을수록 세외수입의 실행 가능성이 높아진다.

비경합성 혹은 배제불가능성이 반드시 특정 서비스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의 여부는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술적 수단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며, 그 수단의 특성은 자원조달을 위한 정책선택에 의해 결정한다. 예를 들어, 공중파에 의한 TV 신호는 비경합적이며 배제불가능하다. 하지만 유선 혹은 전파변환에 의한 TV 신호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완전히 배제가능하다. 이는 비경합적이면서 배제가능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공급 기술로 인해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이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규모의 경제와 비용의 매몰성

비경합성과 배제가능성은 소비측면에서 정부서비스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이다. 반면에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비용의 매몰성(sunkness of costs)은

생산과정에서의 본질을 나타낸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처럼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한 정부서비스와 관련된 개념이다. 전통적으로는 대규모 초기 투자자본이 소요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주장이 만연하였다. 서비스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비용체감산업의 경우에는 한계비용에 의한 효율적인 가격설정은 총비용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부문은 그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급비용이 매몰되는 크기가 적을수록, 즉 서비스 공급을 위한 장기한계비용과 단기한계비용의 차이가 적을수록,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덜 나타날수록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가격설정이 수월해진다. 이와 달리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처럼 급격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거나 매몰비용이 크다면, 필요한 자원의 상당부분을 일반 조세로 조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 외부성

외부성(externalities)은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 혹은 편익을 의미한다. 외부성을 초래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공급하면 이러한 외부편익 혹은 외부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서 효율적인 공급량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외부성은 정부에 의한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지지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교육 혹은 지능형 교통시스템은 긍정적 외부성의 특성을 갖는 대표적 사례이다. 추가 이용자들은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보교환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모든 이용자들의 편익은 증가한다. 한 사회가 이러한 외부성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공부문이 한계비용 미만의 가격으로 직접 공급하거나 민간부문의 공급에 대해 명시적인 보조금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여전히 적합할 수 있으나 외부성을 반영하도록 사용료 수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5) 사회정치적 목표

모든 정부행위는 부분적으로라도 사회정치적 목표를 충족시키려고 시도한다. 물론 정부활동별로 사회정치적 목표를 충족시켜야 하는 강도는 다를 수 있다. 특정 정부활동의 유일한 목표가 재분배인 경우에는 사회정치적 목표 달성이 매우 중요하다. 정책목표가 재분배 일때 수혜자들에게 편익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대부분의 정부정책은 재분배 효과를 의도하므로 정부 제공 공공서비스의 편익을 재분배 편익과 재분배 이외의 편익으로 구분하여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에 대해 사용료 등의 세외수입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 가격기능 세외수입 적용의 현실

원칙적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세외수입 수준은 완전경쟁 시장에서 부과되는 가격과 같아야 한다.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가격이 설정되는 완전경쟁시장은 여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수요자와 공급자는 충분히 많아야 하며 이들이 가격 및 생산비용뿐 아니라 이용가능한 대체재와 보완재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재적인 특성을 갖지 않으며 가격이 모든 외부비용과 외부편익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더욱이 분배문제는 정액이전지출 등이 다른 방식으로 다룬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물론 오염 등의 부정적 외부성을 규제하기 위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재원조달방법을 논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담금과는 역할과 성질이 다르다.

정부는 효율성 달성을 위한 이러한 시장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개입하므로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재화 혹은 서비스가 완전경쟁시장의 효율성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 것 같지는 않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비경합적이거나 배제불가능할 수 있으며 규모의 경제 때문에 독점공급을 초래하거나 혹은 가격이 외부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배문제가 중요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가격 혹은 세외수입을 설정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논의한다.

1) 독점적 서비스

많은 공공서비스를 정부라는 독점적인 공급자가 공급하므로 효율적 수준의 이용을 보장하도록 세외수입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독점인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매물비용 요인 등으로 규모의 경제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경쟁기업이 출현할 수 없는 자연독점인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많은 규제정책처럼 공공정책 자체가 법률적인 독점을 창출하는 경우이다. 이유가 무엇이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민간 기업은 이윤극대화 가격의 설정을 시도하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비해 과소한 공급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방지하는 것이 공공부문이 시장에 개입하는 중요한 논리이다. 따라서 독점 공급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설정은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가격설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완전경쟁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다. 설령 서비스 공급을 민영화하더라도 가격설정 문제가 가격규제 문제로 전환하는 것

일 뿐 독점공급에 의한 본질적인 문제는 변화하지 않는다.

2) 의무적인 서비스

소비자 입장에서 차량 등록 같은 일부 공공서비스들은 선택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차량을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할 때 등록 수수료의 수준과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가 선택 가능한 공원 같은 여가시설의 이용수수료를 설정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사람들은 특정 시점에 공원에 가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구입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이용하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3) 비탄력적인 수요

만일 공공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면, 특정 행위를 수행하거나 특정 성격을 갖는 모든 주민들은 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운전행위처럼 그 행위가 일상적이거나 광범위한 특성을 가질 때 그 행위와 관련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거의 완전비탄력적일 것이므로 사용료가 얼마이건 주민들은 지불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수준이 충분히 높아진다면, 이를 회피하려는 유인이 작동한다.

합법적으로 그 행위 자체를 자제하거나 불법적으로 암시장 등에서 거래하거나 혹은 역외조달 혹은 가정내 생산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만일 가격에 관계없이 수요가 일정하다면, 이는 세외수입이 배분 기능을 수행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어서 가격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서비스에 부과된 가격은 사용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자세이다. 공공서비스의 편익을 얻는 이용자들이 세외수입을 부담하는 것은 공정성의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의무적인 서비스라도 하더라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라면 세외수입을 부과하더라도 공공서비스가 무료일 때와 동일한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므로 효율성의 관점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일 때 적절한 세외수입 수준을 설정하는 것은 수요가 탄력적일 때의 설정과는 전혀 다르다.

4) 공공서비스 이용자와 공공서비스 수혜의 가시성

공공서비스 시장의 중요한 특성은 공공서비스의 이용자와 서비스 수혜의 가시성과 관련된다. 공원 같은 공공서비스는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지만 화물차면허 등의 공공서비스는 중간생산자에게 제공된다. 또한 학교 같은 공공서비스는 매우 가시적이지만 도량형 관련 규제 등은 가시적이지 않다. 공공수영장 같은 일부 공공서비스는 그 서비스를 선호하는 고객들에게만 제공된다. 그러나 대부분 규제 서비스들의 이용자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직접적인 수혜자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더 광범위한 공공목적을 달성하도록 고안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규제 없이 자유로운 수렵활동을 원하지만 자유로운 수렵활동을 억제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받는 공원이용자들을 상상해보자.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부과 이후에도 무료일 때와 공공서비스 이용량이 동일하다는 것이 효율성 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외수입의 수준과 관계없이 이용량이 일정하므로 그 수준을 결정할 때 공급의 한계비용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신중해야함을 의미한다. 선량한 이용자들의 수렵활동을 억제하고 선량한 이용자들의 편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선량한 이용자와 불량한 이용자들을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모든 이용자들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세외수입의 부과 여부, 부과대상, 그리고 부과수준을 결정할 때 이상에서 논의한 다양한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다. 세외수입 부과 수준의 설계

세외수입(사용료)의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과수준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외수입 부과와 경제학적 논리는 공공부문의 효율적 자원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경제학 기본원리에 따르면, 최적의 세외수입 수준은 공공서비스 공급의 한계비용과 일치하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만일 한계비용보다 낮게 세외수입을 설정하고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 이상으로 그 서비스를 소비하게 되며 이로 인해 사회는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초래하게 된다.

1) 한계비용가격설정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때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한계비용가격설정(marginal cost pricing)이 필요하지만 이를 현실에서 실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중에서 특정 서비스의 비용을 구분하

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구분이 가능하더라도 이를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제학적으로 한계비용이란 재무회계의 비용과 크게 다르다. 재무회계 비용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행위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식별 가능한 화폐지출을 말한다. 물론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합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서비스별로 구분하여 배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사들은 다양한 기법을 개발하여 결합비용 혹은 간접비용을 각 서비스별로 분리한다.

그렇지만 한계비용가격설정에서 사용된 경제학적 비용은 이러한 회계학적 비용과 다르다. 기본적으로 경제학적 비용은 기회비용인데 이는 공공서비스에 투입된 생산요소들을 차선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얻을 수 있었던 편익의 가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공원의 비용이란 단순히 회계장부에 기재된 건축비용 및 운영비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공원토지의 기회비용은 토지를 주거지 개발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였을 때 실현할 수 있었던 가치를 말한다. 한계비용가격설정을 위해서는 기회비용의 산정이 필요한데, 이는 어려운 과제이다. 공공서비스 한 단위를 추가 제공하기 위한 한계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모든 생산요소들의 추가 비용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도로 혼잡은 실질적인 사회적 비용이지만 이를 화폐가치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한계비용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한계비용의 측정에서 개념의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여전히 측정의 문제는 남는다. 예를 들어, 공원이 입지한 토지의 가치측정을 위해 시장가격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시장가격이 사회적 한계비용을 나타내려면 이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시장이 완전 경쟁적 이어서 판매자의 정상수익률을 포함한 사회적 한계비용과 일치하도록 가격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격설정 문제는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할 때에도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니다.

한계비용에 기초하여 사용료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다면, 특정 서비스의 한 단위 추가 공급을 위한 사용료는 그 추가 단위의 소비에 의해 사회가 향유하는 편익과 동일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계비용이 모든 공급량 구간에서 일정하지 않고 공급량에 따라 변화한다면, 적절한 한계비용가격설정을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곡선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대체 행위 혹은 보완 행위에 대한 시장정보 이용방법 혹은 설문조사를 이용하는 조건부 가치평가법 등 수요곡선을 추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더라도 수요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비용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한계비용가격설정을 위해 고려해야할 추가적인 중요한 과제는 한계비용가격설정

에서 고정비용의 포함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자본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단기한계비용과 일치하게 설정하는 경우,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어진 시설규모가 비용편익분석에 따른 최적규모이어야 하는데 이를 보장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시설규모가 최적규모라면 자본시설이 마모되지 않는다는 가정이 성립되거나, 혹은 사용량이 변화함에 따라 단기한계비용과 일치하도록 설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시설규모가 과도할 때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다가 사용량이 증가하면 증가한 혼잡비용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인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혼잡비용을 측정하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혼잡으로 서비스 수준은 하락하는데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행정적 혹은 정치적으로 매우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사용료를 고정비용을 포함한 장기한계비용으로 설정한다면, 자본시설은 과소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부문의 많은 서비스는 사회간접자본처럼 거대한 자본투입을 포함하므로 평균비용은 체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한계비용은 평균비용보다 낮아서 효율성을 보장하는 한계비용가격설정에 따르면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이다. 이러한 적자를 보전하는 해결책은 일반 조세수입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납세자들이 서비스의 수혜자들을 보조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면, 한계비용가격설정의 대안은 평균비용가격설정이다. 이때 서비스 공급비용은 완전히 충당할 수 있지만 가격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높아서 서비스 거래량은 효율적 수준보다 과소할 것이다. 이제 공공서비스 이용의 효율성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가격설정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평균비용가격설정

현실에서 가장 일반적인 사용자부담금 결정방식은 재무회계 비용만을 반영한 평균비용가격설정(average cost pricing)이다. 이 방식이 명백히 비효율적임에도 널리 이용되는 이유는 계산이 용이하고 이용자들을 설득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경제학자들이 선호하는 한계비용가격설정은 효율적일 수 있으나 일반 이용자를 납득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평균비용가격설정은 수용 가능한 방법이다. 그럼에도 그 자체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평균비용가격설정방식에 따르면, 특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총회계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현재의 이용단위로 나누어 사용료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두가지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이미 언급한 바처럼 이러한 사용료 결정은 효율적이지 않다. 산출물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이 하락한다면 가격은 효율적 수준보다 높아져서 산출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하게 된다. 반면에 산출물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비용이 상승한다면 가격은 효율적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며 이는 초과 수요를 창출할 것이므로 새로운 투자에 의해 산출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자원의 비 효율적인 배분이 발생한다. 유일하게 평균비용이 일정할 때에만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은 동일하므로 평균비용가격설정은 효율적인 결과를 낳는다.

평균비용가격설정과 관련된 두 번째 문제는 평균비용이 일정하지 않을 때 평균비용가격설정을 위해서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공원 입장료가 무료이거나 매우 낮다고 가정하자. 또한 특정 공원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재무적 비용인 가변비용의 산출은 용이하며 현재의 가격에서 공원이용자 수도 파악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가변비용을 이용자 수로 나누어 사용료를 결정하는 것은 가변비용조차 충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용료를 결정하여 입장료가 현재보다 상승한다면, 이용자 수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변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평균비용가격설정을 하려면 이용자 수의 변화에 따른 단위비용의 변화크기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가격의 변화에 따른 이용자 수의 변화크기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설령 이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의 차이 때문에 평균비용가격설정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보장하지도 못하며 고정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공원을 확대해야하는지 혹은 축소해야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지도 못한다.

3) 평균점증비용가격 설정

유용한 대안은 평균점증비용가격설정(average incremental cost pricing)방식이다. 이 방식은 한계비용가격설정처럼 추가적인 이용자에 의해 발생한 비용을 산출하지만, 평균비용가격설정처럼 총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할 뿐 아니라 현실에서 공공부문의 관리자들이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특정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초래하는 추가적인 결정에 의해 발생한 비용을 고정비용과 가변비용, 혹은 재무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등의 요소들로 구분하고 추가적인 이용자에 의해 점증한 비용을 평균적으로 각 추가적인 이용자에게 할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운전자가 특정시점에 도로에 진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은 다양한 요소들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시점에 그 장소에 차량 한 대가 추가되어 발생한 혼잡비용, 그 장소의 이용을 위한 도로 건설비용, 그 진입으로 발생한 도로마모비용 등이 그것이다. 이 경우에 효율적인 가격은 혼잡에 대한 피크타임일의 벌과금, 차축에 의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도로마모의 보수를 위한 부담

금, 도로 건설을 위한 고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도로이용료 등의 조합으로 개략적이거나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가격으로 부과할 수도 있지만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부과할 수 있다. 즉, 자동차검사료의 형태로 자동차에 부과하며, 유류세 혹은 도로 통행료의 형태로 도로이용에 대해 부과하고, 운전면허료의 형태로 운전자에게 부과할 수도 있다. 각 경우에 적절한 사용료는 이용 가능한 회계정보와 회계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소음, 공해, 혼잡 등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료 부과방식을 엄격한 의미에서 한계비용가격설정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근접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4) 이부가격설정

사용료 설정의 다른 대안은 이부가격설정방식(two-part tariff) 혹은 다부가격설정방식(multi-part tariff)이다. 이는 공공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입비 명목으로 고정된 부담금을 부과하고 서비스 이용량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다. 이부가격설정의 변형으로 특정 지역 주민들이 재산세를 납부하여 시설이용의 권리를 확보하였다고 가정하여 시설을 무료 혹은 낮은 사용료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때 사용료는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가능한 한계비용에 근접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이부가격설정은 한계비용가격설정으로 총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에 적용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 이용자들의 개별 특성을 식별하기가 용이하다면 가격차별이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즉, 가격변화에 대한 서비스 이용량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다른 두 집단을 가정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높은 가격을 부과하면 효율적 자원배분을 유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빈자들에 비하여 선택의 폭이 넓어 수요가 탄력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차별적 가격설정은 공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격설정은 분배목적 등을 위해 효율적인 가격설정을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추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써 활용될 수 있다.

5) 체감하는 구간별 가격설정

가격차별의 일반적인 형태는 공공요금에서 자주 사용하여 체감할 수 있는 구간별 가격설정방식(declining block-pricing)이다. 이는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이용단위당 사용료를 낮추는 것으로, 대중교통 혹은 공원의 이용이 잦은 사람들에게

낮은 이용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유희시설규모가 과다한 경우에 이러한 가격설정은 합리적일 수 있다. 그렇지만 저렴한 가격에 의한 추가적인 소비가 특정 시간에 집중되어 과다 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격을 설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교통시설이 피크시간을 제외하곤 과소 이용된다면 한가한 시간의 이용자들에게 그런 이용이 증가할수록 가격을 인하해주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피크시간에 교통시설을 사용하는 일반 통근자에게 할인가격을 제공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가격설정은 주로 한가한 시간에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학생 등 저소득계층에게 할인혜택이 부여되어 분배를 개선할 수 있다. 물론 피크시간을 이용해야하는 가난한 통근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분배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유사하게, 분배개선을 위하여 전기요금에 대해 초기 일정 전력사용량에 대해서 생산비용미만의 가격을 부과하는 형태의 공공요금체계를 설정할 수도 있다.

라. 세외수입 부과·징수비용과 정치적 과제

적절한 세외수입을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은 복잡하며 확보하기 어렵다. 어떤 경우에는 공공서비스의 공급비용과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세외수입의 부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초과할 수도 있다.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결정할 때에는 이러한 정보비용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세외수입을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집행비용과 이들을 납부하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순응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비수기의 공원 이용처럼 많은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공원이용료의 부과·징수비용이 공원이용료를 초과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이용료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도로이용에 대해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한 행정비용, 순응비용, 추가적인 혼잡에 의한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요금부과는 설득력이 없다.

사용료 등 세외수입을 결정할 때에는 일단 결정된 공공요금을 변경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공공기관에 의해 결정된 가격은 순수한 시장과정 혹은 경제적 과정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과정의 산물이다. 따라서 사용료는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제도이므로 본질적으로 변경하기 어렵다. 일단 결정되면 정치적 환경이 변경을 허용할 때까지 지속되는 성질을 갖는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설정하는 가격을 변경할 때 항상 발생하며 특히 무료로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때에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도입할 때 가격을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수준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입할 때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를 시정하지 못한 채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사용료 등 세외수

입은 항상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성질을 일정 부분 갖기 때문에 이를 도입할 때 유관 집단과의 협의 및 여론(혹은 관련 중앙정부 부처) 검토의 적절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절차는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가격의 결정 및 추후 필요할 때의 조정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세외수입의 부과에 대한 중요한 우려는 불공정하고 역진적이어서 분배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과 연관된다. 이러한 주장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이해관계자들이 세외수입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제기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분배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반면에 적절히 설계된 세외수입은 공정하고 누진적일 수도 있다. 일반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여 소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공공서비스를 소비할 수 없고 공공서비스를 소비하지 않는 주민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를 공정하다고 인식할 것이다.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보다 우유나 빵을 더 비싸거나 싸게 구입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부자라고 가난한 사람들보다 낚시면허료를 더 많이 낼 이유가 없다. 하지만 세외수입의 확대가 분배를 악화시킨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은 가격기능을 덜 활용한다. 따라서 공공서비스가 무료일 때 이득을 얻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를 유료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양한 공공서비스 중에서 일부는 무료 혹은 낮은 가격으로 제공됨으로써 오히려 고소득층에게 이득을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 부두의 선박보관 및 접안비용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요트를 보유한 소수의 고소득자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으며, 고등교육비용을 낮추기 위한 보조금의 이득은 대부분 고소득 가구에게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공공서비스를 무료 혹은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소득재분배를 위해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일반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은 저소득층이 일부를 부담하며 시장을 왜곡시켜 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 공공서비스 공급의 한계비용과 일치하도록 세외수입을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일반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은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용료 등 세외수입의 부과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키므로 공공부문의 크기를 줄일 것이다. 더욱이 세외수입을 적절하게 설계한다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게 세외수입을 더 많이 부담시킬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세외수입이 효율성뿐 아니라 형평성도 개선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외수입과 관련된 재분배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두 가지 전략적 대안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먼저 세외수입 부과의 예상된 재분배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정적인 재분배효과가 심각하지 않다면 이를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만일 부정적인 재분

배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수용하고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쇄방안의 사례로서, 모든 사람들이 초기의 기본수량까지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생계선(lifeline) 가격설정을 채택하거나 저소득층을 위한 일반 이전재원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정치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세심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세외수입정책 혹은 가격설정정책을 일반 주민들이 수용하도록 설득하는데 필수적이다.

마. 세외수입 부과를 위한 가이드라인

Bird(2004)가 제시한 공공서비스 공급비용을 충당하는 세외수입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리한다. 첫째, 사용료 등 세외수입의 잠재적 부과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정부정책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본질과 특성을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 둘째, 특정 공공서비스가 세외수입의 부과대상으로 적절하다면, 그 서비스의 공급비용과 이용추이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모두 수집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비용 관련 정보는 재무회계를 활용하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는 설문 혹은 기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셋째, 공공서비스가 외부성을 초래하거나 혹은 재무회계 비용과 기회비용이 서로 다르다면, 이들의 해소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은 불가피하게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 이용자 및 비이용자 모두가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조정의 이유와 크기에 대해 최대한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넷째, 원칙적으로 공공서비스의 가격설정은 단기한계비용가격설정 혹은 평균점증비용가격설정 혹은 이부가격설정의 방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세외수입의 수준이 이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다면, 그 괴리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섯째, 특정 공공서비스를 보조한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정당화해야 한다. 즉, 필요한 보조금 총액의 규모를 제시하고 이러한 예산의 배분이 세외수입에 의한 경제적 편익의 왜곡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여섯째, 세외수입의 집행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세외수입의 집행기구를 조직화하는 방법과 이 기구의 운영재원을 조달하는 방법 등을 설계하여야 하며 이는 일반 재정운영제도에 부합하여야 한다. 일곱째, 설계한 세외수입에 대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홍보계획의 대상자에는 직접 영향을 받는 해당 공공서비스의 이용자뿐 아니라 일반대중도 포함되어야 한다.

4. 주요세외수입 과목 및 부과현황

경기도의 세외수입 세목 중 최근 3년간 부과건수가 있는 세목은 195개 세목으로 크게 구분된다. 경기도내 시·군에서 부과·징수되는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56개 항목, 경기도 및 시·군에 부과·징수 위임된 일반회계 102개 항목, 경기도와 시·군에 부과·징수 위임된 기타특별회계 37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2016년도 경기도의 부과건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2,469,264건에 886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401,831건에 315억원이다. 부과금액으로는 단일항목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이 342건에 1,708억원이며 다음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210건에 1,606억원이다. 이중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경우 제도적인 문제로 세외수입 체납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주요세외수입 과목 및 부과현황 (경기도내 시·군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회계연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세입과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주정차위반과태료	2,469,264	88,654	2,176,282	87,604	2,168,199	85,127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401,831	31,536	380,217	33,153	404,745	38,871
기타과징금	327,609	34,645	102,506	79,184	20,575	55,561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170,928	16,618	48,551	6,377	60,963	6,983
기타과태료	102,805	15,313	222,339	28,976	226,580	33,568
기타부담금	77,504	697,063	67,615	905,276	55,309	316,209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70,101	6,303		-		-
교통유발부담금	68,595	41,820	59,530	34,195	63,943	35,256
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	28,321	920	27,615	961	30,035	1,056
이행강제금	14,130	60,565		-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13,210	2,280	8,205	1,842	6,423	2,068

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법률위반과태료	7,981	192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위반과징금	6,330	995		-		-
개발부담금	5,753	75,070	3,112	78,292	3,084	96,677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위반과태료	4,683	349		-		-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4,636	649	3,967	806	4,082	56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4,210	1,976	4,854	2,727	5,489	4,045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과태료	3,999	16,125	3,082	7,985	1,995	3,062
식품위생법과태료	3,455	838		-		-
금연구역흡연위반 과태료	2,996	267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 관리및사업법과태료	1,421	1,965		-		-
공인중개사의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 한법률위반과태료	1,216	2,357	693	1,322	1,114	4,230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1,207	1,246		-		-
소음진동관리법 과태료	949	671		-		-
민방위기본법과태료	945	77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위반과태료	577	301	263	400	52	49
자동차관리법과징금	477	179		-		-
외국인토지법위반 과태료	473	96		-		-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458	261	421	243	317	257
건축법위반과태료	410	101	592	616	552	702
주택법위반과태료	284	410		-		-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과징금	279	166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위반과태료	268	603	2	26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위반과징금	236	20,263	248	73,823	262	40,275
농수산물유통및가격 안정법과징금	211	100		-		-
건설폐기물의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위반 과태료	210	270		-		-
석유및석유대체연료 사용법위반과태료	207	173	2,003	1,227	101	173
공중위생관리법 과태료	181	43		-		-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과징금	176	145		-		-
축산물위생관리법위 반과징금	125	667		-		-
약사법위반과징금	111	432	117	535	124	73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과징금	106	273	86	217	122	281
원인자부담금	98	32,002	63	21,103	72	75,928
영유아보육법위반 과징금	71	397		-		-
석유및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과징금	45	1,384		-		-
택시발전법위반 과태료	41	10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과태료	37	24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과징금	30	1,167		-		-
물류정책기본법위반 과태료	27	14		-		-
전기공사사업법과징금	27	49		-		-
수산자원조성금	18	10	51	11	82	6
마약류에관한법률 위반과징금	14	16		-		-
기반시설부담금	10	4,567	2	737	118	31,375
특정경유자동차검사 위반과태료	2	1	4	3	10	3
지방자치단체공공시 설수익자부담금		-		-	2	16
상수도원인자부담금		-		-	263	15,204

<광역자치단체 주요세외수입 과목 및 부과현황 (경기도 일반회계) >

(단위 : 건, 백만원)

회계연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세입과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4,768	47,598	4,258	47,503	4,657	47,740
기타이자수입	4,323	1,947	827	1,147	90	1,359
인증기용증지	2,781	4,919	2,903	4,886	2,961	4,196
그외수입	2,409	44,273	3,479	60,233	3,991	206,903
도로법에의한과적위반과태료	1,421	748	1,193	622	859	459
자치단체간부담금	922	259,108	823	258,671	308	192,862
사업장수입	779	1,276	663	1,509	1,021	1,585
기타사용료	476	802	437	938	354	840
소송회수비용수입	471	379	222	728	331	670
대기환경보전법	307	364	175	220	179	214
기타수수료	302	498	350	484	312	434
체육시설사용료	249	1,105	251	932	237	885
자연휴식지입장료(갯향기)	182	48		-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 률위반과태료	181	100	81	59	138	104
정보통신공사사업등록위반 과태료	165	59	196	72	185	70
수목원입장료	155	349	176	376	172	479
수목원주차료	155	232	176	214	171	261
위약금	139	128	143	32	179	298
기타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반 환금수입	120	845		-	78	518
공공예금이자	119	36,975	58	31,193	70	13,984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태료	106	96	87	36	126	74
정보이용수수료	104	2	103	2	104	2

휴양림입장료	103	88	156	106	185	122
휴양림사용료	103	369	156	335	185	502
건설기술관리법위반과태료	76	47	24	15	2	8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 관한법률위반과태료	73	38	103	64	149	96
기타공유재산대부료	71	66	57	67	59	47
여성회관교육사용료	63	125	53	60	83	131
변상금	59	1	40	1	66	116
심의수수료	54	216	54	286	52	193
여성회관사용료	52	4	52	3	58	3
민원발급수수료	52	0	50	1	51	1
여권발급수수료	48	1,641	46	1,308	48	1,092
공유재산임대료	45	7,295	45	6,312	32	6,13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과태료	44	49	38	51	52	68
수산자원조성금	35	3		-	1	0
강씨봉입장료	34	11	17	9	-	-
강씨봉시설사용료	34	263	21	288	16	358
세입세출현금운용에대한이자	34	1,172	10	451	7	175
강씨봉위약금	34	2	21	2	16	4
불용품매각대금	33	202	39	229	52	123
대체조림비징수교부금	28	1,340	21	1,260	24	965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과태료	28	23		-		-
물류정책기본법위반과태료	27	14	33	14	27	10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 한법률위반과태료	23	2	19	3	41	7
도유재산변상금	18	16	34	9	27	12

토양환경보전법	16	8	12	6	6	4
건축사법	15	3	13	2	2	0
사료관리법과징금	15	8	1	1	11	7
농지전용징수부담금	13	5,558	12	2,198	12	4,17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과징금	13	160	22	137	16	234
수질환경보전법	12	8	17	12	50	34
기타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1	153	10	190	12	228
건설업법과징금	11	2,554	8	244	10	219
일반부담금	8	95,948	4	71,928	1	12,00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태료	7	7	9	14	1	1
시도유재산대부료	6	22	6	22	6	22
응급의료법위반과태료	6	11	13	19	2	3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6	3	4	5	4	3
고용보험료	6	1	2	1	1	0
수질개선부담금	5	1,499	6	2,815	6	2,140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5	10,825	6	13,237	6	14,676
기타징수교부금	4	4,090	6	3,351	6	3,158
배출부과금	4	230	6	271	6	418
기타일반부담금	4	9,292	4	10,003	13	26,960
관급자재환불금	4	222	5	36		-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3	1	1	0	1	1
지체상금	3	5	4	7		-
공유재산매각수입	2	39	9	1,086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	5		-	19	276

응급의료법과징금	2	4	4	6	3	9
환경관련법위반과태료	2	1		-	5	2
배당금수입	1	160	2	256	2	73
일상경비이자	1	0	2	1	4	3
시도유재산매각	1	20		-	34	9,273
교통안전법	1	1	4	3	1	1
먹는물관리법과태료	1	0	3	1	2	1
전기사업법	1	1		-		-
먹는물관리법과징금	1	20		-	1	5
건축법이행강제금	1	6	12	33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징금	1	75	2	23	6	90
광업법위반과태료	1	1		-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1	0	2	1	1	0
공유재산사용료		-		-	1	3
기타증지수입		-	58	5		-
증지판매		-		-	1	0
수입대체경비		-		-	559	2,250
묘목생산수입		-	1	31		-
농지보전부담금징수교부금		-	1	2,404		-
국공유재산변상금		-	1	3		-
도시가스사업법과태료		-		-	2	6
방문판매등에관한법		-	1	3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	5	5
폐기물관리법		-	4	6	5	11

할부거래법		-	1	3		-
이행강제금		-		-	3	4
기타과태료수입		-	1	3	3	4
수산업법과징금		-	1	3	1	3
전주이설비환불금		-	1	3	2	27
지연배상금		-	3	0		0
도로사용료(위임분)		6,590		6,174		5,615
하천사용료(위임분)		6,895		9,756		7,030

<광역자치단체 주요세외수입 과목 및 부과현황 (경기도 기타특별회계) >

(단위 : 건, 백만원)

회계연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세입과목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인증기용증지	2,636	175	2,281	168	1,850	176
소방관련법	1,713	793	1,331	742	1,364	86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 관리에관한법과태료	509	267	545	358	426	264
그외수입	449	3,429	360	716	525	292
학교용지부담금	342	170,896	369	187,885	367	102,221
기타이자수입	333	3	73	8	49	2
불용품매각대금	223	1,239	116	295	101	26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10	160,593	218	178,189	157	101,033
공공예금이자	207	5,480	133	71	103	17
기타사용료	206	6	202	6	223	8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 에관한특별법위반과태료	115	32	88	46	34	27
일반부담금	111	1,051	123	80		-
소방시설공사법과태료	110	32	49	12	57	18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88	2,714	56	118	63	133
위험물안전관리법과태료	79	47	78	48	57	32
세입세출현금운용에대한 이자	76	3	52	2	43	1
소방기본법과태료	48	37	62	51	44	32
공유재산매각수입	45	29,082	56	29,784	25	5,117
위약금	43	429	43	835	62	181
자치단체간부담금	38	78,912		-		-
공유재산임대료	37	111	11	18	2	1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위반과태료	15	20	15	18	10	16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과 태료	7	3	7	3	1	0
의료급여법위반과징금	5	207		-		-
소방시설공사법과징금	5	12	1	6	2	13
승강기제조및관리법과징금	2	3	1	3		-
기타수수료	1	16	51	50	40	265
기부금	1	9	2	17	1	22
소송회수비용수입	1	12	8	13	10	21
고용보험료	1	0		-		-
지체상금	1	1		-	1	2

증지판매		-		-	3	0
지연이체변상금		-		-	1	2
위험물안전관리법과징금		-		-	1	2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법률위반이행강제금		-		-	1	10
감사지적분		-		-	6	2
공매입찰보증금		-		-	1	0

Ⅱ . 부과 · 징수 절차

1. 세외수입
2. 개별법
3. 조례

01. 부과·징수 절차

1.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납입고지

가. 근거규정 : 지방회계법 및 재무회계규칙

새로 제정된 「지방회계법」은 구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세입과 지출에 관한 부분만을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회계법」 제20조는 세입의 징수에 있어서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21조에서 징수기관을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지만, 위임에 의해서 소속 공무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징수기관은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할 때 징수원인과 징수금액을 조사 및 결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고지 해야 한다.

구체적인 납입고지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그러한 납입고지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재무회계규칙을 따르는 경향이 높다. 결론적으로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일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개별지방세외수입관계법이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령 및 조례가 없다면 재무회계규칙을 따를 것이고, 거기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 징수결정 및 납입고지

세외수입의 납부의무는 세외수입에 관한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성립한다. 납부요건이 성립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① 세입산출을 위한 법령 적용의 기준과 납부지 관할 결정의 기준, ② 납부의무자 판단 및 연대납부의무자의 성립과 그 범위결정의 기준, 납부의무의 승계범위 결정기준, ③ 부과시기의 결정기준과 제척기간 기산의 판단기준, ④ 징수유예 판단에 관한 시기의 기초 그리고 세외수입의 납부의무확정은 납부해야 할 금액이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부의무가 즉시 확정되는 경우와 부과권자의 징수결정 등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와 같이 공공기관의 각종 특정의 인적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신청과 동시에 증지를 첨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후자는 법

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으로서 재산임대수입,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처럼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납기가 정하여진 수입과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않지만 징수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시로 징수결정하여 징수하는 수입이 있다.

징수결정은 납부의무자를 확정시키고, 확정된 납부의무자에게 금전을 징수하기로 결정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행위이다. 이렇게 의사결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입의무자에게 통지(예를 들어 고지서가 납입의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비로소 납입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금은 여하한 경우라도 징수결정 없이 징수 및 수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징수결정시에는 징수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부에 등재한 후 해당 납부서 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며 징수결의서 작성 시에는 징수결정 사유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납과 동시에 징수 결정해야 할 사항은 수납과 동시에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 징수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속공무원에 세입징수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회계법 제21조). 이 때, 위임받은 소속공무원을 징수관(분임징수관)이라 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에서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 등의 회계관직을 지정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부과·징수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게 된다.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은 징수결정(또는 부과)시기에 따라 사전 징수결정, 사후 징수결정, 징수결정 행위가 없는 경우 등으로 구분 된다. 사전 징수결정은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나 도로의 사용허가 등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해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후 징수결정은 이와는 반대로 징수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시로 징수결정되는 것인데, 납부의무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나 회계 상의 처리에 의한 것으로 수납과 동시에 징수결정 된다. 이러한 징수결정 방식에는 입장료 수입, 통행료 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이 해당된다. 징수결정이 필요 없는 경우는 수입증지로 수입되는 것은 즉시 소인하고 따로 징수결정이나 수납절차를 취하지 않는다(「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4조). 수입증지수입은 수입증지판매대금으로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징수결정 방법은 세목별로 그리고 정기·수시·자납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의 세목을 병기하는 경우에 세목별로 각각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동일한 세목 안에 다른 세입 귀속주체가 존재하는 경우, 예를 들어 동일한 세목에

도세입과 시·군세입이 같이 있는 경우 도세입과 시·군세입을 각각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정기분, 수시분, 자납분 역시 개별적으로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같은 달에 정기분과 수시분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도 징수결정은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각각 하여야 한다. 세외수입 중 자납분은 신고납부하는 세외수입에 해당되는데, 세외수입 고지서는 신고·자납분으로 발급되며, 징수결정은 매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수납된 금액으로 월 단위로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징수관(분임징수관)이 징수결정을 한 세입금은 고지를 함으로써 납부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납입고지는 도달주의 원칙에 의해 납부자의 주소지에 납입 고지서가 송달된 후 비로소 납입의무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경우는 고지서가 납입의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납부고지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납입고지는 납입자의 주소, 성명, 납입할 금액, 납입기간 및 장소, 회계연도,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 과목과 징수관 이름을 명기하여 발행하여야 한다(「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9조5).

지방세외수입은 개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부과근거를 두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납입고지 및 송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에서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개별 법령 및 조례에서 지방세외수입의 납입고지 및 송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지방세기본법 상 납입고지 및 송달에 관한 규정의 준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납입고지서의 송달방법으로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

-
- 5) 제19조(납입의 고지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납입 고지를 하려면 납부의무자에게 세입과목, 납입할 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전자문서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그 밖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징수관은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수입금을 납입 고지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도달하도록 보내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 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입금을 전자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전자납부가 가능하게 된 날의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정전이 발생한 경우
 2. 정보통신망 및 프로그램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적으로 유치송달과 공시송달을 인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송달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 또한,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하고자 하는 서류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행해야 한다.

납입고지서의 사용은 징수결정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데, 재산수입,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등 사전 징수결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입은 납입고지서에 의한다. 사후 징수결정되는 기부금, 보조금, 이자수입, 전입금, 기타 사전징수결정이 곤란한 수입과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입서 이외의 수입 등은 납부서에 의한다. 그리고 수입금출납원이 영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은 납입서에 의한다.

3) 세외수입의 수납 및 관리

지방세 및 기타의 세입금 수납은 수입금출납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수납을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지방회계법」 제22조). 그리고 수입금출납원이 직접 수납할 때에는 즉시 당해 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지방회계법」 제22조). 또한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 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지방회계법시행령」 제21조).

세외수입 징수액 관리는 징수관이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임된 징수관은 징수결정시 뿐만 아니라 세입 징수시마다 (세입)징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징수관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하는 징수실적에 대하여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세무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지방회계법시행령」 제30조).

징수관은 세입금을 은행 납입통보서와 일계전 대사, 확인을 통해 통보서 및 수납부를 소인해야 하며, 착오·중복 등의 사유로 초과 수납한 세입금에 대하여 납부자로부터 과오납신청 또는 직권으로 부과취소(감액결정)를 하여 과다 납부한 세입금을 환급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징수관은 납기 후에는 세입과목별로 체납부를 작성해야 하고, 연도폐쇄 후에는 이월체납부를 작성해야 한다.

2. 임의징수 : 지방세징수의 예

납부의무자가 납입고지서에 따라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 임의징수는 완결된다. 그리고 납기 후라도 납부의무자가 스스로 납부한 경우에도 임의징수는 완결된다. 따라서 임의징수를 위해서 부과권자가 지켜야 할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납부의무자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체납처분에 들어가기 전단계로서 가산금부과 및 고지, 독촉장 발송 및 압류예고 발송의 경우는 부과권자가 납부의무자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임의징수절차라고 볼 수 있다.

<지방세외수입 관련 행정상 제재 비교 (간접강제 제도)>

구분	지방세외수입법	질서법	공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개별법
행정상 제재	·신용정보 제공 ·대금지급정지 ·징수촉탁('16.11월) ·관허사업제한('17.11월) ·명단공개('18.10월)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 ·자동차등록판 영치, 납부증명서 제출 (자동차과태료 한정)	×	×	×
가산금 (연체료)	×	○	○	○	개별법 규정따름

1) 가산금

가산금은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국세징수법」 제21조⁶⁾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⁷⁾ 및 제31조⁸⁾의 규정을

- 6) 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세조세조정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 7)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8) 제31조(증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만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이다.

가산금은 세외수입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부과된 세외수입을 법정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거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까지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에 자동적으로 성립된다. 또한 특별한 확정절차를 요하지 않고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별도의 고지 처분이 필요치 않으며 독촉장에 의하여 체납된 세외수입과 함께 그 납부를 독촉하게 된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시 징수절차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의 예와 같이 개별법령에서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며, 명문으로 가산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개별법령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징수(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준용한다)”는 규정은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체납처분)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는 의미이므로 납부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 국세(지방세)의 가산금, 제2차납세의무자 규정까지 준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수익적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없어도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는 판례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금전적 부담의 경감에 대한 부분은 조례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것이 형평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체납된 세외수입을 납기경과 후에 계속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월이 경과한 때부터 체납된 세외수입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가산하되 이러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체납된 과태료의 경우에도 동일한 증가산금 적용 요율과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

그러나 개별 법령에서 증가산금(연체료) 규정을 두는 경우 증가산금(연체료) 징수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납부할 때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세외수입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기경과 후에 3%만 가산하고 매1개월마다 가산하는 증가산금은 가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태료의 경우 체납금액에 관계없이 가산금(본세의 3%) 및 증가산금(매월 1.2%, 60개월까지)이 부과된다.

없다.

② 제1항은 제30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③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경상적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

구 분	항 목	유 형	세 율	근거법령
재산임대 수입	국유재산임대료	연체료	·1개월 미만 : 연 12% ·1~3개월 미만 : 연 13% ·3~6개월 미만 : 연 14% ·6개월 이상 : 연 15%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
	공유재산 임대료	연체료	·1개월 미만 : 연 12% ·1~3개월 미만 : 연 13% ·3~6개월 미만 : 연 14% ·6개월 이상 : 연 1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사용료	도로사용료	×		
	하천사용료	연체료	·1개월 미만 : 점용료의 3% ·증가산금 : 매달 1.2%	국세징수법 제21조
	하수도사용료	연체료	·미납료의 3 일할 계산	하수도 사용조례
	상수도사용료	연체료	·미납료의 3 일할 계산	개별 조례 규정
	시장사용료	연체료	·1개월 미만 : 체납액 3% ·증가산금 : 매달 2%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도축장사용료	×		
	임장료수입	×		
	기타사용료	×		
수수료	증지수입	×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		
	기타수수료	×		
사업수입	사업장생산수입	×		
	주차요금수입	가산금	·주차요금의 4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통행료수입	×		
	청산금수입	가산금	·청산금의 5% 범위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6항
	분담금수입	×		
	매각사업수입	×		
	배당금수입	×		
	의료사업수입	×		
	기타사업수입	-		
징수교부금 수입	시·도세 징수에 따른 부금수입	×		
이자수입	예금이자	×		
	민간융자금회수	×		
	통화금융기관 융자금회수	×		
	공사공단 융자금회수	×		
	기타이자	×		

자료 : 주운현(2015), p14-15

<임시적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

구 분	항 목	유 형	세 율	근거법령
재산매각 수입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		
	시·도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	×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		
부담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		
	일반부담금	×		
	개발부담금	가산금	·부담금의 3% ·증가산금 : 매달 1.2%	국세징수법 제21조 준용
과징금 및 과태료	과징금	연체료	·1개월 미만 : 점용료의 3% ·증가산금 : 매달 1.2%	국세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법
	이행강제금	연체료	1개월 미만 : 점용료의 3% ·증가산금 : 매달 1.2%	국세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법
	변상금	연체료	·1개월 미만 : 연 12% ·1~3개월 미만 : 연 13% ·3~6개월 미만 : 연 14% ·6개월 이상 : 연 1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위약금	×		
	과태료	가산금	·부담금의 3% ·증가산금 : 매달 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기타수입	불용품매각대	×		
	체납처분수입	×		
	시·도비 반환금수입	×		
	기부금	×		
	그 외 수입	×		

자료 : 주운현(2015), p16-17 개정사항 일부수정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외수입법을 적용받는 80여종의 지방세외수입 중 체납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은 13개에 불과하다. 조세와 사회보험료 관련 징수규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과태료를 규율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도 체납 시 통일적으로 지연납부에 대한 제재(가산금 또는 연체금)를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개별법에 가산금 규정이 없는 지방세외수입금의 경우에는 체납시 지연이자에 대한 기간비용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지연납부에 대한 제재 부재로 악성 체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근거법에 가산금 규정이 없는 것은 체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특별한 정책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최소한 지연이자에 대한 기간비용을 회수하는 성격으로 보면 입법적 공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법령이 다양한 과태료를 규율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도 통일적으로 가산금을 규정하는 점에서 지방세외수입법도 통일적 형태의 가산금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세외수입법」 모두 세외수입을 대상으로 부과·징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면서 개별법 체계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두 법률 모두 모든 유형의 세외수입을 포괄하지 않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은 하나의 법률로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세외수입법은 다소 다른 조문체계로 입법화되었으나, 해당 법률은 제정하게 된 문제의식이나 향후 발전방향은 공통적이기 때문이다. 세외수입의 유형과 근거 법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예외규정이나 별도규정으로 조정하면 될 것이다. (주운현 2015, p44)

2) 독촉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 때 「지방세징수법」 제32조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촉과 최고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전 징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독촉은 독촉장에 정한 납기 내에 그 체납된 세외수입금을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할 수 있다. 그 이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데,

9) 제32조(독촉과 최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2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지방세외수입의 소멸시효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제82조¹⁰⁾에 따라 5년이 적용된다.

징수관은 체납된 모든 지방세외수입을 개별 법령의 규정 절차에 따라 독촉 고지 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을 확보해야 하고, 세입의 부실관리로 인한 불납 또는 시효결손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3. 강제징수 : 지방세징수의 예

납부의무자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권자가 어떠한 체납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개별 법령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징수(체납절차)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은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체납절차)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는 의미이므로 납부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 국세(지방세)의 가산금, 제2차 납세의무자 규정까지 준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결국 이러한 준용규정은 제한적 해석이 적용되므로 지방세외수입의 체납 처분 절차에 세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방세외수입 관련 강제징수 절차 비교>

구분	지방세외수입법	질서법	공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개별법
독촉 절차	독촉장발급 기한 : 50일 이내 독촉기한 : 발급 일부 10일	×	×	독촉장발급 기한 : 15일 이내 독촉기한 : 발급 일부 15일	개별법 규정 따름
강제 징수	일부직접 규정 나머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준용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 준용	지방세 체납 처분 준용	담보권행사 또는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 방세 체납처분, 지방세외수입법 준용

자료 : 마정화, 2016. p14

10)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4.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간접강제제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제도로 체납자관련 자료 제공 제도(동법 제6조)와 대금지급정지 제도(동법 제7조)가 마련되어 있다. 동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자관련 자료 제공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용정보업자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결손처분자)의 체납액(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체납자(결손처분자)의 신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체납액의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①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의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②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③ 결손처분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등이다.

또한, 동법 제7조에서 체납자에게 대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0만 원 이상의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02. 개별법에 규정된 부과 및 징수 절차

1.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가. 근거규정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136조 내지 제140조는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에 대한 부과·징수, 이의신청, 행정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부과 및 징수 절차 규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나. 부과 및 징수

「지방자치법」 제136조 내지 제137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140조제1항은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부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용료 등에 대한 부과 및 징수권행사를 위한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사실 이 규정들은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에 대한 ‘징수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각 사안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개별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법률의 규정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부과나 징수절차를 규정한 예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나마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이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용료 등에 대한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같이 금전납부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의해서 법률에서 위임된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는 다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의해서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의한 위임이 있다고 보여 진다. 예를 들면 「도로법」 상의 점용료가 있다.

도로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으며, 이 위임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마다 점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개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40조제2항은 사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의 제정범위를 지방세징수의 예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용료 등에 관한 개별 법률에서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및 동법 제140조 제2항에 따라서 제정된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수수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가 징수금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일부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 제140조제2항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동법 제139조 제1항을 비교하면 ‘징수’에 관한 조례입법권의 범위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을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한 자는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사용료 등에 대한부정 면제자에 대한 제재로서 최상한의 과태료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1)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징수결정은 납부의무자를 확정시키고, 확정된 납부의무자에게 금전을 징수하기로 결정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행위이다. 이렇게 의사결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입의무자에게 통지(예를 들어 고지서가 납입의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비로소 납입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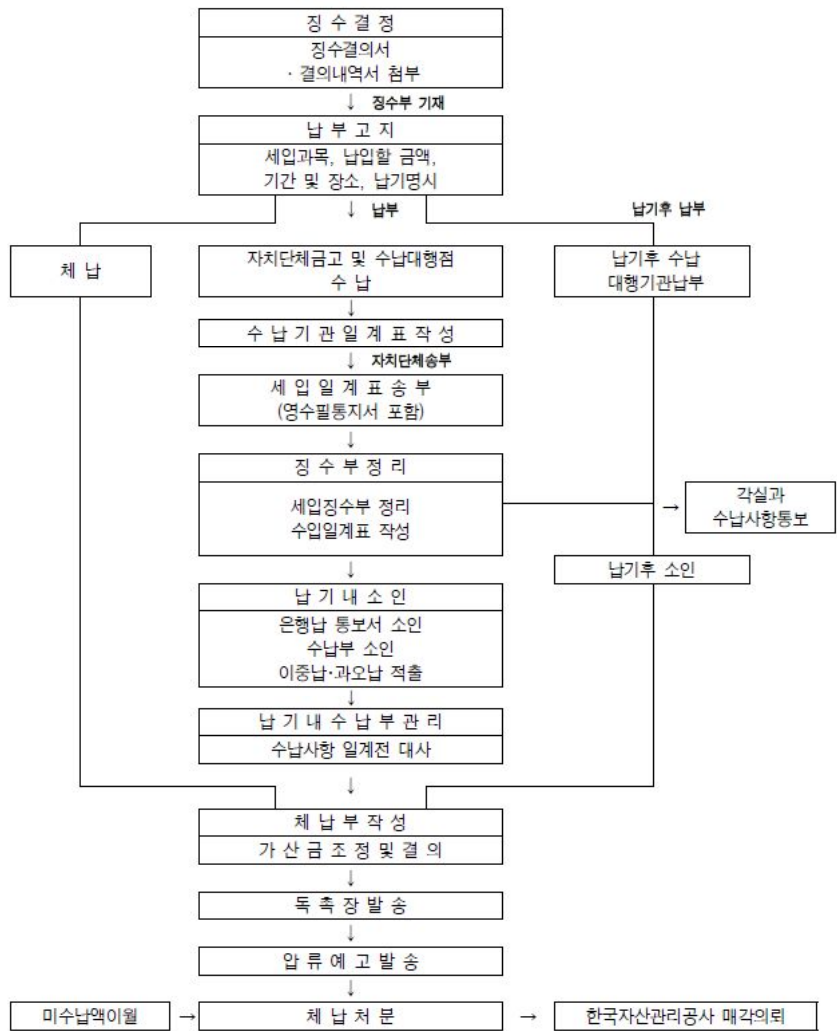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금은 여하한 경우라도 징수결정 없이 징수 및 수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징수결정시에는 징수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부에 등재한 후 해당 납부서 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며 징수결의서 작성시에는 징수결정 사유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납과 동시에 징수 결정해야 할 사항은 수납과 동시에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 징수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속공무원에 세입징수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회계법 제21조). 이 때, 위임받은 소속공무원을 징수관(분임징수관)이라 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에서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 등의 회계관직을 지정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부과·징수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게 된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는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고지를 통해 부과업무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납입의무자에게 부과된 세외수입을 납입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수납한 후 징수부 및 수납부 정리, 소인 등을 거쳐 수납관리 업무가 종결된다. 만약 세외수입 납입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부 작성, 독촉장 발송, 압류 예고 및 체납처분 등 체납처분절차를 진행

하게 된다.

<세외수입업무처리 흐름도>



2) 불복방법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

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 및 통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¹¹⁾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과태료

가. 근거규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에 이 법이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 이 법률에도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위임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¹²⁾는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

11)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12)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과할 경우에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태료처분 전에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행정청에서 말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증거 자료 포함)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에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다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자의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태료 사전통지서 기재사항 >

-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과태료 부과 의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다. 과태료의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종료되면 행정청은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¹³⁾에 따르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과태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서면기재사항은 「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3) 제19조(과태료 부과 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¹⁴⁾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에서 상세하게 기술된다.

< 과태료 부과고지서 기재사항 >

-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라. 과태료의 납부

당사자가 과태료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정청은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마. 임의징수 및 강제징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부과하여 임의징수절차단계에 들어가게 된

14) 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마.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6.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일반가산금과 증가산금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그리고 후자는 동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위와 같은 임의징수절차를 통해서도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한다. 강제징수를 하더라도 당사자가 과태료를 낼 재산 등이 없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4항은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고 하고 있지만, 「국세징수법」 제86조는 이미 2011년 12월 31일에 삭제되었다.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4항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과태료에 대한 결손처분에 관해서는 새로이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동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우선 적용되고, 그 외에 사항은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이 준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바. 불복방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불복방법으로는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다. 동법 제20조가 ‘이의제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하거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상기와 같이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이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사. 기타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 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채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3.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우선 과징금에 대한 부과·징수의 근거규정은 개별법이 되며, 예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등이 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도 개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예로서 「건축법」 제80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이 있다.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 절차)에 대해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그러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체납처분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2항에 따라서 체납정보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을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부분은 기관위임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사항이 아니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조례제정권은 없다고 본다. 나아가서 이러한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부담금관리기본법」

1) 부담금의 부과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는 부담금의 부과요건과 근거규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부담금에 관한 개별법을 제정할 때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으로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동 규정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 부담금의 부과요건을 정할 때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제1항에서는 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공정성과 투명성에 기한 부과와 이중부과 금지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납부의무자에게 부과하기 전에 부과권자는 사전 통지의무를 지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담금 부과서 사전통지 기재사항 >

- 부담금 납부의무자
- 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 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방법
- 부담금의 용도
- 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의견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

부담금의 부과, 감면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개별 부담금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2) 부담금의 임의징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3에 의하면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부담금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 등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부담금 부과목적의 정책적 중요도, 납부의무 위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불복방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4에 따라서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개별 부담금관련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03. 조례에 의한 세외수입금의 부과 징수 절차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조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동법 제11조의7¹⁵⁾에 따라 경기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운영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등에 관해서는 3%의 가산금 규정, 사업계획 등의 변

15) 제11조의7(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받는 대도시권에 해당되는 시·도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사업비
3.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귀속되는 부담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경으로 부담금이 변경되는 경우에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하게 되면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의 재발급하는 날부터 30일로 한다는 규정, 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 공제서류의 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조례¹⁶⁾로 정하고 있다. 그 외에 과오납금 환급과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면서, 체납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16)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부담금의 부과) ① 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60일 이내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과기간내의 부과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의 부과는 납부대상·부담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 등을 정한 납부고지서에 의하되, 납부고지 및 납부에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영 별표3에 따른 준공·사용검사 등의 결정·지정 등을 하기 전에 부담금의 완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허용은 납부할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기간의 도래 전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당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 50 이상

2. 당초 부과일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 30 이상

3. 당초 부과일로부터 2년 초과 준공(사용)검사 이전 : 잔여부담금

③ 제7조에 따라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시장·군수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금의 전액을 납부기한 내에 도급고로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납부의무자가 1회의 분할납부금을 체납하는 경우 독촉장을 발급하고, 가산금을 부과한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납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부담금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공제액 자료의 제출) ① 영 제16조의2에 따라 공제액을 인정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시에 공제액에 대한 타당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대상 사업의 확정 또는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변경납부고지서 등) ① 사업면적·공제액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금액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면적·공제 등의 변경에 따라 과오납된 납부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별 납부시기>

부과대상 사업별	관계법령	비고	납부 시기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사업자 시행 자 공공기관 (LH, 군인공 제회)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승인을 받는 날까지의 범위 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함. - 1년 이내 50% 2년 이내 30% 사업승인 시 완납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 경기도사무위임조례		
대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주택법」 제16조,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1만㎡ 이상 의 대지조성 사업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6조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주택재개발 사업 주택재건축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28조		
주상복합건축물	건축법 제11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대통령령 하 위 조문 없음	

2.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동 조례 제2조¹⁷⁾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부담금을

17)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5조제4항의 부담금 면제와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 산정기준, 강제징수는 법 제5조·제5조의2 및 제5조의3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다.

부과할 때 납부고지서를 고지할 것과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날부터 30일로 한다는 규정밖에 없다. 그 외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이나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3. 제증명 등 수수료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는 각종 증명 등 수수료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개별법의 위임 없이 직접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례 제2조¹⁸⁾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한 한계를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징수방법은 이 조례 제3조¹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시

③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납부고지서에 납부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및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하고,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은 납부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기한까지 경기도의 금고에 납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경기도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에 있는 시·군은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2. 경기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 외에 있는 시·군은 수납한 날부터 5일 이내

⑤ 시장·군수가 부과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체납처분 후에 징수되는 체납처분비는 시·군의 수입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2조의2(부담금 산정자료 제출 고지) 시장·군수는 개발사업 승인 시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자료 제출 등에 대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조의3(징수교부금 교부) 부담금 징수의 비용은 시·군 부담으로 하고, 도지사는 그 처리비용으로 시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응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18) 제2조(적용범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19)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같은 종류의 증명등을 2통 이상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증명등을 발급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1통에 여러 건의 증명등을 동시에 발급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④ 수수료는 도의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⑤ 증명등의 사무를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해당 시·군의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하고 있다.

<경기도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	근 거
가. 회계에 관한 증명			
1)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	1통	35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2) 물품납품실적증명	1통	35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나. 삭제 <2017.5.4.>			

< 인가·허가 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	근 거
가. 일반행정관련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가) 신규신청	1건	5,00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
나) 갱신 또는 기간연장신청	1건	3,000	”
2) 그 밖의 각종 안허가 신고·필증 등의 재교부신청	1통	350	
나. 농축수산물관련			
1) 축산물검사수수료			
가) 소·말의 도축검사	1마리	2,00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나) 돼지양의 도축검사	1마리	700	"
다) 타조사슴의 도축검사	1마리	2,000	"
라) 닭의 도축검사	1마리	7	"
마) 오리 of 도축검사	1마리	10	"
바) 메추리의 도축검사	1마리	3	"
2)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가) 근해어업허가 신청	1건	6,400	「수산업법」 제94조
나) 시험어업 신청	1건	2,000	"
다) 어업허가유에 신청	1건	1,600	"
라)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600	"
마)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1건	1,600	"
바) 어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	"
다. 산업자원 관련			
1) 승강기 제조업·수입업 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1건	50,00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
2) 승강기 제조업·수입업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	"
3) 승강기 제조업·수입업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1건	4,000	"
4) 전기공사업등록 신청	1건	40,000	「전기공사업법」 제35조
5)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 (협회위탁사무)	1건	30,000	"
6) 전기공사업의 양도 양수 또는 합병 신고 (협회위탁사무)	1건	30,000	"
7) 전기공사업의 상속신고(협회위탁사무)	1건	5,000	"
8) 전기공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 (양도 양수, 합병, 상속 포함)	1건	5,000	"
9)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신청			
가) 종합	1건	50,000	「전력기술관리법」 제26조
나) 전문1종	1건	30,000	"
다) 전문2종	1건	20,000	"
10)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
가) 종합	1건	45,000	"
나) 전문1종	1건	25,000	"
다) 전문2종	1건	15,000	"
11)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등록신청			"
가) 종합	1건	50,000	"
나) 전문	1건	30,000	"

12)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
가) 종합	1건	45,000		”
나) 전문	1건	25,000		”
13)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업 등록 변경 신고	1건	5,000		”
14)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		”
15) 석유판매업(일반·용제대리점) 등록 신청	1건	30,00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	
16)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 신청	1건	20,000		”
라. 자격시험관련				
1) 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 자격증 재발급	1건	800		「의료법」 제85조
2)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1건	800		「공인중개사법」 제47조
마. 체육시설관련				
1)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가) 사업계획 승인신청	1건	100,00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1건	30,000		”
다) 등록신청	1건	50,000		”
라)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		”
2) 그 밖의 등록 체육시설업				
가) 사업계획 승인신청	1건	50,000		”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1건	20,000		”
다) 등록신청	1건	30,000		”
라)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		”

4.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 제91조²⁰⁾의 위임에 따라 「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 제5조²¹⁾는 부담금의 징수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징수권자로 시장을 지

20)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목하고 있으며, 분납사유와 납기일을 고지일로부터 30일로 정하고 있다. 그 외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담금 징수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담금 환급 및 추징에 관한 사유를 이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부담금 징수사항 중에서 강제징수에 해당하는 체납처분에 관해서는 현재 「지방세의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조례를 그에 맞게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5. 유료도로 통행료

「유료도로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요금의 징수·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경기도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16조²²⁾, 제17조²³⁾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정해지고, 다만 통행료의 결정과 수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서 통행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6.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 21) 제5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22) 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 면에서 통상적으로 얻는 이익의 범위에서 유료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물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공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유료도로인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
 ③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計上)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 그 수납기간, 통행료 총액 및 건설유지비 총액 산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3) 제17조(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 비도로관리청(유료도로관리청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매입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통행료 외에 그 유료도로에 관한 수익, 통행료 수납기간 및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통행료를 정한다.
 ② 비도로관리청은 통행료를 수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통행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결핵예방법」 제18조제3항²⁴⁾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결핵환자에게 투약하는 항결핵제의 보급수수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 제2조에 따라 환자가 등록되어 있는당해 구청장·군수가 수수료를 징수하고,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재소자, 외국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환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징수방법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항결핵제 보급시마다 경기도 수입증지에 의한다. 이 조례에서는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률이나 조례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7.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된다.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위임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다. 이 조례 제6조²⁵⁾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
- 24) 제18조(결핵환자등의 의료)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결핵환자등에 대한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의사만 해당한다)과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의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5)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공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⑥ 제4조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원인자가 희망할 경우 4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
 2. 제4조제1항제3호 : 분할납부 없이 납부기한까지 전액납부
 ⑦ 제6항제1호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시장은 원인자와 납부방법 및 전액납부시기 등에 대하여 수도공사 착공 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인자는 협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⑧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납부의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수원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이 조례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및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수도공사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하지만,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4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 제14조는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8. 하천점용료, 하천 및 하천수사용료, 변상금

경기도는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변상금, 채취료,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라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였다.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해서는 이 조례 제5조²⁶⁾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 제5조²⁷⁾에서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을 규정하고, 제7조²⁸⁾에서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

26)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 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②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허가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에, 이후 연도 분은 연도 시작 3개월 안에 부과·징수한다.

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27)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 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②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허가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에, 이후 연도 분은 연도 시작 3개월 안에 부과·징수한다.

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28) 제7조(변상금)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1회계 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다. 또한, 제8조²⁹⁾에서는 하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정하고 있다.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 등의 전액을 징수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점용 또는 사용료는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당해 연도 이후의 점용 또는 사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다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 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할 수 있다.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무단 점용 또는 사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점용료 등과 변상금의 징수 방법 및 절차 등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
- 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한다.
- 29) 제8조(징수의 위임) ① 도지사는 하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하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임 받은 시장·군수가 점용료 등의 징수업무를 다른 시장·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업무를 동시에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구 분	산 정 기 준
1.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 한다)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으로 한다.
2.토지(하천부지)의점용	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미 식재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0.8로 한다.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별기령까지 조림수의 분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하천구역내의 토석, 모래·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8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로 한다. 마.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한다.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한다.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3. 하천시설물의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으로 한다.
4. 하천수의 사용	가. 발전용수 : 1일 10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나. 농업용수 : 1일 1천 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라. 그 밖의 용수 : 다호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
5. 선박의 운항	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 월액 20,000원 2) 을지 : 월액 10,000원 3)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한다. 나. 5톤 이하 유선 <table><tr><th>지역등급</th><th>동력선</th><th>무동력선</th></tr><tr><td>1) 갑지</td><td>월 100,000원</td><td>월 50,000원</td></tr><tr><td>2) 을지</td><td>월 60,000원</td><td>월 30,000원</td></tr><tr><td>3) 병지</td><td>월 20,000원</td><td>월 10,000원</td></tr><tr><td colspan="3">※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td></tr></table>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자가용 유선 : 나목의 배액으로 한다. ※ 자가용 유선이라 함은 하천 내에서 운항하는 비영리 목적의 개인소유 모든 선박을 말한다. 다만, 농·어선은 제외한다. 마. 고무보트외에「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 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 나목의 무동력의 반액 바. 부선(유선시설을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table><tr><td>1) 50톤 미만</td><td>월액 40,000원</td></tr><tr><td>2) 50톤 이상 ~ 100톤 미만</td><td>월액 50,000원</td></tr><tr><td>3) 100톤 이상 ~ 200톤 미만</td><td>월액 70,000원</td></tr><tr><td>4) 200톤 이상 ~ 300톤 미만</td><td>월액 90,000원</td></tr><tr><td>5) 300톤 이상 ~ 400톤 미만</td><td>월액 110,000원</td></tr><tr><td colspan="2">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 마다 16,000원씩 가산</td></tr></table> ※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한다.	지역등급	동력선	무동력선	1) 갑지	월 100,000원	월 50,000원	2) 을지	월 60,000원	월 30,000원	3) 병지	월 20,000원	월 10,000원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1) 50톤 미만	월액 40,000원	2) 50톤 이상 ~ 100톤 미만	월액 50,000원	3) 100톤 이상 ~ 200톤 미만	월액 70,000원	4) 200톤 이상 ~ 300톤 미만	월액 90,000원	5) 300톤 이상 ~ 400톤 미만	월액 110,000원	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 마다 16,000원씩 가산	
지역등급	동력선	무동력선																										
1) 갑지	월 100,000원	월 50,000원																										
2) 을지	월 60,000원	월 30,000원																										
3) 병지	월 20,000원	월 10,000원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1) 50톤 미만	월액 40,000원																											
2) 50톤 이상 ~ 100톤 미만	월액 50,000원																											
3) 100톤 이상 ~ 200톤 미만	월액 70,000원																											
4) 200톤 이상 ~ 300톤 미만	월액 90,000원																											
5) 300톤 이상 ~ 400톤 미만	월액 110,000원																											
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 마다 16,000원씩 가산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예선, 도선용 선박 등 다른 선박의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과 관공선을 포함한다)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하천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6. 지하의 우수채취	○ 4호의 기준의 예에 따른다.																											

7. 배수(주수)	삭제 <2017.3.13.>
8. 토석, 모래·자갈의 채취	가. 하천의 경우 도지사가 전연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자갈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9.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8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2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결정한다.
10. 스케이트장·유·도선장 (유·도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풀장·대기장 및 탈의장(매장포함)	○ 토지가격의 100분의 5
11.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 1호부터 10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비고)

1.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도 조례로 부과비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다.
2.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

III. 체납처분 절차

01.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

현행 지방세외수입법에서는 독촉, 압류요건, 압류해제요건, 질문검사권, 체납처분 중지, 체납처분유예 등 체납처분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며, 개별적인 재산의 압류절차 및 공매절차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압류금지 재산, 체납처분의 효력,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개별조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외수입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개별 법령을 보면 지방세외수입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는 등 다양한 입법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예를 따르는 경우를 보면, 안전관리부담금, 물이용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있다. 이와는 달리 지방세외수입법에 따르는 경우를 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게임산업위반 과징금, 건설폐기물처리업 위반 과징금 등이 있다. 그리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거나 지방세외수입법에 따르는 경우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시설물제거 이행강제금, 농지보전부담금, 위해건강식품위반 과징금 등이 있다. 이상의 설명을 보기 쉽도록 입법형태의 비교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세외수입 체납처분 근거의 입법형태 비교>

구 분	입법형태	적용사례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담금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 분 예에 따름	안전관리부담금, 물이용부담금, 국민건강증 진부담금
	지방세외수입법에 따름	건설기술용역업위반과징금, 건설폐기물처리 업위반과징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세 체납처분 예 또는 지 방세외수입법에 따름	농지보전부담금, 위해건강식품위반과징금, 개발제한구역내시설물제거 이행강제금
기타 세외수입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 분 예에 따름	공동주택관리비, 공유수면점용료, 수입이익 금
	지방세외수입법에 따름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세 체납처분 예 또는 지 방세외수입법에 따름	오염총량초과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산자원조성금

자료 : 허원(2015), p32-33

세외수입의 체납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지방세외수입법에 독립적으로 두면서 체납처분을 강화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체납된 세외수입금을 행정청에서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효율적으로 징수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최종적으로 압류된 재산의 공매로 확보된 매각금액을 배분함에 있어서 세외수입채권의 우선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지방세외수입법에서 체납처분절차에 관하여 완벽하게 규정을 하고 행정청에서 행정적으로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더라도, 세외수입이 다른 채권(예를 들어 민사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세외수입에 관한 징수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2015년 5월 29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³⁰⁾에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에 “조세 외의 금전

30) 가. “지방세외수입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고,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외수입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제1호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그 지방세외수입금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외의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을 3천

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지방세외수입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세외수입금 사이의 배분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조세와 세외수입 간의 우선 징수권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기본법 제99조에서 조세의 우선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1974년 말 국세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1949년 12월부터 1974년말까지 국세징수법 제2조에서 “국세와 또는 그 체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하는 조세채권의 우선원칙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와는 달리 일정부분 특정한 반대급부로서 부담하는 세외수입은 조세채권보다는 후순위로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마디로 세외수입에 대한 조세채권의 우선원칙은 조세채권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세외수입과 민사채권 사이의 우선관계에 관하여는 최소한 압류등기일, 저당권·전세권 등의 설정등기일과 비교해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 지방세외수입에 대하여는 명백한 우선권 기준이 없는 셈이다. 이와는 달리 민사채권인 저당권은 민법 제356조에서, 그리고 전세권은 민법 제303조에서 우선권 기준을 두고 있다. 이는 민간 차원의 권리보호라는 요구에 응하는 입법의 결과이다. 유치권에 관하여는 우선권 기준이 없지만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경매자산을 경락받은 자가 유치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만 그 자산을 인수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세외수입과 민사채권 간의 우선권 문제가 조정되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세외수입이 우선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만, 세외수입 체납처분 절차의 강화가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세외수입의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의 법적 근거를 현재처럼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세외수입법 등 2개의 법체계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단일법체계로 할 것인지가 검토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2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처분절차에 관한 내용들이 서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2개의 법체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라.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징수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징수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을 받은 징수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을 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4 신설).

마. 이 법에 따라 징수하는 지방세외수입금 외에도 사용료, 수수료 등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 조세 외의 금전에 대해서도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업무의 처리나 필요한 행정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바.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정비함(안 제23조).

계로 운용할 경우 징수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국민들의 처지에서도 불편을 겪을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단일법으로 운용할 경우 입법자는 1개의 법률만 검토·개정을 하면 되므로, 입법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과 징수관청도 세외수입의 징수 및 납부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법령을 일일이 들춰볼 필요가 없이 한 개의 법률만 보면 되므로, 징세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겸하여 세외수입항목별로 징수절차에 관한 내용이 다름에서 빚어지는 부담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개별법령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예에 따른다”는 포괄준용규정의 의미에 대하여 해당 세외수입의 체납자에 대한 자력집행권만을 부여한 것으로 대법원이 보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한 직접적인 체납처분 이외의 자료조사 등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예에 따른다는 포괄적 준용방식이 아니라 지방세외수입법에서 국세징수법상의 개별적인 재산압류 및 공매 절차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독자적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법조경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조경합(法條競合)이란 한 개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 여러 개의 법조문들이 경합되어 적용되는 경우에 여러 개의 경합되는 법조문들 중에서 하나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조경합에는 특별관계, 흡수관계, 보충관계, 택일관계의 네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각각 어떤 법조문이 다른 법조문에 흡수되거나 배제, 보충적으로 적용되거나 하나만 적용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0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가. 연혁 및 현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2007년 12월 21일자 법률 제8725호로 제정·공포된 법률이다. 그 시행일은 위 공포일의 6개월 후인 2008년 6월 22일이었다. 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당초 제정취지를 보면 “질서행위위반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개별법령에서 통일되지 못하고 있던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일원화하며, 행정청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도록 하는

등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과태료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에 있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조문은 58개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체계를 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제5장 보칙 등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주로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부과절차, 재판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과태료의 체납을 한 경우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법률규정의 내용이 지나칠 정도로 단순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 9월 21일자로 과태료의 징수유예, 독촉, 압류, 매각 및 청산 등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를 직접 규정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의 국회통과 여부는 현재 불투명하다.

나. 주요내용

1) 총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목적은 법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있다. 이 경우의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것은 물론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것도 포함된다.

과태료는 조세와는 다르며, 세외수입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여러 세외수입 중에서 특히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고 본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한마디로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이다. 이들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라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러한 행위시의 법률이 곧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인 것이다. 이 법률이 적용되는 인적 범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르면,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14세 미만인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다.

기업의 임직원이나 종업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가운데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해당 법인 또는 그 개인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과태료 중에서 가장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일반적인 처벌원칙에 발달은 것이다. 과태료의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³¹⁾를 준용한다.

3)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의견제출은 서면주의에 따른다. 행정청은 위의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 과태료의 부과는 역시 서면주의의 원칙을 근거로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다.

위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

31)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20% 감경할 수 있다.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행정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의제기 역시 서면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어 위반자가 행정청에서 말(구두)로 하는 이의제기는 무효이다. 위반행위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징수한다. 관계행정청은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또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 그러나 이 국세징수법의 준용에 관한 조항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11.12.31.자로 삭제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6조를 준용한다는 식으로 고쳐져야 한다.

4) 간접강제징수 관련 규정(보칙)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즉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 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일 것과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중대한 재난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일 것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 23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

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행정청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나 법인 대표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일 것과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 해당할 것 등이다.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등록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의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를 완납해야만 그 이전이 가능하다.

03. 지방세외수입징수법

가. 연혁 및 현황

- 32) 제7조의2(체납자료의 제공)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公益)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3. 삭제
-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년 7월까지의 세외수입의 징수에 관하여 과태료의 징수와 관련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이외에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 6월에 법률 제11998호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표현하여 ‘지방세외수입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지방세외수입법의 제정취지를 보면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주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에 입법취지가 있었다.

지방세외수입법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제1장 총칙, 제2장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으로 구성된 법체계이다. 그 전체의 조문 수는 24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모든 세외수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과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이외의 세외수입은 지방세외수입법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부과하는 유형과 점용료, 사용료 등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유형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지방세외수입법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부과·징수 및 불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법제처 검토의견에 따라 그 적용대상이 대폭 축소되었다. 다만 과태료만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주요내용

1) 과세자료의 이용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29조³³⁾ 또는 제130조³⁴⁾에 따라 과세자

33) 제129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발생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한 과세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목록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빠진 것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4)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료제출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협조 요청을 받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역시 당연한 이치이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금의 관리 및 통계 등을 위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이를 다른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2) 간접강제징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체납자·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위 정보제공 대상자는 ①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②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③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등이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과 관련하여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의 완납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3) 독촉 및 재산압류 절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해당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는 국세징수법상의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의 기한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다.

세외수입에 관하여 해당 법령에서 그 독촉 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독촉을 하며, 이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야 한다. 이는 징수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는 서면주의의 원칙을 채택한 결과이다.

세외수입 과목별 압류의 요령 (법제처 07-0144, 2007.6.15.)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중의 하나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행정재산 등 사용료를 비롯하여 여러 과목을 미납하고 있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위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같은 법 제22조제4항의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어 체납된 다른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도 별도의 압류가 없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 회 답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된 세외수입인 행정재산 등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면 그 압류를 한 그 과목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고, 별도의 압류 없이 다른 세외수입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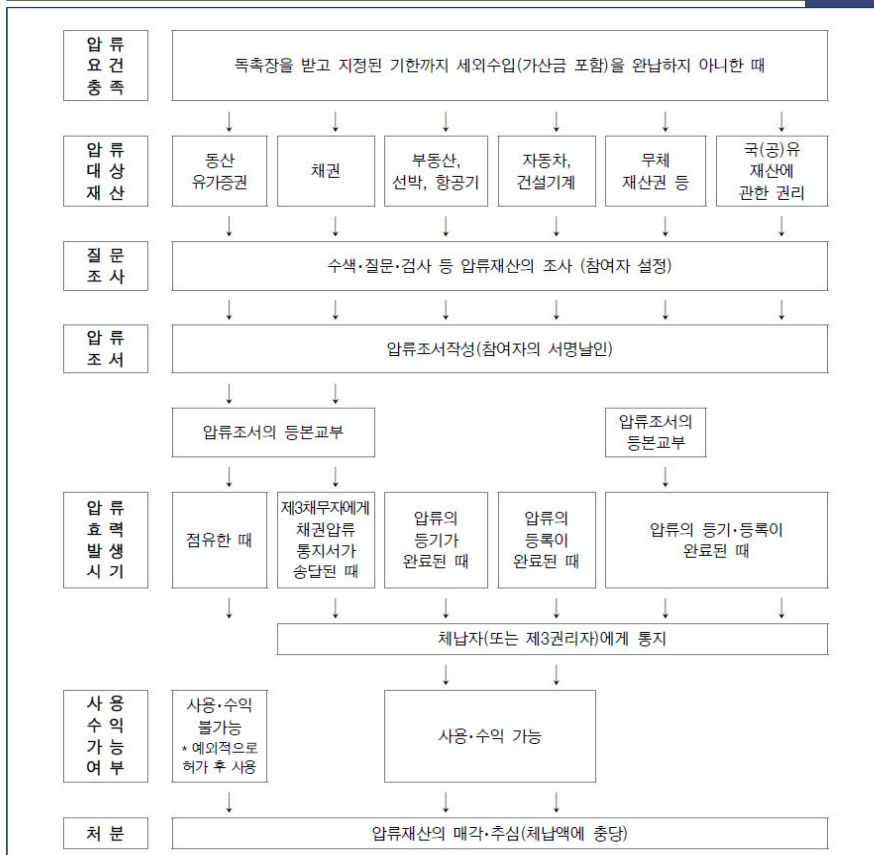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하여 질문·검사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는 조세징수의 경우와 같은 취지이다. 다음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파악하려 할 때에는 체납자,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체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공무원이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만약 이러한 참여자가 없을 때 또는 해당 체납자가 그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민간인인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1인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징수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산·유가증권·채권이나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압류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참여자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그 참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이는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 위함이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그리고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압류의 흐름도



4) 압류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외수입금을 납부하는 등 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압류의 즉시해제를 위한 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납부,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2)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3) 제3자가 채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 (4)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액이 일부 납부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압류해제를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 즉 ①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②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 ③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④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그리고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5) 체납처분의 중지 및 체납처분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지방세외수입금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면 체납자,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는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³⁵⁾할 수 있다.

35) 제14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납부할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연도·과목·납부기한과 금액
 3. 제2호의 금액 중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금액
 4.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5.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 및 횟수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를 할 수 있다.

제15조(체납처분 유예)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액을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 유예를 한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연도·과목·납부기한과 금액
2.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체납처분 유예를 하였을 때에는 분할납부 금액 및 횟수
3.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

6)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 준용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즉 압류금지 재산(제3장제2절), 체납처분의 효력(제3장제3절),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제3장제4절부터 제7절까지), 교부청구·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제3장제9절),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제3장 제10절 및 제11절)를 준용한다. 이상과 같은 준용규정이 논리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방세외수입금의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6조를 준용한다. 여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지 않고 지방세기본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국세징수법의 결손처분규정이 이미 삭제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7) 결손처분

적극적 결손처분으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무재산 또는 환가가치 없는 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의 압류해제 및 결손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체납액 대비 압류재산 가액이 소액일 경우 부분결손 활용하고 소멸시효가 도과한 체납액은 시효결손처분을 이행하고 있다.

세외수입 독촉시 마다 시효 중단여부 (법제처 07-0221, 2007.11.09.)

• 질의요지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매년 독촉시마다 시효가 중단되는지?

• 회 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등과 연체료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루어지는 독촉은 시효중단 사유이기는 하지만,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로서의 효력만 가집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4. 그 밖에 체납처분 유예에 필요한 사항

② 체납처분 유예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발생한다.

1.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유예 신청일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서의 발급일

「지방세기본법」 제9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의 경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1.12.31. 제86조의 결손처분조항 삭제로 법무부에서는 「질서법」 제24조제3항³⁶⁾에 근거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도록 안내 중에 있다. 그 외 세외수입 개별 부과근거 법률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결손처분이 징수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한 결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개별법령에 결손처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지 않는 이상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 적용여부(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37(2006.1.6.))

• 질의요지

이행강제금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을 징수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도 정용되는지?

• 회 답

이행강제금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6) 제24조제3항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IV.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1. 표준시스템
2. 새올시스템
3. 개별시스템
4. 수기관리
5. 시스템 통합

01. 세외수입 업무시스템

1. 세외수입업무시스템 개관

현재 구축되어 있는 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은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서울행정정보시스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 개발한 개별 업무시스템이 혼재되어 있다.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 본청 및 25개 자치구를 제외한 217개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서울행정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4개 항목의 지방세외수입을 제외한 모든 지방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다음으로 서울행정정보시스템에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관리, 환경개선부담금관리, 교통유발부담금관리 등 4개의 지방세외수입 관련업무가 관리되고 있다. 이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관리업무는 서울행정정보시스템에서 부과·수납·체납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발한 자체개발 시스템에서는 개별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53개 자치단체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련 업무는 개별적으로 구축한 업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본청과 관할 자치구에서는 이들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자체개발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세외수입시스템 운영 현황>

시스템명	사용 자치단체	비 고
서울행정정보시스템	4개의 세외수입업무 (전국 시군구)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관리, 환경개선부담금관리, 교통유발부담금관리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서울특별시 본청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217개 기관	서울행정정보시스템의 4개의 세외수입업무 제외
세외수입 종합 징수시스템 (서울시 자체구축)	서울시 본청 및 서울 25개 자치구 등 26개 기관	특별회계까지 포함
기타 개별 업무시스템	202개 시스템 (시스템별 기관종목)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124개 개별 업무시스템, 생활안정자금, 예금이자 등 기타 세외수입 업무 78개 개별 업무시스템

자료 : 배인명(2015) <그림 II-2> 인용

2.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가.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운용 현황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지방세외수입업무를 표준화하여 부과·징수·체납에 대한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정보를 관리하는 웹기반의 표준시스템으로 운용된다. 때문에 서울행정정보시스템과 같이 C/S기반으로 운용되는 시스템보다 범용적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지방세외수입업무에 대한 표준시스템으로 타시스템, 타기관과 표준화된 방안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연계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성도>



자료 : 배인명(2015) <그림 II -1> 인용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지방세외수입 고유업무에 대한 운영시스템으로 편리한 자료관리 및 자료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부 지방세외수입 항목에 대하여 체납 및 수납 등 일부 기능 중 업무 단 자료까지는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으로 자료를 연계하여 체납 및 수납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는 지방세외수입의 일반회계 16개와 특별회계의 6개 메뉴가 있다. 그 이외 세입관리, 부가관리, 배포관리, 시스템관리 메뉴도 가지고 있다. 또한 대장관리 메뉴도 있으며 세외수입통계정보에서 자치단체별 세입현황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곳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 본청과 관할 25개 자치구를 제외한 217개 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외수입 관리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는 담당자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대장에 부과 자료를 생성하고 등록하면 부과관리가 시작된다. 만일 과다한 부과라면 수납 이전에는 감액관리가 이루어지고, 이미 수납되었다면 과오납 관리를 하게 된다. 다음 단계로 부과자료에 기초하여 결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를 납입의무자에게 고지하게 된다.

부과된 지방세외수입이 법령에서 분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다시 분납관리가 이루어지고 결의 관리 후에 고지가 이루어진다. 납입의무자가 시중은행에 고지된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면 자치단체 금고에 납부액이 전달되며, 금고에서는 일계표가 제공되어 수납관리가 이루어진다.

만약 납입의무자가 미납하게 되는 경우 체납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결손처리를 하거나, 납입의무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관리나 차량번호판 영치관리(과태료) 등이 이루어진다. 납입의무자에게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징수유예 후 공시송달이 이루어지고 체납관리가 이루어진다. 이것으로 일련의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업무흐름이 완료된다.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주요업무는 세입관리, 대장관리, 시스템관리, 부가관리, 통계정보시스템, 공사공단징수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부과징수 부서에서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세외수입을 부과하여 수납하고, 체납자에 대해 독촉 후 체납징수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특정 조건의 체납자를 이관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체납금을 회수하고 있다. 체납징수전담부서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과·징수 부서에서 체납관리까지 수행하게 된다.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징수결정내역의 징수부 관리, 지방세외 수입 부과에 따른 고지서 출력 및 고지·수납내역 관리, 세외수입 부과 후 오부과나 감액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감액사유에 의한 감액관리, 과오납의 반환 또는 충당처리, 납부이행 기간을 초과하여 미납이 있는 경우 체납자조회, 가산금계산 등의 체납관리, 독촉장의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압류관리,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결손관리,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시 변호판영치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장관리에서는 세외수입 부과대상 세입항목에 대해 자료입력, 관련 시스템 데이터 연계 점검, 엑셀 서식/자료 다운로드, 엑셀 업로드 등 기준정보 및 기본정보를 관리하여 부과정보를 생성하고, 부과·징수실적을 조회 및 출력한다.

시스템관리에서는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코드관리, 공지사항 관리, 자치단체 환경정보관리, 배포파일 관리, 배포이력 관리, 자원운영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부가관리에서는 사용자가 관리하는 개인화설정 기능, 결재라인/결재직인/결재대행 등을 관리하는 전자결재 기능, 상시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기타 항목별/세목별 징수현황 및 추이분석 등의 통계조회,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부과된 내역을 공사공단징수시스템으로 동기화하는 기능 등을 운영한다.

나. 타 시스템과의 연계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연계시스템 구성을 보면 새울행정정보시스템 및 세외수입통계정보시스템과는 양방향 연계가 가능하다. 그리고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는 표준지방세시스템, e호조,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에서 자료를 가져와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새울행정정보시스템과는 대장 관리, 세외수입 부과자료, 세외수입 과태료대장자료가 실시간으로 연계된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는 지방세외수입 부과·체납 자료와 공시지가자료가 연계되며,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자동차관리시스템과는 자동차 기본정보, 이륜차 기본정보, 건설기계, 자동차 압류연계 및 대체압류차량 조회 기능 등이 연계가 가능하다. 또한 e호조와는 주민주소자료가 연계되고 있으며, 청백e 시스템과도 연계가 되고 있다.

특히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C/S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새울행정정보시스템과 달리 웹서비스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단말기별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장비에서도 일관된 내용의 웹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것이 서울행정정보시스템보다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효율적인 시스템인 이유 중 하나이다.

02. 서울행정정보시스템

현재 서울행정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세외수입 업무는 주·정차위반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등 4개 항목이며, 이들 세외수입 항목과 관련된 업무는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서울행정정보시스템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가. 주·정차위반과태료의 운용 현황

주·정차위반 적발관련 정보는 서울행정정보시스템에서만 관리되고, 이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주·정차 위반 적발정보, 단속사진, 위반자명부, 차적정보 등이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에 단속이미지를 포함해야하므로 서울행정정보시스템의 중요한 업무는 단속현장 증거사진의 관리이다. 그러므로 서울행정정보시스템의 도로교통CS에서는 단속사진 이미지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업무흐름도를 살펴보면, 주·정차 위반 적발정보가 발생하면 위반한 민원인에게 사전통지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담당자가 부과관리를 시행하게 된다. 여기서도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업무흐름과 유사하게 부과관리, 고지처리, 수납관리, 체납관리, 압류관리 그리고 통계관리 업무가 이루어진다. 서울행정정보시스템 도로교통CS는 차적정보, 적발정보, 단속사진 등 적발정보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기본정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장점이나, 부과 이후 수납 및 체납 등에 대한 기능이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체납자들의 재산조회 기능이 부재하고, 변경되는 법률의 적용체계(번호판영치, 행정제재 등)가 미흡하며,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압류대상 재산의 종류가 제한적으로 관리되며, 차적연계시 잦은 오류 발생과 운영환경의 낙후 등 몇몇 주요한 기능이 미비 되어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서울행정정보시스템과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전주시에서는 새울 행정정보시스템도로교통CS에서 이미지정보를 저장관리하고 감경부과까지 진행한 후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자료를 연계하여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부과 연계’의 연계방식)인 반면, 강릉시에서는 새울행정정보시스템 도로교통CS에서 이미지정보를 저장 후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자료를 연계하고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 감경부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감경부과연계’의 연계방식).

나. 환경개선부담금의 운용 현황

주정차위반과태료와 마찬가지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정보는 새울행정정보시스템에서만 관리되고 있다. 새울행정정보시스템의 환경개선부담금CS는 자동차 부담금 대상자 보정업무, 자동차 부담금 부과 업무, 시설물부담금 기초자료 처리 업무, 자동차 부담금 광역권버스 자료 조회 업무, 부과대상 시설물 정보 업무 등의 부과정보 관리를 통하여 부과 및 고지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수납관리 업무, 변경반송 업무, 체납관리 업무 및 압류관리 업무를 처리한다. 새울행정정보시스템 환경개선부담금CS는 자동차부담금 대상자 보정, 자동차 부담금 부과, 광역권 버스 자료 등의 자세한 부과정보에 기초하고 있어 효율적인 세외수입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미비한 기능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납 독려사항관리 기능, 날짜별 세외수입 부과·수납·체납 내역 자료의 추출 기능,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자들에 대한 사전 부과제외 기능 등이 부재하고,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지원,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촉탁 등의 업무 연동, 세외수입의 체납확인시 환경개선부담금 등 모든 체납금 일괄 조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 압류 및 변경내역 조회, 고지서 납부내역을 시스템과 연계하여 압류해제 등 업무처리 효율화 지원 등의 업무 관련한 기능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배인명, 2015).

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운용 현황

새울행정정보시스템의 교통유발부담금에서는 건물에 대한 기본정보, 감면법령, 시설물이용정보, 시설물조사표 등 시설물 관련 기초정보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계산한다. 계산된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관리, 고지처리, 수납관리, 환불관리, 반송관리, 체납관리, 압류 처리 및 통계정보 조회 기능을 수행한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시스템에서는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촉탁(등기소) 등의 업무를 수기로 처리하고 있어 등기소에 도달하기까지 2~3일 정도 소요되고, 도달 후에도 접수완료 여부를 기다려서 확인해야 하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부과, 징수, 체납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아 수기로 관리해야 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메뉴가 너무 많아 메뉴를 간소화하고 자주 사용하는 메뉴바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설물이용정보 중에서 층별 이용정보에 입력된 면적이 소유자 상세정보의 부과면적, 비부과 면적에 자동 계산되지 않고 있는 등 서울행정정보시스템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다.

라. 상하수도요금의 운용 현황

서울행정정보시스템의 상하수도요금관리에서는 급수관리를 통한 요금관리와 원인자부담금관리를 포함하는 하수도관리, 고지처리, 수납관리 및 체납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상하수도요금 부과시 현 소유자 주소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마. 타 시스템과의 연계

서울행정정보시스템 중 4개의 지방세외수입 관련 업무 시스템은 1개의 내부 시스템, 6개의 외부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 서울행정정보시스템 내의 주민 주소자료, 관내 공시지가와 세대주 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행정자치부가 관리하고 있는 e호조, 간단e납부시스템, 위택스시스템, 청백e,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 자료조회를 통한 부과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03. 개별 업무시스템

개별 업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의 경우는 먼저 국가 표준을 사용하는

경우로 2005년에서 2008년에 구축된 시스템이다. 업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지역 개발기금 특별회계, 자활기금 특별회계, 댐주변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개발부담금, 상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업무, 가정급수공사수익, 기타수수료 수익, 기타영업외 수익,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업무, 원인자부담금 징수업무, 분뇨처리시설사용료수입, 유기성고형연료 수입, 진주시도시개발 특별회계,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관리업무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개별 업무시스템은 수기와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수급자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관리 특별회계, 도서발전 전기요금 관리 및 용자금 부과·징수,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특별회계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별 업무시스템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의 e-지로시스템에서 납부가 거의 가능하지 않고 유관기관 시스템과의 연계가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금융결제원의 e-지로시스템에서 납부가 가능한 것은 약 35%인 61개 시스템이며 나머지 112개 시스템은 불가능하며, 유관기관 시스템과의 연계처리에서는 175개 시스템 중에서 60%인 105개 시스템이 연계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배인명, 2015). 개별 업무시스템과 연계 내역은 다음의 표에서 정리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소요비용은 60억 원,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1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04. 수기관리 및 정보시스템 개선

2014년 현재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약 232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약 85%인 197건을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엑셀’ 프로그램과 대장 관리를 병행하거나 ‘아래한글’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기로 관리하는 경우, 산업단지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세입, 생활안정 기금 및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 기금 특별회계 관리업무, 공기업특별회계,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이며, 특히 특별회계 세입불가 사유로 인하여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고 수기로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05. 업무시스템 통합 필요성 및 방안

1. 통합시스템의 필요성

현재 세외수입 관련 업무시스템은 4개의 시스템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분산운용은 세외수입 업무 처리에 있어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생성된 데이터가 각각의 자치단체에 분산되어 관리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이다. 그동안 데이터를 분산 관리해 왔던 이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 지방자치단체 데이터의 독립성 보장, 데이터의 기밀유지, 보유 데이터의 독자적 활용 등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 장애 발견의 지연 및 사후 대응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 중앙통계 및 국가통계 등의 자료취합 지연, 시간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데이터 정합성 문제, 정보의 공개 및 데이터의 개방에 대한 대응 미흡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그동안 데이터베이스 분산관리의 이유를 제공하던 원인들이 IT기술의 발전이나 법·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따라서 분산되어 관리되던 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에 대한 타당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2014년 8월에 시행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도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2조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금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규정에 부합하도록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통합하는 업무시스템의 구축이 되어야 하겠지만, 중기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방세외수입 업무 시스템만이라도 우선 통합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2. 시스템 통합 방안

우선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서 생성하고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의 공유 및 통합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업무연관성이 높은 데이터의 경우 단일DB로 통합 관리하여 업무효율을 증대하여야 하며, 집계 및 시계열성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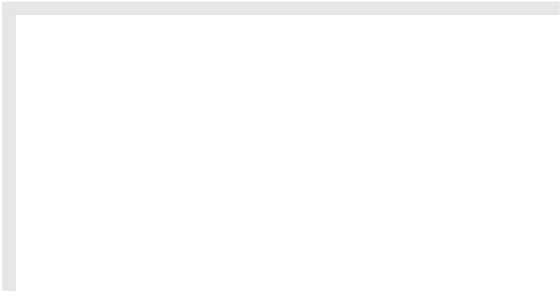
데이터마트 이행시 원시데이터의 소유를 제거하여 데이터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데이터 관리의 단순화, 집중화 및 수행속도를 보장하는 간결한 구조를 구축하여야 하며, 법·제도 등 업무환경 변화에 유연한 데이터 관리 구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통합될 지방세외수입 업무 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민원 발생시 두 개의 시스템을 통한 자료 조회 및 비교에 따른 업무담당자의 지연대응 등 비효율이 개선되어야 하고, 둘째, 기초행정업무와 세정업무의 처리영역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표준연계 체계를 적용한 업무시스템의 개선을 이루어야 하며, 셋째, 지방세외수입 통계 및 현황이 자동적으로 산출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법·제도 변경에 따른 시스템기능의 신설 및 개선사항에 대한 영향도 분석 및 적시 반영체계가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의 개선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대안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새로운 차세대 통합세외수입 업무시스템 구축방안이다. 현재 사용 중인 서울행정정보시스템,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그리고 기타 개별 업무시스템을 통합하여 새로운 업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차세대 통합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은 세외수입 업무를 표준화 하여 전국적인 단일 시스템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체계를 일원화시켜 세외수입 자료 관리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신기술의 도입, 사용자 업무환경을 최적화하는 시스템 개발로 미래지향적인 시스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차세대 통합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의 구축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여 이를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준비 단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으로의 통합하는 방안이다. 다시 말해, 새

올행정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주·정차위반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등의 업무와 202개 개별 업무시스템의 업무를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이관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서울행정정보시스템과 개별 업무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모든 업무를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 통계의 취합, 수집, 그리고 생성에 대한 성능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으로 시스템이 통합될 경우 장비의 증설 또는 추가도입이 필요 할 수 있으며 일부 프로세스의 개선 및 관련 기능의 개선 등이 요구될 수 있다. 이 방안으로 통합할 경우 서울행정정보시스템부터 통합을 추진하는 등 순차적·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방안으로는 현행 개별 세외수입 업무시스템에서는 부과업무 이전까지의 업무를 처리하고, 해당 데이터를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부과업무 이후부터, 즉 고지업무, 수납업무, 징수업무, 체납처분업무 등을 처리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은 예산이나 현재의 업무환경을 고려할 때 부담이 적은 방법이지만 새로운 기술변화나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적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 개별 세외수입 업무시스템 간 연계시 발생하는 비용 대비 편익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적인 표준화 시스템 및 자료 산출이 쉽지 않다는 점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세외수입 체납



I . 독촉장 송달

1. 독촉장 송달

1. 독촉장송달

가. 개념

적법하게 부과한 세외수입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한을 지정하여 다시 한번 납부기한을 정하여 주고 그 기한내에 납부할 것을 촉구하고 재촉하는 행위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전제조건이 되는 필수적 절차

* 지방세외수입금징수에관한법률(§8), 지방세징수법(§32), 국세징수법(§23)

나. 독촉장 발송 대상

과징금·이행강제금· 부담금	지방세외수입금징수에 관한법률적용
사용료·수수료· 또는 부담금	지방세징수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제23조 적용 개별법령에 지방세 또는 국세징수의 예를 준용한다고 규정한 경우

다. 독촉장 발송시기

- (지방세준용)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50일 이내 발급 10일 이내 납부기한 발송
- (국세준용)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20일 이내 납부기한 발송
- (그외 적용규정) 개별법령에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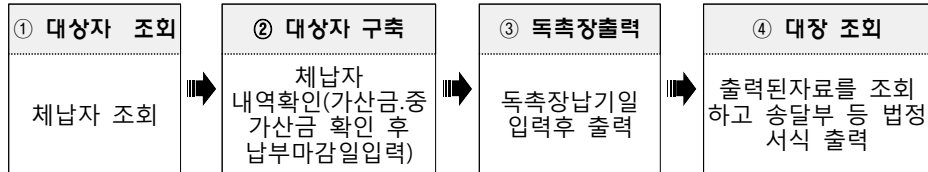
2. 독촉장 처리절차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 체납 조회*, 관련 서식출력한다.

* 부과세목 및 납부기한에 따른 독촉장 추출 발송기능으로 법령상 납기가 상

이한경우는 별도 출력필요

< 기능 구현사항 >



3. 독촉장의 효력 등

가. 독촉장 발부 방법

- 지방세외수입금의 납부기한이 경과된(체납)한 납부의무자
- (체납일) 부과된 지방세외수입금이 최초로 납기가 경과된 일자
- (체납액) 지방세외수입금 + 연체료 + 가산금
 - ※ 연체료(일단위) : 국공유재산의 사용료/임대료, 변상금, 매각수입 등 국유재산법 및 공
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발송횟수) 독촉장은 1회로 한정
 - ※ 단, 2건이상 부과지 때의 독촉장 발부는 각각의 고지서 마다 독촉장 발부
(도로 및 하천점용료 동시 부과 등)
 - ※ 여러번 발부된 독촉장의 효력 : 수차례 독촉고지는 민법상 최고의 일종으로서 민법 제
174조에 의거 그 최고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 압류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
의 효력은 없다고 해석

나. 독촉의 효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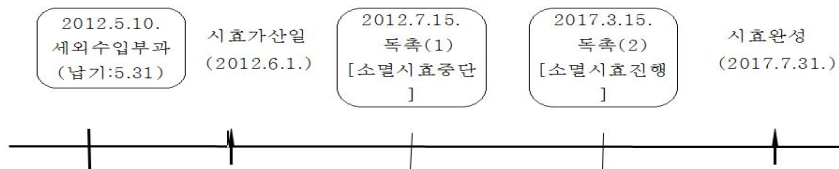
1)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지방세기본법제40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

1. 소멸시효의 중단 : 납부기한이 지난 후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5년간의 징수기간
의 진행 중단을 의미
2. 재독촉의 시효중단 : 최초1회 독촉만 해당(국세징수법 제23조제1항)
3. 소멸시효의 기산일
 - 신고납부 세외수입 :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 부과고지 세외수입 :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2)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구분	사유	소멸시효 기산일
중단	납부고지	고지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독촉 또는 최고	독촉(최고)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교부청구	교부청구 해제일의 다음날
	압류	압류해제일의 다음날
정지	법에 따른 분납기간	해당기간동안 시효가 정지되며
	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법에 따른 채납처분유예기간	정지사유가 종료한 후
	법에 따른 연부연납기간	소멸시효 잔여기간 계속진행

<시효의 예시>



* 2017.3.15. 독촉은 법정 독촉기한을 지났으므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으며, 독촉, 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경우 2017. 7. 31자로 시효가 완성된다.

다. 압류의 전제조건으로서의 효력

○ 압류의 효력 : 독촉은 압류를 할 수 있는 전제조건

※ 지방세징수법제33조, 국세징수법 제24조, 세외수입금징수에관한법률 제9조

라. 연체료 납부 고지와 독촉장 고지와의 관계

1. 연체료를 가산한 납부고지(독촉) :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공유재산법 제80조)
2. 연체료 적용때의 소멸시효기산일
 - 4회까지 독촉고지 가능(연체이자 포함)
 - 최초1회 독촉장발부의 납부기한으로 시효소멸중단의 효력

마. 독촉장의 송달

1) 도달주의원칙

독촉장은 명의인 또는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에게 도달시킴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1. 독촉장 송달 수령 (지방세기본법§28,§29)

- 납부고지서,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
- 연대납세의무자의 경우에 그 대표자, 징수하기 유리한 자,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
- 납세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
-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장소에 송달

2. 독촉장 송달 방법 (지방세기본법§30)

- 송달방법 : 교부, 우편, 전자송달
(납부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일반우편으로 송달가능)
※ 단,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제외
- 교부송달
 - . 송달할 장소에 직접 전달
 - .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이 없을 경우 그 사용인
 - .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가능
(수령거부시 서류 보관 가능 : 단, 입증책임 관리청)
- 전자송달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4조
 - .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
-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 .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
 - . 주민등록표로 확인이 되지 않을 때는 사업자등록증, 보험회사, 거래은행 등 주민등록정보망 등으로 관리청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강구

3. 송달부 작성(지방세기본법§30 ⑥)

- 통상우편 송달 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내용

2. 주요 해석 사례

순번	소관부처	질의요지
1	법제처	지방세징수법 기본통칙 61-2 법정발부기한이 지난 후 발부한 독촉의 효력
2	법무부	독촉장 발부없이 한 압류처분의 효력(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107 판결)
3	국민권익위원회	체납 과징금 독촉 이후 5년이 지난 경우 과징금 부과관청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보호법」 제49조 등 관련)

지방세징수법 기본통칙 61-2 법정발부기한이 지난 후 발부한 독촉의 효력

납부기한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에 발부한 독촉장(시효중단 효력은 없음)도 그 효력(압류 전 제조건으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독촉장에서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후로 지정하더라도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부한 것으로 본다.

독촉장 발부 없이 한 압류처분의 효력(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107 판결)

【판결요지】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발부도 한바 없이 과세처분과 동시에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그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발부도 한바 없이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과 동시에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그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1982.7.13. 선고 81누360 판결)는 그와 같은 압류요건이 흠결된 압류처분인 경우라도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한 내용일 뿐 위법한 처분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다. 판시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위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고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107 판결 [체납세액금및압류집행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제납 과징금 독촉 이후 5년이 지난 경우 과징금 부과관청이 결손처분

【질의요지】 [법제처 11-0051, 2011.4.28, 국민권익위원회]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관청이 체납한 과징금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과징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 그리고 과징금 부과관청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답】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관청이 체납한 과징금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과징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과징금 부과관청은 과징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음을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6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불납결손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Ⅱ . 반송(공시송달)

1. 반송(공시송달)

1. 공시송달 개요

- 개념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한 때 납세고지서의 요지를 공고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지방세 기본법§33, 시행령 §18)
- (공시송달 대상자) 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공시송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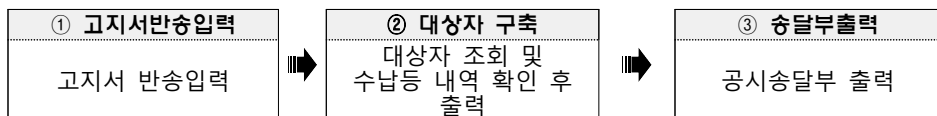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 관보·공고 또는 일간신문 게재
-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경과후 송달의 효력 발생

2. 반송(공시송달) 절차

가. 전산시스템 상 기능

-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 대상자 조회*, 관련 서식출력 등

< 기능 구현사항 >



나. 공시송달대상자 선정

-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납세자
-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하고 우편송달 시 반송된 납세자
- ③ 2회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령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서류를 송달을 받아야 할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 송달할 수 있는 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도 없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는 장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다. 공시송달 방법

- 지방세정보통신망,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 게시
-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 ※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병행 실시

라. 공시송달 절차

- 해당 자치단체 총무부서에 의뢰하여 공고번호(2018-00호)를 부여받아 이를 기준으로 공고문 작성
- ※ 고지서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마. 공시송달 효력발생

-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 2017년5월31일 공고한 경우 2017년 6월 1일부터 14일째 되는 날은 2017년 6월 14일이므로 2017년 6월 15일부터 효력 발생(오전 0시에 공고가 불가능하므로 초일불산입)

3. 반송(공시송달) 때 납부기한

공시송달 때 납부기한은 지방세기본법 제31조 준용을 준용한다.

-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였을 경우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1.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2.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 :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

2. 주요 해석 사례

기본통칙33-1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한 경우」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송달받아야 할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다시 조사(시·읍·면·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여도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판결)

III. 체납고지서

1. 독촉(최고)

- (개념) 세외수입을 정당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지정하여 다시한번 납부기한을 정하여 주고 그 기한내에 납부할 것을 촉구하고 재촉하는 행위이다.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사업의 신고(시행령 §5조 ②)

○ (독촉관련 근거 규정)

- 독촉의 시기, 횟수 등 독촉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사용료 등의 징수방법을 규정한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되,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2항 규정 또는 각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6조(지방세 법규 적용)에서 규정한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를 준용할 때는, 지방세 징수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제23조 규정을 적용하여 독촉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지방세외수입법 제2조제1호) 특정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독촉은 지방세외수입 제8조(독촉)를 적용하면 될 것이다.

2. 독촉(최고)장 발부 횟수

○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독촉장 발부 횟수)

- 독촉장은 1차례만 발부하며, 납세고지서의 수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체납고지서 발부 횟수 규정이 없다.)

○ (국세징수법에 의한 독촉장 발부 횟수)

- 국세징수법에는 독촉장 발부 횟수 규정이 없다.

3. 주요 세외수입 독촉 관련법령 및 독촉 방법

구분	관계법령	독촉방법
국세 . 지방세 징수예에 따른다	국세징수법(제23조) 국세징수법령(제26조)	발급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이내
		납부기한 : 발급일부터 20일이내
	지방세징수법(32조)	발급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후 50일이내
		납부기한 : 발급일부터 10일이내
국유재산 관련수입	국유재산법(제73조제2항)	국세징수법 준용
공유재산 관련수입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80조	지방세징수법 준용
도로사용료/변상금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제8조)	국세징수법 준용
하천사용료/변상금	하천점용료 징수조례(제8조)	국세징수법 준용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21조)	발급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이내
		납부기한 : 국세징수법 준용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제21조)	발급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후 50일이내
		납부기한 : 발급일부터 15일이내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20조)	발급기한 : 지방세기본법 준용
		납부기한 : 발급일부터 10일이내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 준용
농지부담금	농지법시행령(제49조제5항)	발급기한 : 납부기한이 경과 후 10일이내
		납부기한 : 발급일부터 10일이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개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제4항)	발급기한 : 납부기한이 경과 후 10일이내
		납부기한 : 발급일부터 15일이내
과밀부담금	수도권정비계획법(제25조)	발급기한 : 납부기한이 경과 후 10일이내
		납부기한 : 발급일부터 20일이내

IV. 체납안내문

1. 개 요

- (개 념) 체납 건별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보다 체납자별로 모든 체납내역을 표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효율적임
- 대상자선정기준 : 시군별로 자체 판단
 - 최근 1년 동안 수납내역이 없는 경우
 - 고액 체납자 순으로
 - 매월 5,000명
- 자료추출(세외수입시스템) 및 주소연계
 - 체납조회(0314)에서 전체 체납자료 추출 후 납부자번호만 엑셀파일(xls)로 저장
 - 납부자번호 엑셀파일을 체납자수납파일조회(0284)에서 최근 1년 수납내역 조회
 - 조회된 결과에서 고액 체납자 순으로 5,000명 선정
 - 선정된 5,000명 주소연계
- 그 밖에 조치사항
 - 체납자독려엑셀일괄등록(0332)을 활용하여 안내문 발송 내용을 일괄 기록
 - 고지서출력(0387)을 활용하여 안내문 발송이력을 '고지내역'에 저장
 - ※ 고지내역에 발송이력을 기록할지는 시군별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illegible]

V. 체납 또는 결손처분의 자료 제공

1. 자료제공의 의의

1. 의 의

-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의의) 이는 그 자료를 제공하여 체납자가 금융거래를 하는 때 신용불량자로 분류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제공요구가 없다면 자료제공을 할 수 없다고 본다.

2. 관련법령

- 지방세외수입법 제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및 시행령 제3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의 자료제공 제외사유)
- 국세징수법 제7조의2(체납자료의 제공)
- 지방세기본법 제6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법률 제13635호, 2015.12.29, 일부개정]시 삭제[시행 2016.1.1]

2. 신용정보자료 요구자(신용정보기관의 범위)

1. 신용정보자료 요구자(신용정보기관)

- (신용정보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업의 종류) 신용정보법 제2조4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호. 신용조회업: 신용조회업무 및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

나.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판매 업무

2호. 신용조사업: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3호. 채권추심업: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신용정보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자를 말한다.

* 행정자치부는 2016.2.18.. 한국신용정보원과 「지방세 체납정보 제공·수집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이 약정서는 2016.2.22.부터 시행되었다. 이전에는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정보를 제공하였다.

-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회사란 신용정보업을 목적으로 신용정보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자료제공 범위

1. 자료제공 대상자

- (지방세외수입법§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

정보집중기관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 |
|--|
| <p>1호.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p> <p>2호.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p> <p>3호.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p> <p>* 개정법령[시행 2018.6.27.]</p> <p>1호.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결손처분한 지방세외수입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p> <p>2호.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p> <p>3호. 삭제 <2017.12.26.></p> |
|--|

○ (질서행위규제법§53 ①)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법 제53조에 따라 행정청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2조) <개정 2017.6.2.>

○ 해석사례

- 재산을 압류하는 것과는 별개로 체납자료 제공(지방세운영-2043, 2008.11.4.) => 지방세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과는 별개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도 관허사업제한, 고발조치 등의 행정제제를 병행할 수 있다.

2. 자료제공 제외 대상

○ (지방세외수입법§6 ①)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과 관련하여 지방세외수입관계

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 (그밖의 대통령령) 법제6호제1항의 대통령령을 정하는 경우

- | |
|---|
| 1호. 천재지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체납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 2호. 체납자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 3호. 체납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 4호.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

○ 해석사례

-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경우 자료제공여부(징세-33, 2010.1.14.)
-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4. 자료제공 절차

1. 요구시 기재사항

- (요구시 기재사항)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세외수입법 §5 ①)

- | |
|-------------------------|
| 1호. 요구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
| 2호.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 목적 |

2. 자료파일작성 및 제공

○ (자료파일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자료보관장치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 기록·보관된 것을 말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지방세외수입법 시행령§4 ①)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을 전산관리 할 수 있도록 명문화

○ (자료파일 작성 등) 제4조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정리·관리·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지방세외수입법 시행령§4 ②)

○ (문서제도가능)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자료를 제4조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 또는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지방세외수입법§5 ②)

3. 제공대상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 (자료제공 취소통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세외수입법 시행령§5 ③)

○ 법인이 청산종결된 경우 신용정보 해제사유에 해당여부

지방세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 신용정보등록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1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의 폐업·청산이 신용정보등록 해제사유에 포함되어 이를 해제할지 여부는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지방세운영과-2681, 2009.9.3..)

○ 체납액 일부 납부 시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여 그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등록 해제대상에 해당한다.(세정13430-700, 2002.7.26..)

- (체납자 신용불량기록의 해제 여부에 대한 판단주체) 국세징수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체납액의 일부 납부 또는 결정취소로 인하여 제공대상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용불량 등록대상제에게 해제토록 신용정보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해제요구는 국가·지자체 등 해당기관에서 자체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며, 아울러 체납자 신용불량기록의 해제여부는 해당기관으로부터 해제요구를 받은 신용정보기관 등이 판단할 사항임.(재조세 46019-240, 2002.9.3..)

□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 통지서

- (신용정보 제공 등의 예고통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1항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질서행위규제법 제53조 2항)
- 관세관청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에게 한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고관 제공 예고통지서’ 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국심 2003중34, 2003.5.20. → 같은사례: 수원지법 2010구합16760, 2011.9.8.)

4.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법 제53조에 따라 행정청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2조)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6. 2.>

행정기관명

수신자 귀하 (주소:)

제 목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20 . . . 귀하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요청으로 다음과 같이 제공하였음을 알립니다.

■ 신용정보 제공 내용

제 공 일 자	제 공 받 은 자	제 공 목 적	제 공 정 보 내 용
20 . . .			

 $\frac{11}{E}.$

발신명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팩스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5. 타 법 입법례와 비교

구 분	지방세외수입법 제7조의2	국세징수법 제7조	질서행위규제법
자료제공 대상자	- 1년이상 500만원 이상 - 1년에 3회이상, 500만원이상 -결손처분액 500만원 이상 (2018.6.27. 삭제예정)	- 1년이상 500만원 이상 - 1년에 3회이상, 500만원이상	-국세징수법 7조 의2 준용
신용정보자 료 요구자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제공자료 누설금지	업무외 목적으로 누설 및 이용금지	업무외 목적으로 누설 및 이용금지	-국세징수법 7조의2 준용
정보제공 예고통지	-	-	예고통지조항 有
정보제공 사실통보	-	-	통보조항 有

※ 지방세외수입법 및 국세징수법에 목적외 누설금지조항은 있으나 처벌조항은 없음

6. 주요해석 판례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의2 제1항 본문은, '세무서장은 국세 징수 또는 공익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 체납액 또는 결손 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통행 단서 는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6. 3. 30. 부산지방법원 2006구합966 호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 산하 ○○세무서에서는 이 사 건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 가 제기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6. 7. 8.경부터 2007. 5. 11.까지 원고의 인적사항과 체납내역에 대한 전산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였으므로, 위 체납정보제공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산하의 담당공무원은 법령에 위반하여 직무를 집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로 인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중략 -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에게 위법한 제2차 체납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3, 000,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9가단4734 , 2009.07.15.)

VI. 차량등록번호판 영치

1. 번호판 영치

1. 번호판 영치 의의

- 자동차세 및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을 가장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2. 자동차세 특성상 대장과세

- 모든 조세부과에 있어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자동차세의 경우 그 과세객체가 되는 자동차의 토지 등 부동산에 비하여 소유권 변동이 잦을 뿐 아니라 매매, 분할·도난, 증여, 사실상 소멸·멸실 등 소유권 변동의 양태도 복잡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
- 그러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사실에 의하여 과세하는 대장과세 방식으로 과세할 경우 자동차를 양도하였을 경우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소유주가 아닌 전 소유주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자동차가 사실상 소멸·멸실될 경우에도 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않으면 계속 부과되므로 이 경우 자진납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 실제 적용할 경우에 많은 징세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므로 결국 납세자의 부담증가로 귀착될 우려가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사실에 의하여 과세하는 대장과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대법 98도3278, 1998.3.23. 판결참조)
- 영치번호판 반환자 인적사항의 과세정보 해당여부 (서울시 세제과-3497 2014.03.1.)]

-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규정 등에 따라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과세관청이 영치하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세자가 아닌 제3자가 납부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받은 경우, 이 때 제3자의 인적사항이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규정에 의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체납함으로써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과세관청이 영치한 경우에 지방세기본법 제70조에 따라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한 후 영치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받는 과정에서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생성된 자료 또한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인 “과세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사용목적이 조세부과 등 조세행정의 목적 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제공이 허용된다 할 것입니다.

2. 영치 대상 및 요건

1. 번호판 영치 대상

- 자동차세 및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을 가장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질서행위규제법§55 ①, 시행령§14 ①)

- 1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 2호.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 3호.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호, 제2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5호의2, 제18호 및 제19호와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 질서행위규제 제55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14 ②)

- 1호.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 2호. 제1호의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
- 3호.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 관련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호.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5조(보험등의 가입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호.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2호.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3호.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4호.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4호의2.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4호의3.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호의4.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5호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①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호.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호. 제10조제1항 단서(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3호. 제10조제3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4호.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5호.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6호.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호.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15.8.11.>

9. 제2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11.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12.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3.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13의2.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15의2.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자

18.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9.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2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

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신고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자

4. 삭제 <2012.12.18.>

5.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6.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2. 자동차 영치 등 요건

○ 자동차말소 시 번호판 반납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소등록대상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번호판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의한 직권말소의 경우에도 동조 제5항에 의하여 지체 없이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을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기말소된 차량은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 번호판을 이미 반납한 것이므로, 이미 말소된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31조의 1 항에 의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실행할 수 없다.

○ 자동차세 체납액이 연세액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방세운영과-87 2009.01.07.)

-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4항에서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의 자동차세액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의 부과시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중략) 과세권자는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이하 자동차에 대하여 제1기분 부과시 전액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세의무자가 정해진 기한내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송달하였음에도 독촉기한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권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3. 번호판 영치절차

1. 영치사실 통보

-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번호판 영치한 경우
- (영치사실통보)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질서행위규제법 §55 ②)
- (영치사실 통지) 질서행위규제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지할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14 ⑥)

1호.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호. 과태료 부과된 원인이 된 사실, 체납된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호. 과태료 체납자 소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

- (영치해제사실 통지) ⑧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14 ⑧)

2. 번호판 영치 전 통보

- (영치 사전통보) 행정청은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14조 ③)
- (서면통보) 시행령 14조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14조 ④)

1호.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호. 과태료 부과된 원인이 된 사실, 체납된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호. 과태료 체납자 소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

2. 번호판 영치 후 통보(영치증 교부)

- 질서행위이반법에 따른 영치증 교부
- (영치증 교부) 행정청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영치증을 수령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14조 ⑤)

1호.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2호.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
 3호. 영치일시
 4호. 과태료 납부증명서와 영치증을 제출하면 영치를 해제한다는 사실

3. 지방세법에 따른 영치증 교부

- (영치증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증을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주의 주소, 성명, 자동차의 종류, 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적은 별지 제73호 서식의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영치사실을 문서로 자동차등록부서에 기재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67 ①)<개정 2016.12.30.>

번호판을 내줄 때에는 영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증명서를 제출받아 그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14조 ⑦)

- (영치 일시해지)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서행위규제법 §55조 ④)

4. 번호판 영치후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1.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무단운행

- 차량의 앞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로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으로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번호판을 영치 당한 후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 폐차직전의 차를 몰래 버리는 경우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해당하는 경우로 자동차관리법 제81제(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번호판을 영치 당한 후 번호판을 불법으로 제작, 부착하고 다니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금지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남의 번호판을 훔쳐 달고 다니는 경우

- 이는 형법 제329조(절도)에 해당하는 경우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번호판 영치증에 의거 자동차운행(24시간이내)이 가능한지 여부

- 지방세법 시행규칙 서식 제73호에 영치증 서식에는 번호판 영치후 자동차 운행가능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운행정지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제1항 제3호에서 지방세법 196조의12 제1항의 의한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임시운행에 대하여 규정하며, 운행사유는 자동차의 정기점검으로 한정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는 차량소유자의 자동차사용(운행)을 금지(제한)시켜 체납액 징수라는 행정목적 달성을 시키려는 행정기관의 강제처분으로 일종의 정기점검 등의 행정목적 없이 영치 후에 운행하는 것을 금지됨이 타당하다.

VII. 재산조사

1. 재산조사 개요

- 체납처분을 위해 납세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동산 위주의 채권 확보 대상 재산을 파악하되, 채권확보를 함으로써 그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는 재산을 우선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 사전조사 (체납발생 전)

납세자에게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산압류가 징수여부를 좌우하게 된다. 납기 전 징수의 처분을 받은 수입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최고)없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체납 발생 전이라도 납세의무자의 현황을 조사한 후 우선적으로 채권을 확보한다.

- 사후조사 (체납발생 후)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분석하고 건물 및 토지 재산세 자료, 전국지적전산자료, 자동차세 과세자료 등을 확인하여 부동산 취득·양도상황, 각종 회원권, 신고 상황 등을 종합검토하고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등의 소유여부를 확인한 후 채권확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이용함으로써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02. 종류별 재산조사 방법

1. 종류별 재산조사 방법

- (종류별 재산조회)체납자 재산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체납액의 징수에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 재산은 권리가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서,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재산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자동차·동산 등의 유체재산은 물론 채권·무체재산권 등을 추심하거나 환가할 수 있는 일체의 재산이 그

대상이 되며 재산의 종류별로 소유권의 표시방법이 다르므로 조사방법도 달라야 한다.

※ 재산조회 방법은 지방세의 재산조회 방법을 인용한 것으로 세외수입에 적용 시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다.

2. 부동산

- (지적전산자료 이용) 행정자치부가 제공하는 전국 지적전산망을 이용하여 체납자 소유부동산을 조사할 수 있으며 부동산 등을 압류하기 위하여 먼저 당해 부동산 등의 정확한 구조·소유권 이외의 각종권리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의 열람이 필요하다. 해당 지적관련 부서에 의뢰공문 시행하여 재산조회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예시공문 참고) 지방세의 경우 표준지방세프로그램을 통하여 체납자의 전국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예시문>

〇 〇 시	
수신자 지적과장	
제목	지적전산 정보자료 제공요청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과세자료의 이용등) 및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규정에 의거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적전산정보 이용승인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활용목적 : 세외수입 체납(결손포함) 처분자에 대한 재산조회	
2. 조회범위 : 전국	
3. 조회건수 : 000건	
4. 의뢰방법 : 자료파일(파일명0000.txt)	
5. 회신방법 : 파일형식(엑셀파일)	
붙임	1. 지적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 1부. 2. 지적전산조회내역(txt 파일) 1부. 끝.
〇〇시장	

3. 채 권

- 채권이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국세징수법상 채권은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매매, 도급 등과 같이 대금을 청구하는 채권2. 급여적 성질을 갖는 것(급여, 상여, 보수, 출연료)3. 임대료, 이익배당, 보험금 등 채권4. 적금, 소비대차, 권리금, 보증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5. 손해상 청구권, 공탁금반환청구권, 주식불입청구권, 등록국채 등 상환청구권 |
|--|

- 임금채권

- (직장조회) 체납자의 직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시·군이 도청을 경유하여 조회를 의뢰한다. 후에 각 기초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근무여부를 조회하고 있다.
- (개선사항) 체납자의 월급여액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압류제외자(사업주, 퇴직자, 일일·계약직 근로자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추후 압류절차에 실익이 있다.

- 신용카드 매출채권

- (개요)신용카드 매출채권이란 사업자와 신용카드회사와 사이에 할부특약가맹점 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장차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카드사에 가지는 채권을 말한다.
- (근거법령)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3(과세자료제출기관의범위)에서 금융위원회 설치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은행, 회사, 조합 및 그 중앙회, 금고 및 그 연합회, 보험사업자 체신관서 등 법인·기관 또는 단체는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조회대상자선정) 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해 체납자의 사업자 번호 및 계속사업 여부 조회(국세청 연계를 통해 실시간 조회가능) ⇒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조회) 한국여신금융업협회에 신용카드사 가맹점 등록여부를 조회한다.(예시 공문 참고)

○ 국세환급금

- (국세청과 전산공유) 국세환급금 정보 전산연계로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4. 동산·유가증권

- 동산은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 이외의 물건을 말하며 유가증권은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써 그 권리의 행사 또는 이전을 증권으로써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산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닌 차용증서 또는 수취증권과 같은 증거증권은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채권의 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한다.
- (유가증권의 종류) 어음, 수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사채권, 주권, 출자증권, 신탁의 무기명 수입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상품권 등 이 있다.

○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9-0...1

1.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11.03.21>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
4. 양도성 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 (조사방법) 동산과 유가증권은 점유하는 자의 소유로 추정받으므로 체납자 또는 제3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 물건이 장치될 수 있는 장소를 수색하여 압류가치가 있는 동산과 유가증권을 조사한다.

5. 자동차

- 해당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요청을 통하여 압류 등기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관내차량은 세무전산의 자동차세 과세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관외차량은 건설교통부가 제공하는 차량전산망에서 시도단위로 소유현황을 개별열람 할 수 있으며 타 시군 자동차세 과세자료(체납자료)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6. 무체재산권

- 통상 무체재산권이란 저작권과 같은 지적정신적 작용에 의한 창조물을 뜻하지만 국세징수법상 무체재산권 등은 이에 국한되지 않고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재산, 즉 동산, 유가증권, 채권, 부동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말하는데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 입어권, 양도가능한 전화가입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VIII. 압류

1. 압류의 기본사항

1. 압류의 요건 등

가. 압류의 요건 :

- 압류의 근거는 세외수입법 제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국세징수법 제24조
- 체납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 체납된 세외수입금을 압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부의무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 담보제공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납기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
|---|

나. 압류시 유의사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촉이 무효이거나 독촉이행 여부(독촉 없이 한 압류 무효)- 독촉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신속하게 압류조치 |
|--|

2. 압류 대상 재산

-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재산

- 동산, 유가증권 : 채납자가 소유하고 있을 것
- 등록공채 등 : 등록명의자가 채납자일 것
-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및 지상권, 광업권 등의 권리와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 등 : 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인이 채납자일 것
- 미등록의 부동산 소유권, 기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미등록의 저작권 : 점유의 사실,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기타 장부·서류의 기재 등에 의해 채납자에게 귀속된다고 인정되는 것
-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 : 정관 또는 상업등기부상 원의 명의가 채납자일 것
-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 : 정관, 사원명부 또는 상업등기부상 명의인이 채납자일 것
- 채권 : 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장부서류 등에 의해 채납자에게 귀속된다고 인정되는 것

-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
- 재산의 양도 또는 추심이 가능한 재산

3. 압류의 제한과 금지

- 압류의 제한

- 징수유예를 한 경우(국세징수법제17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단, 교부청구는 가능
 - 행정처분정지가처분 명령이 있는 경우
- <유의> 불복청구, 소송제기 중인 경우 압류는 가능하나 공매는 불가

- 압류의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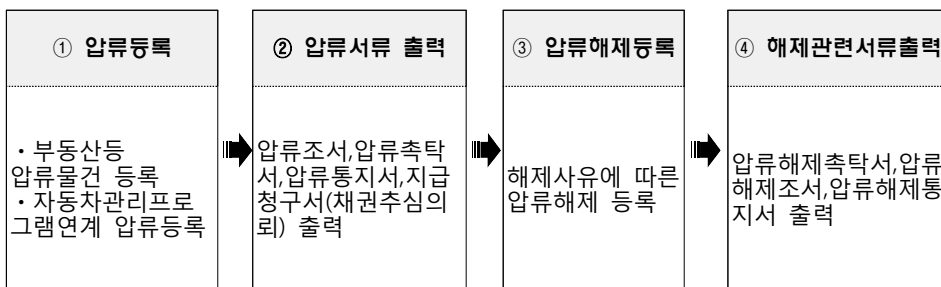
- 초과압류의 금지 : 국세징수법 제33조의2 및 지방세징수법 제43조
 - 무익한 재산압류금지 : 채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채납 처분 중지
- <처리요령> 실무에서는 재산의 추정가액과 채납처분비를 명시하여 압류 무익하다는 내부 결재를 받아두면 됨.

2. 압류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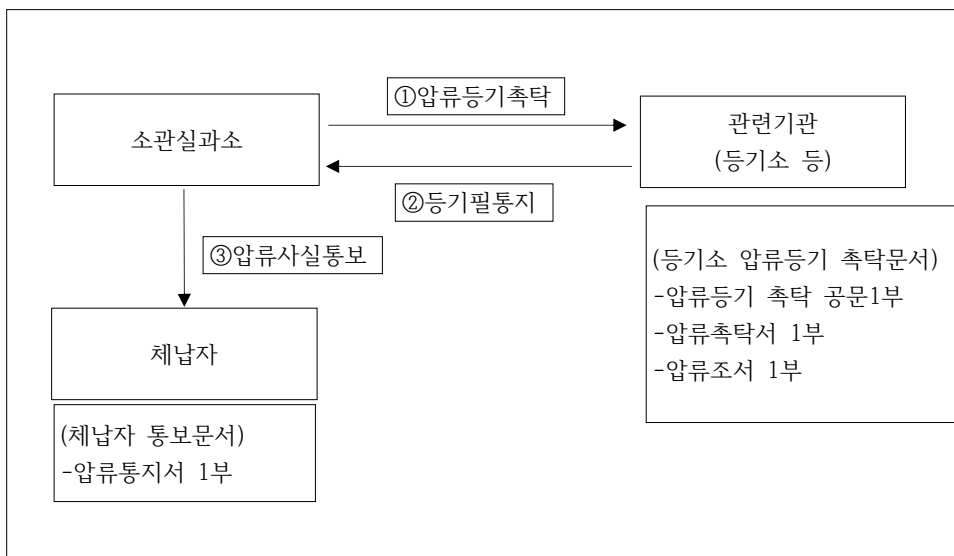
1. 압류절차

○ 전산시스템 상 기능(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

< 기능 구현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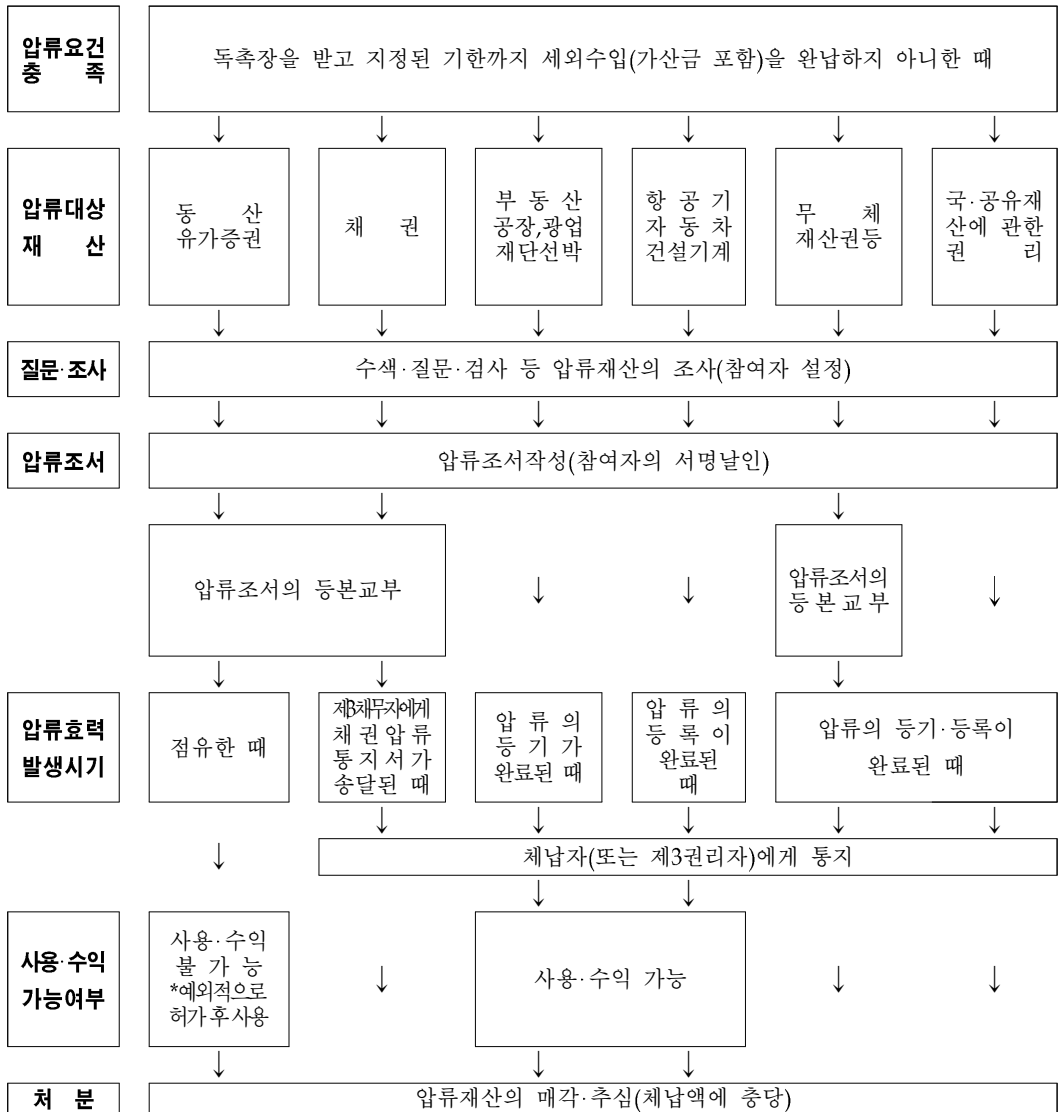


○ 압류절차



2.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절차

○ 압류의 처리 흐름도



3. 압류의 요건 및 유의사항

- 재산조회 및 소유확인 : 재산조회 후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와 체납자가 일치하는 여부 확인
- 부동산 압류
 -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와 체납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등기소에 압류등기 촉탁 및 체납자에 압류통지서 발송
- 자동차 압류
 - 차량등록부서에 의뢰 또는 자동차등록망을 통한 직접조회로 소유자 확인후 자동차 등록부서에 압류등기 촉탁 및 체납자에게 압류통지서 발송
- 급여 및 예금 등 채권압류
 - 예금(증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거 '조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조회가 제한(실제로 나이스나 크레딧파트너를 통한 예금압류를 진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음)
 - 급여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체납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조회 의뢰 후 압류촉탁서 발송 및 체납자에게 압류통지
- 동산 및 유가증권의 압류
 - 점유취득이 원칙이지만 보관압류가 일반적임.
 - 압류 당시 압류조서를 1부 교부하고 서명 날인케하여 압류통지에 갈음
 - 질권 설정 또는 기타 권리에 의한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유가증권은 그 점유자에게 압류조서를 교부 후 재산압류 통지서를 체납자에게 발송
 - ※ 동산으로 간주되는 물건 : 등기를 요하지 않은 총톤수 20톤미만의 선박/등록되지 않는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사용가능한 정도로 완성되지 않은 건물
 - ※ 유가증권 :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 또는 이전을 증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증권

03. 압류의 효력

1. 효력 발생 시기

- 부동산,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선박 :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 동산,유가증권 : 점유한 때
- 채권 : 채권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 무체재산권
 -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 :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지 않은 것(제3채무자 존재) :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 국유·공유재산에 관한 권리 :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

2. 세외수입금 압류의 효력 - 당해 압류에만 효력

- 효력범위
 - 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한 당해 세입에만 미친다. 즉 압류당시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세외수입 체납액이나 압류 후에 추가로 발생한 세외수입 체납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조세와의 차이
 - 국세,지방세와 같은 조세의 경우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 기일(국세기본법 제35조)이 도래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 시효중단의 효력
 - 시효가 중단되며 압류가 해제되는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

4. 교부청구

1. 교부청구

○ 의의

- 교부청구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타기관의 공·사채권에 의하여 강제 환가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동일 재산에 대한 압류의 중복을 피하고 당해 재산의 환가대금 중에서 세외수입 채권을 징수하고자 관계집행기관에 그 배당을 요구하는 강제적 징수절차를 말하는 것으로써, 「민사소송법」 상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외수입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를 한 세외수입을 모두 포함한다.

2. 교부청구 요건

- 체납자에 대하여 아래에 제기하는 것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집행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채권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6조)

-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강제집행을 받을 때
-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때
- 경매가 시작된 때
- 법인이 해산한 때

3. 교부청구 시기

- 채납자에 대하여 아래에 제기하는 것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집행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채권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6조)

○ 채납처분

- 관계기관의 배분계산서 작성시까지(「국세징수법」 제83조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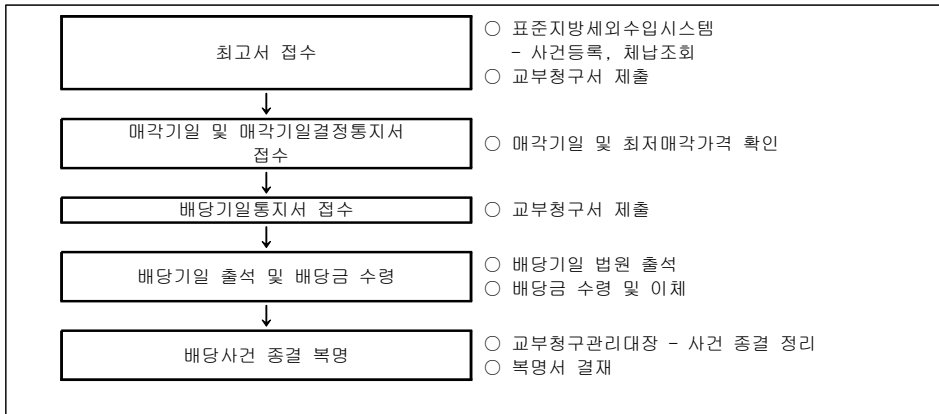
○ 강제집행 또는 경매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 경매기일의 종료시(「민사집행법」 제220조)
- 부동산의 강제집행·경매 : 첫 매각기일 이전(「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전부명령인 경우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이전, 추심명령인 경우는 압류채권자가 추심하고 집행법원에 신고하기 이전(「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항)
-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 : 그 동산의 매각대금을 집행관이 영수할 때 (「민사집행법」 제243조 제3항, 제220조 제1항)
-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 : 첫 매각기일 이전(「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 제84조 제1항)
- 그 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 그 재산권의 성질 및 그 처분의 방법에 따라 교부 청구

4. 교부청구 절차

-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경매, 공매 등에 의한 강제환가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환가대금 중에서 세외수입 채권의 배당을 받고자 할 때에는 소정사항을 기재한 교부청구서를 관계집행기관에 송달하여야 한다.

○ 업무흐름도



- 법원으로부터 최고서를 수령하면 교부청구서 작성
 - 사건번호, 관리번호, 체납자정보, 교부사항(채권자, 채무자, 물건명 등)
- 작성한 교부청구서와 교부내역서 출력
 -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부과년도, 과목, 금액, 납부기한
- 출력한 교부청구서 및 내역서를 관계집행기관에 송달
 - 법원은 이를 토대로 배당기일통보서를 관할 자치단체로 알려준다.
- 법원에서 받은 배당기일통보서의 배당종기일을 기준으로 해당일자 이전에 체납된 자료에 대하여 다시 교부청구서를 작성
(배당기일 이전 체납자료만 교부청구 가능함)
- 배당일에 법원에 출석
- 법원으로부터 배당금 수령
- 수령한 배당금을 충당(수납) 처리

- 미충당 체납액이 있을 경우 재산조회 후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 압류처분을 하고, 재산이 없을 경우 부분결손처리할 수 있다.

5. 교부청구 효력

- 배당요구의 효력 : 교부청구를 받은 관계기관은 배당순위에 따라 교부청구한 금액을 배당하여야 한다.
- 시효중단의 효력
-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의 강제환가절차가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교부 청구의 효력이 상실된다.

6. 교부청구 해제

- 납부, 충당, 부과취소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교부청구한 세외수입 체납액의 납 부의무가 소멸된 때에는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하며, 교부청구의 상대방이 되었던 기관에 교부청구 해제를 통지해야 한다.

5. 참가압류

1. 참가압류

- 참가압류란 세외수입의 체납으로 재산의 압류요건이 성립되어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 그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되어 있는 때에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말한다.(「국세징수법」 제57조)

2. 참가압류의 요건

-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9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요건 구비
- 압류하고자 하는 체납자의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는 상태

3. 참가압류의 절차

- 기압류기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참가압류통지서를 문서로 통지
- 압류에 참가한 경우에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문서로 참가압류 사실을 통지
- 참가압류대상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경우 참가압류의 등기·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

4. 참가압류의 효력

- 교부청구 및 시효중단의 효력
 - 참가압류는 기압류 기관에 대하여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으며, 배당요구와 시

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기압류의 해제 또는 취소 시 압류효력의 소급은 다른 기관이 한 기압류가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단, 압류의 효력이 소급되는 것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참가압류의 등기·등록이 완료된 때-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외의 재산은 참가압류의 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
|--|

- 기 압류를 한 기관에 대한 매각최고 : 참가압류를 한 후 기압류 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시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5. 기 압류기관의 압류해제시 절차

- 압류해제의 통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압류기관이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압류기관 압류해제통지서에 해제된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압류에 참가한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
|---|

- 동산·유가증권 등의 인도

- 기압류 기관은 압류를 해제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점유하고 있을 때에는 압류에 참가한 기관에 직접 인도하고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참가압류재산인도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인수한 기관은 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로 인수통지하여야 한다.

6. 참가압류의 해제

- 참가압류에 관계된 세외수입이 납부, 충당, 부과취소, 기타 사유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참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9조)

<참가압류와 교부청구 비교>

구 분	참 가 압 류	교 부 청 구
요 건	① 당해 지방세가 압류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② 이미 압류가 행해져 있을 것	① 당해 지방세가 확정되어 있을 것 → 압류의 요건이 충족될 필요는 없으며 징수유예기간 중에도 가능 ② 이미 강제 환가절차가 개시되어 있을 것
절 차	참가압류통지서를 기압류기관에 송달 ※ 참가압류 등기.등록 필요	교부청구서를 해당 집행기관에 송달 ※ 등기.등록 불요
효 력	① 매각대금 배분요구의 효력 ②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③ 기압류기관에 압류재산의 매각 최고, 3개월후 매각 가능 ④ 이미 행해진 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 시점으로 소급하여 압류로 전환	① 매각대금 배분요구의 효력 ②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③ 기 집행기관에 대해 매각최고를 할 수 없다 ④ 해당 집행기관의 강제환가 절차가 해제 또는 취소되면 효력 상실
해 제	① 사유 : 압류의 해제사유 준용 ② 해제절차 : 압류해제 절차 준용	① 사유 : 납부.충당.부과취소 등 ② 해제절차 : 교부청구해제통지서를 기 집행기관에 송달

06. 압류 해제

1. 압류해제의 요건(세외수입징수법 제14조)

○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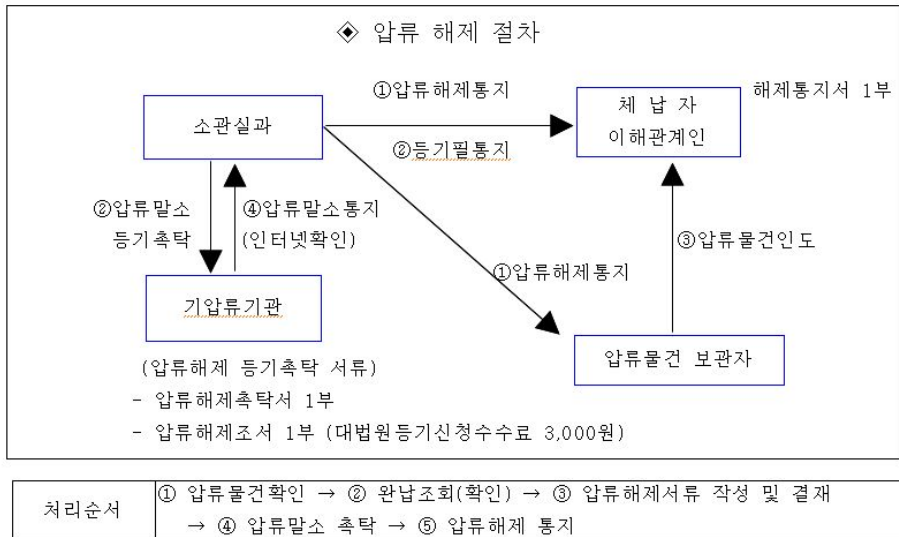
- 납부,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경우

○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2. 압류해제의 절차

<압류해제 절차 및 처리방법>



-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권리자 및 제3채무자에게 통지
-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관계관청에 압류말소등록을 촉탁
- 압류 재산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 보관자에게 압류해제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

07. 주요해석 사례

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 07-144호, 2007.6.15)세외수입체납에 따른 압류의 효력

【질의】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중의 하나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의 행정재산 등 사용료를 비롯하여 여러 과목을 미납하고 있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위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같은법 제22조 제4항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어 체납된 다른 과목도 별도의 압류가 없어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회답】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된 세외수입인 행정재산 등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면 그 압류를 한 그 과목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고, 별도의 압류없이 다른 세외수입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 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판례> 대법원 96마1302, 1996.12.24 유가보조금 압류가능성

【회답】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고 그 목적 이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여객의 원활한 운송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을 꾀하고자 하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서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운수사업자 사이에서만 수수 결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보조금 지급청구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임

<유권해석> 행자부 세정-370, 2003.7.5지입차량의 압류해당 여부 판단

【회답】지입회사와 지입차주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자 자기계산과 위험부담 아래 독립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사업자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는 상호 지방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고 하겠는바, 지입차주(화물자동차소유주)가 위와 같이 지입회사인 (주)○○통운과 별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당해 지입회사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당해 지입차주의 자동차를 압류할 수 없는 것임.

<판례> 대법원 2012다34047, 2013.2.28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가능성

【회답】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함. 따라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임.

<유권해석> 국세청 징세46101-1503, 2000.10.20압류 후 결손처분시 압류해제 여부

【회답】압류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 시까지 미치므로 비록 결손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처분 가능한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음

<판례>대법원 2000두5333, 2001.7.13)결손처분 취소 통보 없이 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회답】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납세의 부담을 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취소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요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처분 규정>

구 분	관계법령	체납처분근거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법(제20조제2항)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지방세외수입징수법(제2조1호, 및 제3장)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적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8조)	
건축물 이행강제금	건축법(제80조)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0조)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도로·하천사용료	도로법(제90조), 하천법(제67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7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IX. 압류재산의 매각

1. 매각

1. 공매(지징법 제61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을 국징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국징법 제61조 제3항)
-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세외수입금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국징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지장법 제61조의2)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수의계약(국징법 제6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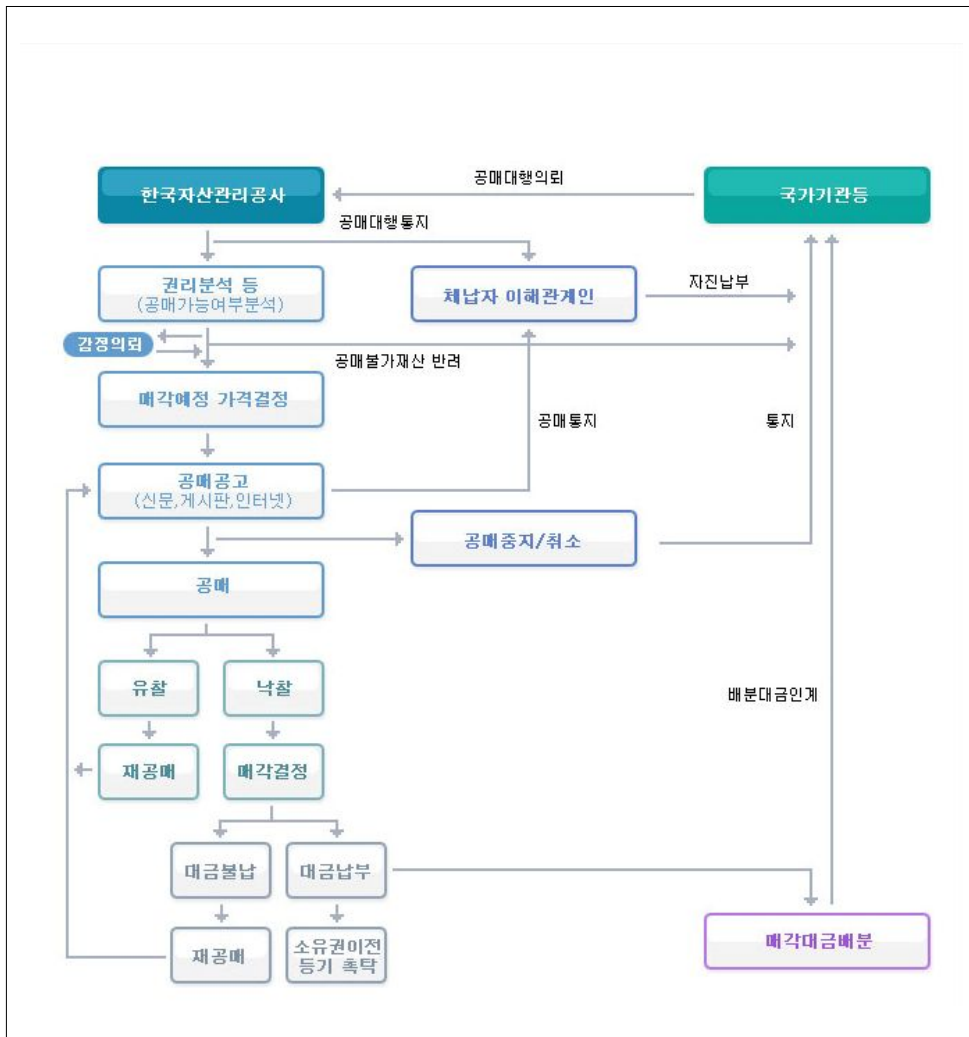
-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채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2.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推算)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보며,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62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02. 구매의 절차

1. 구매 업무 흐름도



2. 차량공매의 업무처리도

	자동차 공매	처리부서	관련기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부서	공매기관(오토마트 등)
〈업무개요〉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의 소유 자동차 압류 및 차량소유자가 납부능력 상실 및 채권 확보를 위 한 체납처분			
〈처리절차〉			
체납자료 발체 ↓ 자동차 등록 원부 열람 및 압류실의 판단 ↓ 공매 자동차 인수인계 ↓ 공매자동차 결재후 공매 공고 ↓ 매각통지서 교부 및 매각대금 수납 ↓ 매각대금 배당 및 배분계산서 교부 ○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 체납조회 대상사 발체 - 차량소유자 자동차 공매의뢰 ○ 공매기관(오토마트 등) 자동차 - 차량인수증 받고 차량 인계 ○ 차량 이해관계인 공매 추진사항 ○ 매각대금 납부확인 ○ 교부청구서에 의한 배당 실시 ○ 이해관계인 및 차량소유자에게 계산서 교부 ○ 매각대금 지출 및 수납처리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98조, 국세징수법 제82조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차량소유자 확인후 차량을 인수인계 할것이며, 차량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매불가.			
○ 관련서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을,갑)			

3.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국징법 제62조의2)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4조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대상 재산의 현상(現狀),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체납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4. 매각예정가격의 결정(국징법 제6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5. 공매 장소(국징법 제64조)

- 공매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매재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

6. 공매보증금(국징법 제65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보

증금을 받을 수 있다.

-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공매보증금은 국채 또는 지방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7. 매수인의 제한 (국징법 제66조)

-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8. 공매의 방법과 공고(국징법 제67조)

-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구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그 입찰기간)
4. 개찰(開札)의 장소와 일시
5. 구매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6. 구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채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7. 배분요구의 종기(終期)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9. 매각결정 기일
10.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구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11. 구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사실
12. 제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13. 제90조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의 기간과 절차

- 제2항에 따른 구매공고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 제3항에 따른 구매공고를 할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제2항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이하 "배분요구의 종기"라 한다)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구매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 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3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구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9. 구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국징법 제67조의2)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에 따라 구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구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0. 공매통지(국징법 제6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7조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채납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前日) 현재의 공유자
4.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11. 배분요구 등(국징법 제68조의2)

-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9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채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채납액·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 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로 하여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는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1. 행정자치부
2. 국세청
3. 관세청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징법 제67조에 따라 공매 통지를 할 때 제4항에 따른 채권 신고의 최고 또는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의 안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각 해당 항에 따른 최고 또는 안내를 한 것으로 본다.
- 제6항에 따른 안내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12.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국징법 제62조의2)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73조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 현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 현황
4.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5.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입찰 마감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
2. 제74조제2항에 따라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

03. 공매의 취소

1. 공매의 취소 및 공고(제6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제105조에 따라 채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3.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채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징법 제74조에 따라 재공매할 수 있다.
- 국징법 제75조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 전에 공매를 취소한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2. 공매공고 기간(국징법 제70조)

- 공매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든 우려가 있으면 1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3. 공매의 중지(국징법 제71조)

- 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채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채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구술(口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국징법 제69조에 따른 공고를 갈음한다.
-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채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4.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국징법 제71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제69조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
2. 제71조에 따라 공매를 중지한 경우
3. 제78조의제1항1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5. 공매참가의 제한(국징법 제7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는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는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입찰을 하려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 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2. 공매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3.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4. 매각의 결정

1. 입찰과 개찰(국징법 제73조)

- 입찰하려는 자는 그 주소·거소·성명,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입찰가격, 공매 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개찰이 시작되기 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찰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개하여 하고 각각 적힌 입찰가격을 불러 입찰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 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 제4항의 경우에 해당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2. 공유자의 우선매수권(국징법 제73조의 2)

-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 제1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3조의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된 경우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3. 차순위 매수신고(국징법 제73조의3)

- 국징법 제73조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해당 낙찰자 외의 입찰자는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제7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최고입찰가격에서 공매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고(이하 "차순위 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이하 "차순위 매수신고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고액의 매수신고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자로 정한다. 다만, 최고액의 매수신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순위 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 제7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고자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없다.

1. 제75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차순위 매수신고자가 제72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로 확인된 경우

4. 재공매(국징법 제74조)

-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일 때에는 재공매한다.
-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매매를 해약하고 재공매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공매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74조에 따라 새로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다만, 제88조제6항에 따라 즉시 재입찰에 부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공매의 경우에는 제74조부터 제78조까지 및 제80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5.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국징법 제75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매각결정 전에 제71조에 따른 공매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
2. 낙찰자가 제72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로 확인된 경우
3. 제73조의2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의 신고를 한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6. 매수대금의 납부최고(국징법 제7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7.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국징법 제77조)

-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8. 매각결정의 취소(국징법 제7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5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76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9.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국징법 제79조)

-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다만, 제71조제5항 또는 제7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절차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 이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5. 주요해석 사례

<판례> 대법원 2004두14717 판결, 2006.5.12 선고독촉 흠결이 공매처분에 미치는 효력

공매절차에 독촉장의 송달 흠결이라는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 그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한 바가 있고, 공매처분에 의한 매수대금이 모두 납부된 이후에는 독촉장의 송달 흠결이라는 하자를 이유로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6. 관련법령

세외수입징수법 제19조(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지방세외수입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등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장제2절,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4절부터 제7절까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9절,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10절 및 제11절을 준용하고,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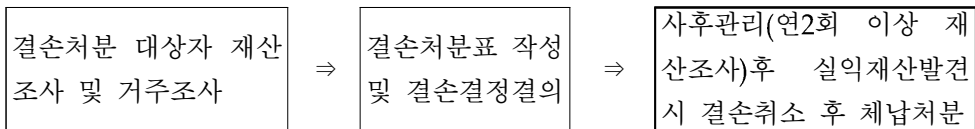
X. 결손처분

1. 결손처분

1. 결손처분

- 이미 확정된 지방세 채권이 일정한 사유의 발생·존재로인하여 징수할 수 없는 경우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에 의하여 과세권자가 스스로 지방세의 징수절차를 중지 및 유보하거나 또는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2 주요흐름도



3. 업무절차

결손대상 체납자 조사

- ☐ 체납자료 발취 - 표준지방세외수입시스템

재산, 금융자산 및 거주 조사

- ☐ 표준지방세외수입시스템 전산 조회
- 개인·법인(대표자)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직장, 거주지 조사
- 체납자 소유재산 중 선압류(국세, 지방세, 근로복지공단임금채권) 및 근저

당권, 전세권 등에 대한 채권액 조사)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조사

- ☐ 체납자 생활실태 및 납부능력 조사
 - 생활형편이 어렵고 소득이 없어 납부능력이 없는 자는 결손 검토

결손 처분표 작성 및 결손결정결의

- ☐ 결손 대상: 무재산자, 또는 압류한 재산의 실익이 없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체납자
- ☐ 결손 처분표 작성 및 결재: 조서, 복명서, 결손처분 내역서, 재산조회 결과자료,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되어야만 결손결정결의가 확정됨
- ☐ 전산 입력 : 결손자료 표준지방세외수입 시스템에 입력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

- ☐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간 사후관리
 - 소멸시효 결손처분의 경우는 사후관리 필요하지 않음
 - 체납처분 중지로 인한 결손처분의 경우 압류처분 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해제할 필요 없음.
 - 결손처분 후 매년 2회이상 재산조회를 통해 결손처분자의 실익 있는 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압류 및 매각을 통해 징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결손처분 취소사실을 결손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Ⅱ . 관허사업의 제한

01. 관허사업의 제한

1. 관허사업제한 제도개요

- (개념)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행정청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와 갱신을 하지 않거나 기존 사업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
 -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사업의 신고(시행령 §5조 ②)

○ (제한 대상자)

신규허가	지방세외수입금(부담금, 이행강제금, 과징금) 1회 이상 체납자
기존허가	과징금을 제외한 지방세외수입금(부담금, 이행강제금)을 3회이상·1년경과, 100만원 이상 체납자

○ (제한 방법)

- (신규허가) 체납된 대상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한해 신규 허가 등 제한
- (기존허가) 체납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2. 전산기능 및 대상자 선정

① 전산시스템 상 기능

-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 대상자 조회*, 대장관리, 관련 서식출력 등

* 체납금액에 따른 대상자 추출기능으로 법령상 제외대상 여부는 자체 판단 필요

< 기능 구현사항 >

① 대상자 구축	② 대상자 조회	③ 대장 관리	④ 대장 조회
채납자 DB* 구축 *3회이상·1년경과 100만원이상	대상자 조회 및 수납등 내역 확인 후 예고서 출력	신규 대장 등록, 기존자료 수정·삭제	등록된 자료를 조회 하고 법정 서식 출력

○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세외수입금 통합조회, 지방세 등 자료 확인

- 신규허가시 동종사업 체납여부 사전 확인을 위해 전국 세외수입금 통합조회 기능 및 전국 관허사업제한 내역 확인 기능 신설
- 기존허가 제한시 체납자 인·허가내역, 사업 영위 여부 참고를 위해 지방세 (등록면허세) 및 국세청(사업자 등록자료) 조회 권한 부여

※ 근거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과세자료 이용 등)

② 대상자 선정(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단)

- ① (신규허가)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
- ② (기존허가)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제외)을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체납일) 법 시행('16.11.30.)후 부과된 지방세외수입금이 최초로 체납*

- * 개정된 지방세외수입법 시행 전에 부과되고, 시행후에 체납된 지방세외 수입금은 부과 당시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사전 고지되지 않은점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 (체납액) 지방세외수입금,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합계(법 제2조)

- * 체납액 : 지방세외수입금+가산금+체납처분비(법 제2조) / 결손금액은 제외

※ (비교) 명단공개(7조의3) :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 (결손처분한 지방세외수입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기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

○ (체납횟수 산정)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산정

<신규허가 제한 및 기존허가 정지·취소 요건 비교>

구분	신규허가 제한	기존허가 정지·취소
체납과목	부담금, 이행강제금, 과징금(85종)	부담금, 이행강제금 (23종)
체납기간	별도 제한없음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
제한범위	동종사업	체납중인 해당 사업
체납횟수	1회이상 (별도제한없음)	3회 이상
체납금액	별도 제한없음	1백만원 이상

※ 체납과목별 세부 현황은 참고4 「관허사업제한 적용대상 과목 현황」 참조

③ 제외 대상

○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 (시행령 제5조의2, 제5조의3)

1. 천재지변, 화재, 전파,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3.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은 경우
4. 강제집행, 파산의 선고, 경매 개시, 법인 해산 등
5. 체납처분의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 처분비와 지방세외수입금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법 제16조제1항)

6.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경매가 개시된 경우 관허사업 제한 여부관련 해석 사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히 선순위채권자가 있어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것이 예견된다거나 납세자가 체납액을 납부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정황만으로는 체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관적 사정에 불구하고 **경매가 개시된 후에는 관허사업제한이 배제** 된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152, 2010. 5. 23.)

3. 관허사업제한 절차

○ 관허사업제한의 요구와 철회

- 행정청이 직접 허가를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 단, 허가 등의 취소는 납부의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를 회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가능

납부의무자의 사업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지방세외수입 부과에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사업 정지기간의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허가 등의 취소는 납부의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를 회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가능 (지방세외수입법 제7조의2)

-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문서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신규허가 제한 또는 기존 사업의 정지 및 허가취소 요구가능

※ 인·허가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함(법 제7조의2 ①, ②)

구분	신규허가 제한	기존허가 정지·취소
서식	별지 제1호의2	별지 제1호의3
기재 사항	1. 체납자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2. 허가 등의 제한이나 정지 또는 취소가 필요한 사업의 종류 3. 관허사업제한 이유 4. 체납명세 5. 참고사항 등	

- 처분 또는 요구 이후 해당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했을 경우 지체없이 처분 또는 요구를 철회
- (신규허가 제한) 인·허가부서에서 허가 전 세외수입금 체납 조회 후 동종사업 체납이 있을 경우 완납 시에 허가
- (기존허가 정지·취소) 체납관리부서에서 체납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인·허가부서에 요구, 인·허가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후 조치결과를 체납부서에 통보

4. 납부의무자 권리보호

① 충분한 사전 예고로 자발적 납부 유도, 납부대상자 안내 철저

- 국민의 생업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 예고절차를 통해 납부자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자발적 납부유도
- 제도시행 초기에 충분한 안내를 통해 국민의 정책 수용도 제고

② 관허사업 제한 예외자 관리 철저

- 납부자별 체납관리카드(화면번호0665) 등에 기재된 기존 체납처분 현황 등을 확인, 경매 개시 등 예외사유 해당 여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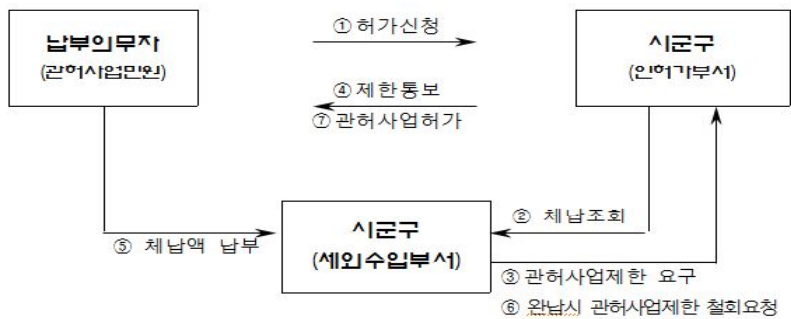
원고가 경영난으로 부득이하게 체납을 하게 되었으나 경매절차에서 체납액을 교부받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고, 영업정지가 계속될 경우 원고가 생계에 지장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서장의 관허사업 제한 요구는 재량을 넘은 위법한 행위임(서울고등법원 2005누27897, 2006.4.19.)

③ 완납시 신속한 허가제한 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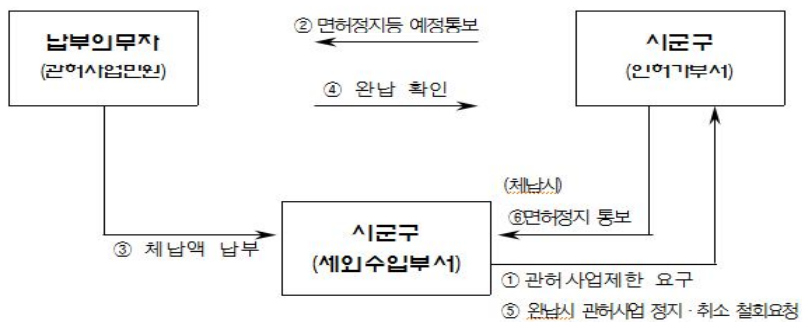
- 관허사업제한자 등에 대한 명단을 별도관리, 수납여부 등 상시확인
- 관허사업제한 요청이후 체납액을 징수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그 처분 또는 요구를 철회

2. 관허사업의 제한 업무절차

□ 신규허가 제한



□ 기존허가 정지·취소



3. 관허사업 제한 타 법 입법례와 비교

구 분	지방세외수입법 제7조의2	지방세징수법 제7조	국세징수법 제7조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52조
신규허가제한	1회이상 체납시 동종사업의 신규허가 제한	1회이상 체납시	1회이상 체납시	신규허가 제한 불가
기존허가제한	(과징금을 제외한) 지방세외수입금 3회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시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3회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시 정지 또는 취소	3회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시	3회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시
의무위반과 정지·취소사 업간 관련	해당사업	허가등이 필요한 모든 사업	허가등이 필요한 모든 사업	해당사업

4. 관허사업 제한 대상 과목

순번	법령명	구분	표준세외수입시스템상 과목명(코드)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징금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을 위반과징금(288485)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행강제금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이행강제금(288545)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과징금	건강기능식품과징금(288342)
4	건설기술 진흥법	과징금	건 설 기 술 진 흥 법 위 반 과 징 금 (288126)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과징금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을 위반과징금(288415)
6	건축법	이행강제금	건축법이행강제금(288263)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징금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을위반과징금(288458)
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과징금	고 압 가 스 안 전 관 리 법 과 징 금 (288203)
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행강제금	
10	공동주택관리법	과징금	주택법위반과징금(288624), 주택 관리업과징금(288356)
11	공중위생관리법	과징금	공중위생관리법과징금(288204)
12	관광진흥법	과징금	관광진흥법과징금(200205)
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행강제금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담금	
15	궤도운송법	과징금	
1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과징금	먹는물관리법과징금(288209), 수 질환경보전법과징금(288557)
1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과징금	먹는물관리법과징금(288209), 수 질환경보전법과징금(288557)
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과징금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과징금 (288206)
19	농지법	이행강제금	농지법이행강제금(288262)
2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행강제금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관한법을 위반이행강제금(288477)
21	대기환경보전법	부담금	대기오염배출부담금((281007)
22	대기환경보전법	과징금	대기환경보전법과징금(288306)
2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281043)
24	도시가스사업법	과징금	도시가스사업법과징금(288207)
2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부담금	
26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부담금	
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과징금	마 약 류 에 관 한 법 률 위 반 과 징 금

순번	법령명	구분	표준세외수입시스템상 과목명(코드)
			(288240)
28	먹는물관리법	과징금	먹는물관리법과징금(288209)
29	모자보건법	과징금	모자보건법위반과징금(288468)
30	물류정책기본법	과징금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과징금	임대주택법위반과징금(288127)
3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	
3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과징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288211)
34	비료관리법	과징금	비료관리법위반과징금(288419)
35	사료관리법	과징금	사료관리법과징금(288212)
3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과징금	사회서비스이용위반과징금(628820)
3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과징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288665)
38	산지관리법	부담금	
3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과징금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징금(288265)
40	석탄산업법	과징금	석탄산업법과징금(288214)
41	소방시설공사업법	과징금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과징금(288546), 소방시설공사업법과징금(288437)
4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과징금	
43	수도권정비계획법	부담금	
4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징금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과징금(288206)
45	수산업법	과징금	수산업법과징금(288261)
46	수산자원관리법	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281027),
47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과징금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과징금(288216)
48	식품위생법	과징금	식품위생법과징금(288215)
4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과징금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288608)
50	약취방지법	과징금	약취방지법위반과징금(288472)
5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과징금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과징금(288217)
52	약사법	과징금	약사법과징금(288218)
53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과징금	
54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이행강제금	
5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288237)
5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과징금	먹는물관리법과징금(288209), 수질환경보전법과징금(288557)
57	영유아보육법	이행강제금	영유아보육법위반이행강제금

순번	법령명	구분	표준세외수입시스템상 과목명(코드)
			(288629)
58	영유아보육법	과징금	영유아보육법위반과징금(288606)
5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과징금	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288457)
6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	옥외광고물이행강제금(288366)
61	위생용품 관리법	과징금	공중위생관리법과징금(288204)
62	위험물안전관리법	과징금	위험물안전관리법과징금(288347)
6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과징금	유선및도선사업법과징금(288600)
6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징금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288456)
6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과징금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288120)
66	의료기기법	과징금	의료기기법위반과징금(288385)
67	자동차관리법	과징금	자동차관리법과징금(288227)
6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과징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 징 금 (288411)
6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 행 강 제 금 (288331)
7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	
7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과징금	
72	전기공사업법	과징금	전기공사업법과징금(288329)
73	정보통신공사업법	과징금	
7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과징금	
75	지하수법	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281053)
76	주차장법	이행강제금	주차장법위반이행강제금(288348)
77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288287)
78	축산물 위생관리법	과징금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위 반 과 징 금 (288603)
79	폐기물관리법	과징금	폐기물관리법과징금(288232)
80	하수도법	과징금	하수도법과징금(288504)
8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281025)
8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과징금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288119), 수질환경보전법과징금(288305)
8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징금	
8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과징금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과징금(288346)
8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 2017.6.30.] [법률 제 14342 호, 2016.12.2., 일부개정]	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288237)

5. 주요 해석 사례

순번	소관부처	질의요지
1	법제처	세금채납이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법제처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여부) 관련
3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가 규정하는 관허사업의 제한 내용과 적용기준
4	법무부	개인택시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관허사업의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5	법무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전기공사업체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47건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6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 관련 주무관청의 범위
7	舊 행정안전부	복합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이 관허사업에 해당 여부
8	舊 행정안전부	행정사 신고행위가 관허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9	舊 행정자치부	공장 설립(변경) 신청행위가 관허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舊 내무부	대표이사의 체납을 원인으로 법인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가능 여부
11	舊 행정자치부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관허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2	舊 안전행정부	채납자인 매도자의 ‘명의변경 동의’를 받아 소유권이전에 따른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채납자인 매도자의 ‘명의변경 동의권’이 관허사업 제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13	국세청	관허사업 제한(정지·양도금지 및 등록사항 변경금지) 요구 중 허가관청이 제3자에게 영업허가를 갱신 교부함으로써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는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14	국세청	당구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볼링장업이 관허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5	국세청	치과의사 면허가 관허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6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이 관허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금체납이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같은 법에서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세징수법」 제7조 또는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회답】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같은 법에서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세징수법」 제7조 또는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여부) 관련

[08-0135, 2008.6.25,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통신이용제도과]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의 제한)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는바,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 경영하는 부가통신사업이 위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관허사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경영하는 부가통신사업은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관허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유】

「지방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이하 “관허사업”이라 함)의 주무관청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때에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인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다만, 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만 통신망 구성도를 위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출받은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후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이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관허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은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개인의 영업상 자유를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허가등을 통하여 허용하도록 한 경우에, 지방세를 제납한 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미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허가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영업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국민의 불합리한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서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에서의 관허사업은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에만 한정되어야지 단순한 신고행위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까지 확대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사안의 경우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이 관허사업으로서 “개인의 영업상 자유를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허가 등을 통하여 허용하도록 한 사업”인지의 여부와 관련해서 살펴해보더라도,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하여 전기통신설비 및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추는 것을 요건으로 한 등록제도로 운영하던 것을 현재는 신고제도로 전환하여 아무런 실질적 요건 없이(필요시 통신망 구성도만 제출하도록 함) 신고서만 제출하면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고절차만 거침으로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영업은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부가통신사업의 신고가 일반적인 제한이나 금지를 일정한 요건에 따라 해제하여 주는 행정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경영하는 부가통신사업은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관허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법무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가 규정하는 관허사업의 제한 내용과 적용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2조가 규정하는 “관허사업의 제한”의 내용과 적용기준

【회답】

- 질서법 제52조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②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하여 “관허사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관허사업제한은 새로운 불이익처분이므로, 사전적으로는 과태료의 체납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는 과태료 체납자에게 과태료의 납부를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 의무이행확보 수단입니다.

- 관허사업제한은 과태료체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의 불이익을 가한다는 점에서 비례성에 반하거나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또새로운 불이익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질서법이 정하는 엄격한 요건 하에 최후수단으로서 보충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 그 제한의 내용은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이며, 관허사업제한이 이루어진 후에 당해 과태료가 ‘모두’ 징수된 때에는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나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합니다(질서법 제52조제3항). 다만, 과태료는 질서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관허사업 제한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체납과태료를 완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질서법 부칙 제2항은 관허사업제한에 관한 제5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질서법 시행일인 2008. 6. 22. 이후에 처음부터 질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만 제52조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질서법 시행 전에 발생한 질서위반행위인 경우에도 그 과태료를 질서법 시행후에 질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과한 경우라면 제52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 개인택시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관허사업의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질의요지】

■ 개인택시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관허사업의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개인택시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라서 사

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 이러한 관허사업의 제한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는 과태료체납자에 대한 별개의 제재수단입니다.

법무부 -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전기공사업체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47건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질의요지】

•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전기공사업체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47건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질서법 제52조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②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수 있다”고 하여 관허사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질서법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관허사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당해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사업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모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이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생업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는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사안의 경우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전기공사업체에 대해 질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당해 업체가 체납한 과태료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것이어야 하는바,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관허사업제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의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바 귀 청이 질의한 사안의 전기공사업체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허사업제한 조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 관련 주무관청의 범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의 범위에 국가로부터 허가등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사 및 공단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회답】

• 질서법 제52조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②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관허사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관허사업제한에 있어서 허가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의 관할 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질서법 제52조제2항은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해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질서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취지를 고려하면, 주무관청의 범위는 단순히 행정기관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무를 수행할 권한을 법령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허가등의 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처리하게 된 공사 또는 공단도 질서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행정안전부 - 복합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이 관여사업에 해당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178, 2011. 9. 6.」

【회답】

• 복합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는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복합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신고·허가·인가·동의·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 행정사 신고행위가 관여사업에 해당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2082, 2010. 5. 17.」

【회답】

• 행정사법 제8조에서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사 자격만 가지고 있다 하여 바로 행정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여야만 비로소 새로이 행정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어서 행정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영위하는 행정사업은 지방세법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관허사업제한 대상에 해당된다.

행정자치부 - 공장 설립(변경) 신청행위가 관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자치부 세정-2875, 2004. 9. 3.」

【회답】

• 공장 설립(변경) 신청은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절차적 사실행위이며 이에 대한 승인은 “일정한 행정처분을 거쳐 영위하는 사업”의 허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허사업으로 볼 수 없으나, 공장 등록은 공장을 영위하는 자가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 등록대장에 등재하는 행위로서 공장을 가동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허사업 제한대상에 해당된다.

내무부 - 대표이사의 체납을 원인으로 법인에 대한 관여사업제한 가능 여부

「내무부 세정-13407-531, 1996. 5. 11.」

【회답】

•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등기부에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그 개인 체납액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의 발행 또는 납세의무 승계가 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해 법인에게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없다.

행정자치부 -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관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자치부 세정 13407-자146, 1998. 4. 10.」

【회답】

-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사업이라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40조 제1항의 관허사업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안전행정부 - 채납자인 매도자의 ‘명의변경 동의’ 를 받아 소유권이전에 따른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채납자인 매도자의 ‘명의변경 동의권’ 이 관여사업 제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전행정부 지방세분석과-792, 2013. 5. 10.」

【회답】

- 매도자의 ‘명의변경 동의’는 미준공 건물 매수에 따른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위한 법적 절차로서 행정관청으로서는 매도자의 명의변경 동의 사실의 존재 여부를 판단, 증명하는 행위에 불과한 점,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시행령 별표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자체도 준법률적 행정행위로 보이는 점, 동 규정의 입법취지가 채납자에 대한 인·허가 사업을 제한하여 채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인데 채납액 징수의 효과가 없고 제3자의 권리만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관허사업제한의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 관여사업 제한(쟁지·양도금지 및 등록사항 변경금지) 요구 중 여가관광이 제3자에게 영업여가를 갹신 교부함으로써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는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청 부가46415-825, 2001. 5. 31.」

【회답】

-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증을 사업 양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국세청 - 당구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볼링장업이 관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징세 46101-8233, 1994. 10. 25.」

【회답】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신고체육 시설업인 당구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볼링장업 등은 관허사업제한 대상이 아님.

국세청 - 치과 의사 면허가 관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징세 46101-3763, 1995. 11. 23.」

【회답】

- 치과의사 면허는 치과의사 자격에 대한 면허로서 치과의료사업의 면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치과의사 면허증은 관허사업제한 대상이 아님.

국세청 - 사업자등록 신청이 관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징세 46101-997, 2000. 7. 6.」

【회답】

-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한 관허사업제한 대상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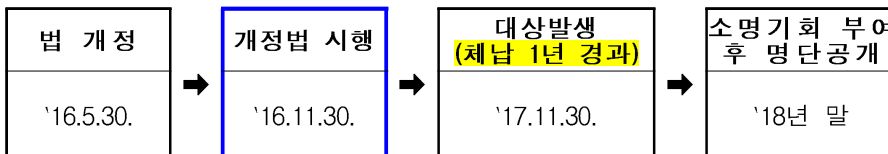
XII. 고액채납자 명단공개

01.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공개

1. 명단공개 도입배경

가. 도입배경

-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은 그간 조세에 비해 간접강제 적용이 소홀하여, 고액·상습 체납자가 양산되는 등 징수율이 저조
- 준조세 성격이 강한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해 명단공개 제도 도입
 - 국민 권익침해 최소화를 위해 법 시행 후 1년 이상 체납자부터 적용



나. 명단공개 개요

- (개념)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영업소 등)과 체납액을 언론,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공개하여 납부를 촉진하는 간접강제 수단
- (대상)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이 1천만원 이상인 자
- (공개방식)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로 공개(「지방세기본법」 §147조)

< 유사 입법사례별 명단공개 제도 현황 >

구분	지방세	국세	관세	4대보험	지방세외수입금
기준	1천만원이상 1년이상 체납	2억원이상 1년이상 체납	3억원 이상 1년이상 체납	일정액*이상 2년이상 체납	1천만원이상 1년이상 체납
근거	지방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고용·산재보험법 등	지방세외수입법

* (건강보험) 1천만원 이상, (연금보험) 5천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 10억원 이상

다. 대상자 선정기준

1) 대상자 선정 기준일 : '18.1.1. 기준

○ 법 시행 후 체납한 자로 '18.1.1. 기준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 납부기한이 법 시행일 전일('16.11.29.) 이전인 체납자는 제외

		'16.11.29.		'18.1.1.
		'18.11.14.		
(적용)	납부기한	1년 이상 체납	절차진행	공개

		'16.11.28.		'18.1.1.
(미적용)	납부기한	1년 이상 체납		미적용

< 지방세외수입법 >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제2조(적용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납부의무자부터 적용한다.

2) 기준금액 : 시·도 기준 “지방세외수입금” 1천만원 이상 체납

○ 지방세외수입금 본세를 기준으로 판단, 가산금·체납처분비 제외

○ 결손 처분한 지방세외수입금 중 징수권 소멸시효 미완성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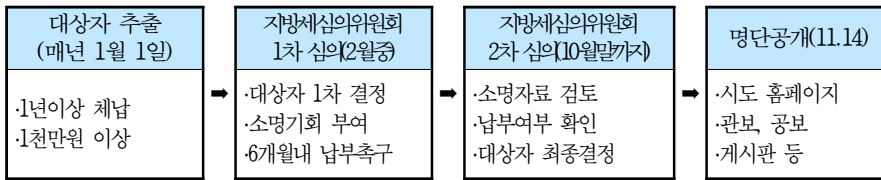
※ (비교) 관허사업제한(법 제7조의2) : 지방세외수입금 + 가산금 + 체납처분비 (결손제외)

라. 대상자 선정 및 공개 제외

1) 대상자 선정 :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로 결정

○ (절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소명기회 부여 및 대상 선정

※ 조세, 4대보험(국세외수입)외 최초 시행에 따른 민원 발생 최소화



2) 공개 제외 : 권리구제가 진행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계류 중 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 불가(참고1)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영 제5조의5)>

제5조의5(채납자 명단공개) ① 법 제7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27.>

1. 체납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집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소명기회 부여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1차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
 -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
 - ※ 주소불명 등 사유로 통지서 반송시 공시송달 실시 후 송달근거 보존
-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2차심의)하고 최종 공개대상자 확정

마. 대상자 선정 및 공개 제외

1) 공개주체

- 시·도는 소속 시·군·구별 공개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 공개

※ 시·군·구를 기준으로 공개시 기준 체납금액 미달로 제도 실효성 저하

2) 공개방식 및 매체

- (공개방식)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도별 공개와 함께 「위택스」에 전국 통합 공개하고, 신규 공개자와 기존 공개자를 구분 관리
- (공개매체) 위택스, 언론, 행안부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 등

➡ 다만 '18년 공개대상자가 극히 소수인 경우는 통합공개 실익 및 자치단체별 개별공개 실시 여부를 추후 세부적으로 검토 예정

참고

지방세외수입 관계법 이의신청 · 행정심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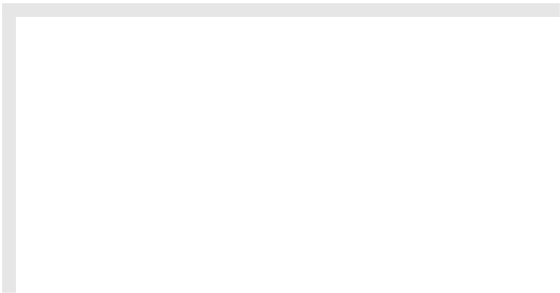
관계 법령상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명문적으로 규정한 현황이며,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제도 운영상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명단공개 제외대상임

순번	법령명	과목	규정절차	관련근거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징금	-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시행규칙 제27조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과징금	이의신청	시행규칙 제33조
4	건설기술 진흥법	과징금	-	-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과징금	-	-
6	건축법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법 제80조 ④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징금	-	-
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과징금	-	-
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법 제55조의2 ③
10	공동주택관리법	과징금	-	-
11	공중위생관리법	과징금	-	-
12	관광진흥법	과징금	-	-
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법 제29조의2 ④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담금	이의신청 심판청구	시행령 제70조의3 ② 법 제134조
15	케도운송법	과징금	-	-
1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과징금	-	-
1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과징금	-	-
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과징금	-	-
19	농지법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법 제62조 ③
2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법 제6조 ③
21	대기환경보전법	부담금	-	-
22	대기환경보전법	과징금	-	-
2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담금	이의신청	법 제11조의5 ①

순번	법령명	과목	규정절차	관련근거
24	도시가스사업법	과징금	-	-
2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부담금	-	-
2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담금	-	-
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과징금	-	-
28	먹는물관리법	과징금	이의신청	시행규칙 제43조 ①
29	모자보건법	과징금	이의신청	시행규칙 제20조
30	물류정책기본법	과징금	이의신청	시행령 제53조 ①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과징금	-	-
3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법 제18조 ⑥
3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과징금	-	-
34	비료관리법	과징금	-	-
35	사료관리법	과징금	-	-
3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과징금	이의신청	시행규칙 제17조
3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과징금	-	-
38	산지관리법	부담금	-	-
3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과징금	-	-
40	석탄산업법	과징금	-	-
41	소방시설공사업법	과징금	이의신청	시행규칙 제11조
4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과징금	-	-
43	수도권정비계획법	부담금	심판청구	법 제17조 ①
4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징금	-	-
45	수산업법	과징금	-	-
46	수산자원관리법	부담금	-	-
47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과징금	-	-
48	식품위생법	과징금	이의신청	시행규칙 제92조 ②
4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과징금	-	-
50	약취방지법	과징금	-	-
5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과징금	-	-
52	약사법	과징금	이의신청	「의약품등의안전에 관한규칙」 제101조 「약사법시행규칙」 제56조
53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과징금	-	-
54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이행강제금	-	-

순번	법령명	과목	규정절차	관련근거
5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	-	-
5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과징금	-	-
57	영유아보육법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심판청구	법 제44조의3 ③ 시행령 제25조의2 ②
58	영유아보육법	과징금	이의신청	시행규칙 제38조의2
5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과징금	-	-
6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법 제10조의3③ 시행령 제43조②
61	위생용품 관리법	과징금	-	-
62	위험물안전관리법	과징금	이의신청	시행규칙 제27조
6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과징금	-	-
6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징금	-	-
6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과징금	-	-
66	의료기기법	과징금	이의신청	시행령 제12조①
67	자동차관리법	과징금	-	-
6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과징금	-	-
6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법 제43조③
7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법 제24조④
7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과징금	-	-
72	전기공사업법	과징금	-	-
73	정보통신공사업법	과징금	-	-
7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과징금	-	-
75	지하수법	부담금	-	-
76	주차장법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법 제32조 ③
77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	이의신청	시행규칙 제11조
78	축산물 위생관리법	과징금	-	-
79	폐기물관리법	과징금	-	-
80	하수도법	과징금	이의신청	시행규칙 제49조 ②
8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담금	-	-
8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과징금	-	-
8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징금	-	-
8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과징금	이의신청	시행규칙 제28조

순 번	법령명	과목	규정절차	관련근거
	관리에 관한 법률			
8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	-



세외수입 각론

I . 과태료

1. 주정차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제32조~제34조), 동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주·정차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제32조~제34조))

4.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88조 제4항 본문 관련)

6.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비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 표 제6호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보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 다.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水管)을 넣는 구멍
 -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5. 부과징수권자

해당 자치단체 시장·지방경찰청장 등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증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증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과태료의 감경기준(제146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감경 전 과태료 금액(원)		감경율 (%)	감경 후 금액(원)
11.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 법 제32조부터 법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 제3항	승합자동차등	90,000 (100,000)	20	72,000 (80,000)
		승용자동차등	80,000 (90,000)	20	64,000 (72,000)
12. 제11호의 경우 외에 법 제32조부터 법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 제3항	승합자동차등	50,000 (60,000)	20	40,000 (48,000)
		승용자동차등	40,000 (50,000)	20	32,000 (40,000)

1. 법 제160조의 위반행위 중 위 표 이외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
2. 제11호와 제12호의 과태료 금액 중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위반을 하는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8. 기타 업무관련 노하우&필요 사항

※자동차 공동명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 제외

: 공동명의자 등 1인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명의자가 부담해야하는 책임이 남아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적용될 수 없음.

2.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 제3항의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의무보험에 가입 하지 않은 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의 1호)

4. 부과기준

○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요약표)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자가용자동차		이륜 자동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대인1	대물	대인1	대물	대인1	대인2	대물
10일 이내	10,000	5,000	6,000	3,000	30,000	30,000	5,000
10일 초과하고 매 1일 초과시마다	4,000	2,000	1,200	600	8,000	8,000	2,000
최 고	600,000	300,000	200,000	100,000	1,000,000	1,000,000	300,000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36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5조제1항(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른	법 제48조제3항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이륜자동차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2) 비사업용 자동차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3) 사업용 자동차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제1호 법 제48조제3항 제1호 법 제48조제3항 제1호	6천원 6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천200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20만원을 넘지 못한다. 1만원 1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4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60만원을 넘지 못한다. 3만원 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8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100만원을 넘지 못한다.
나. 법 제5조제2항(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이륜자동차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법 제48조제3항 제1호	3천원 3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매 1일당 6백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

2) 비사업용 자동차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3) 사업용 자동차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법 제48조제3항 제1호 법 제48조제3항 제1호	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10만원을 넘지 못한다. 5천원 5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넘지 못한다. 5천원 5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넘지 못한다.
다. 법 제5조제3항(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법 제48조제3항 제1호	3만원 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매 1일당 8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100만원을 넘지 못한다

5. 부과징수권자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중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중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기타 업무관련 노하우&필요 사항

☐ 보험가입대상

보험종목	가 입 대 상
자가용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
업무용	개인용 자가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영업용	사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덤프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 의무보험 보상 내용

담보종류	보 상 내 용
대인보험 I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
대인보험 II	대인배상 I 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대물보험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3.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4.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20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호·제5호	50
1) 등록신청대행 의무자가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한 경우		5
2) 등록신청대행기간이 지난 경우		1
가) 10일 이내인 때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나. 법 제8조제3항 또는 법 제58조제8항을 위반하여 전 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7호의2	10
다. 법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호의2	100
라.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호	50
마.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3호	10
바.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4조제2항제4호	30
사. 법 제10조제5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82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4조제3항제1호	30
아.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때 2)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법 제84조제3항제2호	2 1
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까지 나)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2)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2호	5 1 20
차. 법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6호	5

2)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1
카. 법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 수출을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가)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나)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2) 그 밖의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7호	5 1 10
타. 삭제 <2016.2.3.>		
파. 법 제22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9호	100
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예방 또는 해소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3)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0호	50 10 5
거.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1) 기간을 경과한 경우 가) 10일 이내인 경우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법 제84조제2항제11호	5 1

2) 목적을 위반한 경우		50
3)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0
너.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1)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법 제84조제2항제12호	3 1
더.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1) 제8조제2항제7호의 전기·전자장치 중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제8조제2항제18호 중 운행기록계 2) 제8조제1항제5호·제6호, 같은 조 제2항제7호(연료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17호 중 광각 실외후사경 및 같은 항 제17호의2 3) 제8조제2항제11호·제19호 4)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2호(차축은 제외한다), 제3호, 제6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17호(광각 실외후사경은 제외한다) 및 제18호(주행거리계, 운행기록계는 제외한다)	법 제84조제2항제13호	100 30 5 3
러. 법 제30조의3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4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3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조사·보고·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4호	100
머. 법 제31조의2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5호	100
버.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법 제33조제1항·제4항(법 제	법 제84조제3항제3	50

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호	
서. 법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5호의2	10
어. 법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1) 내압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 등 부속장치는 제외한다) 2) 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 등 부속장치	법 제84조제2항제13호의2	100 30
저. 법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84조제1항	500
처. 삭제 <2013.6.17>		
커.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법 제84조제3항제5호·제6호	2 1
터. 법 제45조제8항(법 제45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 제16호	10
퍼.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1) 제작·수리 또는 수입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2) 사용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가) 검정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나) 검정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법 제84조제2항제17호	100 30 1

허.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8호	50
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경우 2)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초과, 180일 이내인 경우 3)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80일을 초과한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2호	2 6 10
노.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2호	20
도. 법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7호	30
로.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1) 연료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2) 그 밖의 안전기준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법 제34조의 구조·장치 변경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법 제84조제2항제19호	20 3
모.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0호	100
보. 법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9호	30
소.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양도·양수 또는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1호	100 10

오. 법 제5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 제21호의2	30
조. 자동차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2호	30
초. 법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1) 법인인 경우 2) 법인이 아닌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3호	70 35
코. 법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4호	30
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8호	20

비고

1. 위 표 차목, 카목1) 및 퍼목2)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은 각각 50만원으로, 아목 및 커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은 각각 30만원으로 한다.
2. 위반행위가 가목2) 및 거목1)에 함께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거목1) 및 너목에 함께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목1)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5. 부과징수권자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증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증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7.4.10.시행>

2. 부과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주차장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법률 제27조 제3항)

4.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13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마.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27조 제3항제1호	10만원
바.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27조 제3항제2호	10만원

5. 부과징수권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증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증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시행령 제13조 관련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8. 기타 업무관련 노하우&필요 사항

○ 단속방법

가.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함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교부

나.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건 별로 차적 조회를 하여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확인
- 사진 촬영 시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가 나오도록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 만한 시설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등 민간에 의한 신고 시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5. 도로법에 의한 과적위반 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도로 및 교량등의 파손의 주범인 운행제한 차량(과적)의 운행 자제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경제적 손실 방지

2. 부과근거

도로법제77조 , 제110조, 제117조, 시행령 제79조,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2항을 위반한 자

4.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105조 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1)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 한다.
- 2) 축하중 및 총중량 관련 운행 제한 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 시 통합하여 계산한다.

나. 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 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경우 1)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2)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3)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4)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5)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6)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	법 제117조 제1항제1호			
		50	70	100
		80	120	160
		150	220	300
		30		
		50		
		100		

우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부터 6)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7)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		
차.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117조 제1항제2호	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카.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요구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7조 제1항제3호	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타. 법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7호	200
파.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3항제3호	50

5. 부과징수권자

국토관리청장, 시·도지사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증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증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8. 기타 업무관련 노하우&필요 사항

- 운전자가 회사의 직원인지 고용주인지 여부를 물어 직접 책임있는 자에게 부과되도록 주의

※ 일당으로 일하는 스페어 기사가 고용주의 강요로 과적을 하는 사례가 있고, 그 결과 운전자가 부당하게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음.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제94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 제9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4.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49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운임·요금 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1항제1호	500	750	1,000
나.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 아이의 운임을 받은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1호	5	10	10
다. 법 제15조제1항(법 제35조와 제 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1항제2호	500	750	1,000

라.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2호	10	15	20
마. 법 제19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3호	50 20	75 30	100 50
바.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익금의 전액을 납부받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1항제3호	500	1,000	1,000
사.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1호	20	30	50
아. 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2호	20	30	50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8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3호	20	30	50
차.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4호	50	75	100
카. 법 제24조제1항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6호	50	50	50
타. 법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증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제3항제3호의2	10	15	20
파.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4호	20	20	20
하. 법 제26조제6호·제7호·제7호의2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4호	10	10	10

거.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4호	50	50	50
너.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출발 전에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	3	5	10
더. 법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6호의2	20	30	50
러. 법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6호의2	50	50	50
머. 법 제45조에 따른 터미널 사용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9호	100	150	200
버. 법 제56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10호	100	150	200
서. 법 제65조제1항(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11호	200	300	500
어. 법 제66조(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1항제4호	500	750	1,000
저. 법 제67조(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1항제5호	500	750	1,000
처.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법 제94조	25	50	50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2항제12호			
커.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13호	50	75	100
터.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14호	50	75	100
퍼.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15호	500	500	500
허. 법 제8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16호	500	500	500

비고: 위 표 제2호나목·라목·처목 및 커목의 경우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부과징수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증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증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시행령 제36조 관련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기타 업무관련 노하우&필요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5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94조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 제8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7. 특정경유자동차검사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대기환경 보전과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자동차관리법 43조의2제1항, 제77조, 자동차검사법 제84조4항제6호, 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특정경유 자동차검사를 하지 않은 재(자동차검사법84조4항제6호)

4.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되,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그 부과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법 제84조제3항제5호·제6호	2 1

5. 부과징수권자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증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증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시행령 제20조 관련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기타 업무관련 노하우&필요 사항

8.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태료

(제외수입/임시적제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 시행령 제2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4.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4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1호	50	100	200
나. 법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법 제43조제1항제1호	400	800	1,500
다. 법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2호	50	100	200
라. 법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3제1항 후단 또는 제5조의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3호	50	100	200
마.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3조제4항제1호	25	50	100
바.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2호의2	200	400	800
사. 법 제10조제3항, 제13조제4항이나 제20조제3항·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3호	800		
아.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4호	300		
자.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및 점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5호	50	100	200
차.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2호	400	800	1,500

카. 법 제11조제4항이나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3호	1,200		
타.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1호	200	400	800
파.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2호	200	400	800
하. 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용기등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6호	50	100	200
거.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3호의2	200	400	800
너.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4호	400	800	1,500
더.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가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지 않거나 권고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4항제2호	25	50	100
러. 법 제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5호	400	800	1,500
머. 법 제23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3조제4항제3호	25	50	100
버. 법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4호	500		
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가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6호	400	800	1,500
어.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공사에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5호	150	300	600
저.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7호	250	500	1,000

5. 부과징수권자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중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중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시행령 제26조 관련」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5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3. 부과대상

-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제25조제1항제1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제25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항)
-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25조제1항제2호의2, 제9조제3항)
-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아니한 자(제25조제1항제2호의3, 제9조의2)
-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제25조제1항제3호의2,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영업장의 내부구획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제25조제1항제4호,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 파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제25조제1항제5호, 제11조)
- 파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파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제25조제1항제6호, 제12조제1항)
-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제25조제1항제6호의1, 제13조제1항 전단)

-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제25조제1항제6호의2, 제13조의2제1항)
- 화재보험에 가입하여할 자에 대한 사항을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
(제25조제1항제6호의3, 제13조의3제3항 또는 제4항)
-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25조제1항제6호의4, 제13조의5제1항)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제25조제1항 제7호, 제14조)

4. 부과기준

[법 53조2항]

- 부과기준 :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가중처분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된 부과기준 적용(시행령 제23조 관련)
- ※ 최초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 계산
- 부과 세부기준(시행령 제23조 관련 별표6)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가. 다중이용업주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1호	50	100	300
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 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2호			
1) 안전시설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	
2) 안전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 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가)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신반(受信盤)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다)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라)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마) 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두어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수가 나오지 않거나 소화약제(消火藥劑)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100	

3)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	
4) 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0	100	300
5)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 놓은 경우		50	100	300
다.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2호의2			
1)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한 경우			50	
2)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경우			50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300
라.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의 기준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설치·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3호	50	100	300
마.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에 따라 내부구획을 설치·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3호의2	50	100	300
바.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4호	50	100	300
사.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5호	50	100	300
아. 법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6호	50		
자. 법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6호의2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10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12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자. 보험회사가 법 제13조의3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6호의3		300	
카. 보험회사가 법 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6호의4		300	
타. 보험회사가 법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6호의4		300	
파. 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7호	50	100	300

5. 부과징수권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증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증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3조 관련

- 3년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최초 위반자
-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일 경우
-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 벌금,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은 경우
-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 또는 해소한 경우
- 그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 도시가스사업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에 해당되는 사항을 위반한 자

4.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령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4조 제2항제1호	120	250	500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4조 제3항제1호	120	250	500
다. 법 제10조의5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	법 제54조 제1항제1호	250	500	1,000
2)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		3,000		
라.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른 사전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2호	200	400	800
마. 법 제10조의10에 따른 비축의무를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비축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2호의2	350	700	1,500
바.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가스공급 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3호	200	400	800

사.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4호	250	500	1,000
아.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3항제2호	70	150	300
자. 법 제11조의2에 따른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5호	200	400	800
차. 시공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의 시공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2항제2호	120	250	500
카. 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자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시공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2항제3호	120	250	500
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54조 제2항제4호	120	250	500
파. 법 제14조제2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내주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2항제5호	120	250	500
하. 법 제14조제3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2항제6호	120	250	500
거. 법 제15조제3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책임감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54조 제2항제7호	120	250	500
너. 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54조 제2항제8호	120	250	500
더.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5호의2	700	1,500	3,000
러.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5호의3	370	750	1,500
머.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이행	법 제54조제1항제	200	400	800

결과를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5호의4			
버. 법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5호의5	200	400	800
서. 법 제17조의4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5호의6	700	1,500	3,000
어.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6호	120	250	500
저. 법 제18조제2항 및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의 공급계획이나 수급계획을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7호	200	400	800
처.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7호의2	120	250	500
커.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8호	250	500	1,000
터. 법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5항제1호	70	150	300
퍼.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4항	120	250	500
허.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9호	370	750	1,500
고.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54조제3항제2호의2	70	150	300
노. 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공급규정을 비치하지 않거나 가스사용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규정의 사본을 교부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3항제2호의3	250	500	1,000
도.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0호	370	750	1,500
로.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54조제3항제3호	70	150	300
모.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3항제4호	120	250	500
보. 법 제26조제1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1호	370	750	1,500
소. 법 제26조제3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법 제54조제1항제12호	1,500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오. 법 제26조제4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그 실시 기록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업무 대행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2) 도시가스사업자의 종사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종사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종사자	법 제54조 제1항제13호	1,000		
조.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54조제3항제4호의2	70	150	300
초.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또는 가스사용자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6항	200		
코.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가 법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3호의2	700	1,500	3,000
토.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행자가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2항제8호의2	500	1,000	2,000
포. 법 제29조제3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4호	120	250	500
호. 법 제30조제1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5항제2호		100	
구. 법 제30조제2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1)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2) 시공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법 제54조 제1항제16호	800	500	
누. 법 제30조의5제2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	법 제54조	800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제3항제5호			
두. 법 제41조제3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54조 제2항제9호	170	350	700
루. 법 제43조제1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시공자	법 제54조 제1항제17호	2,000 500		

5. 부과징수권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증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증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27조 관련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절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3. 부과대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38조제1항의 명령에 따른 보고 중 이 영 제41조의2에 따른 주 단위 보고는 최근 6개월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등록대상				신고대상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법 제5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 4 9 조 제1항 제1호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 4 9 조 제2항 제2호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50만원	300만원	600만원	600만원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주 단위 보고의 경우 (2) 그 밖의 보고의 경우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류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 (2) 그 밖의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	법 제 49조 제1항 제5호	250만원	500만원	750만원	750만원	150만원	250만원	500만원	500만원
4)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 49조 제1항 제6호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나.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법 제9조제2 항에 따른 변경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 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1호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개 시·휴업 및 폐 업의 신고를 하 지 않거나 거짓 으로 신고한 경 우	법 제49조 제2항 제2호	300만원	450만원	600만원	600만원
3) 법 제38조제 1항에 따른 명 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 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가) 보고를 하 지 않은 경우 (1) 주 단위 보고의 경우 (2) 그 밖의 보고의 경우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 기 또는 계산상 오류가 증명서 류로 확인되는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 (2) 그 밖의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5호	200만원 750만원 경고 경고 200만원	350만원 1천300만원 200만원 750만원 350만원	500만원 2천만원 350만원 1천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2천만원 500만원 2천만원 500만원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		750만원	1천300만원	2천만원	2천만원
4) 법 제38조의 2제1항을 위반 하여 석유제품 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않거 나 거짓으로 보 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6호	750만원	1천300만원	2천만원	2천만원

다.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법 제9조의2제 2항에 따른 변 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 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1호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개 시·휴업 및 폐 업의 신고를 하 지 않거나 거짓 으로 신고한 경 우	법 제49조 제2항 제2호	150만원	300만원	600만원	600만원
3) 법 제38조제1 항에 따른 명령 을 위반하여 보 고를 하지 않거 나 거짓으로 보 고를 한 경우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 거짓으로 보 고한 경우 (1) 명백한 오 기 또는 계산상 오류가 증명서 류로 확인되는 경우 (2) 그 밖의 경 우	법 제49조 제1항 제5호	500만원 경고 500만원	1천만원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일반 대리점 ·용제 대리점				주유소·용제 판매소·부생 연료유 판매소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신고대상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1호	250만 원	35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35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2호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3)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4호																

(1) 주 단 위 보고의 경우	경 고	15 0 만 원	200 만 원	250 만 원	경 고	50 만 원	10 0 만 원	150 만 원	경 고	150 만 원	200 만 원	250 만 원	경 고	15 만 원	25 만 원	50 만 원
(2) 그 밖 의 보고의 경우	경 고	50 0 만 원	750 만 원	1천 만 원	경 고	200 만 원	40 0 만 원	600 만 원	경 고	500 만 원	750 만 원	1천 만 원	경 고	50 만 원	100만 원	150 만 원
나) 거짓으 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 류가 증명 서류로 확 인되는 경 우																
(가) 주 단위 보고 의 경우	경 고	15 0 만 원	200 만 원	250 만 원	경 고	50 만 원	10 0 만 원	150 만 원	경 고	150 만 원	200 만 원	250 만 원	경 고	15 만 원	25 만 원	50 만 원
(나) 그 밖의 보고 의 경우	경 고	50 0 만 원	750 만 원	1천 만 원	경 고	200 만 원	40 0 만 원	600 만 원	경 고	500 만 원	750 만 원	1천 만 원	경 고	50 만 원	100만 원	150 만 원
(2) 그 밖 의 경우																
(가) 주 단위 보고 의 경우	15 0 만 원	20 0 만 원	250 만 원	250 만 원	50 만 원	100 만 원	15 0 만 원	150 만 원	15 0 만 원	200 만 원	250 만 원	250 만 원	15 만 원	25 만 원	50 만 원	50 만 원
(나) 그 밖의 보고 의 경우	50 0 만 원	75 0 만 원	1천 만 원	1천 만 원	20 0 만 원	400 만 원	60 0 만 원	600 만 원	50 0 만 원	750 만 원	1천만 원	1천 만 원	50 만 원	10 만 원	150 만 원	150 만 원
4) 법 제38조 의 2 제 1 항 을 위반하 여 석유제 품의 판매 가격을 보	법 제49조 제1항 제6호	50 0만 원	75 0만 원	1천 만 원	1천 만 원	10 0만 원	150 만 원	20 0만 원	200 만 원	50 0만 원	750 만 원	1천만 원	1천 만 원			

고하지 않 거나 거짓 으로 보고 를 한 경우																			

마.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대리점				주유소				판매소			
		1회 위 반	2회 위 반	3회 위 반	4회 이 상 위 반	1회 위 반	2회 위 반	3회 위 반	4회 이 상 위 반	1회 위 반	2회 위 반	3회 위 반	4회 이 상 위 반	1회 위 반	2회 위 반	3회 위 반	4회 이 상 위 반
1) 법 제12조 에 따른 사 업의 개시· 휴업 및 폐 업의 신고 를 하지 않 거나 거짓 으로 신고 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2호	300 만 원	450 만 원	600 만 원	600 만 원	10 0만 원	200 만 원	30 0만 원	300 만 원	100 만 원	150 만 원	200 만 원	20 0 만 원	10 0만 원	150만 원	200 만 원	20 0만 원
2) 법 제32조 제2항 및 법 제33조 제1항 후단 에 따른 변 경 등록을 하지 않거 나 거짓으 로 변경등 록을 한 경 우	법 제49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	750 만 원	1천 300 만 원	2천 만 원	2천 만 원	25 0만 원	350 만 원	50 0만 원	500 만 원	100 만 원	200 만 원	300 만 원	30 0 만 원	10 0만 원	200만 원	300 만 원	30 0만 원
3) 법 제38조 제1항에 따 른 명령을 위 반 하 여	법 제49조 제1항 제5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35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250만 원	50만 원	100만원	150만원	150만 원	25만 원	50만원	75만원	75만원
(1) 주 단위 보고의 경우																	
(2) 그 밖의 보고의 경우		750만 원	1천300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500만 원	750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200만 원	400만원	600만원	600만 원	100만 원	150만원	200만원	200만 원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류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		경고	200만 원	350만 원	500만 원	경고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경고	50만원	100만원	150만 원	경고	25만원	50만원	75만원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		경고	750만 원	1천300만 원	2천만 원	경고	500만 원	750만 원	1천만 원	경고	200만원	400만원	600만 원	경고	100만원	150만원	200만 원
(2) 그 밖의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		200만 원	35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250만 원	50만 원	100만원	150만원	150만 원	25만 원	50만원	75만원	75만원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		750만 원	1천300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500만 원	750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200만 원	400만원	600만원	600만 원	100만 원	150만원	200만원	200만 원

			원			원						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주 단위 보고의 경우 (2) 그 밖의 보고의 경우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류가 증명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 (2) 그 밖의 경우 (가) 주	법 제49조제2항제4호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250만원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경고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경고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250만원

단위 보고 의 경우 (나) 그 밖의 보고 의 경우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사. 주요 석유소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제42조제1호에 따른 용제소비자				제42조제2호에 따른 석유소비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법 제38조제 2항에 따른 명령을 위 반하여 보 고를 하지 않거나 거 짓으로 보 고를 한 경 우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주 단 위 보고의 경우 (2) 그 밖 의 보고의 경우 나) 거짓으 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 류가 증명 서류로 확 인되는 경 우 (가) 주	법 제49조 제2항 제4호								
		5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150 만원	25 만원	50 만원	75 만원	75 만원
		200 만원	400 만원	600 만원	60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200 만원	200 만원
		경고	50	100	150	경고	25	50	75

단위 보고 의 경우 (나) 그 밖의 보고 의 경우 (2) 그 밖 의 경우 (가) 주		경고	만원 200 만원	만원 400 만원	만원 600 만원	경고	만원 100 만원	만원 150 만원	만원 200 만원
단위 보고 의 경우 (나) 그 밖의 보고 의 경우		5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150 만원	25 만원	50 만원	75 만원	75 만원
단위 보고 의 경우 (나) 그 밖의 보고 의 경우		200 만원	400 만원	600 만원	60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200 만원	200 만원

아.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25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 석유관리원 또 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9조제 1항제2호	3백만원

자. 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사용량에 따른 과태료 금액				
		1백리터 미만	1백리터 이상 4백리터 미만	4백리터 이상 1킬로리터 미만	1킬로리 터 이상 20킬 로리 터 미만	20킬로리터 이상
1) 법 제29조제1항 제2호를 위반하 여 가짜석유제품 임을 알면서 사 용하거나 법 제 10조 및 제33조 에 따라 등록·신 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법 제49조 제1항 제3호	2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1천5백만 원	2천만원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임을 알면서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7호	2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1천5백만원	2천만원

비고: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 산정을 위한 가짜석유제품 등의 사용량은 사용자의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탱크 또는 저장탱크의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용자의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탱크 또는 저장탱크의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차. 법 제4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주유소				일반판매소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법 제38조의2 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한 경우 가) 가격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나)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5호	3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경고	3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경고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경고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경고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5. 징수권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중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중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시행령 제47조제1항 관련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12. 소방기본법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및 시행령 제2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명령을 한 경우 이를 위반한 자(제56조제1항제1호, 제13조제4항)
-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기준을 위반한 자(제56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
-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사람(제56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
- 소방활동구역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외의 자가 출입한 경우(제56조제1항제4호)
- ※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제23조제1항)
- 화재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명령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제56조제1항제5호, 제30조제1항)

4. 부과기준

[법 56조 1항]

- 부과기준 : 2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횟수 가산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시행령 제23조 관련 별표9)
- ※위반횟수 계산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

○부과 세부 기준(시행령 제19조 관련 별표3)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4회 이상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	50	100	150	200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1) 위반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	100	150	200	200
		50	100	150	200
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	20	50	100	100
라.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법 제56조제1항	100	150	200	200
마.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	100			
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	50	100	150	200
사.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의 지원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	50	100	150	200

[법 57조 1항]

- 제19조제2항에 다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며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경기도 화재안전조례 6조]

-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감경 : 소방서장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에 따라 2분의 1까지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5. 부과징수권자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증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증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시행령 제19조 관련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호 각 목의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감경의 범위는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사업의 부도·경매 또는 소송 계속 등 사업여건이 악화된 경우로서 과태료 부과권자가 자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위반행위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소방 관계 법령(「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13. 소방시설공사업범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과태료) 및 시행령 제21조

3. 부과대상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폐업 등의 신고,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착공신고 및 중요사항 변경신고, 공사감리자의 지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제40조제1항제1호, 제6조,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
-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자(제40조제1항 제2호, 제8조제3항)
- 하자보수 보증기간동안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소방시설업자(제40조제1항제3호, 제8조제4항)
-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공사업자(제40조제1항4호, 제12조제2항)
-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사업자(제40조제1항제5호, 제14조제1항)
-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공사업자(제40조제1항제6호, 제15조제3항)
-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자(제40조제1항제8호, 제17조제3항)
-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감리업자(제40조제1항제8호의2, 제18조제2항)
-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자(제40조제1항제10호의2, 제20조의2)
-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제외한다)(제40조제1항제10호의3, 제21조의3제2항)

- 도급을 받은자가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할 때 또는 계약해지를 할 때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제40조제1항제13호의2, 제21조의3제4항)
- 시공능력 평가를 받기위해 전년도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 자료제출을 소방청장에게 거짓으로 한 공사업자(제40조제1항제13호의2, 제26조제2항)
-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제40조제1항제14호, 제31조제1항)

4. 부과기준

[법 40조 제1항]

- 부과기준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가중처분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된 부과기준 적용(시행령 제23조 관련)
 - ※ 최초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 계산
- 부과 세부기준(시행령 제21조 관련 별표5)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6조,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호	10	50	200
나.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2호	10	50	200
다.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3호	200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4호	200		
마.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5호	200		
바.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6호			

1) 4일 이상 30일 이내에 보수하지 않은 경우		50		
2) 30일을 초과하도록 보수하지 않은 경우		100		
3)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0		
사. 삭제 <2016.1.16.>				
아.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8호	200		
자.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8호의2	50	100	200
차. 삭제 <2016.1.16.>				
카. 삭제 <2016.1.16.>				
타. 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0호의2	200		
파.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40조제1항제10호의3	200		
하.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1호	50	100	200
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3호의2	200		
너.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4호	50	100	200

5. 부과징수권자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중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중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23조 관련

- 3년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최초 위반자
-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일 경우

-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 또는 해소한 경우
- 그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14.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승강기에 대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승강기의 유지관리 및 승강기 기술자의 교육, 훈련 등을 강화함으로써 승강기의 설치 전·후의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목적이 있다.

2. 부과근거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28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및 건물관리주체(업체에 소속된 기술인력 포함)

4.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1항 제2호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나.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사후관	법 제28조제1항 제1호			

리에 필요한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승강기의 결함을 식별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확보·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을 지연한 경우				
1) 지연기간이 1주 미만인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 지연기간이 1주 이상 2주 미만인 경우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 지연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확보·제공하지 않은 경우		400만원	400만원	400만원
다.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설치사실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1항 제1호의2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라. 법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 제2호의2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마.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승강기의 내부나 외부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항 제1호	10만원	10만원	10만원
바. 법 제15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 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8조제2항 제1호의2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사. 법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항 제2호			
1) 지연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10만원	10만원	10만원
2) 지연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20만원	20만원	20만원
3) 지연기간이 6개월을 초과인 경우		40만원	40만원	40만원
아. 법 제1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항 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자. 법 제16조의3을 위반하여 법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 제2호의3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차. 법 제1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 제3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카. 제16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법 제28조제1항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	제3호의2			
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같은 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또는 점검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 제4호			
1)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2)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또는 점검기록을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 점검기록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50만원	200만원
파.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않거나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 제5호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하.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항 제3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거. 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항 제4호			
1) 경력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경력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지연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10만원	10만원	10만원
나) 지연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20만원	20만원	20만원
다) 지연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40만원	40만원	40만원
너.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8조제2항 제5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더. 법 제21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결과 등 현지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28조제2항 제6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 부과징수권자

시장·군수·구청장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증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증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시행령 제21조 관련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였거나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4조(과태료) 제1항~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4.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제4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1) 수립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수립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우 3) 수립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우	법 제44조제3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 실시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00만원
다.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1항	
1) 실시지연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천만원
2) 실시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4천만원
3) 실시지연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4천만원+(지연 개월 수-12)×100만원. 다만, 7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라.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내진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9호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00만원
마.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3호	100만원
바.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휴업·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4호	100만원
사.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5호	100만원
아.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6호	300만원
자. 법 제11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7호	100만원
차. 법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8호	300만원
카.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9호	300만원
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0호	300만원
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1호	300만원
하.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1호	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
거.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2호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
너. 법 제15조의2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2호	100만원
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3호	300만원
러.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4호	200만원
머.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5호	300만원
버.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6호	300만원
서. 법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7호	300만원
어. 법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 결과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7호의2	300만원
저. 법 제33조의3에 따른 사고경위와 사고원인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8호	300만원

5. 부과징수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증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증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9조 관련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의 과실로 인한 것
-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 또는 해소한 경우
- 그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

16.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판매·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 가스를 공급·사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를 위반한 자

4.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

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액화석유가스사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7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73조 제1항제1호	750	1,300	2,000
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73조 제1항제2호	750	1,300	2,000
다.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17	법 제73조	500	750	1,000

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제2항제1호			
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73조 제2항제2호	300	450	600
마.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55 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경우	법 제73조 제2항제3호	500	750	1,000
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법 제5조제3항 단서, 제8조제2항 단서 또는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호	70	150	300
사.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2호	70	150	300
아.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3호	60	130	250
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법 제25 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4호	70	150	300
차. 자동차 사용자가 법 제28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5호	300		
카.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6호	300		
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7호	70	150	300
파. 가스용품 제조사업자가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8호	70	150	300
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9호	300		
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법 제34조제3항을	법 제73조 제3항제10호	70	150	300

위반한 경우				
너.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1호	70	150	300
더.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발주자에게 내주지 않거나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2호	70	150	300
러. 가스공급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가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3호	70	150	300
머.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의 운전자 2)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제외한다)	법 제73조 제3항제14호	20 100		
버.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5호	100		
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6호	70	150	300
어.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7호	300		
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8호	70	150	300
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1호	50	100	200

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가 법 제3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2호	200		
터.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실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3호	50	100	200
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의 없이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한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4호	50	100	200
허.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용품을 개조한 경우(법 제6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법 제73조 제4항제5호	50	100	200
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않은 경우 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1996년 3월 11일 이전에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배관으로 설치되지 않은 시설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경우 2)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6호	20 50	40 100	60 200
노.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7호	50	100	200
도.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8호	50	100	200
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9호	10		

2)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30일을 초과할 때마다 10만원.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모. 가스공급자가 법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10호	50	100	200
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11호	200		
소.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12호	200		
오.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1)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가)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의 오류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나) 그 밖의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13호	50	100	200
		경고	50	100
		50	100	200
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 발생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4항제14호	40	80	150
초. 액화석유가스 수요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5항제1호	100		
코.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73조 제5항제2호	20	50	100

5. 부과징수권자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증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증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시행령 제34조 관련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

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액화석유가스사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7.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과태료) 및 시행령 제2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제39조제1항제1호, 제5조제2항제1호)
-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제39조제1항제2호)
 - ※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제5조3항제2호)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 변경신고를 기간내(변경하고자하는 날의 1일전)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제39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항)
- 제조소등의 설치자 지위승계신고를 기간(3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제39조제1항제4호, 제10조제3항)
-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변경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제39조제1항제5호, 제11조, 제15조제3항)
- 등록사항 가운데 중요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제39조제1항제6호, 제16조제3항)
-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 접합여부를 정검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자(제39조제1항제7호, 제18조제1항)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39조제1항제8호)

※ 세부기준 :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제20조1항제2호)

○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전하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제39조제1항제9호, 제21조제3항)

4. 부과기준

[법 40조 제1항] [법 39조 1항]

○ 부과기준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횟수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23조 관련 별표9)

※위반횟수 계산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

○ 부과 세부기준(시행령 제23조 관련 별표9)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 승인가한(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한 자 (2) 승인가한(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승인을 신청한 자 (3)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 제1호	50 100 200
나.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이상 위반시	법 제39조제1항 제2호	50 100 200
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날)의 다음날을	법 제39조제1항제3호	30 70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0 200
라.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4호	30 70 200 200
마.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5호	30 70 200 200
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선임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선임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5호	30 70 200 200
사.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변경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변경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6호	30 70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0 200
아.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이상 위반 시	법 제39조 제1항제7호	50 100 200
자.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이상 위반시	법 제39조제1항 제8호	50 100 200
차. 삭제 <2015.12.15.>		
카.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이상 위반시	법 제39조제1항 제9호	50 100 200

5. 부과징수권자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증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증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23조 관련

- 3년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최초 위반자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일 경우
-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 벌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 또는 해소한 경우
- 그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18.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소방시설법 제53조(과태료), 및 시행령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법 제53조(과태료) 1항 관련]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위반자(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1항)
- 파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제53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1항)
-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의무를 위반한 자(제53조제2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자(제53조제2항제3호 및 제20조제4항)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제53조제2항제3호, 제31조 및 제32조제3항)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53조제2항제5호 및 제20조제1항)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제53조제2항제6호 및 제20조제6항)
- 소방안전관리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지도·감독 하지 아니한 자(제53조제2항제7호, 제7의2호 및 제20조제7항)
- 파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무를 위반하여 파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제53조 제2항제7의2호 및 제21조의2제3항)

-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제53조제2항제8호 및 제22조제1항)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장(제53조제2항제9호 및 제24조제1항)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또는 정기적 점검의무를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제53조제2항제10호 및 제25조제2항)
-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제53조제2항제11호 및 제33조제2항)
-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관리업자(제53조제2항제12호 및 제33조제3항)
- 소방실적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방청장에게 거짓으로 제출한 관리업자
(53조제2항제12의2호 및 제33조의2제2항)
-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가 감독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시, 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53조제2항제13호 및 제46조제1항)

4. 부과기준

[법 53조1항]

- 부과기준 :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가중처분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된 부과기준 적용(시행령 제40조 관련)
- ※ 최초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 계산
- 세부기준(시행령 제40조 관련 별표1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1호			
1) 2) 및 3)의 규정을 제외하고 소방시설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지 않은 경우		100		
2)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200		
가)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3)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	
나.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다.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1호		200	
라. 법 제20조제4항·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3호			
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	
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	
3)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4)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0	
마. 삭제 <2015.6.30.>				
바. 삭제 <2015.6.30.>				
사.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5호	50	100	200
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6호	50	100	200
자. 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7호		200	
차.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7호의2	50	100	200
카.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8호	50	100	200

다.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9호	50	100	200
파.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4)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10호		30 50 100 200	
하. 관리업자가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 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11호		200	
거. 관리업자가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12호		200	
너. 관리업자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12호의2		200	
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13호	50	100	200
[법 53조2항] ○ 부과기준 : 2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5. 부과징수권자

소방청장,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중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중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 관련

- 3년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최초 위반자
-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의 과실로 인한 것
-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 또는 해소한 경우
- 그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

19.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98조의2(과태료) 제99조(과태료) 제100조9(과태료) 시행령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건설업자,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용역업자

4.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9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차	2 차	3차 이상
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 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0조 제1호	30만원	50만원	50만원
나. 건설업자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2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다.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호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라.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법 제99조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제2호			
마.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를 명시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99조 제2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바.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99조 제3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사.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4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아.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5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자.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99조 제6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차.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7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8호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타. 건설업자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변경공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3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파. 건설기술자가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100조 제2호	30만원	30만원	30만원
하.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100조 제3호	30만원	30만원	30만원
거.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9조 제9호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너. 법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0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더. 법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1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러. 법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00조 제4호	30만원	50만원	50만원

5. 부과징수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증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증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시행령 제89조 관련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감경하거나 가중한다.

20.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66조(과태료), 시행령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6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4.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30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3조제1항(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의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6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연구개발 등의 지원)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	법 제66조제1항제1호	100	300	500

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하지 않은 경우			
2) 제9조제1항 및 제2항(연구개발 등의 지원)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나)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다)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3) 제9조제1항 및 제2항(연구개발 등의 지원)에 따른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나) 건설폐기물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구분된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부실한 내용의 보관표지판을 설치한 경우	200	300	500
4) 제9조제1항 및 제2항(연구개발 등의 지원)에 따른 중간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경우	500	700	1,000
5) 1)부터 3)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 수집·운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200	300	500
나. 법 제13조제2항(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따른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	법 제66조제1항제2호		

기물을 보관한 경우				
1) 초과량이 허용보관량의 20% 미만인 경우		300	500	700
2) 초과량이 허용보관량의 20% 이상인 경우		500	700	1,000
다. 법 제13조의2(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경우(제63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6조제1항제2호의2	500	700	1,000
라. 법 제14조제3항(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 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용역이행 실적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3호	500	700	1,000
마. 법 제15조제1항(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따라 분리 발주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4호	500	700	1,000
바. 법 제16조제1항(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수탁 계약 등)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않고 위탁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사. 법 제16조제2항(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수탁 계약 등)에 따라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5호	500	700	1,000
아. 법 제16조제3항(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수탁 계약 등)을 위반하여 하나의 계약서로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6호	500	700	1,000
자.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법 제17조제1항(배출자의 신고 등) 전단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6호의2	500	700	1,000
차. 법 제17조제1항(배출자의 신고 등)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카. 법 제18조제1항(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또는 입력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입력 방법에 맞지 않게 입력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1호	50	70	100
타. 법 제18조제1항(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2호	50	70	100

파. 법 제18조제2항(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 3호	50	70	100
하. 법 제21조제7항제3호(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 7호	500	700	1,000
거. 법 제22조제2항(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 허가 등)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 6호	100	200	300
너. 법 제27조제2항(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을 위반하여 해당 건설공사 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 8호	500	700	1,000
더. 법 제27조제3항(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 9호	500	700	1,000
러. 법 제27조제3항(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 7호	100	200	300
머. 법 제27조제4항(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 10호	500	700	1,000
버. 법 제27조제4항(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 8호	100	200	300
서. 법 제28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 4호	50	70	100
어. 법 제29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 11호	100 이상 300 이하	100 이상 300 이하	100 이상 300 이하
저. 법 제31조제3항(권리·의무의 승계 등)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 9호	100	200	300
처. 법 제32조(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 5호	50	70	100
커. 법 제33조제1항(휴업, 폐업 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 12호	300	300	300
터. 법 제33조제1항(휴업, 폐업 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재개업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 11호	100	200	300

퍼. 법 제33조제2항(휴업, 폐업 등의 신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	1,000	1,000	1,000
허. 법 제34조제1항(보고, 검사 등)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6호	50	70	100
고. 법 제34조제1항(보고, 검사 등)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7호	100	100	100
노. 법 제35조의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을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12호	100	200	300
도. 법 제38조제1항(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4호	500	700	1,000
로. 법 제38조제4항(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14호	100	200	300
모. 법 제39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5호	500	700	1,000
보. 법 제42조제1항(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을 위반하여 분담금을 내지 않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6호	500	700	1,000
소. 법 제42조제2항(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15호	100	200	300
오. 법 제42조제3항(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을 위반하여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7호	500	700	1,000
조. 법 제56조의2제1항(교육)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8호	50	70	100

5. 부과징수권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중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중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시행령 제30조 관련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1. 건축법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건축법 제113조(과태료), 시행령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건축법 제11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4.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121조 관련)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19조제3항(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 제1항제1호	50	100	200
나. 법 제24조제2항(건축시공)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 제1항제2호	50	100	200
다. 법 제24조제5항(건축시공)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시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 제1항제3호	50	100	200
라. 법 제24조제6항(건축시공)후단을 위반하여 공사 현	법 제113조	10	20	50

장을 이탈한 경우	제3항			
마. 법 제24조의2제2항(건축시공)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13조 제1항제4호	50	100	200
바. 공사감리자가 법 제25조제4항(건축물의 공사감리)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 제2항제1호	30	60	100
사. 법 제27조제2항(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 제2항제2호	30	60	100
아. 법 제35조제2항(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 제2항제3호	30	60	100
자. 법 제36조제1항(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 제2항제4호	30	60	100
차. 법 제48조의3제1항(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3조 제1항제5호	50	100	200
카.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7조제2항(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 제2항제6호	30	60	100
타. 법 제83조제2항(옹벽 등의 공작물예의 준용)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 제2항제8호	30	60	100
파. 법 제87조제1항(보고와 검사 등)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13조 제2항제9호	30	60	100

5. 부과징수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증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증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시행령 제121조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2.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을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3. 부과대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나.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호	25	50	100
나.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2호	37	75	150
다.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로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3호	75	150	30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2조에 따라 공고한 수로조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4호	50	100	200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로조사성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5호	25	50	100
바.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고 수로도서지를 판매하거나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되지 않은 수로도서지를 보급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6호	25	50	100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 제111조 제1항제7호	6	12	25

거짓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의 신고를 한 경우				
아. 법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8호	7	15	30
자. 법 제46조제2항(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9호	50		
차. 법 제48조(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0호	30		
카. 법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1호	10	20	40
타. 법 제54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로사업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2호	12	25	50
파. 법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3호	25	50	100
하. 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4호	6	12	25
거. 법 제9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5호	25		
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6호	25	50	100
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	법 제111조 제1항제17호	25	50	100

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 101조제7항을 위반하여 토지 등예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8호	25	50	100

5. 징수권자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증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증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시행령 제105조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3. 광업법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광업법 제104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7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1조(권한의 위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광업법 제10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4.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72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6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4조제3항 제1호	30	70	100
2. 법 제42조의2제3항(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4조제2항 제1호	50	100	200
3. 법 제45조에 따른 채굴행위의 지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법 제104조제3항 제2호	30	70	100

기피한 경우				
4. 법 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4조제1항	100	300	500
5. 법 제84조를 위반하여 갭내 실측도와 광업부를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그 부분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2항 제2호	50	100	200
6.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된 서류를 제출 또는 보고한 경우	법 제104조제3항 제3호	30	70	100
7.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4조제3항 제4호	30	70	100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5. 부과징수권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중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중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없음

24. 국토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과태료), 시행령 제1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4.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134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44조의3제2항(공동구의 관리비용 등)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법 제144조 제1항제1호	800만원
2. 법 제56조제4항(개발행위의 허가)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44조 제2항제1호	200만원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0조제1항(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법 제144조 제1항제2호	400만원
4. 법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토지에의 출입 등)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법 제144조 제1항제3호	300만원
5. 법 제137조제1항(보고 및 검사 등)에 따른 검사를	법 제144조	300만원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1항제4호	
6. 법 제137조제1항(보고 및 검사 등)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법 제144조 제2항제2호	300만원

5. 부과징수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증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증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없음

25. 주택법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9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주택법 제10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4.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97조 관련)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업무대행자가 법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한 경우	법 제106조제2항제1호	1,000		
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6조제3항제1호	200		
다. 감리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	법 제106조제3	400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항제2호			
라. 감리자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6조제3항제3호	400		
마.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회사의 협력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6조제2항제2호	1,000		
바.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법 제106조제3항제4호	500		
사.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6조제1항제1호	1,000		
아.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토지를 임대한 경우	법 제106조제1항제2호	1,000	1,500	2,000
자.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6조제3항제5호	100	200	300

5. 부과징수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중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중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시행령 제97조 관련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6.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폐기물관리법위반 제68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4(과태료의 부과기준)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 제68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4.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꽂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호	5	5	5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70	70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나. 법 제8조제3항(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2호	30	70	100
다. 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호			
1) 제7조제1항(국민의 책무) 및 제2항에 따른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한 경우		500	700	1,000
다) 운반차량의 차체를 도색하지 않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마)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않은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300	500	700
바) 폐기물을 누출 또는 흘날리게 하거나 침출수를 유출시킨 경우	300	500	700
사) 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	300	500	700
아)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않고 운반한 경우	200	300	500
자) 그 밖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2)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300	500	700
(3) 지정폐기물의 경우	400	600	1,000
(4) 삭제 <2014.12.31.>			
2) 제7조제1항(국민의 책무) 및 제2항에 따른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보관기간을 초과한 경우			
(1) 1일 이상 1개월 미만 초과 시	200	400	600
(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초과 시	400	600	800
(3) 3개월 이상 초과 시	1,000	1,000	1,000
나)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2)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100	200	300
(3) (1) 및 (2)를 제외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4)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다)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료폐기물 보관용기의 경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전용용기를 말한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2)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100	200	300
(3) (1) 및 (2)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4)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라)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100	200	300
마)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바) 그 밖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2)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300	500	700
(3) 지정폐기물의 경우		400	600	1,000
3) 제7조제1항(국민의 책무) 및 제2항에 따른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매립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		500	700	1,000
나) 소각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		400	600	800
다)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재활용한 경우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라) 그 밖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4) 폐기물처리 신고자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수탁받은 폐기물을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400	600	800
라. 법 제13조의5제2항(재활용 제품 또는 물	법 제68조	500	700	1,000

질에 관한 유해성기준)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경우	제1항제9호			
마. 법 제14조제7항(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2호	100	200	300
바. 법 제15조제1항(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2)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68조 제3항제3호	10 20 50	20 30 70	30 50 100
사. 법 제15조의2제1항(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4호	50	70	100
아.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2	50	70	100
자.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2	300	600	1,000
차. 법 제17조제1항제1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호	300	300	300
카.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않고 위탁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 제1호의2	100	200	300
타.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3	300	600	1,000
파. 법 제17조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	법 제68조	100	200	300

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2항제5호			
하. 법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 제1호의3	100	200	300
거.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나. 법 제17조의3제2항(폐기물분석전문기관 의 준수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 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4			
1)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 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2) 의뢰받은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다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		500	700	1,000
3)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시료의 채 취 및 시험·분석을 실시한 경우		500	700	1,000
4) 시료의 채취 또는 시험·분석 후 시료채 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에 기록하지 않 거나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5)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에 근무하 게 한 경우		300	500	700
6)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	400	600
더. 삭제 <2016. 7. 19.>				
러. 법 제18조제3항(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을 입력하지 않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 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5	500	700	1,000
머.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 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 실하게 입력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3	50	70	100
버. 법 제19조제1항(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6호	300	300	300
서.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법 제68조	100	200	300

않은 경우	제2항제7호			
어. 법 제25조제9항제3호(폐기물처리업)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능력,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을 초과하여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을 위탁받은 경우 1) 50퍼센트 미만 초과 시 2) 50퍼센트 이상 초과 시	법 제68조 제1항 제3호	300 500	500 700	700 1,000
저. 법 제25조제9항제4호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1) 위탁계약서의 작성·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않은 경우 나) 운반비·처분비·재활용비 또는 운반·처분 또는 재활용 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다) 운반비 및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한 경우(배출자, 수집·운반업자와 처분업자 또는 재활용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 외에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나)의 내용 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마) 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2)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수집·운반한 경우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를 기한 내에 사후정산하지 않은 경우 4) 위탁받은 폐기물을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을 말한다) 5) 삭제 <2016.1.19.> 6)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3호	500 500 500 300 500 300 500 500 300	700 700 700 500 700 700 700 700 700	1,000 1,000 1,000 700 1,000 700 1,000 1,000

처. 법 제25조의2제1항(전용용기 제조업)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3호의2	200	400	600
커. 법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1) 등록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2) 허위로 작성된 검사결과서를 제공한 경우 3) 전용용기를 등록된 보관창고 외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4)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3호의3	500	700	1,000
터. 법 제29조제4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5호	100	100	100
퍼. 법 제31조제1항(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않은 경우 1)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다) 바닥재가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라)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2) 1) 외의 중간처분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4호	200	500	1,000
		200	500	1,000
		200	500	600
		300	500	1,000
		300	500	1,000
		700	1,000	1,000

나) 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복토한 경우		400	600	1,000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500	700	1,000
4) 재활용시설 중 시멘트 소성로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5) 4) 외의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6)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300	500	1,000
7)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허. 법 제34조제1항(기술관리인)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5호	300	500	1,000
고. 법 제35조제1항(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6호	50	70	100
노. 법 제36조제1항(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7호	100	100	100
도. 법 제37조제1항(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9호			
1)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300	300	300
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100	200	300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경우		100	200	300
4)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우		100	200	300
로. 법 제38조제1항(보고서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	법 제68조 제3항제8호	50	70	100

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68조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모.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68조 제2항 제9호의2	100	200	300
보.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법 제68조 제1항제6호	300	600	1,000
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8조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8조 제2항 제9호의3	100	200	300
오.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9호	50	70	100
조.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 제9호의4	100	200	300
초. 법 제39조제1항(보고·검사 등)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0호	50	70	100
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1호	100	100	100
토. 법 제40조제1항(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6호의2	1,000	1,000	1,000
포.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0호	300	300	300
호.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8호	1,000	1,000	1,000
구.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2호	100	100	100
누. 법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3호	100	100	100
두. 법 제46조제6항(폐기물처리 신고)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1호			
1) 신고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은 경우		100	200	300
3)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100	200	300
4)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100	200	300
5)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탁처리 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00	200	300
6)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0	50	100
루.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0호	500	700	1,000
무. 법 제50조제1항(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 관리 등)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4호	100	100	100

5. 부과징수권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중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중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시행령 제38조의 4 관련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7.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제121조, 제122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않은 자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1조, 제122조)

4.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규칙 제50조 관련)

게을리한 기간	과 태 료	
	제122조 위반	제121조 위반
7일미만	10,000원	20,000원
7일이상 1월미만	20,000원	40,000원
1월이상 3월미만	30,000원	60,000원
3월이상 6월미만	40,000원	80,000원
6월이상	50,000원	100,000원

제121조(과태료) 시·읍·면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22조(과태료)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부과징수권자

시장·구청장 또는 시·읍·면의 장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증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증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없음

28.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건설기계의 등록·검사·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 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제44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제4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4.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19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1호	20만원	30만원	50만원
나.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법 제44조			

으로 신고한 경우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2호	20만원 2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 과하는 경 우 3일 초 과 시마다 1만원을 가 산한다)	30만원 3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 과하는 경 우 3일 초 과 시마다 2만원을 가 산한다)	50만원 5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 과하는 경 우 3일 초 과 시마다 3만원을 가산한다)
다.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3호	20만원	30만원	50만원
라.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1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마.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않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2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바.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2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사.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3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아. 법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4호	40만원 3만원 (신고기간	50만원 5만원 (신고기간	50만원 7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 과하는 경 우 3일 초 과 시마다 1만원을 가 산한다)	만료일부터 30일을 초 과하는 경 우 3일 초 과 시마다 2만원을 가 산한다)	만료일부터 30일을 초 과하는 경 우 3일 초 과 시마다 3만원을 가산한다)
자.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5호	3만원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 과하는 경 우 1일 초 과 시마다 1만원을 가 산한다)	5만원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 과하는 경 우 1일 초 과 시마다 2만원을 가 산한다)	7만원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 과하는 경 우 1일 초 과 시마다 3만원을 가 산한다)
차.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번호의 새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4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카.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장치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1) 제10조의2제2항제7호 중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같은 항 제18호 중 주행거리계·운행기록계 2) 제10조의2제1항제5호·제6호, 제10조의2제2항제1호·제4호·제5호, 제7호(최고속도제한장치는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 제12호·제13호 및 제20호	법 제44조 제2항제5호	100만원 30만원	10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3) 제10조의2제2항제10호·제11호 및 제19호		5만원	10만원	20만원
4) 제10조의2제1항제7호, 제10조의2제2항제2호·제3호·제6호,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주행거리계·운행기록계는 제외한다) 및 제21호		3만원	5만원	10만원
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6호	2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3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가산한다)	5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을 가산한다)
파. 법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7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하. 법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8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거.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너.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정없이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6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더.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9호	40만원 3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	50만원 5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	50만원 7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

		과하는 경 우 3일 초 과 시마다 1만원을 가 산한다)	과하는 경 우 3일 초 과 시마다 2만원을 가 산한다)	과하는 경 우 3일 초 과 시마다 3만원을 가 산한다)
러.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신 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 고를 한 경우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9호의2	40만원 3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 과하는 경 우 3일 초 과 시마다 1만원을 가 산한다)	50만원 5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 과하는 경 우 3일 초 과 시마다 2만원을 가 산한다)	50만원 7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 과하는 경 우 3일 초 과 시마다 3만원을 가 산한다)
머.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 10호	40만원 3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 과하는 경 우 3일 초 과 시마다 1만원을 가 산한다)	50만원 5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 과하는 경 우 3일 초 과 시마다 2만원을 가 산한다)	50만원 7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 과하는 경 우 3일 초 과 시마다 3만원을 가 산한다)
버. 법 제25조의3에 따른 건설기 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 우 1)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7호			

가)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해당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여 대여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나) 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가용 또는 미등록건설기계를 대여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5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건설기계를 정비한 경우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나)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부품, 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40만원	50만원
다) 법 제25조의3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서 발급 및 정비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0만원	50만원	70만원
3) 법 제2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건설기계의 매수인에게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와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4) 건설기계폐기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5조의3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나) 법 제25조의3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사항이 건설기계등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				
서.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 둔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2호	5만원	10만원	30만원
어.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3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비고

- 제2호나목2), 아목2), 자목, 타목, 더목2), 러목2) 및 머목2)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제2호나목2)의 경우: 20만원
 나. 제2호아목2), 자목, 타목, 더목2) 및 러목2)의 경우: 40만원
 다. 제2호머목2)의 경우: 30만원
 라. 삭제 <2016. 7. 19.>
- 제2호나목 및 타목의 과태료는 위반 건설기계 대수마다 부과되, 같은 위반사항으로 같은 날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합산한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과태료 금액을 50만원으로 한다.

5. 부과징수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증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증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시행령 제19조 관련

부과권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29. 건설기술관리법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과태료),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건설업자,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용역업자

4.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건설기술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1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나. 사용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2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3호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라. 건설기술자가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	50만원	50만원	50만원

	4호			
마. 법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1)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 만인 경우 3)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변 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4) 변경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91 조제2항제 5호	10만원 30만원 50만원 200만 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 200만 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 200만 원
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 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 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 조제2항제 6호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사.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 양도 또는 합 병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 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 조제2항제 7호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아. 법 제3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 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에 건설기술용역 업 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33조에 따라 건설기 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91 조제2항제 8호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자.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에 상호를 바꾸어 건설기술용역을 수주한 경 우 1) 수주 건수가 1건인 경우 2) 수주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법 제91 조제2항제 9호	50만원 100만 원	50만원 100만 원	50만원 100만 원
차.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해당 건설기술 용역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 조제2항제 10호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카.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 를 하지 않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 조제2항제 11호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공사 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경 우	법 제91 조제1항제 1호	250만 원	375만 원	500만 원
파.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91 조제1항제 2호			

1)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2)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750만 원	750만 원	750만 원
3) 제출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 만원	1,000 만원	1,000 만원
4)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000 만원	1,000 만원	1,000 만원
하.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 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3호	250만 원	375만 원	500만 원
거.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공사 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4호	250만 원	375만 원	500만 원
너.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12호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5. 부과징수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증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증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시행령 제121조제1항 관련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0. 공인중개사업법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공인중개사법 제51조를 위반한 자

4.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51조제2항·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에서 규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51조제2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않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 제1호	400만원
2)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	법 제51조제2항 제1호의2	

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였으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400만원
나) 중개대상물 설명의 근거자료는 제시하였으나,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경우		400만원
다)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3)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 제5호의2	
가)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20만원
나)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		30만원
다)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		50만원
라)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초과인 경우		100만원
4) 거래정보사업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 제6호	200만원
5)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 제7호	300만원
6) 법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 제8호	400만원
7) 법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 제8호의2	400만원
8) 법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 제9호	200만원

나. 법 제51조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3항 제1호	30만원
2)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	법 제51조제3항 제2호	50만원

은 경우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3)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법 제51조제3항 제2호의2	50만원
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4)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법 제51조제3항 제3호	30만원
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	법 제51조제3항 제4호	20만원
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		
우			
6) 법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	법 제51조제3항 제5호	30만원
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		
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	하지 않은 경우		
7) 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	중개사	법 제51조제3항 제6호	30만원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공		
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8)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	법 제51조제3항 제7호	50만원
지 않은 경우			
9)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50만원
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문자를	사용한 경우		

5. 부과징수권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중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중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시행령 제38조 제1항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31. 공중위생관리법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제18조, 시행령 제1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공중위생관리법 제 2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4.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

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가.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욕수 중 원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2	100
나.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욕수 중 욕조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2	70
다. 법 제4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1호	50
라. 법 제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2호	50
마. 법 제4조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3호	30
바. 법 제4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4호	30
사.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2호	50
아.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3호	50
자.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5호	70
차.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4호	100
카.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5호	100
타. 법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6호	70

파.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2 항제6호	20
하. 법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2조제3 항	50

5. 부과징수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중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중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시행령 제11조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2. 금연구역흡연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자

4.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33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9조제7항(금연을 위한 조치)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제 3항	10	10	10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5	5	5
3)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5. 부과징수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증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증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시행령 제33조 제1항 관련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3. 대기환경보전법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를 위반한 자

4.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방안에 따라 냉매를 적절하게 관리·회수·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1호	100	100	100
나. 법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1호의2	60	80	100
다. 법 제31조제1항제3호나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1호	200	200	200
라.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 상황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1호	100	200	300
마.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3호	200	200	200
바.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4호	200	200	200
사. 법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4호의2	200	200	200
아.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5호	100	150	200
자.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1호	200	300	500
차.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2호	300	300	300
카.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2호	60	80	100
타. 법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한 경우	법 제94조 제1항	1,000	1,000	1,000
파. 법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한 경우	법 제94조 제1항	500	800	1,000
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면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가루 상태 물질을 운송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6호	120	160	200
거.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3호	60	80	100
너. 법 제44조제2항 또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7호	60	80	100
더. 법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검사·측정을 않은 경	법 제94조	200	200	200

우 또는 검사·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제4항제8호			
러.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3호의2	100	100	100
머.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3호의3	100	100	100
버. 법 제51조제5항(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9호	100	150	200
서.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3호	300	300	300
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과 부품결함 현황 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10호	100	150	200
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4호	50	100	300
처. 법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법 제94조 제5항제5호	5	5	5
커. 법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11호	100	150	200
터. 법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6항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 마다		1		
퍼. 법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6호	60	80	100
허. 법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전문정비사업자	법 제94조 제5항제6호의2	60	80	100
고. 법 제68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12호	100	150	200
노. 법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7호	60	80	100
도. 법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13호	100	150	200
로. 법 제74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14호	100	150	200
모. 법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2호	200	300	(3차) 400 (이상) 500

보. 법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8호	60	80	100
소.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9호	60	80	100

비고: 위 표 제2호터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한도액은 20만원으로 한다.

5. 부과징수권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증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증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시행령 제 67조 관련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4. 먹는물관리법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먹는물관리법 제61조(과태료) 및 시행령 제2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먹는물 관리법 위반자 (먹는물관리법 제61조 제1항,제2항)

4. 부과기준

가. 먹는물관련영업자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 공통사항				
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7호	50	70	100
나)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10호	80	90	100
2) 먹는샘물등 및 수처리제의 제조업자				
가)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5호	50	70	100

나)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6호	50	70	100
3) 정수기 제조업자				
가)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5호	50	70	100
나)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6호	50	70	100
다) 법 제44조에 따라 소비자 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1조제1항 제2호	150	230	300
4) 정수기 수입판매업자				
법 제44조에 따라 소비자 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1조제1항 제2호	150	230	300

나.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관리자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1호	50	70	100
2) 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관리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2호	50	70	100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7호	50	70	100
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10호	80	90	100

다. 샘플등의 개발의 가허가를 받은 자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1호	50	70	100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7호	50	70	100

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1)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1호	150	230	300
2) 법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2	50	70	100

마.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1조 제2항 제3호	50	70	100

바.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단위: 만원)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우	법 제61조제2항 경 제4호	50	70	100

사. 먹는샘물등의 제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제조업자가 직접 제조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를 포함한다)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5호	50	70	100

아.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용기 제조업자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6호	50	70	100

자. 검사기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7호	50	70	100
2) 법 제43조제10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8호	80	90	100

차.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관계인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7호	50	70	100

카.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법 제43조제11항에 따른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9호	50	70	100

5. 부과징수권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중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중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21조 관련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의 과실로 인한 것
-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 벌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 또는 해소한 경우
- 그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35.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실측설계·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3. 부과대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부과기준

[별표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가. 법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2호의2	100
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호	50
다.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2호	50
라. 법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2호의3	100
마.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처분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3호	50
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4호	100

사.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5호	100
아.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6호	50
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7호	100
차.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8호	50
카.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9호	50
타.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0호	50

5. 징수권자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증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증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시행령 제31조 제2항 관련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2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8. 기타 업무관련 노하우&필요 사항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2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6. 물류정책기본법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물류정책기본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물류현황조사,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자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중 중요한 변경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으나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이 취소되었으나 지정표시를 계속 사용한 자

4. 부과기준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제1항 관련)

위반 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의 금액
1. 법 제7조제2항, 제11조제3항(법 제1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5조제1항(법 제1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	법 제73조제1항제1호	150만원

료를 제출한 경우(제7조제2항제3호, 제11조제3항제3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2.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2	변경등록 신청 기한으로부터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원, 10일 초과 3개월 이하 지연 시 30만원에 1일당 1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3개월 초과 지연 시 150만원
3. 법 제45조에 따른 사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제1항제2호	사업의 승계 신고 기한으로부터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원, 10일 초과 3개월 이하 지연 시 30만원에 1일당 1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3개월 초과 지연 시 150만원
4. 삭제 <2015.12.22.>		
5.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경우	법 제73조제1항제3호	200만원
6. 법 제60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 표시를 계속 사용한 경우	법 제73조제1항제4호	200만원

5. 부과 징수권자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중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중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없음

37. 민방위기본법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제5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안내표지판이나 유도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경우 1) 훼손한 경우 2) 제거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1호	15만원 25만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위반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2) 위반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2호	20만원 30만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위반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2) 위반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2호	10만원 20만원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위반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2) 위반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2호	5만원 10만원 10만원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3호	10만원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방위대 동원 명령에 불응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호	20만원

5. 부과징수권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증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증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민방위 기본법 과태료 경감 및 가중처분기준

위반유형	기준액	경감기준	가중기준
교육훈련 불응	10만원	- 유예·면제 및 자체교육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	- 연속 2회이상 상습적으 로 불참한 경우 50%

		참한 경우 50% - 재산세비과세 대상자 등 생활 형편이 어려운 경우 50% - 천재지변, 병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교육을 불참한 경우 50%(최소 5만원)	- 당초부터 과태료로 해결하려하는 등 고의적으로 불참한 경우 50% - 대리참석의 경우 50% (최대15만원)
명령 불복종자	10만원	- 명령불복종 사실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경우 50% - 일시적이거나 경미한 불복종의 경우 50%(최소 5만원)	- 고의적 상습적으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 50% - 음주.소란으로 인해 교육훈련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0% - 다중의 명령불복종을 선동하는 경우 50%(최대15만원)
통지서 미전달	10만원	- 통지서 전달자가 불의의 사고로 전달치 못하였을 경우 50%(최소 5만원)	- 수령한 통지서를 의도적으로 본인에게 전달치 아니한 경우 50%(최대15만원)

8. 기타 업무관련 노하우&필요사항

경기도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라 이의제기 등 쟁송에 대비 교육불참자의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수령증 등 3매 확보 후 과태료 부과대상선정

38.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40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자

4. 부과기준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해당 법조문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 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 나. 이 과태료 부과기준이 위반행위의 동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이 기준과 다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다. 이 법을 위반한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기준 금액

가.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제3항제1호	25만원
나.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표시나 광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1) 1회 위반한 자 2) 2회 위반한 자 3) 3회 이상 위반한 자	법 제40조제1항제1호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다.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된 자	법 제40조제2항제1호	700만원
라.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양도·합병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제3항제2호	100만원
마.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제3항제3호	50만원
바.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자(법 제36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조문의 처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1) 임원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자본금의 변경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자	법 제40조제2항제2호	25만원 100만원 100만원 400만원
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1)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1회 위반한 자 나) 2회 위반한 자 다) 3회 이상 위반한 자	법 제40조제2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2)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조사·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800만원 800만원
아. 법 제20조제1항제3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전화·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한 자 1) 부동산개발업자나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 가) 1회 위반한 자 나) 2회 위반한 자 다) 3회 이상 위반한 자 2) 부동산개발업자의 임직원,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의 임직원 가) 1회 위반한 자 나) 2회 위반한 자 다) 3회 이상 위반한 자	법 제40조제1항제2호	1천만원 1천500만원 2천만원 500만원 700만원 1천만원
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1) 1회 위반한 자 2) 2회 위반한 자 3) 3회 이상 위반한 자	법 제40조제2항제4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차. 법 제2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법 위반행위의 당사자 1) 1회 위반한 자 2) 2회 위반한 자 3) 3회 이상 위반한 자	법 제40조제2항제5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카. 법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자료·물건을 제출한 자 1)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 가) 1회 위반한 자 나) 2회 위반한 자	법 제40조제2항제6호	100만원 250만원

다) 3회 이상 위반한 자 2)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물건을 제출한 때		500만원 1천만원
타. 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사유서를 제출한 자	법 제40조제3항제4호	
1)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25만원
2)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자		50만원
3)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100만원
4) 거짓 사유서를 제출한 자		200만원

5. 부과징수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증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증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시행령 제26조 제3항 관련

이 법을 위반한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8. 기타 업무관련 노하우&필요 사항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해당 법조문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39. 부동산거래신고위반에따른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정착시키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동산투기 및 탈세방지 도모

2. 부과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8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자

4. 부과기준

1. 일반기준

신고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28조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과태료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신고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
2) 신고가격이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700만 원

3) 신고가격이 2억원 초과 2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900만 원
4) 신고가격이 2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1,100만 원
5) 신고가격이 3억원 초과 3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1,300만 원
6) 신고가격이 3억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	1,500만 원
7) 신고가격이 4억원 초과 4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1,700만원
8) 신고가격이 4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900만원
9) 신고가격이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	2,100만원
10) 신고가격이 6억원 초과 7억원 이하인 경우	2,300만원
11) 신고가격이 7억원 초과 8억원 이하인 경우	2,500만원
12) 신고가격이 8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2,700만원
13) 신고가격이 9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2,900만원
14) 신고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3,000만원

비고	
1) 부동산 매매계약의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신고사유 발생연도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신고가격으로 한다.	
2)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신고가격이 해당 부동산등의 분양가격 미만인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신고가격으로 한다.	

나. 법 제28조제2항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가)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1)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2)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나)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1)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2)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1호	10만원 25만원 50만원
2) 법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법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2호	400만원
3) 법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법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3호	400만원
4)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4호	500만원

비고
“신고 해태기간”이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신고 해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2)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신고의무를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법 제28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과 태 료
법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또는 법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2
2)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4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라. 법 제28조제4항 관련

위 반 행 위	과 태 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가)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나)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5만원
다)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2)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가)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나)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
다)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00만원
3)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비고	
1) "신고 해태기간"이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기간은 신고 해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나)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신고의무를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취득가액은 신고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신고사유 발생연도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 또는 신고서에 취득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마. 법 제28조제5항 관련

위 반 행 위	과 태 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의 취득신고 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등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가)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5만원
나)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다)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5만원
2)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가)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나)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만원
다)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45만원
3) 신고 해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가)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0만원
나)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다)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70만원
4) 신고 해태기간이 1년 초과 3년 이하인 경우	
가)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40만원
나)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다)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80만원
5) 신고 해태기간이 3년 초과한 경우	
가)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나)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80만원
다)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
6)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비고	
1) “신고 해태기간”이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기간은 신고 해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나)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신고의무를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취득가액은 신고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신고사유 발생연도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 또는 신고서에 취득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5. 부과징수권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중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중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사실을 자진신고자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하여 허위신고가 적발되도록 한 경우→ 전액 면제
- 신고관청의 조사 후에 신고하여 허위신고가 적발되도록 한 경우→ 50% 감경

※ 과태료 부과 감면제외사유

- 자진 신고하려는 부동산등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된 경우
- 자진 신고한 1날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3회를 초과하여,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

8. 기타 업무관련 노하우 & 필요사항

○ 다수거래인의 과태료 부과

- 매도자가 2명이고 매수자가 1명인 경우. 매도자 2명은 거래지분에 따라 과태료를 분담하여 부과하고, 매수자 1명은 매도자 2명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합을 부과

○ 공동중개 시 과태료 부과

- 공동중개를 한 경우 해태, 허위 등에 따른 과태료는 확정된 과태료 전부를 각각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동일하게 부과

40. 소음·진동관리법 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소음·진동관리법제60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를 위반한 자

4.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1호	60	80	100
나.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	100	140	200

다.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1호	200	250	300
라.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2호	150	200	250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2			
1) 소음원이 공장, 사업장, 확성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외의 공사장인 경우		20	60	100
2) 소음원이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인 경우		60	120	200
바. 법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3			
1) 신고 대상 공사장인 경우		100	140	200
2) 변경신고 대상 공사장인 경우		60	80	100
사.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4	100	140	200
아.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3호	100	140	200
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5호	10	10	10
차.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35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6호			
1)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dB(A) 미만 초과한 경우		20	20	20
2)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dB(A) 이상 4dB(A) 미만 초과한 경우		60	60	60
3) 배기소음허용기준을 4dB(A) 이상 초과하거나 경적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00	100	100
4)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소음기(배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소음덮개를 훼손하거나 떼어버린 경우		100	100	100
5)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		60	60	60
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7호	10	10	10
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전제품에 저소음	법 제60조제1항제3호	75	150	300

표지를 부착한 경우				
파.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4호	75	150	300
하.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8호	60	80	100
거.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9호	60	80	100
너. 법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10호	60	80	100

5. 부과징수권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증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증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시행령 제15조 관련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4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系)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 시행령 제81조, 시행령 제8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4.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제8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 제1호	500	700	1,000
나.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 제2호	500	700	1,000
다. 법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 제1호			
1) 물로만 세차한 경우		50	50	50
2) 합성세제, 물비누 등으로 세차하여 현저히 수질오염을 유발한 경우		100	100	100
라. 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 제2호의2	500	700	1,000
마.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1호	300	300	300
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 제2호	100	100	100
사. 법 제3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법 제82조 제3항 제3	60	80	100

아니한 경우	호			
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 제3호	200	600	1,000
자.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2호	100	200	300
차. 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200	200	200
카. 법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4호	100	150	200
타.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 제4호	200	600	1,000
파. 법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4호의2	100	200	300
하.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 제5호	200	600	1,000

거.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5호	100	200	300
너.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 제4호	60	80	100
더. 법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6호	100	200	300
러. 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 제6호	1,000	1,000	1,000
머. 법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7호	100	200	300
버.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8호	100	200	300
서. 법 제6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의 경우	법 제82조 제1항 제7호	500	700	1,000
어. 법 제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의 경우	법 제82조 제1항 제7호	200	600	1,000

저. 법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 제5호	60	80	100
처.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 제6호	60	80	100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중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중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시행령 제85조 관련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42.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식품위생법 제101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식품위생법 제101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4.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67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 영양표시를 전부 하지 않은 경우 2) 영양성분 표시 시 지방(포화지방 및	법 제101조 제1항제1호	200 100	400 200	600 300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성분 표시 시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	40	60
4)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허용 오차범위를 넘은 경우				
가)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50	100	150
나)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20	40	60
다. 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전자적 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하지 않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1항제1호의2			
1)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표시 상의 나트륨 함량과 다른 값을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사항에 표시한 경우		100	200	300
나) 그 밖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10	20	30
라. 영업자가 법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1호의3	300	400	500
마. 삭제 <2016. 7. 26.>				
바. 법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3호	200	300	400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0	40	60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아. 법 제40조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법 제101조제2항제1호	10	20	30
		50	100	150
		30	60	90
		30	60	90
		20	40	60
		100	200	300
자. 법 제41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2항제1호	20	40	60
		10	20	30
차. 법 제41조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2항제1호	20	40	60
카.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2호	10	20	30
타.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4호	30	60	90
파.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3호			
		300	300	300
		100	200	300
하. 법 제48조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1조제	300	400	500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2항제6호			
거.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 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3항제4호	30	60	90
너. 법 제4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5호	100	200	300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7호	20	40	60
러. 법 제74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8호	200	300	400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00	300	400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버. 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9호	100	200	300
서. 법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2항제10호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제2항 및 이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운영자		300	400	500
2)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50	100	150
		50	10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5. 부과징수권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증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증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시행령 제67조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43.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위반 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43조(과태료), 시행규칙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4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4.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	법 제43조제1항	500	1,000	1,500
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보고한 자	법 제43조제2항제1호	400	500	600
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거, 검사	법 제43조제2항제2호	500	600	700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라.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43조제2항제3호	700	800	900
마.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법 제43조제2항제4호			
1)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00	600	90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250	500	75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200	400	60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50	300	4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00	200	300
2)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	200	30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60	24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1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바.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법 제43조제2항제5호			
1)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자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00	600	90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250	500	75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200	400	60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150	300	450

미만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2)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 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 명 미만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00	200	300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 명 미만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30 100	260 200	390 30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80	160	24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100	1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사. 법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 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 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1)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 린 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 로 수입한 자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 명 미만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2)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 린 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 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 명 미만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법 제43조제2항제6호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 명 미만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0 250	350 300	400 35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200	250	30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50	200	2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00	150	200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 명 미만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30 100	260 200	390 30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80	160	24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100	1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친 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	법 제43조제2항제7호	300	350	400
자.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안전친화 기업 지정이 정지되어 그 기간 중 에 있거나 그 지정이 취소되었음에	법 제43조제2항제8호	300	350	400

도 안전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차.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법 제43조제2항제9호	700	800	900
카. 법 제3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법 제43조제2항제10호	700	800	900
타.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위해 사실의 공표, 해당 어린이제품의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법 제43조제2항제11호	500	600	700
파.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조치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자	법 제43조제3항제1호	300	350	400
하.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명칭·상표·모델명·사고내용, 제조·수입수량 및 판매수량 등을 보고하지 않은 자	법 제43조제3항제2호	400	450	500
거.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발적인 수거등의 조치를 보고하지 않은 자	법 제43조제3항제3호	300	350	400
너.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기술표준원장의 보완요청을 거부하는 자	법 제43조제3항제4호	350	400	450
더.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발적인 수거등의 조치를 한 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자	법 제43조제3항제5호	300	350	400
러.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자가 외국에서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자	법 제43조제3항제6호	400	450	500
머.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자	법 제43조제3항제7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50	280	3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200	230	26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50	180	21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00	130	16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80	110
버.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법 제43조제3항제8호	300	350	400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서. 법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 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 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자체검사 를 하지 않은 자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 만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법 제43조제3항제9호	300 250 200 150 100	350 300 250 200 150	400 350 300 250 200
어. 법 제17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 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법 제43조제3항제10 호	300	350	400
저. 법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 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자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 만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법 제43조제3항제11 호	130 100 80 50 30	260 200 160 100 60	390 300 240 150 90
처. 법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안전인증표시와 별도 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어린 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않은 자	법 제43조제3항제12 호	130	260	390
커.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 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 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 만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법 제43조제3항제13 호	150 130 100 80 50	170 150 120 100 70	200 180 150 130 100
터.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	법 제43조제3항제14 호	250 200	280 230	300 260

만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50	180	21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00	130	16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80	110
퍼.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 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를 갖추어 두지 않은 자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 만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법 제43조제3항제15 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50	170	2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 만		130	150	18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	120	15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80	100	13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70	100
허. 법 제22조제11항을 위반하여 안전 확인을 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시험·검사기관	법 제43조제3항제16 호	300	350	400
고. 법 제2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자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 만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법 제43조제3항제17 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 만		100	200	30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60	24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15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노.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안전확인표시와 별도 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 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않은 자	법 제43조제3항제18 호	130	260	390
도.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 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 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 만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법 제43조제3항제19 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50	170	2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 만		130	150	18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	120	15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80	100	13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70	100
로.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 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공 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자 1)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법 제43조제3항제20 호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00	350	40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250	300	35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200	250	30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50	200	2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00	150	200
2)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항 중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	200	30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60	24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1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모.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별도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않은 자	법 제43조제3항제21호	300	350	400
보. 법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자	법 제43조제3항제22호	150	170	200
소.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법 제43조제3항제23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50	170	2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30	150	18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	120	15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80	100	13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70	100
오.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기준에 맞지 않은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	법 제43조제3항제24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50	280	3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200	230	26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50	180	21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00	130	16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80	110
조.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법 제43조제3항제25호	250	280	300

5. 부과징수권자

국가기술표준원장, 시·도지사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중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중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시행규칙 제49조 관련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줄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6) 판매업자가 그 위반 사실을 안 즉시 해당 어린이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등 위해의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및 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 7)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6)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4.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해당 시·군 조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4.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5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법 제20조제1항제1호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가) 연면적 1㎡ 미만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라) 연면적 3㎡ 이상	
나. 현수막	
1) 벽면 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 미만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 미만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3)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라. 전단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1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라. 1년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5. 부과징수권자

시·도지사, 시장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증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증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없음

45.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신고의무 위반(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4.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시행령 제20조 관련)

가. 법 제28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과태료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신고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2) 신고가격이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700만원
3) 신고가격이 2억원 초과 2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900만원
4) 신고가격이 2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1,100만원
5) 신고가격이 3억원 초과 3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1,300만원
6) 신고가격이 3억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	1,500만원

7) 신고가격이 4억원 초과 4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1,700만원
8) 신고가격이 4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900만원
9) 신고가격이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	2,100만원
10) 신고가격이 6억원 초과 7억원 이하인 경우	2,300만원
11) 신고가격이 7억원 초과 8억원 이하인 경우	2,500만원
12) 신고가격이 8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2,700만원
13) 신고가격이 9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2,900만원
14) 신고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3,000만원
비고 1) 부동산 매매계약의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신고사유 발생연도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신고가격으로 한다. 2)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신고가격이 해당 부동산등의 분양가격 미만인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신고가격으로 한다.	

나. 법 제28조제2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가)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1)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2)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나)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1)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2)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1호	10만원 25만원 50만원 5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2) 법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법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2호	400만원
3) 법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법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3호	500만원
4)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4호	
비고 “신고 해태기간”이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을 말		

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신고 해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2)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신고의무를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법 제28조제3항 관련

위반행위	과태료
법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또는 법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2
2)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4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라. 법 제28조제4항 관련

위반행위	과태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가)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나)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5만원
다)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2)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가)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나)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
다)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00만원
3)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비고	
1) “신고 해태기간”이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기간은 신고 해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나)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신고의무를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취득가액은 신고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신고사유 발생연도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 또는 신고서에 취득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마. 법 제28조제5항 관련

위반행위	과태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의 취득신고 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등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가)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나)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5만원
다)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0만원
2)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15만원
가)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나)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다)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0만원
3) 신고 해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45만원
가)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나)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만원
다)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4) 신고 해태기간이 1년 초과 3년 이하인 경우	70만원
가)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나)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40만원
다)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60만원
5) 신고 해태기간이 3년 초과한 경우	80만원
가)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나)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다)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80만원
6)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비고

1) “신고 해태기간”이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기간은 신고 해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나)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신고의무를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 2) 취득가액은 신고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신고사유 발생연도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 또는 신고서에 취득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5. 부과징수권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증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증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46. 응급의료법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응급의료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3. 부과대상

응급의료법 제6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응급환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31조의2를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호	200만원
나.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당직전문의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2호	200만원
다.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3호	200만원
라. 법 제4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응급구조사를 탐승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3호의2	150만원
마. 법 제39조 또는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4호	100만원
바.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구급차등을 운용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4호의2	200만원
사. 법 제51조제3항, 제53조 또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5호	150만원
아. 법 제59조를 위반하여 응급구조사·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6호	150만원

5. 징수권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증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증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시행령 제29조 관련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7. 정보통신공사업등록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정보통신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정보통신공사업등록법 제78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58조(과태료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정보통신공사업등록법위반과태료 제78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4.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58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1호	100만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2호	150만원
3. 법 제11조에 따른 감리 결과의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3호	200만원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2항제1호	50만원
5.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78조제1항제4호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변경사유 또는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1일 이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50만원
나. 변경사유 또는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한 후에 신고한 경우		100만원
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50만원
6.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5호	300만원
7.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 사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6호	150만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7호	150만원
9.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 사업체에 종사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8호	300만원
10.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 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2항제2호	50만원
1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 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9호	150만원

5. 부과징수권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중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중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없음

48. 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 제40조(과태료), 동법 시행규칙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않은 자(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 제40조)

4.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규칙 제21조 관련)

과 태 료 산정기준	신고(신청) 기간 7일 이내	신고(신청) 기간 1개월 이내	신고(신청) 기간 3개월 이내	신고(신청) 기간 6개월 미만	신고(신청) 기간 6개월 이상
과 태 료	10,000원	30,000	50,000	70,000	100,000

제40조(과태료)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4조 제4항(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 태 료 산정기준	신고(신청) 기간 7일 이내	신고(신청) 기간 1개월 이내	신고(신청) 기간 3개월 이내	신고(신청) 기간 6개월 미만	신고(신청) 기간 6개월 이상
과 태 료	5,000원	20,000	30,000	40,000	50,000

제40조(과태료)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신고의무자)부터 제13조(정정신고)까지, 제16조제1항(거주지의 이동) 또는 제24조제4항(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징수권자

시장·군수·구청장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증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증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관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고(신청) 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6.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7조(과태료)

3. 부과대상

도축업영업자,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 등

4.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표시해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	500	750	1,000
다.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살·처리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3호	300	600	900
라.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 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4호			
1) 도축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1,000	1,000	1,000
2)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500	750	1,000
3) 그 밖의 영업자		300	600	900
마.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 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4호			
1) 도축업의 영업자		500	750	1,000
2)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300	600	900
3)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200	400	600
4) 그 밖의 영업자		50	100	150
바.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5호			
1) 도축업의 영업자		1,000	1,000	1,000
2) 집유업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 가공업의 영업자		500	750	1,000
사.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5호			
1) 도축업의 영업자		700	850	1,000
2) 집유업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 가공업의 영업자		300	600	900
아.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않고 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호			
1) 도축업의 영업자		300	400	500
2)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		200	350	500
3)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		200	350	500
4)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제12조의7제2항 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		100	100	100

5)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제12조의 7제2항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		100	100	100
자.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1호			
1) 법 제12조의2제2항제1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2) 법 제12조의2제2항제2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	60	90
차.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3호	30	60	90
카.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4호	200	350	500
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5호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20	40	60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100	200	300
파. 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6호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가) 종업원의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50	100	150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30	60	90
나) 종업원의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30	60	90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0	40	60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100	200	300
하. 법 제30조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책임수익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7호			
1) 교육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0	40	60
2) 교육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10	20	30
거. 법 제30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8호	20	40	60
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9호	200	350	500
더. 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2호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러. 법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0호	500	500	500
머. 법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2호의 2	30	60	90
버. 법 제31조의4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축산물 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0호의 2	30	60	90
서. 법 제3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0호의 3	30	60	90
어. 제31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2호의 3	30	60	90
저.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4호	30	60	90
처. 법 제35조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1호	200	350	500

커.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3호	50	100	150

5. 부과징수권자

도축업영업자,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 등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증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증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시행령 제32조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과태료 금액의 상한·하한을 정하고 세부 기준을 위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같은 시기에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0. 택시발전법 위반 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3조, 시행령 제2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2항을 위반한 자

4.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그 밖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3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이상
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	법 제23조제1항	500	1,000	1,000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2항 제1호	20	40	60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3조제2항 제2호	25	50	50
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23조제2항 제2호	50	75	100
마.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2항 제3호	50	75	100

비고

- 위 표의 가목의 경우 일반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일반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위 표의 다목 및 라목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5. 부과징수권자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증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증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시행령 제25조 관련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1. 환경관련법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자연환경보전법 제66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 제26조, 제33조4항, 제40조를 위반한 경우

4.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령 제54조)

(단위: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6조(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66조 제2항제1호	100	150	200
나. 법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한 경우	법 제66조 제2항제2호	100	150	200

다. 법 제26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 제1항	500	700	1,000
라. 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6조 제2항제3호	100	150	200
마. 법 제40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 제2항제4호			
1)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을 위반한 경우		100	150	200
2) 출입·취사·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0	70	100

5. 부과징수권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증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증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시행령 제54조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2.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부과대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37조를 위반한 자

4.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6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	200	250	300
나.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수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환경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2호	200	250	300
다. 법 제16조의11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	200	250	300
라. 삭제 <2017. 1. 24.>				
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검사 또는 조사·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7조제2항제2호	60	80	100
바.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7조제2항제3호	60	80	100

5. 부과징수권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증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증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시행령 제 35조 관련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3.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환경분야의 시험·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 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 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3. 부과대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측정기기를 수입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호	50	70	100
나.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나 수입신고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호	50	70	100
다. 법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구매자에게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는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호의2	50	70	100
라.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않고 측정기기를 사용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3호	50	70	100
마.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않은 교정용품을 공급 또는 사용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4호	50	70	100
바. 법 제18조의2제5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4호의2	50	70	100
사.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환경측정 분석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300	300	300
아.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5호	50	70	100
자.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6호	100	100	100
차. 법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7호	50	70	100

5. 징수권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중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중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시행령 제18조 관련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태료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태료)

1. 부과목적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3. 부과대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38조제1항의 명령에 따른 보고 중 이 영 제41조의2에 따른 주 단위 보고는 최근 6개월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등록대상				신고대상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법 제5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 49 조 제1항 제1호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 49 조 제2항 제2호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50만원	300만원	600만원	600만원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주 단위 보고의 경우 (2) 그 밖의 보고의 경우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류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 (2) 그 밖의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	법 제 49조 제1항 제5호	250만원	500만원	750만원	750만원	150만원	250만원	500만원	500만원
		경고	250만원	500만원	750만원	경고	150만원	250만원	500만원
		경고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경고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50만원	500만원	750만원	150만원	250만원	5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4)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 49조 제1항 제6호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나.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1호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2호	300만원	450만원	600만원	600만원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주 단위 보고의 경우 (2) 그 밖의 보고의 경우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류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 (2) 그 밖의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 (나) 그 밖의	법 제49조 제1항 제5호	200만원 750만원 경고 경고 200만원 750만원	350만원 1천300만원 200만원 750만원 350만원 1천300만원	500만원 2천만원 350만원 1천300만원 500만원 2천만원	500만원 2천만원 500만원 2천만원 500만원 2천만원

보고의 경우					
4) 법 제38조의 2제1항을 위반 하여 석유제품 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않거 나 거짓으로 보 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6호	750만원	1천300만원	2천만원	2천만원

다.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법 제9조의2제 2항에 따른 변 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 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1호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개 시·휴업 및 폐 업의 신고를 하 지 않거나 거짓 으로 신고한 경 우	법 제49조 제2항 제2호	150만원	300만원	600만원	600만원
3) 법 제38조제1 항에 따른 명령 을 위반하여 보 고를 하지 않거 나 거짓으로 보 고를 한 경우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 거짓으로 보 고한 경우 (1) 명백한 오 기 또는 계산상 오류가 증명서 류로 확인되는 경우 (2) 그 밖의 경 우	법 제49조 제1항 제5호	500만원 경고 500만원	1천만원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일반 대리점 ·용제 대리점				주유소·용제 판매소·부생 연료유 판매소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신고대상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1호	250만 원	35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35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2호	10만 원	2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10만 원	150만 원	20만 원	200만 원	1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3)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주 단	법 제49조 제2항 제4호	경	15	200	250	경	50	10	150	경	150	200	250	경	15	25	50

위 보고의 경우		고	0 만 원	만 원	만 원	고	만 원	0 만 원	만 원	고	만 원	만 원	만 원	고	만 원	만 원	만 원
(2) 그 밖 의 보고의 경우		경 고	50 0 만 원	750 만 원	1천 만 원	경 고	200 만 원	40 0 만 원	600 만 원	경 고	500 만 원	750 만 원	1천 만 원	경 고	50 만 원	100만 원	150 만 원
나) 거짓으 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 류가 증명 서류로 확 인되는 경 우																	
(가) 주 단위 보고 의 경우		경 고	15 0 만 원	200 만 원	250 만 원	경 고	50 만 원	10 0 만 원	150 만 원	경 고	150 만 원	200 만 원	250 만 원	경 고	15 만 원	25 만 원	50 만 원
(나) 그 밖의 보고 의 경우		경 고	50 0 만 원	750 만 원	1천 만 원	경 고	200 만 원	40 0 만 원	600 만 원	경 고	500 만 원	750 만 원	1천 만 원	경 고	50 만 원	100만 원	150 만 원
(2) 그 밖 의 경우																	
(가) 주 단위 보고 의 경우		15 0 만 원	20 0 만 원	250 만 원	250 만 원	50 만 원	100 만 원	15 0 만 원	150 만 원	15 0 만 원	200 만 원	250 만 원	250 만 원	15 만 원	25 만 원	50 만 원	50 만 원
(나) 그 밖의 보고 의 경우		50 0 만 원	75 0 만 원	1천 만 원	1천 만 원	20 0 만 원	400 만 원	60 0 만 원	600 만 원	50 0 만 원	750 만 원	1천만 원	1천 만 원	50 만 원	10 만 원	150 만 원	150 만 원
4) 법 제38조 의 2 제 1 항 을 위반하 여 석유제 품의 판매 가격을 보 고하지 않	법 제49조 제1항 제6호	50 0만 원	75 0만 원	1천 만 원	1천 만 원	10 0만 원	150 만 원	20 0만 원	200 만 원	50 0만 원	750 만 원	1천만 원	1천 만 원				

거나 거짓 으로 보고 를 한 경우																			

마.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대리점				주유소				판매소			
		1회 위 반	2회 위 반	3회 위 반	4회 이 상 위 반	1회 위 반	2회 위 반	3회 위 반	4회 이 상 위 반	1회 위 반	2회 위 반	3회 위 반	4회 이 상 위 반	1회 위 반	2회 위 반	3회 위 반	4회 이 상 위 반
1)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2호	300만 원	45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10만 원	200만 원	3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1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 법 제32조 제2항 및 법 제3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3호	750만 원	1천300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25만 원	350만 원	5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1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3)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	법 제49조 제1항 제5호 및																

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같은 조 제2항 제4호																
(1) 주 단 위 보고의 경우		200 만 원	350 만 원	500 만 원	500 만 원	15 0 만 원	200 만 원	25 0 만 원	250 만 원	50 만 원	100 만 원	150 만 원	15 0 만 원	25 만 원	50 만 원	75 만 원	75 만 원
(2) 그 밖 의 보고의 경우		750 만 원	1천 300 만 원	2천 만 원	2천 만 원	50 0 만 원	750 만 원	1천 만 원	1천 만 원	200 만 원	400 만 원	600 만 원	60 0 만 원	10 0만 원	150 만 원	200 만 원	20 0만 원
나) 거짓으 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 류가 증명 서류로 확 인되는 경 우																	
(가) 주 단위 보고 의 경우		경 고	200 만 원	350 만 원	500 만 원	경 고	150 만 원	20 0 만 원	250 만 원	경 고	50 만 원	100 만 원	15 0 만 원	경 고	25 만 원	50 만 원	75 만 원
(나) 그 밖의 보고 의 경우		경 고	750 만 원	1천 300 만 원	2천 만 원	경 고	500 만 원	75 0 만 원	1천 만 원	경 고	200 만 원	400 만 원	60 0 만 원	경 고	100만 원	150 만 원	20 0만 원
(2) 그 밖 의 경우																	
(가) 주 단위 보고 의 경우		200 만 원	350 만 원	500 만 원	500 만 원	15 0 만 원	200 만 원	25 0 만 원	250 만 원	50 만 원	100 만 원	150 만 원	15 0 만 원	25 만 원	50 만 원	75 만 원	75 만 원
(나) 그 밖의 보고 의 경우		750 만 원	1천 300 만 원	2천 만 원	2천 만 원	50 0 만 원	750 만 원	1천 만 원	1천 만 원	200 만 원	400 만 원	600 만 원	60 0 만 원	10 0만 원	150 만 원	200 만 원	20 0만 원

바. 석유비축대행업자와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주 단위 보고의 경우 (2) 그 밖의 보고의 경우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류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 (2) 그 밖의 경우 (가) 주 단위 보고	법 제49조제2항제4호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250만원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경고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경고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250만원

의 경우 (나) 그 밖의 보고 의 경우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사. 주요 석유소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제42조제1호에 따른 용제소비자				제42조제2호에 따른 석유소비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주 단위 보고의 경우 (2) 그 밖의 보고의 경우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류가 증명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가) 주 단위 보고	법 제49조제2항제4호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75만원
		200만원	400만원	600만원	60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00만원
		경고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경고	25만원	50만원	75만원

의 경우 (나) 그 밖의 보고 의 경우 (2) 그 밖 의 경우 (가) 주 단위 보고 의 경우 (나) 그 밖의 보고 의 경우		경고	200 만원	400 만원	600 만원	경고	100 만원	150 만원	20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150 만원	25 만원	50 만원	75 만원	75 만원
		200 만원	400 만원	600 만원	60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200 만원	200 만원

아.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25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 석유관리원 또 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9조제 1항제2호	3백만원

자. 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사용량에 따른 과태료 금액				
		1백리터 미만	1백리터 이상 4백리터 미만	4백리터 이상 1킬로리터 미만	1킬로리 터 이상 20킬 로리 터 미만	20킬로리터 이상
1) 법 제29조제1항 제2호를 위반하 여 가짜석유제품 임을 알면서 사 용하거나 법 제 10조 및 제33조 에 따라 등록·신 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법 제49조 제1항 제3호	2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1천5백만 원	2천만원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임을 알면서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7호	2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1천5백만원	2천만원

비고: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 산정을 위한 가짜석유제품 등의 사용량은 사용자의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탱크 또는 저장탱크의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용자의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탱크 또는 저장탱크의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차. 법 제4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주유소				일반판매소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법 제38조의2 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한 경우 가) 가격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나)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5호	3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경고	3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경고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경고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경고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5. 징수권자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20% 감경된 금액으로 통지 단, 의견진술 기간 안에 다음 관련자료 제출 시 과태료 50% 추가 감액 ※ 추가 감액시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과태료고지	15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의 시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증가산고지	30일	매월 0.12%씩 60개월 최종 75%까지 증가산고지

7. 감경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만 19세)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가능하며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과 중복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이 없는자에 한함

○ 개별법령에 의한 감경

시행령 제47조 제1항 관련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Ⅱ . 과징금

0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징금)

1. 부과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과징금),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3. 부과대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제27조, 제32조)

4.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기준(시행령 제7조제1항 관련)

(금액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	근 거 법 조 문	처 분 내 용				
		화물자동차 운 송 사 업			화물자 동차 운송주 선사업	화물자 동차 운송가 맹사업
		일 반	개 별	용 달		
1.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4호	60	30	30	-	-
1의2.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6호	60	60	60	-	-
2. 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7호					
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		20	10	10	-	-

를 거부한 경우					
나.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 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한 경우	20	10	10	-	-
다.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않는 화물을 운송한 경우					
○ 1차 및 2차	20	20	20	-	-
○ 3차 이상	30	30	30	-	-
라.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 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 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	360	180	180	-	-
마.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화 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 는 금액을 부당하게 회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 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	360	180	180	-	-
바. 법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운 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지 않거나 이용자의 요구에 이를 내 보이지 않은 경우	20	10	10	-	-
사. 법 제11조제9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가입한 경우	20	10	10	-	-
아. 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가 법 제11조제10항을 위반하여 자기 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직 접 화물운송을 주선받은 경우	20	10	10	-	-
자.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 자가 법 제11조제11항을 위반하 여 자기의 상호를 소속 운송가맹 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 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	10	10	-	-
차. 법 제11조제12항 본문을 위 반하여 위·수탁차주나 화물자 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 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60	-	-	-	-

운송사업자가 해당 위·수탁자 주나 1대사업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물위탁증을 내주지 않은 경우					
카. 법 제11조제12항 단서를 위 반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 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수탁 차주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위 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60	-	-	-	-
타. 법 제11조제13항을 위반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면서 양 도·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킨 경우	500	250	250	-	-
파. 법 제11조제14항을 위반하여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 을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 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 정한 경우					
1)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500	250	250	-	-
2)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다만, 보 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위·수탁차주가 이행해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한 경 우로서 위·수탁차주에게 저당 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않 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00	150	150	-	-
하. 법 제11조제15항을 위반하여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 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았음 에도 위·수탁차주를 「자동차관 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지 않은 경 우	300	150	150	-	-
거. 법 제11조제16항을 위반하여 위·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 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 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 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300	150	150	-	-
너. 법 제11조제17항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	60	-	-	-	-

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한 경우						
더. 법 제11조제18항을 위반하여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위탁 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러. 법 제11조제1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 시설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360	180	180	-	-
2의2. 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7호의2	60 이하	30 이하	30 이하	-	-
2의3. 법 제11조의3에 따른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7호의3	500	-	-	-	-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에 관한 개선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8호	300	150	150	-	-
4.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1호	300	150	150	-	-
가. 5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 지수가 3에 이르게 된 경우 $\left(\frac{\text{교통사고 건수}}{\text{화물자동차의 대수}} \times 10 \right)$ 나. 5대 미만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고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500	250	250	-	-
4의2.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2	60	30	30	-	-
4의3.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3	300	150	150	-	-
		500	250	250	-	-

4의4.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4호	-	-	-	60	-
5. 법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6호	-	-	-	360	-
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그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한 경우. 다만, 화물운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직접 위탁하기 위하여 다른 운송업자에게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360	-
나.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한 경우		-	-	-	60	-
다. 삭제 <2011.12.13>		-	-	-	60	-
라.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	-	60	-
마.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한 경우		-	-	-	40	-
바.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가 법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한 경우		-	-	-	30 이하	-
사.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6.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 (같은 조 제3항·제4항·제7항·제	법 제27조제1항제7호	-	-	-		

10항,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및 제19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운송주선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주선계약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	-	-	20	-	
나.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선운임 및 주선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회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	-	-	-	360	-	
다. 법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주선운임 및 주선요금과 운송주선약관을 영업소에 갖추어 두지 않거나 이용자의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	10	-	
라. 법 제11조제9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가입한 경우	-	-	-	20	-	
마.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주선사업자가 법 제1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상호를 소속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지 않거나 상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20	-	
바. 법 제11조제12항 본문을 위반하여 위·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주선사업자가 해당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물의 종류와 운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화물위탁증을 내주지 않은 경우	-	-	-	60	-	
사. 법 제11조제12항 단서를 위반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	-	60	-	
6의2.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	법 제27조제1항제7호	-	-	-	300	-

11조의3제3항에 따른 위탁화물 의 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2					
7.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조 에 따른 개선명령(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 한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8호	-	-	-	120	-
7의2.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8호 의2	-	-	-	300	-
8.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2호	-	-	-	-	60
8의2.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 우	법 제32조제1항제7호	-	-	-	-	60
9.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8호	-	-	-	-	120
10.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 조(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의 규정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9호					
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 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 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 를 거부한 경우		-	-	-	-	20
나.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 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한 경우		-	-	-	-	20
다.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않는 화물을 운송한 경우						
○ 1차 및 2차		-	-	-	-	20
○ 3차 이상		-	-	-	-	30
라.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 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 을 주고 받은 경우		-	-	-	-	360
마.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 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		-	-	-	-	360
바. 법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운 임 및 요금과 운송가맹약관을 영 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지 않거나 이용자의 요구에 이		-	-	-	-	20

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						
사. 법 제11조제12항 본문을 위반하여 위·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가맹사업자가 해당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물위탁증을 내주지 않은 경우		-	-	-	-	60
아. 법 제11조제12항 단서를 위반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	-	-	60
자. 법 제11조제1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60 이하
10의2.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9호의2	-	-	-	-	300
1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31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2조제1항제10호	-	-	-	-	120
12.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2호					

가. 5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운 송가맹사업자의 경우 다음 계 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 도의 교통사고지수가 3에 이 르게 된 경우 ($\frac{\text{교통사고 건수}}{\text{화물자동차의 대수}} \times 10$)		-	-	-	-	500
나. 5대 미만의 차량을 소유한 운 송가맹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 고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2건 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	-	-	60
13.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 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3 호의2	-	-	-	-	300

※ 비고

1. 삭제 <2017. 1. 10.>
2. 별표 1, 별표 3 또는 별표 4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이 있는 경우에 2차 이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결정한다.

$$(\text{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times \frac{\text{2차 이상 위반 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text{1차 위반 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

3. 위 표 제4호 및 제12호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 및 교통사고지수의 산정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교통사고 건수 및 교통사고지수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위 표의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과징금 금액의 세부기준(시행규칙 제30조 관련)

(금액단위: 만원)

위 반 내 용	해 당 법 조 문	처 분 내 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 운송사업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일반	개별	용달		
1.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제21조제3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10	-	-	20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제21조제4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10	5	-	20
3.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 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 을 받은 경우	제21조제5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10	-	-	20
4.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고 환급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제6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0	15	15	-	30
5. 신고한 운송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제7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0	30	30	-	60
6.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운송사업자의 명칭(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한다)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제8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5	5	-	10
7.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21조제9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10	10	-	10
8.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제21조제13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10	10	-	20
9.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하게 한 경우	제21조제14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5	5	-	10
10. 삭제 <2014.11.28.>						
11.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 제한장치 또는 같은 규칙 제56조에 따른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를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한 경우	제21조제16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10	10	-	20

12. 법 제59조에 따라 실시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제17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0	15	15	-	30
13. 차량을 1대 보유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1조제18호	180	90	90	-	-
14. 운수종사자에게 제21조제23호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제23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80	60	60	-	180
15. 신고한 운송주선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38조의3제1호	-	-	-	20	-
16.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상호를 사용한 경우	제38조의3제4호	-	-	-	20	-
17. 화주에게 제38조의3제5호에 따른 견적서 또는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화주가 견적서 또는 계약서의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의3제5호	-	-	-	20	-
18. 화주에게 제38조의3제6호에 따른 사고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8조의3제6호	-	-	-	20	-

5. 징수권자

시장·군수·구청장

6. 징수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하고 의견제출 시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함
과징금부과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서면으 로 통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 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이의 시 과징금 부과처분 효력 상실하지 않음)
독촉	20일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이 지날날부터 10일 이내 독촉장을 발급하고 납부기한은 20일 이내로 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국세징수법 제23조)
압류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7. 귀속비율

해당 지자체 100%

8. 감면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02.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징금)

1. 부과목적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자동차관리법 제74조(과징금의 부과) 및 동법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동법 시행령 제15조(과징금의 부과·징수)

지방세외수입징수 등에 관한 법률

3. 부과대상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

4.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기준(시행령 제15조)

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등에 대한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단위: 만원)		
		과징금	금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1) 시설·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2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10호 법 제47조제5항제4호	50	100	100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6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 법 제47조제5항제2호	150	200	200
3) 등록번호판의 발급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8호	100		

나.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부과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차정 비업	자동차 차해 체재 활용 업
1)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기구를 자동차의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에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나목		50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폐차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4호나목			100
3)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4호	50	100	50
4)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4호	150	300	150
5) 법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6호	50	100	50
6)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7호	200	300	200
7)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7호			
가) 사업장의 전부		150	300	150
나) 사업장의 일부		50	100	50

8) 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7호	100	200	100
9) 법 제57조제1항제4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7호	50	100	50
10) 법 제5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7호	200	150	150
11)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 튜닝 작업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마목		200	
12)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4호다목			100
13) 법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거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4호라목			300
14) 법 제58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8호	20	30	
15)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2호사목	20		
16)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두지 않거나 정비책임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아목		30	
17)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자목		50	
18)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50	100	50
19) 법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된 자동차의 폐차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법 제66조제1항제14호마목			20

않은 경우				

다.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산정비율	과징금 상한액
가. 법 제30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법 제74조 제 2 항 제1호		
1) 법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 또는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를 한 경우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	100억원
2)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행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	50억원
3)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조향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	50억원
4)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제동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	50억원
5)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	50억원

6)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차체 및 차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	50억원
7) 그 밖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	10억원
나. 법 제30조의2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을 판매한 경우	법 제74조 제 2 항 제2호	해당 자동차 부품 매 출 액 의 100분의 1	10억원
다.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법 제31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4조 제 2 항 제3호	해당 자동차 또는 해 당 자동 차 부 품 매출액의 100분의 1	없음
라. 법 제3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를 판매한 경우	법 제74조 제 2 항 제4호	해당 내압용 기 매출 액의 100 분의 1	10억원

4. 부과 및 징수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5. 귀속비율

해당 지자체 100%

6. 부과절차

단 계	기간	내 용
과징금 고지	-	(별표)에 따른 과징금 액수, 위반행위의 종류를 기재하여 과징금 부과
납 부 기 한	20일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 과징금 납부
독촉장 고지	50일	납부기한 후 50일 이내 독촉장 발급(납부기한 10일 이내) 가산금 없음
체납고지서	수시	수시로 체납고지서 발송 및 압류

7. 기타사항

- 가 산 금 : 규정없음
- 분할납부 : 불가(시행령 15조 6항)
- 불복청구 : 법령규정 없을 때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참조(안날부터 90일 이내)
- 체납처분 : (법제74조의4항)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03.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징금)

1. 부과목적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1997.3.7.시행>

2. 부과근거

청소년보호법 제54조(과징금) 및 동법 제52조(권한의 위탁), 동법 시행령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제4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6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자치단체 조례,규칙(감경기준)

3. 부과대상

청소년보호법 제54조(과징금) 각호의 해당하는 자

4. 부과기준

가. 청소년유해 정기간행물 등의 발행·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44조제1항 관련)

과징금 금액	경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횟수별 3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횟수별 5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횟수별 1,0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횟수별 2,000만원
구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1회	2회·3회	4회·5회	6회부터 10회까지	11회 이상
「신문 등의	1회	2회부터	6회부터	9회 이상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5회까지	8회까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1회	2회	3회·4회	5회 이상	

비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고시 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부과기준(시행령 제44조제2항)

구분	위반 행위	단속대상		형사처벌	처벌사항			『청소년보호법』 조항 (위반내용, 형사처벌, 행정처분순)
					행정처분		과징금	
					시정명령	과태료 (시정명령 불이행시) 1차 2차 이상		
유해업소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예) PC방, 주류위주의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고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 벌금	x	x	x	500 또는 1,000 (업종에 따라, 1명1회고용마다)	제29조제1항, 제58조 제4호, 제54조제2항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예)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실이 아닌 일반실에 청소년 출입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 벌금	x	x	x	300 (출입허용 횟수마다)	제29조제2항, 제59조 제8호, 제54조제2항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 미표시 행위 (단,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청소년고용금지업소는 제외) (예) 노래방,DVD방에서 표시 미부착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 벌금	o	100	300	x	제29조제5항, 제59조 제9호, 제45조제1항 제8호, 제64조제1항
유해물질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제공 행위 (예) 편의점에서 담배, 일반음식점에서 주류 판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 벌금	x	x	x	100 (위반 횟수마다)	제28조제1항, 제59조 제6호, 제54조제2항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 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 벌금	x	x	x	x	제28조제2항, 제59조 제7호

		예) 돈을 받고 주류, 담배 구입을 의뢰받아 청소년에게 제공 업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 하역 또는 는 내용 미표시 행위 (단,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제외) 예) 일 반음식점, 편의점에 표시 미부착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o	100	300	x	제28조제4항, 제59조 제7호의2, 제45조제1항 제7호의2, 제64조제1항
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 유해약물 등에 청소년유해표시 미표시 행위 예) 비디오, 게임물에 표시 미부착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o	300	500	x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6항, 제59조제1항, 제45조제1항제1호, 제64조제1항
	포장 의무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포장하지 아니한자 예) 성인용품 미포장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o	300	500	x	제14조(제28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59조제2호, 제64조제1항
	판매 금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 하도록 제공한 자 예) DVD방에서 유해매체물 제공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x	x	x	1,000(제조업자)/100(유통업자)(위반횟수마다)	제16조제1항, 제58조제1호, 제54조제2항
	방송 시간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예) 평일은 07시~09시까지와 13시~22시까지 / 토요일, 공휴일 및 방학기간에는 07시~22시까지 해당시간에 유해매체물 방송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x	x	x	x	제18조, 제59조제3호
	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	심야시간대에 16세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제공한 자 예) 00시~06시까지 해당시간에 인터넷게임을 제공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x	x	x	x	제26조, 제59조제5호
	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게 하는 자 예) 외국인 출연 영상물을 유통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x	x	x	1,000(위반횟수마다)	제22조, 제58조제2호, 제54조제2항
	수거·과기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x	x	x	x	제44조제1항, 제58조제6호

		예) 수거·파기명령물이 행	하벌금					
광 고 선 전 제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 하는 장소에 공공연하 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 행위 예) 노상, 차량에 성매 매압시 전단지 배포	2년이 하징 역 또는 2천만원이 하벌금	o	300	500	x	제19조 제1항, 제59조 제4호, 제45조 제1항 제 7호, 제64조 제 1항

다. 청소년 유해물질 종류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물건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 물질(톨루엔, 초산에 틸, 메틸알콜 등)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 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 초산에틸이 함유된 칼라풍선류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 건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 레이저포인터, 성기구 5종*, 전자담배 기 기장치류,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 장하는 완구류 등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5. 징수권자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6. 귀속비율

해당 지자체 100%

7.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적발 (경찰 및 특사경)	10일 이상	청소년 대상으로 유해물질 판매한 업소에 대해 적발
적발업소 (판매자) 검찰사건 송치	15일	검찰 사건송치(경찰 및 특사경)
검찰 사건조회	2~3개월	검찰의 판결에 여부 조회
검찰 사건조회결과	2~3개월	조회결과에 따라 (협약없음) 및 기소유예 과징금 부과 대상
감경신청	15일	검찰사건결과 기소유예처분 대상업소 및 업주에게 감경 신청서 제출 요청
과징금 부과	15~30	판매자는(종업원) 형사처벌 및 업주는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납부기한	20일	고지서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납부
독촉장 발송	7일	납부기한 경과후 7일이내 발송, 1회에 한해 추가 독촉장 발송, 독촉장 납부기한은 발송일부터 10일이내

8. 기타사항

- 가 산 금 : 없음
- 징수절차 : (시행규칙 제 11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준용
- 분할납부 : 가능(시행령 46조)
- 불복청구 : (시행규칙 제 11조)
- 징수절차 : (시행규칙 제 11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준용

0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징금)

1. 부과목적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06.4.28.시행>

2. 부과근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과징금 부과) 및 동법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동법 시행령 제12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및 제1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3. 부과대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과징금)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4. 부과기준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 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의 금액
1. 법 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법 제28조 (과징금부과)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영업정지 1일당 5만원으로한다.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30일로 하여
2. 법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산정한다.

나.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제15조)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다. 법 제18조에 따른 노래연 습장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7조 제1항제3호				
1) 투명유리창 및 마이크 시설이 시설기준을 위반 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2) 그 외의 시설이 시설기 준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마. 법 제22조에 따른 노래연 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때	법 제27조 제1항제5호				
2)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 소년을 출입시킨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8)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 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9)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 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0)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1)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5. 징수권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6. 귀속비율

해당 지자체 100%

0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위반과징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징금)

1. 부과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제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995.3.30.시행>

2. 부과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징금) 및 동법 제5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동법 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동법 제2조의2(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3. 부과대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징금)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4.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2 및 제8조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부동산평가액	과징금 부과율
5억원 이하	5%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	15%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의무위반 경과기간	과징금 부과율
1년 이하	5%
1년 초과 2년 이하	10%
2년 초과	15%

5. 징수권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고 지	1개월	위반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월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과징금 납부고지 ①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② 위반행위의 중별 ③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 ④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납 부	90일 이내	과징금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 과징금 납부
불복절차	90일 이내	과징금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7. 귀속비용

해당 지자체 100%

8. 기타 업무관련 노하우(위반자 벌칙)

○ 명의신탁

- 명의신탁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명의수탁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명의신탁방조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장기미등기

- 장기미등기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장기미등기방조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6. 건설업법위반과징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 부과목적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동법시행령 제81조(과징금의 부과·납부)

3. 부과대상

건설업자,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용역업자

4. 징수권자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소관부서:건축디자인과, 도시주택과)

5. 부과기준

가. 영업정지 및 과징금(1억원이하)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 제82조 영업정지 등)

1.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호·제4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나. 영업정지 및 과징금(100분의 30)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5.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다.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위반 행위	근거 법 조문	1차		2차		3차 이상	
		영업정 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 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 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2호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3호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3)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로서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1호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법 제82조 제1항제1호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경우(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4호	3개월	6,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2호·제3호·제4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5호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5호·제7호·제10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개월		3개월		3개월	
나) 가) 외의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7)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가목	1개월		1개월		1개월	
8)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나목	1개월		1개월		1개월	
9)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다목	2개월		3개월		3개월	
10)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다목·라목	1개월		1개월		1개월	
11)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라목	2개월		3개월		3개월	
12)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	법 제82조 제1항제6호	2개월		2개월		2개월	

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마목						
1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7호						
가) 10명 이상 사망한 경우		5개월		5개월		5개월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경우		4개월		4개월		4개월	
다)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경우		3개월		3개월		3개월	
14) 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8호						
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보험료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나)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다)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마)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선급금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을 조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 또는 기성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강요한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자) 삭제 <2016. 8. 4.>							
차)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15)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 제9호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16)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1년		1년		1년	
17)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8개월		8개월		8개월	
18)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耐用期間)을 현저히 단축시킨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6개월		6개월		6개월	
19) 고의나 과실로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4개월		4개월		4개월	
20)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2개월		2개월		2개월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비율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영업 정지 기간	과징금의 비율(%)			
			도급금 액 5천만원 이하	도급금액 1억원	도급금 액 5억원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1)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호	8개월	30	24	16	8
2) 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호	6개월	24	18	12	6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6개월	24	18	12	6
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8개월	30	24	16	8
5)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6개월	24	18	12	6
6)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4개월	16	12	8	4
7) 재하도급금지규정을 위반하였으나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4개월	16	12	8	4
8)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4호	6개월	24	18	12	6

비고

1.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각 구역 사이의 도급금액 등 해당 과징금의 비율은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로 하고, 해당 과징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징금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2. 직선보간의 방법으로 산정된 각 구역 사이의 과징금이 해당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한다.

다.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	법 제82조의2제1항		

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8개월	8억원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6개월	6억원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4개월	4억원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개월	2억원
2) 법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 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 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수수액이 다 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2조의2제2항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년 4개월	16억원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1년	12억원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8개월	8억원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개월	4억원

비고

1.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 나.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으로부터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시나 동의(묵인하거나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두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 다.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하는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2. 위 표 중 과징금 부과처분은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과한다.

라. 법 제83조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1)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83조제3호	6개월
2)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법 제83조제9호	6개월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83조제10호	1년
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법 제83조제11호	6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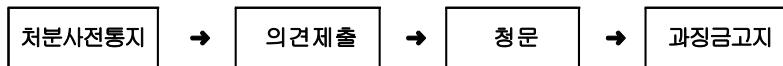
비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 전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징수방법

○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름.

7. 부과 및 납부기한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8. 감경사유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82조 및 제83

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법 제38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 또는 가중(과징금의 경우 2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15일(과징금 1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가. 감경사유

- | |
|---|
| 가)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 다) 건설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 |

나. 가중 사유

- | |
|--|
| 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위반행위를 한 해당 건설업자와 그 소속 직원 및 근로자는 제외한다)을 사망하게 하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나) 해당 위반행위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발생한 경우 |

07.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 부과목적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축산물관리법 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시행령 제2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3. 부과대상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자(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자.)

4. 징수권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관부서:동물방역위생과)

5. 부과기준(제25조)

6. 부과절차

가. 과징금의 일반기준

가.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일부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의 전부정지에 같은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도축업과 집유업의 경우에는 도축 및 집유 시 영업자가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처분 전년도 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전년도의 1년간 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1년간의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다. 영업의 일부정지인 품목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조정지를 같은하는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처분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1년간의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라. 영업의 일부정지인 품목 제조정지를 같은하는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에 대한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의 해당 품목의 총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휴업 등으로 3개월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 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의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나. 과징금 기준

-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 전부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의 전부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100 이하	12
2	100 초과 200 이하	14
3	200 초과 310 이하	17
4	310 초과 430 이하	20
5	430 초과 560 이하	27
6	560 초과 700 이하	34
7	700 초과 860 이하	42
8	860 초과 1,040 이하	51
9	1,040 초과 1,240 이하	62
10	1,240 초과 1,460 이하	73
11	1,460 초과 1,710 이하	86
12	1,710 초과 2,000 이하	94
13	2,000 초과 2,300 이하	100

14	2,300 초과 2,600 이하	106
15	2,600 초과 3,000 이하	112
16	3,000 초과 3,400 이하	118
17	3,400 초과 3,800 이하	124
18	3,800 초과 4,300 이하	140
19	4,300 초과 4,800 이하	157
20	4,800 초과 5,400 이하	176
21	5,400 초과 6,000 이하	197
22	6,000 초과 6,700 이하	219
23	6,700 초과 7,500 이하	245
24	7,500 초과 8,600 이하	278
25	8,600 초과 10,000 이하	321
26	10,000 초과 12,000 이하	380
27	12,000 초과 15,000 이하	466
28	15,000 초과 20,000 이하	604
29	20,000 초과 25,000 이하	777
30	25,000 초과 30,000 이하	949
31	30,000 초과 35,000 이하	1,122
32	35,000 초과 40,000 이하	1,295
33	40,000 초과	1,381

○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외의 영업의 영업 전부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의 전부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20 이하	5
2	20 초과 30 이하	8
3	30 초과 50 이하	10
4	50 초과 100 이하	13
5	100 초과 150 이하	16
6	150 초과 210 이하	23
7	210 초과 270 이하	31
8	270 초과 330 이하	39
9	330 초과 400 이하	47
10	400 초과 470 이하	56
11	470 초과 550 이하	66
12	550 초과 650 이하	78
13	650 초과 750 이하	88
14	750 초과 850 이하	94
15	850 초과 1,000 이하	100
16	1,000 초과 1,200 이하	106

17	1,200 초과 1,500 이하	112
18	1,500 초과 2,000 이하	118
19	2,000 초과 2,500 이하	124
20	2,500 초과 3,000 이하	130
21	3,000 초과 4,000 이하	136
22	4,000 초과 5,000 이하	165
23	5,000 초과 6,500 이하	211
24	6,500 초과 8,000 이하	266
25	8,000 초과 10,000 이하	330
26	10,000 초과	367

○ 품목류·품목 제조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품목류·품목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100 이하	12
2	100 초과 200 이하	14
3	200 초과 300 이하	16
4	300 초과 400 이하	19
5	400 초과 500 이하	24
6	500 초과 650 이하	31
7	650 초과 800 이하	39
8	800 초과 950 이하	47
9	950 초과 1,100 이하	55
10	1,100 초과 1,300 이하	65
11	1,300 초과 1,500 이하	76
12	1,500 초과 1,700 이하	86
13	1,700 초과 2,000 이하	100
14	2,000 초과 2,300 이하	106
15	2,300 초과 2,700 이하	112
16	2,700 초과 3,100 이하	118
17	3,100 초과 3,600 이하	124
18	3,600 초과 4,100 이하	142
19	4,100 초과 4,700 이하	163
20	4,700 초과 5,300 이하	185
21	5,300 초과 6,000 이하	209
22	6,000 초과 6,700 이하	235
23	6,700 초과 7,400 이하	261
24	7,400 초과 8,200 이하	289
25	8,200 초과 9,000 이하	318
26	9,000 초과 10,000 이하	351
27	10,000 초과 11,000 이하	388

28	11,000 초과 12,000 이하	425
29	12,000 초과 13,000 이하	462
30	13,000 초과 15,000 이하	518
31	15,000 초과 17,000 이하	592
32	17,000 초과 20,000 이하	684
33	20,000 초과	740

○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

○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7. 귀속비율

해당 지자체 100%

8. 산정예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과징금 산식

- 영업정지 ⇒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 × 영업정지기간
- 품목류 제조정지 ⇒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 × 영업정지기간
- 품목 제조정지 ⇒ 과징금 처분 직전 3개월간 해당 품목의 총매출금액 × 4 × 영업정지기간
- * 과징금 산정금액이 10억원 초과 ⇒ 10억원으로 산정

9.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과징금납부의무자는 그 납부 기한의 1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납부기한의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제공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08. 방문판매등에 관한 과징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징금)

1. 부과목적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보호 등

2. 부과근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과징금)

3. 부과대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업소 공정거래 위원회인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해당사업자에게 해당사업자에게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09. 화학물질관리법위반과징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징금)

1. 부과목적

유해화학물질 사업자의 영업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방지

2. 부과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36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3. 부과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각 항 : 환경부인 국가 기관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 업자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해당사업장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0. 할부거래에 관한 과징금

1. 부과목적

위반해위로 인한 소비자 보호 등

2. 부과근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과징금)

3. 부과대상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영업정지) 1항의 업소 : 공정거래 위원회인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해당사업자에게 해당사업장에게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1. 영유아보육법위반과징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징금)

1. 부과근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과징금의 산정기준), 국세 체납처분의 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 부과대상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어린이집

3. 부과기준

가. 과징금 처분 대상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에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나. 어린이집의 폐쇄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
-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보육교직원을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다.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일반기준

가. 운영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목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운영정지 기간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간(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마. 연간 총수입금액은 법 3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하여 지원한 비용,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더하여 산정한다.
바. 연간 총수입금액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연도의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운영 중단 등으로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조정한다.
사.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2.과징금의 산정방법

등급	연간 총수입금액 (단위: 백만원)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원)
1	30 미만	10,000
2	30 이상 ~ 60 미만	30,000
3	60 이상 ~ 100 미만	53,000
4	100 이상 ~ 200 미만	70,000
5	200 이상 ~ 300 미만	85,000
6	300 이상 ~ 400 미만	100,000
7	400 이상 ~ 500 미만	115,000
8	500 이상 ~ 600 미만	130,000
9	600 이상 ~ 700 미만	145,000
10	700 이상 ~ 800 미만	164,000
11	800 이상 ~ 900 미만	186,000
12	900 이상 ~ 1,000 미만	208,000
13	1,000 이상 ~ 1,100 미만	230,000
14	1,100 이상 ~ 1,200 미만	252,000
15	1,200 이상 ~ 1,300 미만	274,000
16	1,300 이상 ~ 1,400 미만	296,000

17	1,400 이상 ~ 1,500 미만	318,000
18	1,500 이상 ~ 1,600 미만	340,000
19	1,600 이상 ~ 1,700 미만	362,000
20	1,700 이상 ~ 1,800 미만	383,000
21	1,800 이상 ~ 1,900 미만	405,000
22	1,900 이상 ~ 2,000 미만	427,000
23	2,000이상	438,000

4. 징수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5. 부과 및 징수절차

1.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
2.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납부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
3. 분할납부 불가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징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징금)

1. 부과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약칭:석유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 국세 체납처분의 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 부과대상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석유사업법 제14조 해당)

3. 부과기준

가. 과징금 처분 대상

- 제13조(등록의 취소등)에 해당하는 경우
 - * 석유정제업자 : 제13조제1항제7호~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제15호
 - * 석유수출입업자 : 제13조제2항제7호
 - * 석유판매업자 : 제13조제4항제2호, 제3호 또는 제8호
-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음
 - ※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할 수 없는 경우
- 착색제를 제거·첨가하거나 식별제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장치 등을 설치·개조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
- 제30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 훼손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
-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

나. 과징금의 부과 및 산정기준(규칙 제17조 제1항 및 제42조제2항)

1. 법 제1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방법

가. 일반기준

- 1)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2) 사업정지 처분을 같음하는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과징금 부과금액} = \text{사업정지 일수} \times \text{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times 0.18$$

- 3) 2)의 사업정지 일수는 별표 1에 따라 처분된 일수(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를 말한다.
- 4) 1일 평균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3년간 총 매출액의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3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매출액을 환산한다.
- 5) 2)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금액이 나목 및 다목의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기준금액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사업자 종류별 과징금액							
		석유정제업자		석유수 출입업 자	국제 석유 거래 업자	석유판매업자			신고 대상
		등록 대상	신고 대상			등록 대상			
						일반 대리 점/ 용제 대리 점	주유소/용 제판매소 /부생연료 유통판매소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	-	-	-	5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	-	-	-	3천만원	1천5백만원	2천만원	8백만원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10억원	1억원	1억5천만원	-	5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1천만원

	까지	원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10억원 (용제 정제업 자 2억 원)	1억원	1억5천 만원	-	5천 만원	3천만원	4천만원	1천만원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 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10억원 (용제 정제업 자 2억 원)	1억5 천 만원	1억5천 만원	-	5천 만원	3천만원	4천만원	1천만원
6)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증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10억원 (용제 정제업 자 2억 원)		1억5천 만원	1억5 천 만원			4천만원	
7) 법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10억원 (용제 정제업 자 2억 원)	1억5 천 만원	1억5천 만원	-	5천 만원	3천만원	4천만원	1천만원
8)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가)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나) 그 밖의 가짜석유 제품의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법 제14조 제1항	10억원 (용제 정제업 자 2억 원) 10억원 (용제 정제업	1억5 천 만원 2억원	1억5천 만원 2억원	- -	5천 만원 1억5 천 만원	3천 만원 1억원	4천 만원 6천 만원	1천 만원 3천 만원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	자 2억 원)							
9) 법 제29조제1항제 3호를 위반하여 가 짜석유제품을 제조 · 사용하게 할 목적 으로 석유제품·석 유화학제품·석유 대체연료 또는 탄소 와 수소가 들어 있 는 물질을 공급·판 매·저장·운송 또 는 보관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10억원 (용제 정제 업자 2억원)	2억원	2억원	-	1억5 천 만원	1억원	6천 만원	3천 만원
10)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4 조 제1 항 제1 호 부 터 제3호 까지	10억원 (용제 정제업 자 2억 원)	1억5 천 만원	2억원	1억5 천 만원	5천 만원	3천만원	4천만원	1천만원
11) 법 제39조에 따 른 행위의 금지 를 위반한 경우 가) 정량에 미달되 게 판매하는 경 우 (1)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 의 유효기간 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 된 영업시설 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 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 인 경우 (2) 그 밖의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	5억원 (용제 정제 업자 1억원) 10억원 (용제 정제 업자 2억원)	1억원 2억원	1억원 2억원	1억 원 2억 원	3천 만원 6천 만원	2천 만원 4천 만원	2천5백 만원 5천 만원	1천 만원 2천 만원

나) 부당하게 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3호까지	10억원 (용제정제업자 2억원)	2억원	2억원	2억원	6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다)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비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법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10억원 (용제정제업자 2억원)	2억원	2억원	2억원	1억5천만원	1억원	6천만원	3천만원
라) 그 밖의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3호까지	10억원 (용제정제업자 2억원)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3천만원	1천5백만원	2천만원	8백만원

다.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기준 금액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사업자 종류별 과징금액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대리점	주유소	판매소
1)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가)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법 제35조 제1항	1억5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나) 그 밖의 가짜석유제품의 경우	법 제35조 제1항	2억원	1억5천만원	1억원	3천만원
2)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법 제35조제1항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를 받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 4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법 제3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4)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35조제1항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5)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6)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가)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경우	법 제5조 제1항				
(1)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		1억원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2) 그 밖의 경우		2억원	6천만원	4천만원	2천만원
나) 부당하게 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경우	법 제5조 제1항	1억원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다)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법 제5조 제1항	2억원	1억5천만원	1억원	3천만원
라) 그 밖의 경우	법 제5조 제1항	1억원	3천만원	1천5백만원	1천만원

2. 법 제14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text{기준저장시설 미달 용량(배럴 또는 톤)} \times \text{건설단가(원/배럴 또는 톤)} \times \text{기준저장시설 미달 일수/365} \times \text{연간 대출금리}$$

가. 기준저장시설 미달 용량은 등록 요건으로 정한 저장시설 용량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장시설 용량을 뺀 물량으로 한다.

나. 건설단가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건설된 석유비축시설 중 기준저장시설 미달일 현재 가장 최근에 준공된 석유비축시설[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제외한다) 및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의 경우에는 지상 원유 저장시설을 말하며,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을 말한다]의 건설단가를

적용한다.

다. 기준저장시설 미달 일수는 저장시설 기준에 미달된 날부터 과징금을 부과한 날까지로 한다.

라. 연간 대출금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3. 법 제14조제3항 및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text{기준비축 미달 물량} \times \text{국내 평균 수입단가} \times \text{비축의무 불이행 일수} / 365 \times 60 \text{일}$ $\text{간의 내국수입 유전스율(usance율)}$

가. 기준비축 미달 물량은 석유비축량(석유대체연료 비축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석유비축의무량(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미달된 달의 3개월 전에 해당하는 달의 첫날부터 제21조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미달 물량을 말한다.

나. 국내 평균 수입단가는 비축의무 불이행기간 중 다음 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를 포함한다)의 국내 평균 CIF(운임 및 보험료 포함 수입단가)를 적용한다.

1) 석유정제업자는 원유

2) 석유수출입업자(석유가스를 수출입하는 자만 해당한다)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프로판

3) 석유수출입업자(석유가스를 수출입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수입하는 해당 석유제품. 다만, 수입하는 석유제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석유제품의 평균 수입단가를 적용한다.

4)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는 수입하는 해당 석유대체연료. 다만,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석유대체연료의 평균 수입단가를 적용한다.

다. 비축의무 불이행 일수는 석유비축량이 석유비축의무량에 미달된 달의 첫날부터 제21조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시정기한까지로 한다.

라. 내국수입 유전스율 및 환율(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을 말한다)은 석유비축량이 석유비축의무량에 미달된 달의 3개월 전에 해당하는 달의 첫날부터 제21조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내국수입 유전스율 및 환율을 적용한다.

- 가. 운영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목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 다. 운영정지 기간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간(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늘거나 줄여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 마. 연간 총수입금액은 법 3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하여 지원한 비용,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더하여 산정한다.
- 바. 연간 총수입금액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운영 중단 등으로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조정한다.
- 사.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3. 징수권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4. 부과 및 징수절차

- 1.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
- 2.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납부
 -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
- 3. 분할납부 불가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과징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징금)

1. 부과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5조의2

2. 부과대상

장기요양기관

3. 부과기준

가. 과징금 처분 대상

-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 업무정지명령을 하는 경우
 - *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제4호는 제외)
-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 ※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할 수 없는 경우 : 제37조제1항제6호 해당시
-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나. 과징금의 부과기준(시행령 제15조 관련)

-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 업무정지명령을 하는 경우
 - *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 (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제4호는 제외)
-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 *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할 수 없는 경우 : 제37조제1항제6호 해당시
-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1. 법 제37조제1항제2호·제3호·제3호의2·제3호의3·제5호·제6호(제6호의 경우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법 제37조제3항제2호·제3호(제3호의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 기준

가.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하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에 다목의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 과징금 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다.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장기요양기관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그 장기요양기관의 연간 총 수입금액별로 정한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으로 한다.

등급	연간 총 수입금액(단위: 백만원)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천원)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1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55
2	20 초과 30 이하	20 초과 3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이하	90
3	30 초과 40 이하	30 초과 40 이하	30 초과 40 이하	30 초과 40 이하	130
4	40 초과 50 이하	40 초과 50 이하	40 초과 50 이하	40 초과 50 이하	160
5	50 초과 60 이하	50 초과 60 이하	50 초과 60 이하	50 초과 60 이하	200
6	60 초과 70 이하	60 초과 70 이하	60 초과 70 이하	60 초과 70 이하	230
7	70 초과 80 이하	70 초과 80 이하	70 초과 80 이하	70 초과 80 이하	260
8	80 초과 90 이하	80 초과 90 이하	80 초과 90 이하	80 초과 90 이하	300
9	90 초과 100 이하	90 초과 100 이하	90 초과 100 이하	90 초과 100 이하	330
10	100 초과 120 이하	100 초과 120 이하	100 초과 120 이하	100 초과 120 이하	350

11	120 초과 140 이하	120 초과 140 이하	120 초과 140 이하	120 초과 140 이하	410
12	140 초과 160 이하	140 초과 160 이하	140 초과 160 이하	140 초과 160 이하	460
13	160 초과 180 이하	160 초과 180 이하	160 초과 180 이하	160 초과 180 이하	530
14	180 초과 200 이하	180 초과 200 이하	180 초과 200 이하	180 초과 200 이하	591
15	200 초과 300 이하	200 초과 300 이하	200 초과 300 이하	200 초과 300 이하	778
16	300 초과 400 이하	300 초과 400 이하	300 초과 400 이하	300 초과 400 이하	1,090
17	400 초과 50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1,400
18	500 초과 600 이하	500 초과 600 이하	500 초과 600 이하	500 초과 600 이하	1,710
19	600 초과 700 이하	600 초과 700 이하	600 초과 700 이하	600 초과 700 이하	2,030
20	700 초과 800 이하	700 초과 800 이하	700 초과 800 이하	700 초과 800 이하	2,340
21	800 초과 900 이하	800 초과 900 이하	800 초과 900 이하	800 초과 900 이하	2,670
22	900 초과 1000 이하	900 초과 1000 이하	900 초과 1000 이하	900 초과 1000 이하	2,960
23	1000 초과 1200 이하	1000 초과	1000 초과 1200 이하	1000 초과 1200 이하	3,440
24	1200 초과 1400 이하		1200 초과 1400 이하	1200 초과 1400 이하	4,020
25	1400 초과 1600 이하		1400 초과 1600 이하	1400 초과 1600 이하	4,680
26	1600 초과 1800 이하		1600 초과 1800 이하	1600 초과 1800 이하	5,300
27	1800 초과 2000 이하		1800 초과 2000 이하	1800 초과 2000 이하	5,880
28	2000 초과		2000 초과	2000 초과 2200 이하	6,620
29				2200 초과 2500 이하	7,280
30				2500 초과 3000 이하	8,560
31				3000 초과	11,590

□ 비고

1. 총 수입금액은 장기요양사업으로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금액과 수급자로부터 받은 본인일부부담금 금액의 합계로 한다.
2. 연간 총 수입금액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휴업 또는 재개설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 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의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수입금액을 기초로 연간 총 수입금액을 산출한다.
3. 과징금 부과 대상 장기요양기관이 위 표의 구분에 따른 두 종류 이상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경우 먼저 그 각각의 연간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과징금을 산정한 후, 그 각각의 과징금을 합하여 해당 과징금 부과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총 금액을 산정한다.
2.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 기준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별로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따라 청구된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의 비용(이하 “부담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담금액의 2배
나.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담금액의 3배
다. 업무정지기간이 30일 초과 5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담금액의 4배
라.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총 부담금액의 5배

4. 징수권자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5. 부과 및 징수절차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2.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납부 <p>※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3. 납부기한까지 미납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

14. 전기공사업법 과징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징금)

1. 부과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2항,

2. 부과대상

전기공사업자

3. 부과기준

가. 부과기준 :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 법 제27조제2호~제5호, 제8호에 해당되어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하는 경우
-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 있을 때
-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 과징금 부과

나. 과징금 1/2가중 또는 감경(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또는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나 금액을 초과 불가

다. 체납처분(법 제28조 제4항)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라. 가산금 : 규정 없음

마. 불복청구 : 규정 없음

바.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부 과 기 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나.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법 제28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나. 가목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처분종료일까지 또는 과징금 을 부과받고 그 부과일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영업정지 1개월 또 는 과징금 200만원 등록취소
2의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 우 가. 등록기준 신고기간 경과 후 90일 이 지난 경우 나. 가목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만료일까지 등 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거 나 과징금을 부과받고 그 부과일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2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 등록취소

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4호	등록취소
5. 다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5호	
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나.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긴 경우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600만원
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전기공사기술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600만원
라.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그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
마.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사.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
6. 해당 전기공사가 완료되어 다음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에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3개월
나. 법 제16조제1항에 위반하여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전기공사기술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라.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마. 법 제22조에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3개월
6의2.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6호의2	
가. 1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나. 2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록취소
7.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7호	등록취소
8.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8호	등록취소

4. 징수권자

시 . 도지사

5. 부과 및 징수절차

1.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2.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 명시
3. 납부기한까지 미납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15. 마약류에관한법률위반 과징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징금)

1. 부과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마약류관리법) 제46조(과징금처분),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

2. 부과대상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3. 부과기준

가. 부과기준

-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월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음

나.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관할 세무관서)

- 납세자의 인적사항
-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다. 체납처분(법 제46조 제3항,4항)

- 납부기한까지 과징금 미납시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
-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 폐업등으로 업무정지처분 불가시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자료제공 요청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라.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5조 관련)

1.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경우

(단위: 만원)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전년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출입금액
1.5	2,000 미만
5.3	2,000 이상 ~ 5,000 미만
9	5,000 이상 ~ 7,000 미만
13	7,000 이상 ~ 10,000 미만
23	10,000 이상 ~ 20,000 미만
36	20,000 이상 ~ 30,000 미만
42	30,000 이상 ~ 40,000 미만
48	40,000 이상 ~ 50,000 미만
54	50,000 이상 ~ 60,000 미만
60	60,000 이상 ~ 70,000 미만
66	70,000 이상 ~ 80,000 미만
72	80,000 이상 ~ 100,000 미만
78	100,000 이상 ~ 150,000 미만
95.5	150,000 이상 ~ 200,000 미만
109	200,000 이상

나. 마약류도매업자의 경우

-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5만원

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 및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경우

-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3만원

2. 과징금의 산정방법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업무정지처분을 같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의 처분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전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출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2) 품목제조업무(품목수입업무)의 정지처분을 같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의 처분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해당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출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3) 1) 및 2)의 경우 신규로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출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생산금액(수출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다.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업무정지처분을 같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의 처분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출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2) 1)의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출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생산금액(수출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4. 징수권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지자체 보건소)

5. 부과 및 징수절차

1.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
2.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납부.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
3. 분할납부 불가

16.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및과태료등/과징금)

1. 부과목적

건설업계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향상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 부과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3. 부과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를 위반한 자

4. 징수권자

국토교통부장관

5.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이상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2호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2) 법 제23조제3항	법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 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82조 제1항제 3호						
3)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수급인이 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로서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 1호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수급인이 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2조 제1항제 1호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5)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 4호	3개월	6,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2호·제3호·제4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 5호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5호·제7호·제10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		2개월		3개월		3개월	

은 경우							
나) 가) 외의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7) 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8호						
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보험료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나)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다)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마)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선급금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지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않은 경우 사) 법 제37조 에 따른 준 공 또는 기 성 검사를 이행하지 않 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아) 법 제38조 제1항에 따 른 불공정행 위를 강요한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자) 삭제 <2016. 8. 4.>							
차) 법 제68조 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 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를 주지 않 은 경우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8) 법 제38조제2 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법 제 82조 제 1 항 제9호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비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 정지 기간	과징금의 비율(%)			
			도 급 금 액 5 천 만 원 이하	도 급 금 액 1 억원	도 급 금 액 5 억원	도 급 금 액 30억 원 이상
1)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경우	법 제82 조 제 2 항 제 1 호	8개월	30	24	16	8
2) 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 접 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 조 제 2 항 제 2 호	6개월	24	18	12	6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 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 을 포함한다)한 경우	법 제82 조 제 2 항 제 3 호	6개월	24	18	12	6

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8개월	30	24	16	8
5)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6개월	24	18	12	6
6)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4개월	16	12	8	4
7) 재하도급금지규정을 위반하였으나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4개월	16	12	8	4
8)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4호	6개월	24	18	12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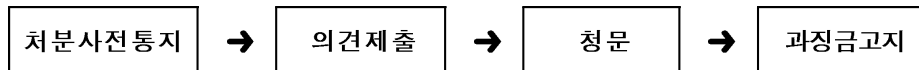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과징금 금액
1)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 제82조의2 제1항	8개월 6개월 4개월 2개월	8억원 6억원 4억원 2억원
2) 법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수수액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2조의2 제2항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년 4개월	16억원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1년	12억원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8개월	8억원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개월	4억원

6. 부과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름.

7. 귀속비율

해당 지자체 100%

8. 감면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82조 및 제83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법 제38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가. 감경 사유

- 가)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다) 건설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

나. 가중 사유

- 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위반행위를 한 해당 건설업자와 그 소속 직원 및 근로자는 제외한다)을 사망하게 하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나) 해당 위반행위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발생한 경우
- ⇒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 또는 가중(과징금의 경우 2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15일(과징금 1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다. 부과 및 납부기한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라. 체납처분 절차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과징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등/과징금)

1. 부과목적

이 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부과근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8조(과징금)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3. 부과대상사업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자(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

4. 부과·징수권자

도지사, 시장·군수(승인 및 인가권자)

5. 부과기준

가. 일반기준

- 가.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일부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영업의 전부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도축업과 집유업의 경우에는 도축 및 집유 시 영업자가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처분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1년간의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 다. 영업의 일부정지인 품목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조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처분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1년간의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 라. 영업의 일부정지인 품목 제조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에 대한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의 해당 품목의 총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휴업 등으로 3개월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의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나. 과징금 기준

가)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 전부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의 전부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100 이하	12
2	100 초과 200 이하	14
3	200 초과 310 이하	17
4	310 초과 430 이하	20
5	430 초과 560 이하	27
6	560 초과 700 이하	34
7	700 초과 860 이하	42
8	860 초과 1,040 이하	51
9	1,040 초과 1,240 이하	62
10	1,240 초과 1,460 이하	73
11	1,460 초과 1,710 이하	86
12	1,710 초과 2,000 이하	94
13	2,000 초과 2,300 이하	100
14	2,300 초과 2,600 이하	106

15	2,600 초과 3,000 이하	112
16	3,000 초과 3,400 이하	118
17	3,400 초과 3,800 이하	124
18	3,800 초과 4,300 이하	140
19	4,300 초과 4,800 이하	157
20	4,800 초과 5,400 이하	176
21	5,400 초과 6,000 이하	197
22	6,000 초과 6,700 이하	219
23	6,700 초과 7,500 이하	245
24	7,500 초과 8,600 이하	278
25	8,600 초과 10,000 이하	321
26	10,000 초과 12,000 이하	380
27	12,000 초과 15,000 이하	466
28	15,000 초과 20,000 이하	604
29	20,000 초과 25,000 이하	777
30	25,000 초과 30,000 이하	949
31	30,000 초과 35,000 이하	1,122
32	35,000 초과 40,000 이하	1,295
33	40,000 초과	1,381

나)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외의 영업의 영업 전부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의 전부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20 이하	5
2	20 초과 30 이하	8
3	30 초과 50 이하	10
4	50 초과 100 이하	13
5	100 초과 150 이하	16
6	150 초과 210 이하	23
7	210 초과 270 이하	31
8	270 초과 330 이하	39
9	330 초과 400 이하	47
10	400 초과 470 이하	56
11	470 초과 550 이하	66
12	550 초과 650 이하	78
13	650 초과 750 이하	88
14	750 초과 850 이하	94
15	850 초과 1,000 이하	100
16	1,000 초과 1,200 이하	106
17	1,200 초과 1,500 이하	112
18	1,500 초과 2,000 이하	118
19	2,000 초과 2,500 이하	124
20	2,500 초과 3,000 이하	130
21	3,000 초과 4,000 이하	136
22	4,000 초과 5,000 이하	165
23	5,000 초과 6,500 이하	211
24	6,500 초과 8,000 이하	266
25	8,000 초과 10,000 이하	330
26	10,000 초과	367

다). 품목류·품목 제조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품목류·품목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100 이하	12
2	100 초과 200 이하	14
3	200 초과 300 이하	16
4	300 초과 400 이하	19
5	400 초과 500 이하	24
6	500 초과 650 이하	31
7	650 초과 800 이하	39
8	800 초과 950 이하	47
9	950 초과 1,100 이하	55
10	1,100 초과 1,300 이하	65
11	1,300 초과 1,500 이하	76
12	1,500 초과 1,700 이하	86
13	1,700 초과 2,000 이하	100
14	2,000 초과 2,300 이하	106
15	2,300 초과 2,700 이하	112
16	2,700 초과 3,100 이하	118
17	3,100 초과 3,600 이하	124
18	3,600 초과 4,100 이하	142
19	4,100 초과 4,700 이하	163
20	4,700 초과 5,300 이하	185
21	5,300 초과 6,000 이하	209
22	6,000 초과 6,700 이하	235
23	6,700 초과 7,400 이하	261
24	7,400 초과 8,200 이하	289
25	8,200 초과 9,000 이하	318
26	9,000 초과 10,000 이하	351
27	10,000 초과 11,000 이하	388
28	11,000 초과 12,000 이하	425
29	12,000 초과 13,000 이하	462
30	13,000 초과 15,000 이하	518
31	15,000 초과 17,000 이하	592
32	17,000 초과 20,000 이하	684
33	20,000 초과	740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사전통지
과징금고지	20일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가산고지	30일	3% 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예고 및 독촉, 가산고지부터 이의신청 불가 ※ 가산금 5% → 3% 인하(2017. 6. 3 시행)

7. 귀속비율

해당 지자체 100%

8. 부과 및 납부기한

부과일로부터 20일 이내 납부

9. 연체요율

부담금액의 100분의 3

* 축산물위생관리법 산정 예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과징금 산식

- 영업정지 $\Rightarrow$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 $\times$ 영업정지기간

- 품목류 제조정지 $\Rightarrow$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 $\times$ 영업정지기간

- 품목 제조정지 $\Rightarrow$ 과징금 처분 직전 3개월간 해당 품목의 총매출금액 $\times 4 \times$ 영업정지기간

* 과징금 산정금액이 10억원 초과 $\Rightarrow$ 10억원으로 산정

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등/과징금)

1. 부과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7조(과징금)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3. 부과대상사업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4. 부과·징수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5. 부과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 횟수는 세 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제45조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응급의료종사자가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중 응급의료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1호	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3개월	면허 또는 자격취소
나. 응급의료종사자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1호	면허 또는 자격정지 7일	면허 또는 자격정지 15일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다.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거부한 경우				
1) 응급의료종사자	법 제55조제1항제1호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3개월
2)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법 제55조제3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라.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제2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마.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의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경우				
1) 응급의료종사자	법 제55조제1항제2호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2)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법 제55조제3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바.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의 협조요청을 거부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사. 응급의료기관이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진료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아. 응급의료종사자가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3호	면허 또는 자격정지 15일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
자. 응급의료기관이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법 제55조제3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사람이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경우				
차. 법 제34조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제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이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타. 응급구조사가 법 제36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법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3호의2	자격취소		
파. 응급구조사가 법 제3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4호	자격취소		
하. 응급구조사가 법 제39조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약품의 관리·운용과 응급구조사의 복장·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처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1호	자격정지 7일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거. 응급구조사가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1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3개월
너. 응급구조사가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5호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더. 응급구조사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6호	시정명령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러.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제1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머.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구급차 운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제3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버.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구급차등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서.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6조의2를 위반하여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에 의료장비, 구급약품 등과 통신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저.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7조	법 제55조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장비를 장착하지 아니하거나,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장착에 따른 정보를 수집·보관하지 아니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항제1호	1개월	2개월	3개월
저.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구급차등이 출동하는 때 응급구조사 등을 탑승시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제1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커. 응급구조사(응급구조사에 갈음한 의사나 간호사를 포함한다)가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구급차등의 운용자나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1호	면허 또는 자격정지 7일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
티.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의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퍼.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법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대장을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허.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진료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응급구조사(응급구조사에 갈음한 의사나 간호사를 포함한다)가 제출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고.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제5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노.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도.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제1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로.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설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제1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모. 이송업자가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의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지원센터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보. 이송업자가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소. 이송업자가 법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송업의 지위를 승계한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오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법 제54조의2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 또는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제1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조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지원센터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제1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초 의료기관(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 법 제35조의2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이 법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제1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 과징금 산정기준(시행령 제28조제1항 관련)

등급	연간 수입금액(단위 : 100만원)	1일 과징금액(단위 : 원)
1	50 이하	30,000
2	50 초과 ~ 100 이하	45,000
3	100 초과 ~ 200 이하	60,000
4	200 초과 ~ 300 이하	75,000
5	300 초과 ~ 400 이하	90,000
6	400 초과 ~ 500 이하	115,000
7	500 초과 ~ 600 이하	130,000
8	600 초과 ~ 700 이하	140,000
9	700 초과 ~ 800 이하	150,000
10	800 초과 ~ 900 이하	160,000
11	900 초과 ~ 1,000 이하	170,000
12	1,000 초과 ~ 2,000 이하	175,000
13	2,000 초과 ~ 3,000 이하	180,000
14	3,000 초과 ~ 4,000 이하	185,000
15	4,000 초과 ~ 5,000 이하	190,000
16	5,000 초과 ~ 6,000 이하	195,000
17	6,000 초과 ~ 7,000 이하	200,000
18	7,000 초과 ~ 8,000 이하	205,000
19	8,000 초과 ~ 9,000 이하	210,000
20	9,000 초과	215,000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업무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원할 경우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첨부하여 제출
과징금고지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과징금산정기준 금액을 고지 이의신청 기간 90일
독촉고지		체납 시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2회 독촉

7. 귀속비율

해당 지자체 100%

8. 감면대상

개별기준에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당해 처분권자가 의료정책추진 또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1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징금)

1. 부과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과징금),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3. 부과대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제27조, 제32조)

4.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기준(시행령 제7조제1항 관련)

(금액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	근 거 법 조 문	처 분 내 용				
		화물 자동차 운 송 사 업			화물 자 동 차 운 송 주 선 사 업	화물 자 동 차 운 송 가 맹 사 업
		일 반	개 별	용 달		
1.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4호	60	30	30	－	－
1의2.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6호	60	60	60	－	－
2. 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19조제1항제7호	20	10	10	－	－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나.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한 경우	20	10	10	-	-
다.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않는 화물을 운송한 경우					
○ 1차 및 2차	20	20	20	-	-
○ 3차 이상	30	30	30	-	-
라.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	360	180	180	-	-
마.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	360	180	180	-	-
바. 법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지 않거나 이용자의 요구에 이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	20	10	10	-	-
사. 법 제11조제9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가입한 경우	20	10	10	-	-
아. 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가 법 제11조제10항을 위반하여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직접 화물운송을 주선받은 경우	20	10	10	-	-
자.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가 법 제11조제11항을	20	10	10	-	-

위반하여 자기의 상호를 소속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차. 법 제11조제12항 본문을 위반하여 위·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가 해당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물위탁증을 내주지 않은 경우	60	-	-	-	-
카. 법 제11조제12항 단서를 위반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60	-	-	-	-
타. 법 제11조제13항을 위반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면서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킨 경우	500	250	250	-	-
파. 법 제11조제14항을 위반하여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1)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500	250	250	-	-
2)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위·수탁차주가 이행해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위·수탁차주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300	150	150	-	-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법 제11조제15항을 위반하여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았음에도 위·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300	150	150	—	—
거. 법 제11조제16항을 위반하여 위·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300	150	150	—	—
너. 법 제11조제17항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한 경우	60	—	—	—	—
더. 법 제11조제18항을 위반하여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위탁 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60	180	180	—	—
러. 법 제11조제1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60 이하	30 이하	30 이하	—	—
2의2. 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 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7호의2 500	—	—	—	—
2의3. 법 제11조의3에 따른 위탁 화물의 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7호의3 300	150	150	—	—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에 관한 개선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8호	300	150	150	—	—
4.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1호					
가. 5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3에 이르게 된 경우 $\left(\frac{\text{교통사고 건수}}{\text{화물자동차의 대수}} \times 10 \right)$		500	250	250	—	—
나. 5대 미만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고이전 최근 1년 동안에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60	30	30	—	—
4의2.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2	300	150	150	—	—
4의3.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3	500	250	250	—	—
4의4.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4호	—	—	—	60	—
5. 법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6호					
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그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한 경우. 다만, 화물운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직접 위탁하기 위하여 다른 운송업자에게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		—	—	—	360	—

한다.						
나.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한 경우	-	-	-	360	-	
다. 삭제 <2011.12.13>						
라.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	-	60	-	
마.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한 경우	-	-	-	60	-	
바.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가 법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한 경우	-	-	-	40	-	
사.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30 이하	-	
6.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같은 조 제3항·제4항·제7항·제10항,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및 제19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7호					
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담한 운송주선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주선계약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	-	-	20	-	
나.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선운임 및 주선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	-	-	360	-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						
다. 법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주선운임 및 주선요금과 운송주선약관을 영업소에 갖추어 두지 않거나 이용자의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	10	-	
라. 법 제11조제9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가입한 경우	-	-	-	20	-	
마.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주선사업자가 법 제1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상호를 소속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지 않거나 상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20	-	
바. 법 제11조제12항 본문을 위반하여 위·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주선사업자가 해당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물의 종류와 운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화물위탁증을 내주지 않은 경우	-	-	-	60	-	
사. 법 제11조제12항 단서를 위반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	-	60	-	
6의2.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위탁 화물의 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7호의2	-	-	-	300	-

7.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8호	-	-	-	120	-
7의2.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8호의2	-	-	-	300	-
8.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2호	-	-	-	-	60
8의2.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7호	-	-	-	-	60
9.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8호	-	-	-	-	120
10.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9호					
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	-	-	-	20
나.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한 경우		-	-	-	-	20
다.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않는 화물을 운송한 경우						
○ 1차 및 2차		-	-	-	-	20
○ 3차 이상		-	-	-	-	30
라.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		-	-	-	-	360
마.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회주, 다른 운송가맹사업자		-	-	-	-	360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					
바. 법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과 운송가맹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지 않거나 이용자의 요구에 이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	-	-	-	-	20
사. 법 제11조제12항 본문을 위반하여 위·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가맹사업자가 해당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물위탁증을 내주지 않은 경우	-	-	-	-	60
아. 법 제11조제12항 단서를 위반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	-	-	60
자. 법 제11조제1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60 이하
10의2.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9호의2	-	-	-	300

1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31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2조제1항제10호	-	-	-	-	120
12.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2호	-	-	-	-	500
가. 5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3에 이르게 된 경우 $\left(\frac{\text{교통사고 건수}}{\text{화물자동차의 대수}} \times 10 \right)$		-	-	-	-	60
나. 5대 미만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고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	-	-	300
13.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3호의2	-	-	-	-	300

※ 비고

1. 삭제 <2017. 1. 10.>
2. 별표 1, 별표 3 또는 별표 4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이 있는 경우에 2차 이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결정한다.

$$(\text{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times \frac{2\text{차 이상 위반 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1\text{차 위반 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

3. 위 표 제4호 및 제12호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 및 교통사고지수의 산정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교통사고 건수 및 교통사고지수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위 표의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과정금 금액의 세부기준(시행규칙 제30조 관련)

(금액단위: 만원)

위 반 내 용	해 당 법 조 문	처 분 내 용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화물 운송 주선 사업	화물 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
		일반	개별	용달		
1.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제21조 제3호(제41조의 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10	-	-	20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제21조 제4호(제41조의 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10	5	-	20
3.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경우	제21조 제5호(제41조의 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10	-	-	20
4.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고 환급하지 않은 경우	제21조 제6호(제41조의 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0	15	15	-	30
5. 신고한 운송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21조 제7호(제41조의 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0	30	30	-	60
6.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운송사업자의 명칭(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한다)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제21조 제8호(제41조의 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5	5	-	10
7.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	제21조 제9호(제41조의	20	10	10	-	10

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락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제21조제13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10	10	-	20
9.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하게 한 경우	제21조제14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5	5	-	10
10. 삭제 <2014.11.28.>						
11.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 제한장치 또는 같은 규칙 제56조에 따른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를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한 경우	제21조제16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10	10	-	20
12. 법 제59조에 따라 실시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제17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0	15	15	-	30
13. 차량을 1대 보유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1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1조제18호	180	90	90	-	-
14. 운수종사자에게 제21조제23호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제23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80	60	60	-	180
15. 신고한 운송주선약관을	제38조의3제1호	-	-	-	20	-

준수하지 않은 경우						
16.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상호를 사용한 경우	제38조의3제4호	-	-	-	20	-
17. 화주에게 제38조의3제5호에 따른 견적서 또는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화주가 견적서 또는 계약서의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의3제5호	-	-	-	20	-
18. 화주에게 제38조의3제6호에 따른 사고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8조의3제6호	-	-	-	20	-

5. 징수권자

시장·군수·구청장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100% 금액을 고지하고 의견제출 시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함
과징금부과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서면으 로 통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 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이의 시 과징금 부과처분 효력 상실하지 않음)
독촉	20일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0일 이내 독촉장을 발급하고 납부기한은 20일 이내로 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국세징수법 제23조)
압류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채납자의 재산을 압류

7. 귀속비율

해당 지자체 100%

8. 감면대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사업 규
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
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과징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부담금/일반부담금)

1. 부과목적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의 갈음하는 과징금

2. 부과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과징금처분) 및 시행령 제7조의 2, 제7조의3, 제7조의 4

3. 부과 징수권자

시장·군수·구청장

부과대상	승인권자	부과권자	비고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4. 부과기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관련 [별표1]

가. 일반기준

-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다목에 따라 산정한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다.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연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라. 연간 총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에 따라 1년간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액을 환산하여 산출한다.

나. 과징금 기준

등급	연간 총매출액 (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원)
1	100 이하	9,400
2	100 초과 ~ 200 이하	41,000
3	200 초과 ~ 310 이하	52,000
4	310 초과 ~ 430 이하	63,000
5	430 초과 ~ 560 이하	74,000
6	560 초과 ~ 700 이하	85,000
7	700 초과 ~ 860 이하	96,000
8	860 초과 ~ 1,040 이하	105,000
9	1,040 초과 ~ 1,240 이하	114,000
10	1,240 초과 ~ 1,460 이하	123,000
11	1,460 초과 ~ 1,710 이하	132,000
12	1,710 초과 ~ 2,000 이하	141,000
13	2,000 초과 ~ 2,300 이하	153,000
14	2,300 초과 ~ 2,600 이하	174,000
15	2,600 초과 ~ 3,000 이하	200,000
16	3,000 초과 ~ 3,400 이하	228,000
17	3,400 초과 ~ 3,800 이하	256,000
18	3,800 초과 ~ 4,300 이하	288,000
19	4,300 초과 ~ 4,800 이하	324,000
20	4,800 초과 ~ 5,400 이하	363,000
21	5,400 초과 ~ 6,000 이하	406,000
22	6,000 초과 ~ 6,700 이하	452,000
23	6,700 초과 ~ 7,500 이하	505,000
24	7,500 초과 ~ 8,600 이하	573,000
25	8,600 초과 ~ 10,000 이하	662,000
26	10,000 초과 ~ 12,000 이하	783,000
27	12,000 초과 ~ 15,000 이하	961,000
28	15,000 초과 ~ 20,000 이하	1,246,000
29	20,000 초과 ~ 25,000 이하	1,602,000
30	25,000 초과 ~ 30,000 이하	1,959,000
31	30,000 초과 ~ 35,000 이하	2,315,000
32	35,000 초과 ~ 40,000 이하	2,671,000
33	40,000 초과	2,849,000

5. 과징금 귀속

해당 지자체 100% 귀속(「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의2(과징금처분) 제4항)

6. 가중 또는 감면대상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7. 부과 및 납부기한

과징금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납부

8. 연체요율

(가산금) 해당없음

9. 체납처분절차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의2(과징금처분)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4(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 독촉을 받고 그 독촉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미납 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 제11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징금)

1. 부과목적

게임산업 질서 유지

2. 부과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7조

3. 부과대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부과대상	부과권자	비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36조 해당 업장	시장 군수 등	허가기준, 등록기준 미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청소년 제공,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미설치,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 등

4. 부과징수권자

시장, 군수 등

5. 부과기준

○ 영업정지 1일 = 과징금 50,000원

금액산정기준(제27조 관련)

처 분 대 상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
일반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100,000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50,000원

※ 비 고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부과절차

법률위반 사항 확인(경찰서 통보 등) ▶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 확인 ▶ 처분내용에 따른 과징금전환 가능 여부 확인 ▶ 행정처분 사전통지 ▶ 의견제출 ▶ 행정처분(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 부과세부기준 : 법령참고

※게임산업법에 따른 모든 행정처분이 과징금 대상이 아님에 과징금 대상 여부 확인 필요

제36조(과징금 부과)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건전한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
2. 게임장의 건전화 및 유해환경 개선
3. 모범영업소의 지원
4. 불법게임물 및 불법영업소의 지도·단속활동에 따른 지원
5. 압수된 불법게임물의 보관장소 확보 및 폐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6. 사용용도 : 제36조 제2항에 의거 사용

건전한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

게임장의 건전화 및 유해환경 개선

모범영업소의 지원

불법게임물 및 불법영업소의 지도 단속활동에 따른 지원

압수된 불법게임물의 보관장소 확보 및 폐기

7. 감경대상

동법 시행령 제24조 의거 감경

8. 체납처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22. 약사법위반과징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징금)

1. 부과목적

약사법 위반업소(약국개설자, 의약품판매업자) 영업정지 처분의 갈음하는 과징금

2. 부과근거

약사법 제81조(과징금처분),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

3. 부과대상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

4. 부과·징수권자

시장·군수·구청장

부과대상	승인권자	부과권자	비고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	시장·군수 구청장	약사법 제81조 약사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약사법 시행규칙 제56조

5. 부과기준 : 약사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2]

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의 경우

구분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의약품 도매상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 을 제외한 의약품 판매업자
		전년도 총매출 금액	전년도 총매출 금액
1	3만원	5억원 미만	3천만원 미만
2	6만원	5억원 이상 7억원 미만	3천만원 이상 4천5백만원 미만
3	9만원	7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천5백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4	12만원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6천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5	15만원	1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7천5백만원 이상 9천만원 미만
6	18만원	20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9천만원 이상 1억5백만원 미만
7	21만원	2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억5백만원 이상 1억2천만원 미만
8	24만원	30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1억2천만원 이상 1억3천5백만원 미만
9	27만원	35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1억3천5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10	30만원	40억원 이상 45억원 미만	1억5천만원 이상 1억6천5백만원 미만
11	33만원	4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억6천5백만원 이상 1억8천만원 미만
12	36만원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1억8천만원 이상 1억9천5백만원 미만
13	39만원	6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1억9천5백만원 이상 2억1천만원 미만
14	42만원	7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2억1천만원 이상 2억2천5백만원 미만
15	45만원	80억원 이상 90억원 미만	2억2천5백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16	48만원	9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2억4천만원 이상 2억5천5백만원 미만
17	51만원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2억5천5백만원 이상 2억7천만원 미만
18	54만원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2억7천만원 이상 2억8천5백만원 미만
19	57만원	200억원 이상	2억8천5백만원 이상

나. 기타기준

-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은 해당 업소의 처분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6. 과징금 귀속

해당 지방자치단체 귀속(「약사법」제81조(과징금처분) 제5항)

7. 부과 및 납부기한

- 「약사법 시행규칙」 제56조(과징금의 징수절차)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납부기한의 고지 등)
- 관계 법령 등에서 납부기한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

8. 연체요율 : 가산금 해당없음

9. 체납처분절차

- 「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 발부, 납부기한은 독촉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미납 시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22. 사료관리법위반과징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징금)

1. 부과목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관리법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기 위함

2. 부과근거

사료관리법 제26조 (과징금처분) 및 동법 시행령 제5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3. 부과대상

사료관리법을 위반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료관리법 제26조 제1항)

4. 부과기준 : 과징금 부과기준(시행령 제5조)

가. 일반기준

-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제조업 생산능력(1일 8시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수입사료의 경우에는 해당 수입사료와 같은 날 같은 선박 등으로 수입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 다. 같은 날 제조한 같은 사료가 지역별 검사일시의 차이로 같은 위반 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최초로 적발된 것에만 과징금을 부과한다.
- 라. 과징금 하한은 50만원으로 하고, 그 상한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개별기준

구분	영업의 전부 정지			영업의 일부 정지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과징금 금액	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력(수입량) 1 톤당 500원	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력(수입량) 1 톤당 5,000 원. 다만, 곡 물류·곡물부 산물류·박류 ·섬유질류· 면실·인산염 류 및 칼슘염 류의 경우에는 1톤당 500원	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력(수입량) 1 톤당 10,000 원. 다만, 규 산염제 및 요 소제·완충제 의 경우에는 1톤당 500원	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력(수입량) 1 톤당 250원	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력(수입량) 1 톤당 2,500 원. 다만, 곡 물류·곡물부 산물류·박류 ·섬유질류· 면실·인산염 류 및 칼슘염 류의 경우에는 1톤당 250 원	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력(수입량) 1 톤당 5,000원. 다만, 규산염 제 및 요소제 · 완충제 의 경우에는 1톤 당 250원

다. 행정처분의 기준(시행규칙 제36조)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3.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3호	영업의 전부정지 4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5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4.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 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된 경우 나. 제조시설을 신고하지 아 니하고 변경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15일	등록취소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
5. 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가.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나.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료안전관리인의 요 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등록취소 등록취소
6.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한 경 우 가. 사료공정에 따라 사료를 제조·사용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나. 성분등록된 함량보다 부 족하거나 초과하도록 사료	법 제25조 제1항제8호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회수·양도 금지 영업의 일부정지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회수·양도 금지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회수·양도 금지 영업의 전부정지

를 제조한 경우		1개월	1개월	3개월
다. 등록성분의 등록치와 설 계치가 오차범위를 벗어 나도록 사료를 제조한 경 우	법 제25조 제1항제9호 법 제25조 제1항제10호 및 제11호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라. 성분규격 함량에 부족하 거나 순도시험 중 중금속 기준에 위반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회수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회수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회수
7.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한 경 우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등록취소
8. 법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가. 포장 및 용기에 표시하여 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항목을 누락한 경우로서				
1) 동물용의약품 첨가내용 또는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2) 1)을 제외한 3개 사항 이상을 위반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3) 1)을 제외한 3개 사항 미만을 위반한 경우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	영업의 일부정지 2개월	영업의 일부정지 3개월
나. 포장 및 용기에 표시하여 야 할 사항을 허위로 표 시한 것으로서				
1) 동물용의약품 첨가내용 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2) 1)을 제외한 3개 사항 이상을 허위로 표시한 경 우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3) 1)을 제외한 3개 사항 미만을 허위로 표시한 경 우	법 제25조 제1항제12호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	영업의 일부정지 2개월	영업의 일부정지 3개월
다. 사료명칭의 표시가 표시 기준에 위반된 경우		영업의 일부정지 7일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
라. 표시사항을 과장하여 표 시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9.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경 우				
가. 인체 또는 동물등에 해로 운 물질이 허용기준 이상 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 잔류된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시정명령 해당 제품 폐기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다. 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재까지 부패 또는 변질된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라. 동물 등의 건강유지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마.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료를 사용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의 일부정지 6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등록취소	영업의 전부 정지 6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의 전부 정지 6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료를 사용한 경우 사. 인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는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남은 음식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사료 또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의 일부정지 6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의 일부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등록취소	영업의 일부정지 6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10. 법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가.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경우 나. 물질·사료의 혼합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13호 및 제14호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11. 법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수입한 경우 나. 수입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15호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등록취소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다. 수입신고조건을 위반한 경우 12. 법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16호 및 제17호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2) 검사실시비용이 검사항목의 50% 미만일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15일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3) 검사실시비용이 검사항목의 50% 이상일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7일	영업의 전부정지 15일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7일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다. 자가품질검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사료검정 인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13. 법 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18호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14.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19호	영업의 전부정지 15일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2개월

5. 부과 및 납부기한

- 부과시기 : 사료관리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제19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6. 체납처분

사료관리법 제26조제3항에 의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7. 징수권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3. 농수산물 유통 등 관련 과징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징금, 과태료)

1. 부과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부과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3조(과징금) 및 제90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3. 부과대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제82조제5항, 제90조제1·2·3항에 해당하는 자 ⇒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

4. 부과기준(제36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8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제2호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처분 대상자의 전년도 연간 거래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1년간의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분일 기준 최근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라.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1일당 과징금 금액을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마. 부과하는 과징금은 법 제83조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과징금 부과기준

가.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를 포함한다)

연간 거래액	1일당 과징금 금액
100억원 미만	40,000원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80,000원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130,000원
3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190,000원
4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240,000원
50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	300,000원
6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350,000원
70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410,000원
800억원 이상 900억원 미만	460,000원
9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520,000원
1천억원 이상 1천500억원 미만	680,000원
1천500억원 이상	900,000원

나. 시장도매인

연간 거래액	1일당 과징금 금액
5억원 미만	4,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6,000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3,000원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1,000원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68,000원
70억원 이상 90억원 미만	95,000원
90억원 이상 110억원 미만	123,000원
110억원 이상 130억원 미만	150,000원
13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178,000원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205,000원
200억원 이상 250억원 미만	270,000원
250억원 이상	680,000원

다. 중도매인

연간 거래액	1일당 과징금 금액
5억원 미만	4,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6,000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3,000원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1,000원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68,000원
70억원 이상 90억원 미만	95,000원
90억원 이상 110억원 미만	123,000원
110억원 이상	150,000원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사항을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	법 제90조제1	250	500	1,00

령을 위반한 경우	항제1호			0
나.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任免)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0조제3항제1호	12	25	50
다. 법 제29조제5항(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 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90조제3항제2호	25	50	100
라.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법 제90조제3항제3호	25	50	100
마. 매수인이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0조제2항제1호	125	250	500
바. 매도인이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0조제3항제3호의2	25	50	100
사. 매수인이 법 제53조제3항의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경우	법 제90조제1항제2호	1,000		
아. 법 제7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경우(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은 제외한다)	법 제90조제3항제4호	25	50	100
자.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단속을 기피한 경우	법 제90조제2항제2호	125	250	500
차.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0조제2항제3호	125	250	500
카.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보고(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0조제3항제5호	25	50	100
타.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법 제90조제	25	50	100

위반한 경우	3항제6호			

5. 부과 징수권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 해양수산부장관(유통정책과), 시·도지사(경기도 농정해양국 농식품유통과장)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 기초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 해양수산부장관(유통정책과), 시·도지사(경기도 농정해양국 농식품유통과장)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6. 체납처분

○ 독촉(법 제83조 제4항)

- 발부 :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 납부기한 : 10일 이상 15일 이내

24. 먹는물관리법 위반과징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징금, 과태료)

1. 부과목적

먹는 물에 대한 합리적인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도모함으로써 먹는 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함

2. 부과근거

먹는물관리법 제51조, 시행령 제19조 / 관련법령 :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6항

3. 부과·징수권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 경기도 위임조례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

4. 과징금 산정기준(제19조 관련)

가. 적용기준

가.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기준 중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하인 경우만 해당하며, 법 제48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나.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다. 과징금 부과는 처분 전년도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과징금 부과권자가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금액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나. 1일 과징금 부과기준

○ 검사기관

기준금액(원/일)	매출금액(백만원/연)
180,000	100 이하
220,000	100 초과 120 이하
260,000	120 초과 140 이하
300,000	140 초과 200 이하
340,000	200 초과 280 이하
380,000	280 초과 380 이하
420,000	380 초과 500 이하
460,000	500 초과 680 이하
500,000	680 초과 840 이하
540,000	840 초과 1,020 이하
580,000	1,020 초과 1,220 이하
620,000	1,220 초과 1,440 이하
660,000	1,440 초과 1,680 이하
700,000	1,680 초과 1,940 이하
740,000	1,940 초과 2,220 이하
780,000	2,220 초과 2,520 이하
820,000	2,520 초과 2,840 이하
860,000	2,840 초과 3,180 이하
900,000	3,180 초과 3,540 이하
940,000	3,540 초과 3,920 이하
980,000	3,920 초과 4,320 이하
1,020,000	4,320 초과 4,740 이하
1,060,000	4,740 초과 5,000 이하
1,100,000	5,000 초과

○ 먹는물 관련 영업자

기준 금액 (원/일)	업종별 매출금액(백만원/연)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 판매업 포함)	수처리제 제조업	정수기 제조업 (수입판매업 포함)
120,000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200,000	100 초과 120 이하	100 초과 120 이하	100 초과 150 이하
280,000	120 초과 200 이하	120 초과 170 이하	150 초과 350 이하
360,000	200 초과 340 이하	170 초과 250 이하	350 초과 700 이하
440,000	340 초과 540 이하	250 초과 360 이하	700 초과 1,200 이하
520,000	540 초과 800 이하	360 초과 500 이하	1,200 초과 1,850 이하

600,000	800 초과 1,120 이하	500 초과 670 이하	1,850 초과 2,650 이하
680,000	1,120 초과 1,500 이하	670 초과 870 이하	2,650 초과 3,600 이하
760,000	1,500 초과 1,940 이하	870 초과 1,100 이하	3,600 초과 4,700 이하
840,000	1,940 초과 2,440 이하	1,100 초과 1,360 이하	4,700 초과 5,950 이하
920,000	2,440 초과 3,000 이하	1,360 초과 1,650 이하	5,950 초과 7,350 이하
1,000,000	3,000 초과 3,620 이하	1,650 초과 1,970 이하	7,350 초과 8,900 이하
1,080,000	3,620 초과 4,300 이하	1,970 초과 2,320 이하	8,900 초과 10,600 이하
1,160,000	4,300 초과 5,040 이하	2,320 초과 2,700 이하	10,600 초과 12,450 이하
1,240,000	5,040 초과 5,840 이하	2,700 초과 3,110 이하	12,450 초과 14,450 이하
1,320,000	5,840 초과 6,700 이하	3,110 초과 3,550 이하	14,450 초과 16,600 이하
1,400,000	6,700 초과 7,620 이하	3,550 초과 4,020 이하	16,600 초과 18,900 이하
1,480,000	7,620 초과 8,600 이하	4,020 초과 4,520 이하	18,900 초과 21,350 이하
1,560,000	8,600 초과 9,640 이하	4,520 초과 5,050 이하	21,350 초과 23,950 이하
1,640,000	9,640 초과 10,740 이하	5,050 초과 6,200 이하	23,950 초과 26,700 이하
1,720,000	10,740 초과 11,900 이하	6,200 초과 6,820 이하	26,700 초과 29,600 이하
1,800,000	11,900 초과 13,120 이하	6,820 초과 7,470 이하	29,600 초과 32,650 이하
1,880,000	13,120 초과 14,400 이하	7,470 초과 8,150 이하	32,650 초과 35,850 이하
1,960,000	14,400 초과 15,740 이하	8,150 초과 8,860 이하	35,850 초과 39,200 이하
2,040,000	15,740 초과 18,600 이하	8,860 초과 9,600 이하	39,200 초과 42,700 이하
2,120,000	18,600 초과 20,000 이하	9,600 초과 10,000 이하	42,700 초과 50,000 이하
2,200,000	20,000 초과	10,000 초과	50,000 초과

5. 납부기한

- 통지방법은 서면통지에 의한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납부
- 분할납부 불가(시행령 제18조 제5항)

6. 체납처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2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징금)

1. 부과목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과징금)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별표5] 4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세 체납처분의 예

3. 부과대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자

4. 부과기준 (시행령제46조제1항)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위반내용	관계 법조문	과징금의 액수(단위:만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 대여 사업
		시내 버스· 동어 촌버스· 마을 버스	시외 버스	일반 택시	개인 택시	전세 버스	특수여 객	수요 응답 형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 인가 또는	법 제85조 제1항 제1호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변경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3호						
가. 5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보유대수×10)가 다음의 기준 이상이 된 경우	500	500	500		500	500	500
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가) 운행형태가 고속인 경우: 2							
나) 운행형태가 직행 및 일반인 경우: 3							
3)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							
4)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							
5)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6)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나. 5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해당 교통사고일 이전 최근 1년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 1건의 교통사고	60	60	60	60	60	60	60
2) 2건의 교통사고	120	120	120	120	120	120	120
다.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비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8명 이상 9명 이하	1,600		800	800	1,600	1,200	800
2) 5명 이상 7명 이하	0		400	400	1,200	800	400
3) 2명 이상 4명 이하	1,200		200	200	800	400	200
	0						
	800						
라.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중상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							

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비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0명 이상 19명 이하 2) 6명 이상 9명 이하									
120 0 800		400 200	400 200	1,200 800	800 400	400 200			
3. 법 제4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노선·운행계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기간(한정면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6호								
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사업을 한 경우		180	180	180	180	180	180	180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 또는 운행계통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180	180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한 경우				40	40		40		
라.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업무범위 또는 면허기간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180	180	180	180		180		
마.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다만,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영업 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와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대여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10	10	10	10	20	20	10	20
바. 법 제4조 및 이 영 제3조제2호라목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한 경우					120				
4. 법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 중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부대시설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5조 제1항 제7호	90	90	90		90	90	90	

5.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운송을 거절한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10호								
가. 운임 및 요금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을 개시한 경우		40	40	40	20			40	
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등 외에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0	20					20	
다.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운송을 거절한 경우		10	10					10	
6. 법 제9조 또는 제31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 또는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11호								
가. 운송약관 또는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100	100	50	100	100	100	100
나. 신고한 운송약관 또는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0	60	60	30	60	60	60	60
7. 법 제10조(법 제35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12호								
가. 임의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사업계획을 위반한 경우 1) 결행 2) 도중 회차 3)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연장 운행 4) 감회 또는 증회 운행		100	100					100	
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시켜 영업한 경우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120 180	120 180		120 180
다. 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주사무소(1인 사업자는 제외한다)·영업소·정류소 또는 차고를 신설·이전하거나		100	100	100	50	100	100	100	100

사업계획변경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주사무소나 영업소별 차량 대수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라. 노후차의 대체 등 자동차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말소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마. 운행시간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미리 운행하거나 임의로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0	20						
바. 그 밖에 사업계획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10	10	10	10	10	10	10	10
8.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14호	360	360	360		360	360	360	
9. 법 제14조(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15호								
가. 법 제14조제1항(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360	360	360		360	360	360	360
나. 법 제14조제4항(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을 합병한 경우		360	360	360		360	360	360	360
10.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1년에 3회 이상 사업용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17호	20	20	10	10	20	20	10	

11.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이 아닌 화물을 운송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화물 운송의 금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 제18호											
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이 아닌 화물을 운송한 경우		60										
나.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 운송의 금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180										
12.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 제20호	360	360	180	180	360	180	180				
13.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 제20호의2			360								
14.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상호를 변경하지 않거나 상호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 제20호의3			240								
15. 법 제21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 제20호의4			180	180							
15의2. 법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운행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 제20호의5					180						
16. 법 제21조제10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 제21호											
가. 택시운송사업자가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구간운임제 시행지역은 제외한다)				40	40							
나. 운임 또는 요금을 받고 승차권이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경우와 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한 자는 제외하며,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여객의 요구가 있는 경우만 해당		10				10	10	10	10			

한다)								
다.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40	40	40	40	40	40	40	
라. 자동차 안에 게시해야 할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20	20	20	20	20	20	20	
마.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0	20	20	20	20	20	20	
바. 운송사업자가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가 장착된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20	20	20	20	20	20	20	
사. 하차문이 있는 노선버스(시외직행, 시외고속 및 시외우등고속은 제외한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에 압력감지기 또는 전자감응장치, 가속페달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360	360					360	
아. 차실에 냉방·난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	60	60	60	60	60		60	
자. 차 안에 안내방송장치 및 정차신호용 버저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0	100					100	
차. 차내 안내방송 실시 상태가 불량한 경우	10	10					10	
카. 버스의 앞바퀴에 재생타이어를 사용한 경우	360	360			360	360	360	
타. 앞바퀴에 튜브리스타이어를 사용해야 할 자동차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0			360			
파. 원동기의 출력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20	120			20		120	
하.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격벽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	180						180	

에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거. 그 밖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한 경우	20	20	20	20	20	20	20	
너. 운행하기 전에 점검 및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10	10	10	10	10	10	10	
더.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점검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0	60	60	30	60	60	60	
러. 차량 정비, 운전자의 과로 방지 및 정기적인 차량 운행 금지 등 안전수송을 위한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0	20			20	
머.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180					
버. 운송사업자가 차내에 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지 않은 경우	10	10	10	10	10	10	10	
서.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전사항에 관한 안내 방송 자료를 차량 운행 전에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하여 방송하게 하지 않은 경우		180			180			
어. 전세버스운송사업 운수종사자가 대열운행(같은 계약에 따라 같은 목적지로 이동하는 2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기를 게을리 한 경우					180			
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180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을 이탈하여 돌아다니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감독하기를 게을리 한 경우							
처.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가요반주기·스피커·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 등 소란 행위를 하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감독하기를 게을리 한 경우 커.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운행 요청을 거부한 경우				180		180	
터. 운송사업자(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차량 운전 전에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음주 여부 및 운행경로 숙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운수종사자가 질병·피로·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해당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경우 또는 해당 운수종사자를 대신하여 대체 운수종사자를 투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하지 않은 경우	180	180	180	180		180	
퍼. 운송사업자(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또는 대기실에 난방장치, 냉방장치 및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60	60	60	60		60	
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에 관	180	180		180			

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7. 법 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2호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8.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3호	30	30	30		30	30	30	
19.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5호								360
20.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6호								180
21. 법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32호의2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22. 1년에 3회 이상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33호	20	20	20	10	20	20	20	20
23.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34호								
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0	60	60	30	60	60	60	60
나.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40	40	40	20	40	40	40	40
24. 법 제84조에 따른 차령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5조제1항제36호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25. 관할 관청이 면허·허가·인가 등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38호	180	180	180	180			180	

비고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위 표의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2. 위반행위란의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통사고건수의 산정은 경상사고인 경우에는 0.3건, 중상사고인 경우에는 0.7건,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1건으로 각각 계산한다.
3.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는 다음 표와 같다(위반행위란의 제2호다목 및 라목 관련).

나. 위반에 따른 과징금 금액

위 반 내 용	관 계 법 조 문	과 징 금 의 액 수			
		시 외 버 스 운 송 사 업 (운행형태별)			농어촌버 스운송사 업
		고 속	직 행	일 반	
가.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5조제1항 제3호				
1) 8명 이상 9명 이하		3,600	2,400	1,200	1,200
2) 5명 이상 7명 이하		2,400	1,600	800	800
3) 2명 이상 4명 이하		1,200	800	400	400
나.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중상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5조제1항 제3호				
1) 10명 이상 19명 이하		2,400	1,600	800	800
2) 6명 이상 9명 이하		1,200	800	400	400

- 1건의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 이상 5명 이하의 인원이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위반행위란의 제2호라목2)에 따라 처분한다.
- 위반내용란의 제7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목의 위반행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위반행위별로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추가 위반횟수(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횟수는 제외한다) 1회당 위 표의 처분기준 금액의 50%를 더하여 일괄 처분한다.

5. 징수권자

시장·군수·구청장

6. 징수절차

단 계	기간	내 용
과징금 고지	-	(별표)에 따른 과징금 액수, 위반행위의 종류를 기재하여 과징금 부과
납 부 기 한	20일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 과징금 납부
독촉장 고지	50일	납부기한 후 50일 이내 독촉장 발급(납부기한 10일 이내) 가산금 없음
체납고지서	수시	수시로 체납고지서 발송 및 압류

7. 귀속비율

해당 지자체 100%

8. 감면대상(시행령 제46조 2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 행위의 내용 및 횟수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9. 기타사항

- 가 산 금 : 규정없음
- 분할납부 : 불가(시행령 제47조 제5항)
- 불복청구 : 규정없음. 행정심판법 제27조 참조(안날부터 90일 이내)
- 체납처분 : (법제88조 3항)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III. 부담금

01. 수질개선부담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부담금/일반부담금)

1. 부과목적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2. 부과근거

먹는물관리법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시행령 제8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금액)

3. 부과대상사업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4. 부과·징수권자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5. 부과기준(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2항)

부담금은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는 샘물등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1조에 따른 상수도 원가 및 하수도 원가
2.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3.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4. 다음 각 목의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

-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5.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환경개선사업 중 상수도 및 수질보전
부문의 세출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금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타샘물(제7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1,600원
 - 나.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1,900원
 - 다. 2012년 1월 1일부터: 1세제곱미터당 2,200원
2.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취수한 샘물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먹는샘물(제
7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3,400원
 - 나.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2,800원
 - 다. 2012년 1월 1일부터: 1세제곱미터당 2,200원

6. 부과절차

-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산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는 분기별 수입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계	기간	내용
납부고지	고지한 달의 말일	이의신청 기간: 부과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법 제31조의2 ①, 시행규칙 제24조2 제1항 관련)
추가고지	고지서 발급 후 15일	샘물·염지하수 취수량등을 조사한 후 납부되지 아니한 부담금이나 그 부족액을 확인한 때에 지체없이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가산고지	30일	납기 경과시 3% 가산금 부과 납기경과후 매1월 마다 1.2% 증가산금 부과 (국세징수법 제21조 준용 - 법 제31조 ⑤관련)

7. 귀속비율

징수한 부담금의 40%

8. 부과 및 납부기한

- 납부고지: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2조 ①관련)
- 납부기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시행령 제12조 ②관련)

9. 연체요율

- 가산금은 「국세징수법」제21조 준용(법 제31조⑤)
- 가산금: 납기경과시 3%
 - 증가산금: 납기경과후 매1월 마다 1.2%가산 (부담금 50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

10. 징수절차

- 부담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체납징수의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11.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기한 전에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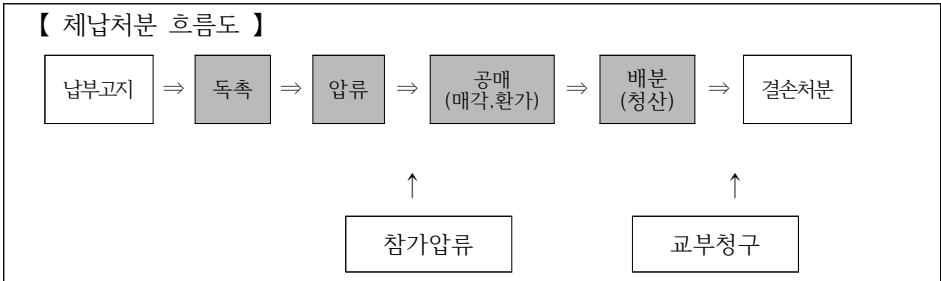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해당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그 사실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 신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02.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

1. 부과목적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제5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시행령제55조(부과·수납업무수수료 등)

3. 부과대상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또는 전용하려는 자

4. 징수권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환경부 소속 환경연구원의 장이나 지방 환경관서의 장

5. 부과기준

- 농지전용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위임사무로써 지자체는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접수시 부담금액을 결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로 통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를 토대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통지 및 수납업무 일괄 처리
- 지자체는 농지전용부담금징수교부금(8%)만 세입처리

0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부담금/일반부담금)

1. 부과목적

광역교통시설의 재원 확충 (수도권 2001.4.30. 5대 도시권 2002.1.11.시행)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확보

2. 부과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3. 부과대상사업

대도시권의 택지개발.도시개발.대지조성사업 및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재개발. 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포함)

4. 부과.징수권자

도지사, 시장.군수(승인 및 인가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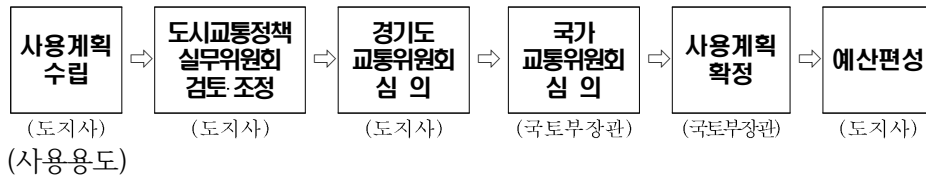
부과대상	승인권자	부과권자	비고
택지개발사업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도지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
도시개발사업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인구50만이상)	도지사 도지사 시장	도시개발법 제17조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주택건설사업	도지사 시장·군수	도지사 시장·군수	주택법 제16조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사업	시장·군수	시장·군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주상복합건축물	시장·군수	시장·군수	건축법 제8조

5. 부담금 귀속

국고40%, 道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0% (도 57% · 시군 징수 수수료 3%)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 6

(부담금사용계획 수립절차)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량,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 건설,

특별회계 운영 경비 용도로만 사용

- (광역교통시설)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광역철도, 광역철도 역사 인근 주차장, 광역도로, 공영차고지,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성시설, 복합환승센터

※ 광역도로 :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도로(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건설 또는 개량사업비로 도 특별회계 귀속분의 10%범위내 사용 가능

6. 감면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건설, 이주택지 및 주택건설,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 부대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내 주택건설(감면)/국가·지자체 시행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사업(50% 경감)

7. 부과 및 납부기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과, 부과 일로부터 1년 이내 납부

- 분할납부 신청 :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부담금의 분할납부)」에 따라 분할납부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

(분할납부 허용기준 (부담금 1억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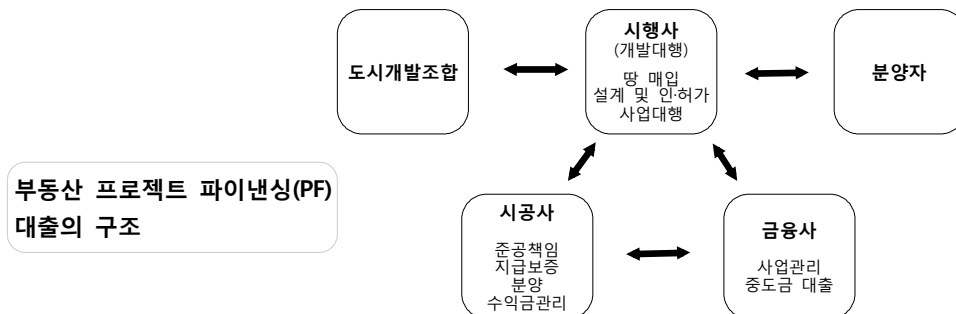
※ 단, 분할납부기간의 도래 전에 준공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내에 전액 납부

8. 체납발생 실태 및 현황

가. 도시개발사업 체납발생 실태 및 현황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로 토지개발의 사업성이 떨어져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미착공, 미준공 사업이 증가되고 있으며, 부담금의 납기가 사업승인 후 1년 이내로 자금조달이 되는 착공시점과 납부시점의 불일치로 체납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비용³⁷⁾발생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자금 조달(환지방식)은 3단계 환지계획인가 단계에서 아파트 시행사가 시공사의 보증으로 금융사를 통해 PF대출(project financing)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고, 조합은 토지 판매대금(체비지)으로 사업비를 마련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의한 개발사업 수익성 하락으로 시공사 계약의 어려움이 곧 토지판매 부진으로 연결되고, 결국 토지판매로 얻는 수익 외에 다른 사업비 조달의 대안이 없는 조합의 현실에서 체납이 장기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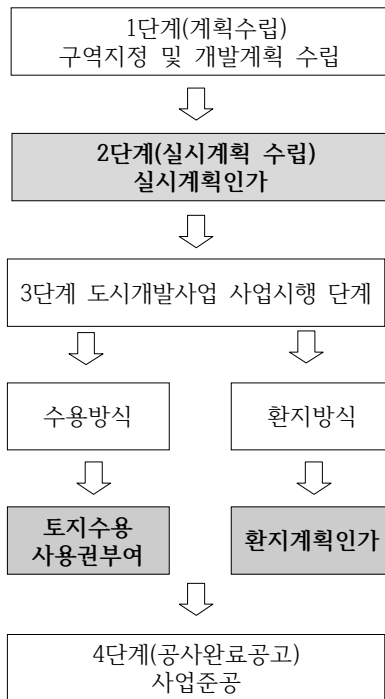
납부여력이 있는 경우에도 가산금이 1회로 한정되고, 더 이상의 증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아 납세자가 부담금의 납부를 위하여 금융차입에 따른 이자 부담을 지는 것 보다 준공단계까지 체납을 하는 것이 산술적 이득이라는 생각이 업계 지배적인 공론으로 체납이 발생될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음.

부담금의 차입금리 6%이상 > 가산금 3%

따라서 부담금의 부과의 시점이 체납이 발생될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는 있으나, 단순히 가산금율과 금융 차입금율의 금리 차이에 따른 산술적 이득을 목적으로 고의 체납하는 개발조합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독려 및 체납처분 시행으로 업계 관행처럼 체납이 고착화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임.

나. 도시개발사업 수행 (환지·수용방식) 요약 절차도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가 법적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시행하는 방식이다. 반면 수용방식은 개발조합이 사업지구 내 토지를 전부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

<허용기준>

- 부담금 1억원 이상
- 부과일 기준 1년 이내 100분의 50
- 부과일 기준 1년 초과 2년 이내 100분의 30
- 부과일 기준 2년 초과 준공(사용)검사 이전 완납

※ 단, 분할납부기간의 도래 전에 준공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내에 전액 납부

다. 체납발생 조합 현지 실태조사 중점 점검사항

- 1) 착공여부 확인 : 착공은 개발사업의 준비가 완료되었고 자금조달이 정상적인 상태임을 의미함.
- 2) 인허가 진행사항 확인 : 환지계획인가 등 사업진행 사항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 시기를 판단하는 자료가 됨.
- 3) 체비지 대장 확인 : 환지계획인가 후 체비지 대장을 통해 개발토지의 판매 현황을 보고 자금조달 사항을 알 수 있음.
- 4) 시공사 선정확인 : 시공사 선정은 조합이 PF 대출과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 요건이 됨.

라. 고의체납 개발조합에 대한 인·허가 제한 및 체비지 압류

환지계획인가 단계에서 관련 인·허가 부서는 부담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 업체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부서(이월체납액 징수부서)와 협의 후, 인·허가를 추진 하도록 부서간 협조체계 구축 필요하다. 환지계획인가 후 발생한 체납은 고의체납

여부를 중심으로 중점 점검하고, 향후 개발사업 진행상황과 토지판매(체비지) 일정으로 분납을 유도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사업수행 단계에 따른 인·허가 제한 및 체비지 압류.

마.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 징수 기준

- 1) 체납액은 일시 징수가 원칙임.
- 2) 미납 시 독촉장 발부 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 처분 하여야 함. 단,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성을 감안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업진행 상황과 자금조달계획을 확인하고 일시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 4조(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인용하여 사업 추진단계에 따라 분할 징수
- 3) 분납징수 기준안 [붙임문서 2-1, 2-2] 납부계획 및 협약서 참조

9. 연체요율

(가산금) 부담금액의 100분의 3

10. 산정기준 예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율 / 산식]
▶ 택지조성 ⇒ 부과율 : 수도권 30%, 지방 15%(지방조례로 50%범위내 가감 가능)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 - 공제액】
* 공공시설, 학교, 임대아파트용지 등은 개발면적에서 제외
▶ 주택건설 ⇒ 부과율 : 수도권 4%, 지방 2%(지방조례로 50%범위내 가감 가능)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면적) - 공제액】
* 광역교통시설설치비용 공제

○ 택지, 도시개발 개발면적 1㎡ 당 : 89,805원 (예시)

- 299,350원×100분의 30×(개발면적)×(200/200) - 0원 = 89,805원

※ 표준개발비 299,350원, 부과율 100분의 30, 용적률 200%, 공제액은 없음

○ 전체면적:15,556㎡, 건축연면적:1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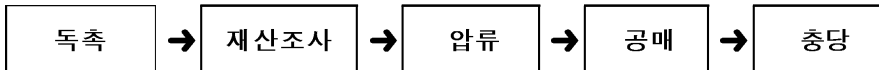
층수및세대당주택공급면적:10층,65㎡ (예시)

- {14,000㎡ × 1034.2천원 × 0.04} ×0.5 = 289,576천원

※ 표준건축비 1,034,200(6~10층이하), 부과율 100분의 4,공제액은 없음, 감경50%

11. 체납처분절차

【 체납처분 흐름도 】



① 독촉(광역교통법 제11조의4 제4항)

- 발급 :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 발급
- 납부기한 :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② 재산조사(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10조, 제11조)

- 동산, 채권, 부동산 등 재산유무 조회

③ 압류(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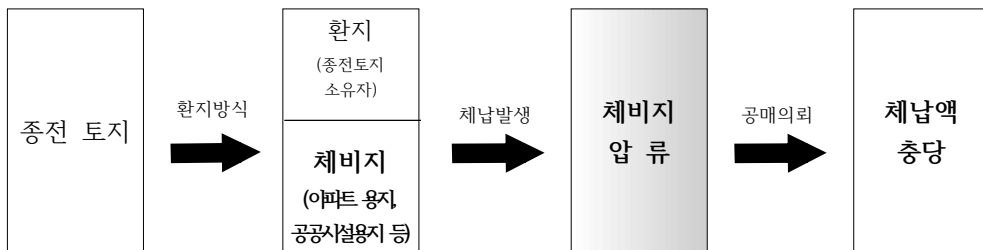
압류대상	압류통지대상	압류효력	환가
동산·유가증권	-	점유 시	추심
채권	제3채무자, 체납자	제3채무자에 송달된 때	추심
부동산	소관 등기소, 체납자	등기가 완료된 때	공매
자동차	차량등록사업소, 체납자	등기가 완료된 때	공매

④ 공매(국세징수법 제3장 제10절 준용)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 공매완료 후 매각대금 배분

⑤ 충당 : 세입조치

○ 환지방식 체비지³⁸⁾ 압류절차 및 공매



1) 체비지 압류방법 및 추진절차

- 체납조합 상대로 체비지 대장 자료 요청(압류 가능한 체비지 물건 확인)
- 자료요청 근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질문권·검사권)

[체비지 대장 예시] [붙임문서 3, 4, 5]

지번	블록롯트	환지지수 (단위 천원)	감보면적	권리면적	환지면적 (단위 제곱미터)	할당지수 (단위 천원)
체비지	공동1-2	1,295.5			40,072.6	51,914,053.3

2) 체비지 압류조서, 압류촉탁서, 압류통지서 작성

- 근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10조
-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전산을 이용하여 문서 작성

- 통보방법 : 등기송달 또는 직접송달(송달여부 필히 확인)
- 체비지 매각대장에 압류사실 등재 확인 및 사본 수령
- 압류된 체비지 공매의뢰(한국자산관리공사)

3) 체비지에 대한 압류요건 및 효력 발생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89누4918 / 1990.06.26.판결>

【판결요지】

- 과세관청이 환지처분공고 전의 체비지를 압류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에게 체비지 매각대장에 압류사실을 등재할 것을 촉탁하여 그 압류사실의 등재가 된 것이라면, 이로써 그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것이라고 할 것이다.

- 과세관청이 세금의 징수를 위하여 체비지를 압류하고 체비지매각대장에 압류사실을 등재하였다면 그 압류 후에 위 체비지를 양도받은 자들은 체비지매각대상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더라도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데 불과하여 위 압류처분이나 이에 기한 공매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

4) 체비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체비지 = 물건유사의 사용수익권)

<대법원 2005다44886 / 2007.9.21. 판결>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건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붙임 1] 체비지 대장

지구 도시개발사업

블록로트	단가(천원/㎡)	면적	금액(천원)	계약여부	입금	잔금	비고
공동1-2	1,295.5	40,072.6	51,914,053	계약	51,914,053	-	
공동3-1	1,309.0	26,283.0	34,404,447	계약	10,321,334	24,083,113	
단독22-8	970.5	263.9	256,115	미계약		256,115	
준주거1-1	2,363.5	9,832.0	23,237,932		3,509,073	19,728,859	분할매각
준1-1-1			8,532,727	계약	2,815,800	5,716,927	
준1-1-2			6,932,727	계약	693,273	6,239,455	
준1-1-3			7,772,477	미계약		7,772,477	
종교1-2	1,255.0	656.3	823,657	미계약		823,657	종교시설
종교2-2	992.5	1,722.7	1,709,780	미계약		1,709,780	종교시설
학1-1	883.0	12,057.0	10,646,331	미계약		10,646,331	학교
공청1-1	997.0	1,149.0	1,145,553	미계약		1,145,553	공공청사
차1-1	799.5	898.0	717,951	미계약		717,951	주차장
차2-1	799.5	928.0	741,936	미계약		741,936	주차장
차3-1	799.5	741.0	592,430	미계약		592,430	주차장
차4-1	641.5	642.0	411,843	미계약		411,843	주차장
		95,245.5	126,602,027		65,744,460	60,857,567	

[붙임 2-1] 납부계획 및 약약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
납 부 계 획 및 약 약 서

1. 사 업 명 : 지구 도시개발사업
2. 납부의무자 : 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3. 부과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과일자	납부기한	부담금액	가산금액	기 납부한 금액		미납금액
				-	-	
'10.06.11	'11.06.10	3,249.036	162.451	-	-	3,411.487

4. 진행 완료된 사업현황.
<일자별로 사업진행 단계를 상세하게 작성/별지작성>
5. 앞으로 진행될 사업현황
<일자별로 사업진행 단계를 상세하게 작성/별지작성>

6. 미납사유
 - 조합은 환지계획인가 후 체비지 매각을 통해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며, 체비지 매각 전 일부 필수 자금에 대해 금융권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
 - 2010.04.01 실시계획인가 후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금융권 등 외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음.

7. 체납액 납부 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체납금액	납부계획(일자, 금액)		비 고
		1차환지계획인가 전(2016.12 / 1,706)	50%	
도시개발사업	3,411.487	2차(2017.12 / 1,023)	30%	20%
		준공 전(2020. 03 / 682)		

위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 납부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성실 및 고의 체납할 경우에는 귀 기관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약약합니다.

작성자:

경기도지사 귀하

[붙임 2-2] 납부계획 및 협약서

<별지1> 사업추진경위

- 2009.02 시(경기도고시 제2009-54호)
- 2009.03.
- 2009.07.31 개발계획(변경)수립(경기도고시 제2009-100호)
- 2010.04.01 실시계획인가고시(경기도고시 제2010-100호)
- 2014.07.28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평택시)

<별지2> 향후추진계획

- 2016.03 개발계획변경 예정
- 2016.12 환지계획인가 예정
- 2017.11 기반공사 착공
- 2020.03 기반공사 준공
- 2020.09 환지처분

[붙임 3] 압류조서

압 류 조 서								
채 남 자	성명	도시개발조합			주민등록(법인)번호			
	주소	(482-841)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남리 721-13						
압류일자	2016년 05월 02일							
압류 재산의 표시	채남자 00도시개발사업조합 소유의 00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채비지 압류 1. 사업명: 00도시개발사업 2. 시행자: 00도시개발조합 3. 물건: 공동1-2동트 4. 면적: 40,072㎡							
압 류 예 관 계 된 채 남 액 의 내 용								
년도	납부기한	과세번호	세외수입금	가산금	공납이자	합계	과목	비고
2005	2005-03-31	000005	352,636,500	193,773,000	0	546,409,500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계			352,636,500	193,773,000	0	546,409,500	총전수 :	1
위의 채남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경기도청 세정과 에서 참여하에 압류하였으므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이조서를 작성합니다. 2016년 05월 02일 경 기 도 청 근무 : 세정과 직급 : 전화번호 : 031-8008-2442 성명 : 구종배								

[붙임 3-1] 압류등록 촉탁서

문서번호		세외수입 채납처분에 의한 (등기) 촉탁서									
세정과-1111											
재산의 표시 (기타)		채납자 00도시개발사업조합 소유의 00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채비지 압류 1. 사업명: 00도시개발사업 2. 시행자: 00도시개발조합 3. 물건: 공동1-2플트 4. 면적: 40.072㎡									
등기(등복) 원인과 년월일		2016년 05월 02일		압류		(세정과-1111)					
등기(등복)의 목적		채납처분에의한압류									
등기(등복) 권리자	성명	경기도청									
	주민등록번호										
	주소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경기도청)									
등기(등복) 의무자	성명	도시개발조합									
	주민등록번호										
	주소	(482-841) 경기도									
등 록 면 적 세		〔지방세법〕 제 26조)에 의거 비과세									
법원/등기소 정보											
수신 : 00 도시개발조합 2016년 05월 02일 촉탁 : 조합장 홍길동 전화번호 : 031-8008-2442											
정 기 도 청											
부속서류		압류조서 1통									
접수 제	년 월 일 제 호	접수	조사	기입		교환		등기 필			

04. 환경개선부담금

1. 부과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992.7.1.시행>

2.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시행령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

3. 부과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4. 부과.징수권자

환경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5. 부과기준(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0조)

가. 개선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②오염유발계수 × ③차령계수(車齡係數) × ④지역계수

① 대 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적용 기간	1995년 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1997년 1월 1일 이후
기준 부과금액 (원/반기)	12,150	20,250

비고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배기량 3천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 부과금액은 2008년 1월 1일부터 15,19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 되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4.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경유 사용 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어 신규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

② 오염유발계수

엔진 총배기량(cc)	오염유발계수
2,000 이하	1.00
2,000 초과 2,500 이하	1.25
2,500 초과 3,500 이하	1.75
3,500 초과 6,500 이하	2.64
6,500 초과 10,000 이하	4.50
10,000 초과	5.00

③ 차령계수

차령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 년 미만	10년 이상
차령계수	0.50	1.00	1.04	1.08	1.12	1.16

④ 지역계수

지역별	인구 10만 미만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	인구 500만 이상
지역계수	0.40	0.85	0.87	1.00	1.53

비고

1. 인구의 적용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 단위로 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군이 통합된 경우에는 종전의 관할구역별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2.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면·동(시의 동으로서 해당 시의 시청 소재지가 읍·면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역은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3. 군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읍·면으로 구분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을 사용 본거지로 하여 등록한 자동차의 지역계수는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을 사용 본거지로 하여 등록한 자동차의 지역계수는 “인구 10만 이상 인구 5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6. 부과절차

부과 기준일, 부과 기간 및 납기(제8조제1항 관련)

반기별	부과 기준일	부과 기간	납기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	지
하반기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상반기 독촉 고지서 발송 : 매년 11월

하반기 독촉 독촉 고지서 발송 : 매년 5월

7. 귀속비율

징수액의 9%(해당 지자체)

8. 감면대상

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차량

○ 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외국정부의 공무원 및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인 자동차(대한민국정부의 공무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선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나.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 법 제9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경우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시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 법 제9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추가감면 : 제9조제6항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최초 납부일 내에 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의 1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10. 연체요율(가산금)

부과금의 3%

11. 분할납부

○ 환경부장관은 납부하여야 할 개선부담금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납부할 금액이 200만원 이하일 때에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 분할납부의 기한은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납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3회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횟수를 2회 이내로 할 수 있다.

○ 분할하여 납부할 금액은 월별로 똑같이 나누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회의 분할납부 기한은 매월 말일로 한다.

○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납기가 시작된 후 5일 이내에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그 분할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

○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최초 납기일 내에 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납부하려는 자를 위하여 일시납부금액 등을 제8조제3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05. 교통유발부담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부담금/일반부담금)

1. 부과목적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서,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

2. 부과근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해당 지자체 관련 조례

3. 부과대상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개인 소유지분 면적은 160㎡ 이상인 경우)

4. 부과기준

- 부과대상기간 : 전년도 8월 1일 ~ 해당 연도 7월 31일
- 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부과기준일 : 매년 7월 31일
- 부과시기 : 매년 10월(연 1회)
- 부담금산정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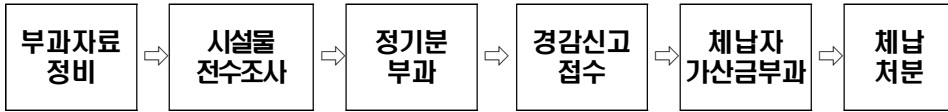
5. 징수권자

시장·군수·구청장

6. 부담금 귀속

해당 지자체 100%

(부담금 부과·징수 흐름도)



7. 감면대상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7조(부담금의 면제)에 따른 시설물
- 경감신고 시

구분	해당 사유	신청 서류	법적 근거
시설물 미사용 시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 미사용	미사용 신고서, 증빙서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4조
소유권 변동 시	부과기간 중 매매, 증여 등 소유권 이전 (미제출 시 7월 31일 현재 소유주가 납부 의무 승계)	일할계산신청서, 증빙서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3조

-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 시

법적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8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4조
경감대상	- 연면적 2천㎡ 이상인 시설물 -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와 경감신청서를 제출하고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시설물
경감절차	- 전년도 7월 31일까지 1년 동안 이행할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제출 -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감축프로그램 이행 -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 점검 - 해당 연도 8월 10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감률 결정

납부기간

- 납부기간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 분할납부 : 부담금이 500만원이 넘는 경우 분할납부 가능(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9조)

조정신청

○ 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 신청 가능

○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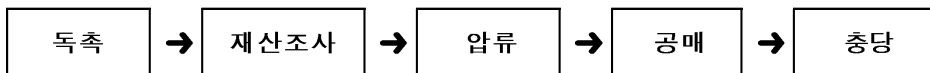
연체요율

(가산금)

부담금액의 100분의 3

체납처분절차

【 체납처분 흐름도 】



① 독촉(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0조)

- 발급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 발급
- 납부기한 :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5일

② 재산조사(국세징수법 제3장, 지방세징수법 제3장 준용)

- 동산, 채권, 부동산 등 재산유무 조회

③ 압류(지방세징수법 제33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④ 공매(국세징수법 제61조, 지방세징수법 제71조 준용)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 → 공매 완료 후 매각대금 배분

⑤ 총당 : 세입조치

06. 개발부담금

1. 부과목적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3. 부과대상사업

가. 대상사업

- 택지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7개의 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1항 및 영 제4조1항에 의한 별표 참조

나. 사업의 규모(시행령 제4조)

- ①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 990㎡ 이상
- ②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적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 1,650㎡ 이상
-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 1,650㎡ 이상

※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면적 임시특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시행령」 제4조의2)

⇒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의 부과대상면적은 위 ①의 경우 1,500㎡ 이상 위 ③의 경우 2,500㎡ 이상으로 한다.

다. 개발부담금 산정방법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부담률(%)

- 종료시점지가 :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 처분가격 또는 감정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개시시점지가 : 개별공시지가 또는 실제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 정상지가상승분 : 평가지가변동률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정
- 개발비용 :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부채납액, 부담금납부액, 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 부담률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20%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7호에서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25%

4. 징수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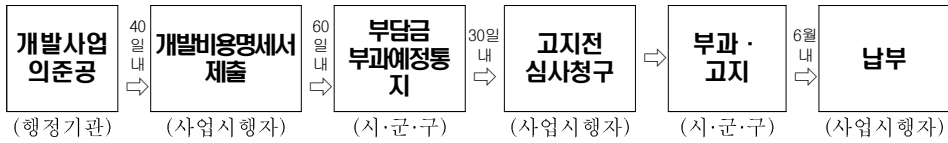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부과대상	부과권자	비고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포함)	시장·군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시행령 별표1」 참조
2. 산업단지개발사업	시장·군수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개발포함)	시장·군수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장·군수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시장·군수	
6. 체육용지부지조성사업(골프장건설사업 및 경륜장,경정장설치사업포함)	시장·군수	
7.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시장·군수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시장·군수	

5. 부담금 귀속

국비50%, 지방비 50% (징수위임수수료 7%)

6. 부담금 부과 절차



7. 부과제외 및 감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참조

8. 부과 및 납부기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 부과, 부과 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9. 연체요율

(가산금) 부담금액의 100분의 3(1개월), 부담금액의 1천분의 12(60개월)

7.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

(연기 및 분할의 대상)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른 이용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 할 수 있다.

(이자가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그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부담금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
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이자율 한 기간

8. 납부의 독촉과 체납처분

가. 납부의 독촉

-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지정된 기간내에서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 기 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개발부담금 또는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나. 체납처분

-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07.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세외수입/자본적세외수입/부담금/일반부담금)

1. 부과목적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공중위생 향상,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공공 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필요한 자원 확보

2. 부과근거

하수도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35조, 해당 지자체 조례

3. 부과대상

하수도법 제2조15호, 제15조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하수도법 제61조제1항, 제2항,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

- 일정량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배수설비 설치자
-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를 하게 하는 자
- 하수처리 구역안에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는 자

4. 부과·징수권자

하수도법 제18조, 하수도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청(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장)

⇒ 소관부서 : 환경부 생활하수과, 도 상하수과, 지자체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5. 부과기준

가. 세부기준

대상행위	세부기준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	오수가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 ※참고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Q&A(발행처 : 환경부 생활하수과)
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
타행위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나. 산정기준

하수도법 제61조제3항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

대상행위	산정방법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	1일 오수발생량(㎥/일) × 원인자부담금단위단가(원/㎥/일) = 원인자부담금(원) ※세부산정기준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환경부고시 2015-133호(2015.07.31.))
타공사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또는 타공사를 하는 자가 공사를 시행)
타행위	(도시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단위단가((원·일)/㎥) × 수용인구(인) × 오수원단위(㎥/(인·일)) = 원인자부담금(원)

다.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begin{aligned} \cdot \text{㎡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 \cdot \alpha &= \left(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100}\right)^n \\ \cdot n &: \text{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end{aligned}$$

6. 부담금의 용도

하수도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

7. 감면대상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참고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등록된 차상위계층 장애인

8. 부과 및 납부기한

대상행위	부과 및 납부기한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부과 : 신축, 증축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 징수(납부) : 준공 전(용도변경은 인허가 또는 승인 전)
타행위	부과 : 개발계획 승인 시 징수 : 준공 전

※ 부과금액이 1억원 이상, 공사기간 1년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등

9. 연체요율

가산금 : 부담금액의 100분의 3

10. 체납처분

- 법73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11. 기타사항

- 동일한 건축주가 한 개의 필지를 여러 개의 획지로 나누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08. 기반시설부담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부담금/일반부담금)

1. 부과목적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같은법시행령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기준)

3. 부과대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써 연면적 200㎡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을 하는 건축행위자. 단, 기존건축물 철거 후 신축의 경우,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해당

4. 부과기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량 등을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라 부과

※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없는 경우

- (표준시설비용 + 용지비용) × 건축연면적 × 부담률 - 공제액

5. 부과절차

- 예정통지 : 부과기준시점부터 30일 이내
- 고지전심사 : 예정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심사결과통지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부과고지 :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

6. 납부기한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7. 감면대상

-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
-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납부한 경우

8. 체납처분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9. 기타사항

- 2008.3.28.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법률 폐지 후 2008.9.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도입
-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 운영
- 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에 사용

09.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부담금/일반부담금)

1. 부과목적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을 부과

2. 부과근거

수도법 제71조, 시행령 제65조 및 각 지자체 조례

3. 징수권자

특별시, 광역시, 시장·군수

4. 부과대상

건축물의 신·증축 등으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의 파손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

6. 부과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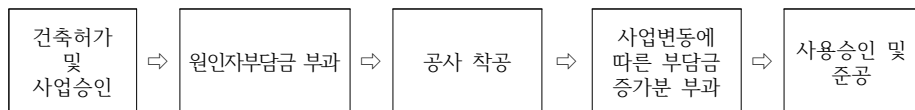
수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른 비용의 합산 및 세부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름

구분	신·증설	파손
비용의 합산대상	-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 시설물의 원상복구 공사비 -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도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도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 시설물의 원상복구 공사비 -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 참고(용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시 설 유형별	부 과 대 상	산 출 기 준	비고
주거시설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전용면적 25㎡이하 : 세대수×2.0인/세대×일일평균급수량×첨두계수 전용면적 25㎡초과 : 세대수×2.8인/세대×일일평균급수량×첨두계수	
숙박시설	숙박시설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	건축연면적(㎡)×40 ℓ×첨두계수	
교 육 연구시설	건축연면적 2,000㎡ 이상	건축연면적(㎡)×20 ℓ×첨두계수	유치원시설의 경우 설립인가서가 있어야 부과대상에서 제외
의료시설	건축연면적 2,000㎡ 이상	건축연면적(㎡)×30 ℓ×첨두계수	
판매유통 시 설	건축연면적 2,000㎡ 이상	건축연면적(㎡)×25 ℓ×첨두계수	
대 단 위 사 업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 개발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 대단위사업	사업면적(㎡) ÷ 1,000㎡ · 톤/일 또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시 용수수요량	인구수 및 용수수요량 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면적으로 산출
기타시설	건축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건축연면적(㎡)×20 ℓ×첨두계수	목욕장(사우나, 수영장) 시설 적용
		건축연면적(㎡)×40 ℓ×첨두계수	

6. 부과절차



○ 부과시기 :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후 공사 착공 전 부과

- 납부기한 :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
(수도계량기 설치 전까지 납부기간 연장신청 가능)
- 분할납부 : 3회까지 가능

7. 감면대상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참고

<참고> 용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제4조의2

1. 시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2. 무료 및 실비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3. 실제 수도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주차시설, 물류센터, 창고시설 등)의 면적
4. 공장시설은 50퍼센트 감면
5. 일반산업단지 중 용인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용인시 또는 용인도시공사에서 출자하는 회사(법인)가 개발하는 경우

8. 연체요율

가산금 : 부담금액의 100분의 3

9. 부담금의 용도

수도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10. 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분담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부담금/일반부담금)

1. 부과목적

어떠한 공사로 지자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 부과하여 공공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함

2. 부과근거

지방자치법 제138조(분담금)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 각 지자체 조례

3. 부과대상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써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함

4. 부과기준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이익의 범위 이내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함

<참고> 용인시수도급수조례

계량기구경별	분담금액
13m/m	130,000
20 "	205,000
25 "	310,000
32 "	520,000
40 "	900,000
50 "	1,550,000
80 "	5,200,000
100 "	7,800,000
150 "	13,000,000
200 "	31,000,000
250 "	39,000,000
300 "	52,000,000
350 "	65,000,000
400 "	80,000,000
450 "	98,000,000
500 "	12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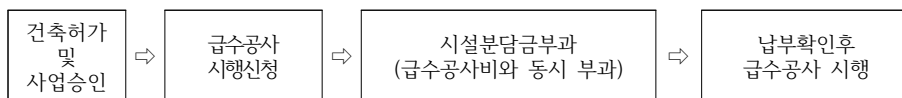
5. 감면대상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참고

<참고> 용인시수도급수조례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제12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대상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금액만큼 시설분담금을 감면

6. 부과절차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참고

<참고> 용인시수도급수조례



- 부과시기 : 급수공사시행 신청시 급수공사비와 동시에 부과
- 납부기한 :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사시행이 불가능하기에 납부기한은 정해지지 않음

7. 사용용도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참고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

8. 징수권자

특별시, 광역시, 시장·군수

IV. 이행강제금

01.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행강제금)

1. 부과목적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를 처분하게 함으로써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막아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

2. 부과근거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농지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청구), 농지법 제62조(이행강제금), 농지법시행령 제64조 및 제75조(이행강제금부과)

3. 부과대상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명령 기간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4. 부과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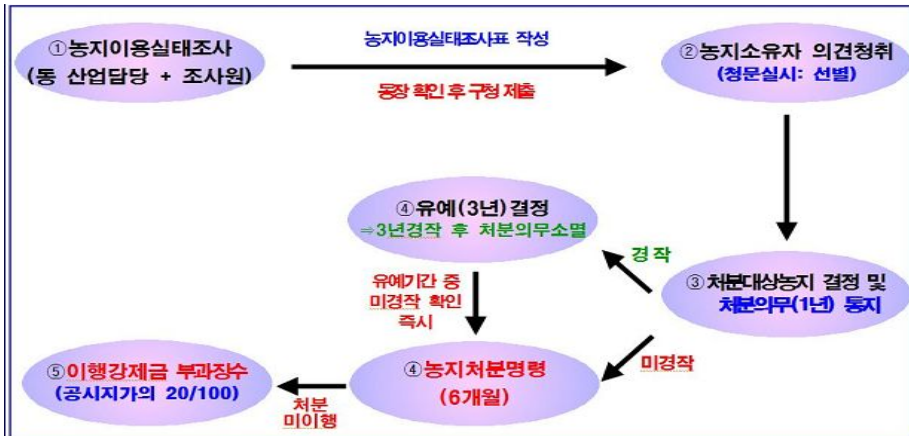
가. 농지처분명령 기준

처분의무기간 1년, 처분명령기간 6개월 이후 미처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나. 이행강제금 산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행강제금 =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원/㎡) × 20/100 × 면적(㎡)-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 부과 |
|--|

다. 농지처분명령 절차도



5. 징수권자

시장·군수·구청장

6.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유와 이행강제금액을 명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함. -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과징수	-	-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 대한 계고 및 청문절차를 거친 후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결정하고 이행강제금부과대상자에게 이를 고지 -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최초의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부과 - 처분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 -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 이행강제금의 부과, 이의절차 및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농지법 시행령 제75조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
이의제기	30일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이의 제기시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함.

7. 귀속비율

이행강제금은 시·군·구의 수입으로 함.

이의제기로 관할 법원으로 넘어간 이행강제금은 국고의 수입으로 함.

8. 체납처분절차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준용

02. 주차장법위반이행강제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행강제금)

1. 부과목적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32조(이행강제금)

3. 부과대상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를 위반한 자

4. 징수권자

시장·군수·구청장

5. 부과기준

가. 이행강제금 부과

-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고,
-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나.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산출

- 1)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조례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20%
- 2)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미유지
 - 조례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10%

다. 이행강제금 부과

-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산식]
- ▶ 공시지가 × 위반면수 × 위반면적 × 20%
-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미유지 / 산식]
- ▶ 공시지가 × 위반면수 × 위반면적 × 10%
- * 면적기준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미만은 12㎡)

6. 부과절차

-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하고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 시에는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확히 하여 문서로 시행
- 최초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변동과 관계 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음

7. 귀속비율

해당 지자체 100%

8. 사용용도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03. 건축법이행강제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행강제금)

1. 부과목적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기간내 미 시정한 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건축법 준법의식 제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건축법 제80조,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 2, 건축조례 제45조

3. 부과대상자

건축법 위반행위 건축주 등

4. 징수권자

시장·군수

5. 부과기준

가. 부과금액

- 건폐율·용적률 초과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 1㎡당 시가표준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 기타 위반 : 시가표준액의 10/100범위 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부과

나. 부과방법

- 이행강제금 부과 · 징수 뜻을 문서로 계고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이행강제금 부과 시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납부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

다. 부과횟수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 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단,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수 있다. (건축법 제80조 제5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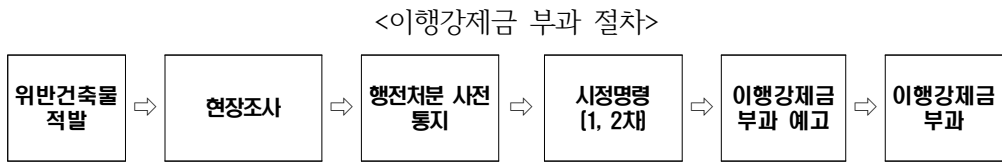
라. 부과산정기준

위 반 건 축 물	해당 법조문	이행강제금의 금액
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법 제11조, 법 제14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법 제19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법 제22조	시가표준액(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 유지·관리 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35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47조	
5.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48조	
6.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		

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7.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8.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9.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10.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1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12.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49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법 제50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법 제51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법 제51조	
	법 제52조 법 제60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
	법 제61조	
	법 제62조	

6. 징수절차

- 징수절차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준용
- 강제징수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7. 부담금 귀속

해당 지자체 100%

8. 감경요건

- ☐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내 위반내용 시정이 어려운 경우(1/2이내)
- ☐ 위반면적이 30㎡이하인 경우(집합건축물 제외, 1/2이내)
- ☐ 집합건축물 구분소유자의 위반면적이 5㎡이하인 경우(1/2이내)
- ☐ 무허가 축사

9. 부과 및 납부기한

별도의 납부기한 없음(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약 60일이내)

10. 연체요율 : 해당없음

04. 다중이용업소에 관한법률위반 이행강제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행강제금)

1. 부과목적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2. 부과근거

다중이용업소법제26조(이행강제금), 동법시행령제24조(이행강제금의부과징수)

3. 부과대상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4. 징수권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5. 부과기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이행강제금 금액(만원)
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에 대하여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1) 안전시설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200
2) 안전시설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600
3)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00
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내장식물에 대한 교체 또는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1,000
다.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영업장의 내부구획에 대한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1,000
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1) 다중이용업소의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0
2) 다중이용업소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600
3) 다중이용업소의 개수·이전 또는 제거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0

※ 이행강제금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상기표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부과절차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V. 기타세외수입

1. 지장전주이설 잔액 환불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그외수입)

1. 부과목적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밖의 물건 또는 다른 사업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조치 후 환불 및 추가 부담 등 정산토록 한다.

2. 부과근거

- 전기사업법 제72조(설비의 이설 등)
- 도로법 제65조(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및 같은 법 제70조(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 한국전력공사 배전선로 이설업무 지침 등

3. 부과대상

지장전주이설 비용 수납기관

4. 부과·징수권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5. 부과절차

순서	업무내용
1	이설신청서 접수
2	현장조사, 공사설계
3	용지보상, 점용허가 여부 확인
4	공사비부담 주제 1차 판정
5	공사비부담 주제 2차 판정(최종)
6	고객시설부담금 청구·수납
7	시공업체 결정 및 시공지시
8	전주 이설정보·공가 설비 용역 순시 시스템'에 게재
9	자재청구
10	공사시공
11	준공처리 및 정산서 작성
12	고객시설부담금 환불·추가 입금

2. 감사지적분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그외수입)

1. 부과목적

재정과 관련된 감사지적분에 대한 회수 조치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행정 확립

2. 부과근거

개별법, 민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 및 별표 10

3. 부과대상

개별법, 민법 등에 의해 재정적으로 회수조치 감사 적발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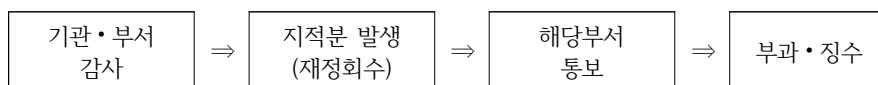
4. 부과기준

- 개별법, 민법 등 위반 시 재정회수의 사안으로 감사 지적된 건을 대상
- 재정회수와 관련된 건이 세입예산 과목에 별도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세입 예산 세목으로 부과·징수
- 특정 세입예산 과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외수입의 감사지적분으로 부과
- 부과금액은 세부 감사지적 사안을 참조하여 결정

5. 부과 징수권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6. 부과절차



7. 귀속비율

해당 지자체 100%

3. 지연배상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그외수입)

1. 부과목적

계약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때에 계약의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금

2. 부과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3. 부과대상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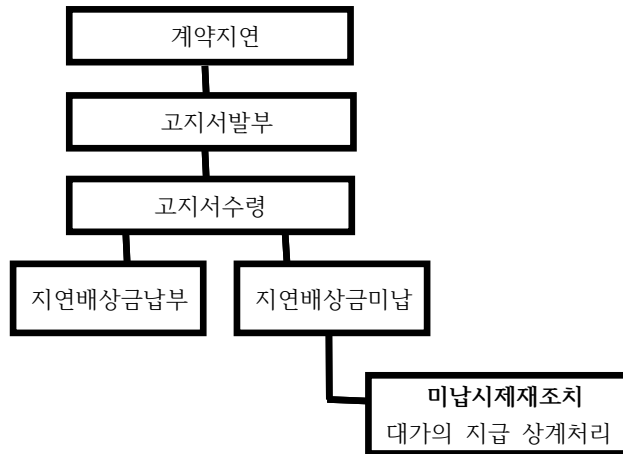
(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

4. 부과기준

《지연배상금률》

구분	금액	비고
1. 공사	1000분의 0.5	
2.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0분의 0.8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	1000분의 0.5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용역은 제외한다), 그 밖의 계약	1000분의 1.3	
4.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2.5	

《 부과.징수 절차 흐름도》



(기타 업무관련 노하우&필요 사항)

□ 지연배상금 미납시 제재 조치

- 지연배상금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 징수

5. 부과.징수권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4. 그외수입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그외수입)

1. 부과목적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7 및 제32조의 제8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7조의 2 및 제37조의 4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 부과대상

(환수)보조금

4. 부과 징수권자

시장·군수·구청장

5. 부과 기준

○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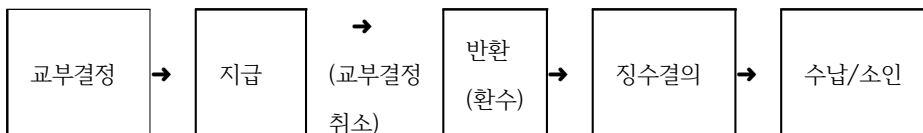
제재부가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 가금 부과율

가. 법 제33조의2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법 제33조의2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다. 법 제33조의2제1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 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6. 부과 절차



○ 보조금의 부당사용 환수금 처리

- 당해연도 : 반납, 다음연도 : 그외수입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한 지방보조금을 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부정수급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그 이자에 대하여 환수조치하여야 함.

-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타 업무관련 노하우&필요 사항)

- 보조금 반환시 그 반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반환연장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한 세부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5. 관급자재환불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그외수입)

1. 부과목적

관급자재 대금 과오납금의 여입을 목적으로 함

2. 부과근거

계약·협약에 따름

3. 부과대상

출납폐쇄 후 당초 계약 사항 변동 및 계약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환불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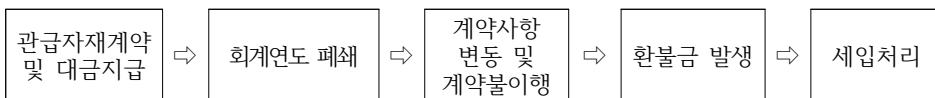
4. 부과기준

계약·협약에 따름

5. 부과·징수권자

시장·군수·구청장

6. 부과절차



7. 귀속비율

해당 지방자치단체 100%

6. 강씨봉시설사용료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1. 부과목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라 경기도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경기도 휴양림관리조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3. 부과대상

입장객

4. 부과 징수권자 : 도지사

5. 부과기준

경기도 강씨봉자연휴양림 조례

(단위 : 원)

시설명	기준	이용단위	사용료			경기아이플러스 카드 명의자 감경비율
			성수기 (정상요금)	비수기		
				주말 (정상요금)	주중 (감경요금)	
주차장	경형	1대/1일	1,500	1,500	1,000	
	소형, 중형 (승용,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1대/1일	3,000	3,000	2,000	

	대형 (16인승 이상 버스, 1톤 초과 화물차)	1대/1일	5,000	5,000	3,500	
숲속의 집	39㎡(4명)	1동/1일	60,000	60,000	42,000	정상요금의 50% (월 1회 1박에 한함)
	42㎡(6명)	1동/1일	70,000	70,000	49,000	
산림휴양관	46㎡(6명)	1실/1일	70,000	70,000	49,000	정상요금의 50% (월 1회 1박에 한함)
	92㎡(12명)	1실/1일	140,000	140,000	98,000	
회의실 (영상시스템시설)	55㎡(25명)	1실/1일	80,000	80,000	56,000	

6. 귀속비용

해당 지자체 100%

7. 감면대상

-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 ②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자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 중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료를 면제한다.
 1.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차량
 2. 장애인 등록차량 또는 국가유공자 소유의 차량
 3.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 소유의 차량
 4. 제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차량
 5. 전기자동차 [신설 2017.4.12.]
- ④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및 주차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⑤ 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시설사용료 및 주차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리인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7. 휴양림사용료(축령산)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1. 부과목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라 경기도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경기도 휴양림관리조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3. 부과대상

입장객

4. 부과 징수권자

도지사

5. 부과기준

시설사용료(제6조 관련)

1. 경기도 축령산자연휴양림

(단위 : 원)

시설명	기준	이용단위	사용료			경기아이플러스 카드 명의자 감경비율
			성수기 (정상요금)	비수기		
				주말 (정상요금)	주중 (감경요금)	
주차장	경형	1대/1일	1,500	1,500	1,000	

	소형, 중형 (승용,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1대/1일	3,000	3,000	2,000	
	대형 (16인승 이상 버스, 1톤 초과 화물차)	1대/1일	5,000	5,000	3,500	
숲속의 집	50㎡(6명)	1동/1일	90,000	90,000	63,000	정상요금의 50% (월 1회 1박에 한함)
	60㎡(8명)	1동/1일	120,000	120,000	84,000	
	70㎡(10명)	1동/1일	150,000	150,000	105,000	
산림휴양관	23㎡(3명)	1실/1일	40,000	40,000	30,000	정상요금의 50% (월 1회 1박에 한함)
	33㎡(5명)	1실/1일	60,000	60,000	42,000	
	66㎡(18명)	1실/1일	120,000	120,000	84,000	
축령관	155㎡(20명)	1동/1일	300,000	300,000	210,000	
회의실 (영상시스템시설)	231㎡(70명)	1실/1일	100,000	100,000	70,000	
야영장	데크 (4m×4m)	개소/1일	4,000	4,000	4,000	정상요금의 50% (월 1회 1박에 한함)

6. 감면대상

-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 ②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자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 중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료를 면제한다.
 1.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차량
 2. 장애인 등록차량 또는 국가유공자 소유의 차량
 3.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 소유의 차량
 4. 제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차량
 5. 전기자동차 [신설 2017.4.12.]
- ④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및 주차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⑤ 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시설사용료 및 주차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리인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8. 체육시설사용료(기타사용료)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1. 부과목적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제11조(사용료) 지방자치법 제136조

3. 부과대상

이용객

4. 부과 징수권자

도지사

5. 부과기준

사격장의 사용료(제11조 관련)

1. 클레이사격장 (트랩,스키프트,아메리칸트랩)

(단위: 원)

구분	사용료			비 고
	개인(국내거주 외국인포함)	단체	선수·회원	
클레이 사격 (접시25장, 실탄25발 제공)	23,000	21,000	18,000	· 총을 소지한 선수·회원 17,000원 · 기본접시제공 8,000원

① 기준은 1라운드 실탄 25발로 한다.

② 단체는 10명 이상으로 한다.

③ 선수는 이용일 현재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자격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실내사격장

(단위 : 원)

구 분	10m (1인 기준)		25m (1인 기준)				50m (1인 기준)	
	1시간	4시간	일 반		속 사		1시간	4시간
			1시간	4시간	1시간	4시간		
사용료	2,000	5,000	5,000	15,000	8,000	25,000	5,000	15,000

3. 권총사격장

(단위 : 원)

구분	개인(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단체	회원	비고
CAL 38/45, 9mm	20,000	18,000	15,000	① 기준은 10발로 한다 ② 단체는 10명 이상으로 한다
CAL22	15,000	14,000	12,000	

6. 귀속비율

해당 지자체 100%

7. 감면대상

제12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9. 여성회관사용료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기타사용료)

1. 부과목적

지방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반대급부로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부과근거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조례 제3조

3. 부과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비전센터나 여성회관의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하려는 사람

4. 부과 징수권자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5. 부과기준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 강당 가. 평일 1)주간 2)야간 나. 휴일 1)주간 2)야간 다. 시설물 1)마이크 2)녹음기 3)영사막 4)피아노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40,000 50,000 50,000 60,000 1,000 2,000 3,000 5,000	① 1회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1시간 초과시간은 30분 단위로 계산하되, 초과사용료는 1시간 기준 요액의 2분의 1로 한다. (단, 냉·난방기 사용시는 20퍼센트를 가산한다) ② 주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하며 야간은 오후6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로 한다.
2. 다목적홀 가. 평일 나. 휴일	 1회 1회	 20,000 25,000	1회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냉·난방기 사용시는 20퍼센트를 가산한다)
3. 미용실 가. 드라이 나. 파마 다. 맞사지 라. 컷트 마. 염색	 1회 1회 1회 1회 1회	 3,000 10,000 4,000 2,000 10,000	
4. 직업기술교육 가. 기술교육 나. IT전문기술 교육	 1인 1월 1인 1월	 10,000 20,000	
5. 문화·취미교육	1인 1월	10,000	
6. 특별교육	1인 1월	10,000	교육기간이 1월 미만의 경우에도 10일 이상일 때는 1월로 본다.
7. 특강공개프로그램	1회	무료	경기도민 여성을 대상으로 저명인사나 독보 적 전문가에 의해 대중적 공감과 지지를 끌 어낼 수 있는 1회성 공개 특강
8. 전시실	1일	40,000	① 40평 × 1,000원 ② 냉·난방기 사용시는 20%를 가산한다.
9. 별관사용	1회	35,000	① 35평 × 1,000원 ② 1회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③ 냉·난방기 사용시는 20%를 가산한다.

6. 귀속비율

해당 지자체 100%

10. 수목원주차료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사용료수입/주차료)

1. 부과목적

수목원을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수목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부과근거

2. 부과근거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 경기도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입장료 등)
-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8조(입장료 등)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따른 각 지자체별 개별조례

3. 부과대상

수목원에 주차하는 자

4. 부과기준

「경기도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입장료 등) 수목원의 입장료 및 주차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재입장은 1일 1회만 가능하다.(주차는 제외 한다)

수목원의 주차료

2. 주 차 료

(금액 : 원)

시설명	구 분	사용시간	사 용 료	비 고
주차장	◦ 경 차	1대/1일	1,500	
	◦ 소형,중형	1대/1일	3,000	
	◦ 대 형	1대/1일	5,000	

※ 소형, 중형차는 승용차 및 25인승 미만의 승합차, 2.5톤 이하의 화물차를 말함.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8조(입장료 등) ①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은 입장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장료 및 주차료는 별표와 같다.

수목원의 입장료 등

2. 주차료

(금액: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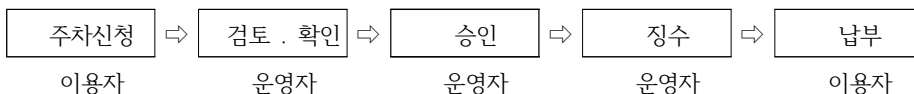
시설명	구 분	사용시간	주 차 료	비 고
주차장	◦ 경 차(형)	1대/1일	1,500	
	◦ 소형, 중형	1대/1일	3,000	
	◦ 대 형	1대/1일	5,000	

※ 소형, 중형차는 승용차 및 25인승 이하의 승합차, 2.5톤 이하의 화물차를 말함.

5. 부과·징수권자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6. 부과절차



7. 귀속비율

수목원을 설치·운영하는 경기도 및 각 지자체 일반회계 100%

8. 감면대상

「경기도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입장료 등의 면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차료를 면제한다.

1. 국민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부착하고,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와 그 가족
6. 그 밖에 소장이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유공자 소유의 차량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차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2.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고 장애등급 제4급부터 제6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0조(입장료 등의 면제와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차료를 면제한다.

1. 국민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4. 공무수행 자동차

5. 그 밖에 시장이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사항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제4조제1항 별표1 제6호를 준용한다.

11. 강씨봉위약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변상금 및 위약금)

1. 부과목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라 경기도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제34조(권한의 위임) 경기도 휴양림관리조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3. 부과대상

입장객

4. 부과 징수권자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5. 부과기준

시설사용료(제6조 관련)

1. 경기도 축령산자연휴양림

(단위 : 원)

시설명	기준	이용단위	사용료		경기아이플러스 카드 명의자
			성수기	비수기	

			(정상요금)	주말 (정상요금)	주중 (감경요금)	감경비율
주차장	경형	1대/1일	1,500	1,500	1,000	
	소형, 중형 (승용,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1대/1일	3,000	3,000	2,000	
	대형 (16인승 이상 버스, 1톤 초과 화물차)	1대/1일	5,000	5,000	3,500	
숲속의 집	50㎡(6명)	1동/1일	90,000	90,000	63,000	정상요금의 50% (월 1회 1박에 한함)
	60㎡(8명)	1동/1일	120,000	120,000	84,000	
	70㎡(10명)	1동/1일	150,000	150,000	105,000	
산림휴양관	23㎡(3명)	1실/1일	40,000	40,000	30,000	정상요금의 50% (월 1회 1박에 한함)
	33㎡(5명)	1실/1일	60,000	60,000	42,000	
	66㎡(18명)	1실/1일	120,000	120,000	84,000	
축령관	155㎡(20명)	1동/1일	300,000	300,000	210,000	
회의실 (영상시스템시설)	231㎡(70명)	1실/1일	100,000	100,000	70,000	
야영장	데크 (4m×4m)	개소/1일	4,000	4,000	4,000	정상요금의 50% (월 1회 1박에 한함)

6. 귀속비율

해당 지자체 100%

12. 변상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변상금)

1. 부과목적

공유재산의 보존 및 올바른 관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사용료(대부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가하는 징벌적 행정처분임

2. 부과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3. 부과대상

공유재산(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허가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

4. 부과기준

가. 산정금액: 대부료(사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

나. 산정방법: 무단점유자의 점유 개시일로부터 연간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 산식: 재산가액*대부(사용)요율*120%*점유기간(최장5년)

- 점유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경우: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하여 계산하되, 전년도에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해도 대부료 조정 없음

다. 부과기간: 부과 고지일로부터 5년간 소급 가능

라. 일반입찰에 의해 대부를 받았으나 대부기간 만료 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 실제 낙찰받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변상금 부과

5. 부과 징수권자

시장·군수·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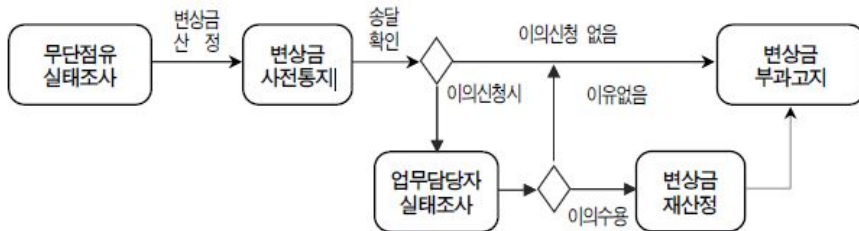
6. 귀속비율

도유재산: 도 50%, 해당 지자체 50%

시유재산: 해당 지자체 100%

부과절차

가. 변상금 사전통지: 부과고지 전에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통지내용에 의견이



절 차	세부 내용	비 고
① 무단점유 사실 주지	무단점유 및 변상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고지 및 명도 촉구	
② 점유 실태조사	점유목적, 사유, 기간, 면적 등을 상세히 조사	
③ 현황·경계 측량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측량 의뢰	필요시
④ 무단점유 실태보고	무단점유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⑤ 변상금 사전통지	변상금 사전예고 통지서 발송	
⑥ 변상금 확정 부과	변상금 확정 부과(최장 5년간 소급 부과)	

있는 경우 점유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 사전통지서에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변상금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분할납부 신청서 동봉)

- 납부기한: 변상금 납부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나. 부과시기: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연1회 정기적으로 부과고지

- 수시부과 대상: 최초 무단점유가 발견되어 행정처분(변상금 사전통지)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명도완료 등 정상화가 진행중인 경우, 압류촉탁 등기 등 채권보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타 재산의 유형·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다. 변상금 부과 고지서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행함

- 읍·면·동사무소 직원을 통해 전달할 경우 반드시 수취인 도장을 받도록 함

기타 조치

가. 원상복구명령 및 불법시설물 철거 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원상복구나 철거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법 제83조)

나. 불법행위 제재(행정재산만 해당): 고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없이 행정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법 제99조)

납부방법

가. 변상금 납부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나. 분할납부 대상: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2%이상 6%이하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가능

- 최초로 변상금을 부과고지하는 때에 분할납부할 변상금, 납부기한 및 산출근거를 기재한 문서로 통지 요함
- 변상금이 확정 부과고지된 이후의 분할 납부는 불가함
- 변상금 분납의 경우 각 기한이 도래하는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

13. 도유재산변상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변상금 및 위약금)

1. 부과목적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3. 부과대상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자(무단점유자)

4. 부과 징수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5. 부과기준

○ 변상금 산정

- 변상금 = 대부료 산출액 × 120%

○ 변상금 납부방법

-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부과절차

무단점유조사-->변상금사전통지--->의견제출--->변상금부과

7. 귀속비율

해당 지자체 100%

(기타 업무관련 노하우&필요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4.7.7.>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7.7.>

[전문개정 2009.4.24.]

14. 국공유재산변상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변상금 및 위약금)

1. 부과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08.12.26. 개정>

2. 부과근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징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81조(변상금)

3. 부과대상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계약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하거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한 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4. 부과기준

○ 국공유재산변상금 부과·징수절차(요약표)

부과대상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허가없이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
납입고지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해당하는 점·사용료(대부료)에 산정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액 및 위반행위의 종류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납부통지(이 경우 1회계연도 초과시 회계연도 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통지)
통지방법	회계연도별로 서면으로 통지(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 명시)
과세표준	행정목적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한 점·사용료 산정금액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4조> 행정목적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산정금액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1조>
적용세율	과세표준의 120%

납부기한	납부통지일부터 60일 이내		
분할납부 기준	100만원 초과		
분할납부방법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가능		
징수유예 기준	①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④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징수유예 기한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		
납부독촉절차	① 1회독촉 : 연체료율을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 ② 2회이내 추가독촉 : 마지막 독촉의 납부기한은 ①의 납부고지일 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함 ③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하여야 함 ④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 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음.		
연체료율	연체기간	1개월미만	연12퍼센트
		1개월이상~3개월미만	연13퍼센트
		3개월이상~6개월미만	연14퍼센트
		6개월이상	연15퍼센트

15. 지연이체변상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등/변상금)

1. 부과목적

이 조례는 ○○시(이하 “시”라 한다) 재정관리의 안정성·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시 세입금 수납대행 약정서

3. 부과대상

약정에 관한 수납처리 대행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
(○○시 세입금 수납대행 약정서 제4조 및 제10조)

4. 부과기준

• 변상금 부과 기준(○○시 수납대행약정서 제 10조)

① “병”과 “을”은 본 약정에 따른 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갑” 또는 타 시·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

② “병”과 “을”은 수납금을 취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실제금액보다 적게 송금하거나 수납 또는 수납금을 지정된 납입일보다 늦게 납입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을”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율을 적용 해당일수만큼 곱하여 산출한 변상금을 “갑” 또는 수납금의 해당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병”과 “을”은 제4조제4항에 의거 수납자료를 전산화하고, 실물영수필통지서를 전자이미지화 하여 제출할 수는 있으나, 수납전산자료로 제출한 분에 대한 실물영수필통지서를 지연 송부하는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수납건수(건당 500원)를 곱한 지연변상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갑” 또는 그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부과절차

단계	기간	내용
부과대상 검토	-	매년 월말 금고정기검사 계획에 맞춰 부과대상 검토
부과대상 통지 및 의견제출	10일 이상	변상금 부과대상 통지 및 이의사항 제출 시 검토 진행
변상금고지	7일 이상	정상 부과 처리 및 공문, 고지서 발송

6. 귀속비율

해당 지자체 100%

16. 강씨봉 입장료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사용료수입/입장료수입)

1. 부과목적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지방자치법 제136조,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입장료)

3. 부과대상

입장객

4. 부과 징수권자

도지사

5. 부과기준

입장료(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1,000	600	300
단체	800	500	200

<비고>

1.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중·고등학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을 제외한다)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포함)을 말한다.
4.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5.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3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6. 귀속비율

해당 지자체 100%

7. 감면대상 : 입장료 면제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7.4.12.>
 2.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와 동반 가족
 3. 제6조제1항에 따라 숲속의집·산림휴양관·축령관의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각 실의 기준인원에 한함)
 4.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관리인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7. 수목원입장료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사용료수입/입장료수입)

1. 부과목적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지방자치법 제136조,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입장료)

3. 부과대상

입장객

4. 부과 징수권자

도지사

5. 부과기준

입장료(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1,000	600	300
단체	800	500	200

<비고>

1.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중·고등학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을 제외한다)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포함)을 말한다.

4.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5.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3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6. 귀속비율

해당 지자체 100%

7. 감면대상

입장료 면제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7.4.12.>

2.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와 동반 가족

3. 제6조제1항에 따라 숲속의집·산림휴양관·축령관의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각 실의 기준인원에 한함)

4.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관리인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8. 자연휴식지입장료[жат향기]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사용료수입/입장료수입)

1. 부과목적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지방자치법 제136조,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입장료)

3. 부과대상

입장객

4. 부과 징수권자

도지사

5. 부과기준

입장료(제5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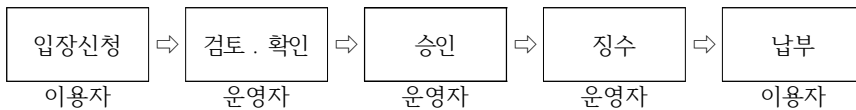
(단위 : 원)

구분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1,000	600	300
단체	800	500	200

<비고>

1.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중·고등학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을 제외한다)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포함)을 말한다.
4.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5.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3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6. 부과절차



7. 귀속비율

해당 지자체 100%

8. 감면대상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7.4.12.>
 2.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와 동반 가족
 3. 제6조제1항에 따라 숲속의집·산림휴양관·축령관의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각 실의 기준인원에 한함)
 4.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관리인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9. 휴양림입장료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사용료수입/입장료수입)

1. 부과목적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지방자치법 제136조,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입장료)

3. 부과대상

입장객

4. 부과 징수권자

도지사

5. 부과기준

입장료(제5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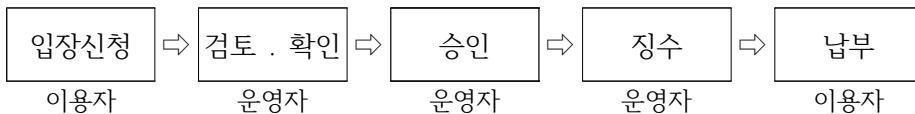
(단위 : 원)

구분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1,000	600	300
단체	800	500	200

<비고>

1.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중·고등학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을 제외한다)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포함)을 말한다.
4.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5.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3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6. 부과절차



7. 귀속비율

해당 지자체 100%

8. 감면대상

입장료 면제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7.4.12.>
2.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와 동반 가족
3. 제6조제1항에 따라 숲속의집·산림휴양관·축령관의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각 실의 기준인원에 한함)
4.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관리인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0. 기타수수료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수수료수입/기타수수료)

1. 부과목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부과근거

제137조(수수료)「민사집행법」제74조(재산조회) 및「재산조회규칙」제2조(재산조회 시스템)

3. 부과대상

전국 법원

4. 부과 징수권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등

5. 부과기준

[별표] <개정 2016. 9. 6.>

재산조회할 기관·단체, 조회할 재산 및 조회비용

순번	기관·단체	조회할 재산	조회비용
1	법원행정처	토지·건물의 소유권	20,000원
2	국토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없음
3	특허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20,000원
4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기관별 5,000원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기관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다음부터 "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5,000원*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11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전문조합 및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12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13	(삭제)	(삭제)	(삭제)
14	(삭제)	(삭제)	(삭제)
1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기관별 5,000원*
16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5,000원*
17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20,000원

* 순번 5부터 12까지, 15 및 16 기재 "조회비용"란의 금액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명의인의 통
보에 사용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6. 귀속비율

해당 지자체 100%

(기타 업무관련 노하우&필요 사항)

○ 부담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21. 수입대체경비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수수료수입/기타수수료)

1. 부과목적

직접경비로 사용할 자체 수입 재원 마련

2. 부과근거

지방회계법 제26조(수입대체경비의 직접 사용), 동법 시행령 제26조(수입대체경비의 범위) 및 제27조(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지출)

3. 부과대상

자체수입으로 직접경비충당가능 사업(교육원, 보건소 등)

4. 부과·징수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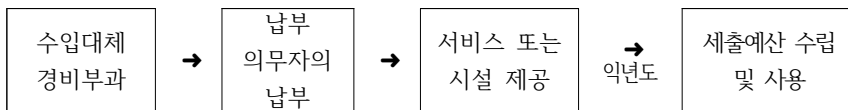
도지사, 시장·군수(승인 및 인가권자)

5. 부과기준·절차

통지방법	회계연도별로 서면으로 통지
대체경비의 범위	1. 수입대체경비의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서비스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② 수입의 범위에서 관련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③ 수입과 관련되는 실험·실습·연구의 비용을 그 수입의 범위에서 지출하는 경우
납부기한	납부통지일부터 60일 이내

납부독촉 절차	① 1회독촉 : 연체료율을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 ② 2회이내 추가독촉 : 마지막 독촉의 납부기한은 ①의 납부고지일 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함 ③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하여야 함 ④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 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음.

6. 부과징수절차



22. 폐기물관리에 관한 수수료 수입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수수료수입/기타수수료)

1. 부과목적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호를 위함
(재활용선별장에서 분리선별 된 재활용품)

2. 부과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각 자치단체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두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2항제3조

3. 부과대상

재활용품 매각 품목(파지류 및 고철류, 병류 플라스틱류 등 5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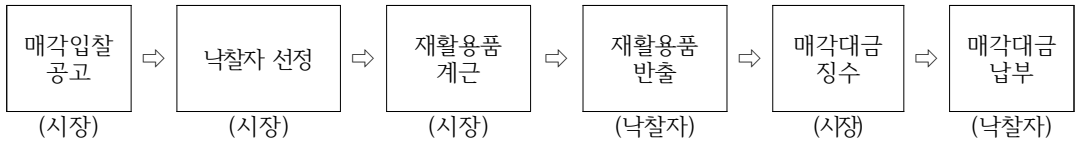
4. 부과.징수권자

부과대상	승인권자	부과권자	비고
재활용품	자치단체장	자치단체장	

5. 귀속비율

시비 100%

6. 매각대금 징수절차



7. 부과 및 납부기한

재활용품 계근 후 매각단가 적용 대금 부과 / 부과일로부터 1개월이내 납부

○ 가격입찰

- 입찰건명 : 자치단체 재활용품 매각
- 매각품목 : 5품목 18개종목
- 낙찰자 선정 : 품목별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총액)의 응찰자로 결정
- 매각기간 : 매년 2. 1. ~ 익년도 1. 31.

○ 반출 및 매각대금 부과·징수

- 재활용선별장 내 재활용품 상차 후 계근(반출)량에 대한 품목단가 적용하여 대금 부과

(기타 업무관련 추진이 필요한 사항) - 업무관련 지식, 노하우 등

- 재활용품 매각입찰은 연초(1월)에 실시함에 따라 매각대금에 대한 시장조사 및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여야 함.
- 매각입찰 : 1월 중

23. 민원발급수수료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수수료수입/기타수수료)

1. 부과목적

지지방자치단체는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나,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특정인에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2. 부과근거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경기도 수입증지조례 제3조

3. 부과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무를 이용하는 사람

4. 부과 징수권자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5. 부과기준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 (제2조 관련)

종류	표준금액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9.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0. 「공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3.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4.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 「공인중개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7.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8.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9. 삭제 <2016. 12. 30.>	
20.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21.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0원

2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23.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4.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 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6.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 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7. 「관광진흥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28. 「남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남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원
29.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수수료	1건당 9,000원
30.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1건당 7,500원
31.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 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수수료	1건당 5,000원
3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33.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34.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3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 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3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3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9.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1건당 30,000원
40.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 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당 2,000원
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 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 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4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4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4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5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52. 삭제 <2016. 12. 30.>	
5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원
54.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55.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56.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원
57. 삭제 <2016. 12. 30.>	
58. 삭제 <2016. 12. 30.>	
59. 삭제 <2016. 12. 30.>	
60.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61.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62.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63. 「삭제 <2016. 12. 30.>	
64. 「수산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5.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66.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67.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500원
68.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9. 「수산업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	1건당 1,000원

선박명칭) 수수료	
70.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 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 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2. 삭제 <2016. 12. 30.>	
73. 삭제 <2016. 12. 30.>	
74.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75.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 서)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76.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7.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500원
78.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9.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000원
80. 삭제 <2016. 12. 30.>	
81.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1건당 1,500원
82.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000원
83.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	1건당 2,000원
84.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85.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6.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87.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8.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89.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90.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1.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92.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3.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4.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5.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1건당 2,000원
96. 「수산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7. 「수산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8.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4,500원
99.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0.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	1건당 3,000원

제허가 신청 수수료	
10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0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0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 삭제 <2016. 12. 30.>	
105.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6.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7.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8.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9.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 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 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1건당 1,000원
110.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11.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12. 삭제 <2016. 12. 30.>	
1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 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 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4,000원
13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5.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6.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37.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20,000원
138.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9.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0.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41.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42.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고	1건당 40,000원

청 수수료	
143.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44.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5.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5,000원
146.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7.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 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8.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상속) 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149.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0.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수수료	1건당 5,000원
15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5,000원
156.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57.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58.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59.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0.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1.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2.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3.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64.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	1건당 45,000원

합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65.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6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건당 50,000원
16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1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원
1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8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24. 여권발급수수료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수수료수입/기타수수료)

1. 부과목적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2. 부과근거

여권법 제22조(수수료), 여권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

3. 부과대상

여권 등을 발급·재발급 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4. 부과 징수권자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5. 부과기준

종 류	구 분		여권발급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중 대행기관 수입액
			국내	재외공관	
1. 전자여권	가. 복수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	24면:	24면:	24면:
			35,000원	35달러	7,700원
		5년	48면:	48면:	48면:
			38,000원	38달러	8,360원
	나. 단수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	24면:	24면:	24면:
			30,000원	30달러	6,600원
		5년	48면:	48면:	48면:
			33,000원	33달러	7,260원

		5년 미만	15,000원	15달러	3,300원
	나.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달러	3,300원
2. 사진부착 식여권	단수여권	1년 이내	10,000원	10달러	2,200원
3. 기타	가. 여행증명서	사진전사식	10,000원	10달러	2,200원
		사진부착식	5,000원	5달러	1,100원
	나.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25,000원	25달러	5,500원
	다. 기재사항 변경		5,000원	5달러	1,100원
	라. 여권 사실증명		1,000원	1달러	220원

비고: 제1호에서 "전자여권"이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정보를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하여 발급되는 여권을 말한다.

6. 귀속비율

해당지자체 22% (여권사무대행수수료), 외교통상부 78%(여권발급수수료)

25. 정보이용수수료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수수료수입/기타수수료)

1. 부과목적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충당

2. 부과근거

지방자치법 제136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지방자치단체별 수수료에 관한 조례

3. 부과대상

정보공개청구인

4.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공개대상	공개방법및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가 문서·도면· 사진 등	1)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1)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1)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 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1)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 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2)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3)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4)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2)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3)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4)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1)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2)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1)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2)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3)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1)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2)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1)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2)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3)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4)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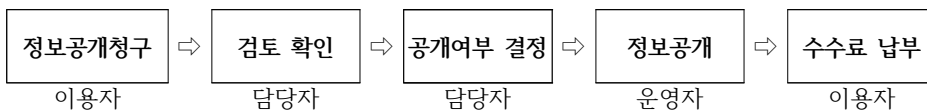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5. 부과·징수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6. 부과절차



7. 귀속비용

시장·군수·구청장

8. 감면대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른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타 업무관련 노하우&필요 사항)

-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수수료 납부 수단
 1.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 ※ 전자지급수단
 -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만)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만)
 3. 현금(부득이한 경우)

26. 심의수수료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수수료수입/기타수수료)

1. 부과목적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79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24조

3. 부과대상

건설업자,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용역업자

4. 부과 징수권자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5. 부과기준

수수료의 산출기준(제63조 관련)

1. 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연장 신청·심사수수료 산출기준(법 제79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구분	금액(1건당)
신청수수료	10,000원
1차심사수수료	2,000,000원
2차심사수수료	1,500,000원

비고

1. 신청수수료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낸다.
2. 1차 및 2차 심사수수료는 심사를 신청하는 때에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낸다.
3. 위 표의 수수료 외에 심사를 위한 현장실사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지정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4. 현장실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사수당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조5·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부문 단가를 적용한다.
5. 현장실사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2. 공장인증 신청수수료 산출기준(법 제79조제4호 관련)

구분	금액			
가. 기본수 료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공장인증에 관한 심사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장심 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심사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공장심 사원 출 장 비 및 수당	1)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2) 출장기간은 공장심사에 걸리는 기간으로서 다음과 같다.			
	등급	필요인원		소요기간
		특급기술자 (5급 상당)	고급기술자 (6급·7급 상당)	
		1명	2명	
	2급			2일
	3급			1.5일
4급	1.5일			
3) 공장심사원의 수당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장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심사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 인증심의 위원 수당	공장인증심의를 위한 심의위원의 수당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장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심사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라. 일반관 리비	(가+나+다)의 5%			

비고

1. 교량분야와 건축분야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인원은 1개 분야 필요인원으로 하고, 기간은 상위등급 소요기간에 1일을 추가한다.
2. 인증받은 공장에 대한 사후관리 심사의 경우 사후관리 심사수수료는 위 표의 가목, 나목 및 라목을 준용하되, 나목의 공장심사원 필요인원은 특급기술자 1명과 고급기술자 1명으로 하고, 출장 소요기간은 1일로 한다.

3. 영 제1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공장인증 신청에 대한 전문·기술적인 심사 및 사후 관리 상태의 조사를 위한 전문·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법 제79조제4호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만 게시할 수 있다.
4.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제3호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실비산정 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6. 귀속비율

해당 지자체 100%

7. 감면대상

1. 지방심의위원회에 건설기술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3.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장인증을 신청하는 자

27. 공유재산임대료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1. 부과목적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3. 부과대상

시군구(도)유 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자

4. 부과 징수권자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5. 부과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동조례 제30조

-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X면적X요율
(공용·공공용: 0.025, 공무원의 후생목적: 0.04,
주거: 0.02, 경작: 0.01, 기타: 0.05), 매년 대부료 결정
-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공시되지 않을 경우 시가표준액)
- 그외 재산: 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 * 첫째연도: 최고입찰가

* 2차연도 이후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시행령2제31조 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당시의 재산가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 연체기간은 납기일로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연체기간은 1개월 미만(12%), 1개월~3개월 미만(13%), 3개월~6개월 미만(14%)
6개월 이상(15%)

6. 귀속비율

해당 지자체 100%

(기타 업무관련 노하우&필요 사항)

○ 대부기간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그 외의 재산 - 1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별도 대부료의 조정

전년도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시 조례로 100분의 70 감액 가능

○ 대부료 등 납기 대부전에 납부

○ 분할납부(연4%의 이자 부과)

- 100만원 초과 : 6월이내 3회 분납
- 200만원 초과 : 9월이내 4회 분납

○ 대부료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범위(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0조 (도유지))

- 대부의 경우에는 대부료의 50%
- 변상금징수의 경우는 변상금의 40%

○ 부가가치세 10% (경작용 및 주거용 제외)

28. 시도유재산대부료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1. 부과목적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

3. 부과대상

시군구(도)유 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자

4. 부과 징수권자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5. 부과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동조례 제30조

-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X면적X요율

(공용·공공용: 0.025, 공무원의 후생목적: 0.04, 주거: 0.02, 경작: 0.01, 기타: 0.05), 매년 대부료 결정

-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공시되지 않을 경우 시가표준액)

- 그외 재산: 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 * 첫째연도 : 최고입찰가
- * 2차연도 이후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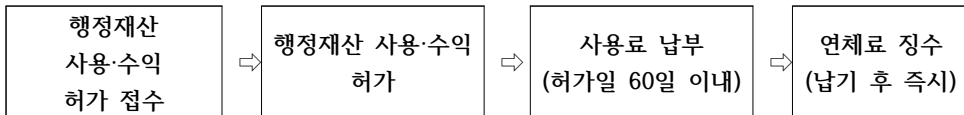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연도의 재산가액

시행령 제31조 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 연체기간은 납기일로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연체기간은 1개월 미만(12%), 1개월~3개월 미만(13%), 3개월~6개월 미만(14%)
6개월 이상(15%)

6. 부과절차



7. 귀속비용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 10조(사용료 등의 귀속)>

-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등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 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처분의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같이 해당 위임기관에 귀속시켜야 함.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 변상금 징수의 경우: 그 변상금의 100분의 50

8. 감면대상

<공공유재산법 제34조(대부료의 감면)>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대부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9.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 그 외의 재산 : 1년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별도 대부료의 조정
- ※ 전년도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시 조례로 100분의 70 감액 가능

9. 분할납부

-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100만원 초과: 3개월 이내 2회 분납(경기도 조례)
 - 2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납
 - 4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
- ※ 분납이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 규정에 따라 분납고지 시점마다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고시이자율로 적용

29.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징수교부금수입/징수교부금수입)

1. 부과목적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제22조(권한의 위임),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제11조(징수 비용의 지급)

3. 부과대상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또는 전용하려는 자

4. 부과 징수권자

시·도지사

5. 부과기준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 이상으로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지사에게는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징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6. 귀속비율

해당 지자체 100%

30. 배출부과금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징수교부금수입/징수교부금수입)

1. 부과목적

수질배출부과금등 각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부과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기초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수행하는데 대하여 비용 보전의 성격으로 관련부처 또는 위임 받은 기관으로부터 교부받는 수입

2. 부과근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4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3. 부과대상

배출부과금 수납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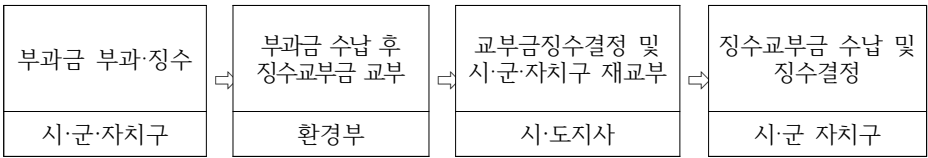
4. 부과기준

부과금 명칭	징수교부율	관련법령	소관부처
수질배출부과금	징수비율 60% 미만 : 100분의 10 60% 이상 80% 미만 : 100분의 15 80%이상 : 100분의 20	수질 및 생태계보전에관한 법률시행령 제57조	환경부
대기배출부과금	징수비율 60% 미만 : 100분의 7 60% 이상 80% 미만 : 100분의 10 80%이상 : 100분의 1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2	환경부

5. 부과징수권자

시장·군수·구청장

6. 부과절차



7. 귀속비율

해당 지자체100%

31. 인증기용증지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수수료수입/증지수입)

1. 부과목적

제증명과 인.허가, 그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

2. 부과근거

경기도 수입증지조례, 각 시군 수입증지조례, 각 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3. 부과대상

제증명과 인.허가, 그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 각종 민원행정서비스 및 민원발급서비스를 요구하는 민원인

4. 부과기준

○ 민원발급수수료

구 분	민원사무명	수수료(원)	비 고
즉 결	주민등록등초본	500	
	인감증명서	600	
	가족관계증명서	1,000	
	제적등본	1,000	
어디서나 민원 (FAX민원)	개별공시지가	800	
	공시지가확인	800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000	
	토지(임야)대장	500	1장당 100원추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800	
	자동차등록원부	300	

- ①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하는 경우 또는 여러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 포함)하는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 징수

다만, 등기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은 예외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 징수

③ 자동차 등에 관한 제증명 등은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 징수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 주로 배를 매어두는 장소의 관할구역에서 징수

5. 감면대상

① 전액감면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 5호부터 제10호까지는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 및 제26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면대장 등의 공부(公簿) 열람

4. 리·반장의 공부(公簿) 열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10.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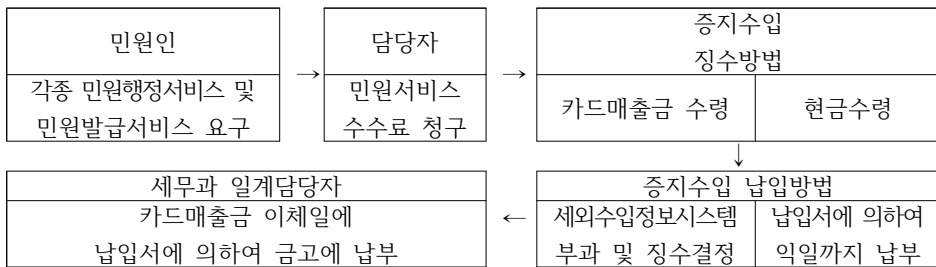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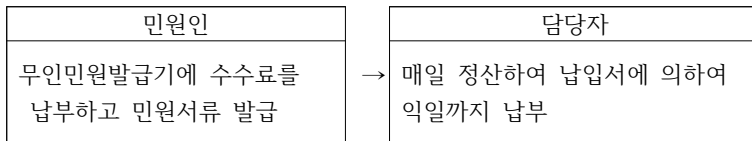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기타증지수입 부과·징수절차

① 담당자에 민원서비스 요구시



②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서류발급시



32. 증지판매수입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수수료수입/증지수입)

1. 부과목적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증표를 발행하여 납부하도록 함.

2. 부과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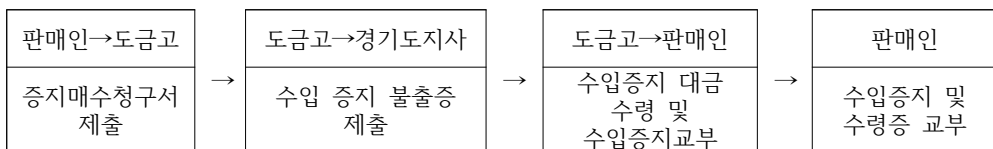
경기도 수입증지조례

3. 부과대상

각종 민원행정서비스 및 민원발급서비스를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증지판매를 하는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이 되어 있는 증지판매인

4. 부과기준

○ 증지판매 부과·징수 절차(경기도수입증지조례 시행규칙 제6조)



○ 판매인의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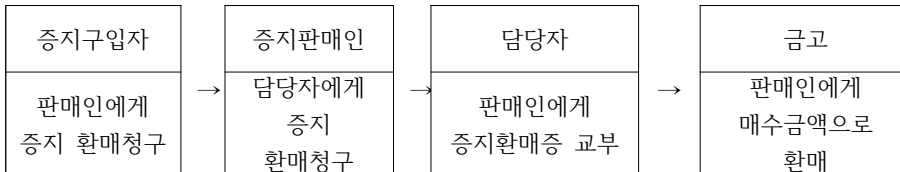
- 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1년간 7조에 따른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사람 일 것
- 판매인의 의무
 - 일반인의 수요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증지의 비치

- 증지의 정가판매
- 증지판매소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판매소 표찰 게시
- 판매인이 증지 판매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유발생예정 3일 전에 수입증지 판매계약서와 해지신고서 제출
- 판매인 수수료 : 증지 액면가액의 5% / 계기사용시에는 수수료 지급하지 않음
-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구분	장소	납입기한
현금	도금고 소재지	다음날
	그 외의 곳	5일내
카드	무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

○ 증지의 교환 및 환매 절차

- 교환
 - 증지가 오염 또는 훼손 등으로 판매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판매인이 고의로 오염 또는 훼손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불가
 - 도지사가 판매인에게 교부한 불출증을 도금고에 제출하고 증지를 교부받는다.
- 환매



- 오염 또는 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매불가

33. 묘목생산수입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사업수입/사업장생산수입)

1. 부과목적

종묘산업 육성과 우량종묘생산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농업발전을 도모

2. 부과근거

개별 시군 종묘관련 조례, 규칙 등

3. 부과대상

묘목생산판매사업

4. 부과 . 징수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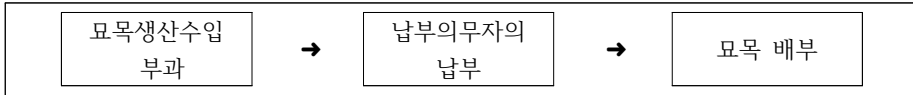
도지사, 시장·군수(승인 및 인가권자)

5. 부과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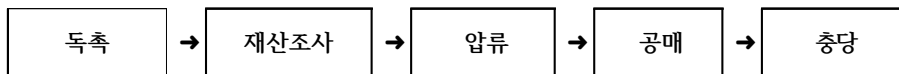
통지방법	회계연도별로 서면으로 통지
납부기한	납부통지일부터 60일 이내
납부독촉 절차	① 1회독촉 : 연체료율을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 ② 2회이내 추가독촉 : 마지막 독촉의 납부기한은 ①의 납부고지일 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함 ③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하여야 함 ④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 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음.

6. 부과 . 징수절차

○ 부과.징수절차 흐름도



7. 체납처분 흐름도



① 독촉(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 납부기한 :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
- 1년에 1회 이상 독촉

② 재산조사(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10조, 제11조)

- 동산, 채권, 부동산 등 재산유무 조회

③ 압류(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9조)

압류대상	압류통지대상	압류효력	환가
동산.유가증권	-	점유 시	추심
채권	제3채무자, 체납자	제3채무자에 송달된 때	추심
부동산	소관 등기소, 체납자	등기가 완료된 때	공매
자동차	차량등록사업소, 체납자	등기가 완료된 때	공매

④ 공매(국세징수법 제3장 제10절 준용)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 공매완료 후 매각대금 배분

⑤ 충당 : 세입조치

※ 체납처분 관련 기타사항은 세정과 문의 처리

34. 사업장생산수입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사업수입/사업장생산수입)

1. 부과목적

소속기관에서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작물연구과-4009(2009.08.19)호의 “농업기술원 생산물 처분에 관한 지침”

총무과-6215(2010.04.16)호의 “생산물 처분지침과 관련한 소량생산 처분 기준”

총무과-6215(2010.07.21)호의 “생산물 처분지침에 따른 협조 요청”

3. 부과대상

생산물 매입자

4. 부과 징수권자

도지사

5. 부과기준

-“농업기술원 생산물 처분에 관한 지침 제2호 ”생산물인계 및 처분 나항 1)호 “ 소량생산으로 공개입찰 또는 공판장 출하가 비경제적일 경우“의 소량 처분기준에 따라 공판장 및 일반 매각

총무과-6215(2010.07.21)호의 생산물 처분지침에 따른 협조 요청의 2-나 인계공문은 “수확예정 10일전”까지 필히 경리팀장 협조 후 발송에서 수확예정 10일전 은 및 경리팀장 협조 불필요 개선

-개선: 생산물인계공문의 첨부물 1. 생산물 보고(원장 결재)문서 2. 불용결정 통
보서 3. 가격정보(관련사이트 정보, 등급, 상태, 기타 사항 명기), 샘플 필요
생산물 보고에 “매각용”에 있을 경우 물품관리관인 총무과장 협조

6. 귀속비율

해당 지자체 100%

(기타 업무관련 노하우&필요 사항)

○ 법령은 없고 내부 지침을 받아 운영함.

35. 공공예금이자수입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1. 부과목적

각종 수입금을 공공자금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유동성을 즉시 조달할 수 있게 하며, 투자 가능한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수익을 극대화한다.

2. 부과근거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지방회계법시행령 제51조(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고보관)

3. 부과대상

각종 수입금을 금고은행에 예치함에 따른 예금에서 발생하는 예치금이자수입

4. 부과 징수권자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5. 부과기준

세입과 세출의 시차에 의하여 발생한 유휴(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관리(운용)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

6. 귀속비율

해당 지자체 100%

(기타 업무관련 노하우&필요 사항)

- 자금수급을 가능한 정확히 파악하여 유희자금을 자치단체금고에 이자율이 낮은 공공예금(지출준비금)을 최소화하고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저축 등 고금리 상품에 가급적 장기로 예치

36. 기타이자수입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1. 부과목적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수입금을 금고은행에 예치함에 따른 과실수입으로서 보통예금에서 발생하는 예치금이자수입 및 세입과 세출의 시차에 의하여 발생한 유희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

2. 부과근거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지방회계법시행령 제51조

3. 부과대상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따른 이자중 법령,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 및 계약당시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이자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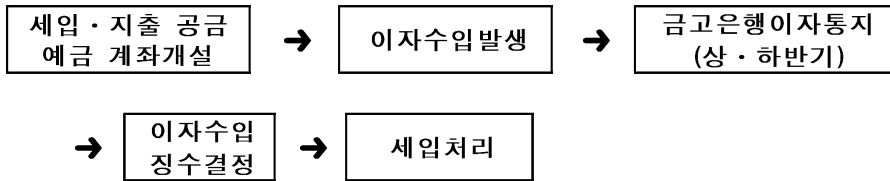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지급 기준》

구분	예탁기간	대상종류	이자율	비고
정기예금 예탁	만6월 이상	.차액.계약.하자보수보증금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	당해지방자치단체 취급점(금고)의 동예금 최고의 이자율	국가의 경우 계약보증금.차액보증금
별단예금 예탁	만6월 미만	.정기예금예탁대상 중 만6개월 미만인 경우 .공공예금 예탁대상 이외의 모든 세입세출외현금	별단예금으로 예탁하고 동예금 최고의 이자율	국가의 경우 계약보증금.차액보증금을 제외한 보관금
공공예금 예탁	예탁기간 관련 없음	원천세.의료보험.기여금 등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이자 미지급	

4. 부과징수권자

시장·군수·구청장

5. 부과절차



6. 귀속비율

해당 지자체 100%

37. 기타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이자수입/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 부과목적

이자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수입금을 금고은행에 예치함에 따른 과실수입으로서 효율적인 자금관리(운용)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공공예금, 민간융자금, 세입세출현금관리등의 이자)을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지방회계법시행령 제22조외 개별법령, 자치단체 조례등

3. 부과대상

융자금 대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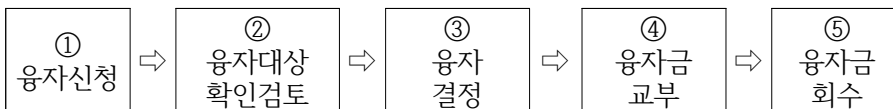
4. 부과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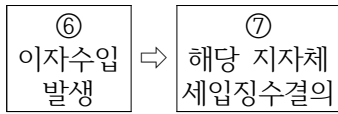
-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관리
 -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된 기금 재원등을 민간인, 자치단체에게 융자하여 융자조건에 정한 바에 의하여 원금 및 이자 회수
-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산출
 - 각 융자 자금별 평균잔액 × 해당 자금의 수입이자율(대출이자율-자치단체 취급기관 수수료를)

5. 부과 징수권자

시장·군수·구청장

6. 부과절차





7. 귀속비율

해당 지자체 100%

이사거변 제3에선 바새학 이자스이에 대한 네이치크크 트면학 지바제저 저리

지바치레버 제00주 및 지바치레버 니켈주 제00주

지비지출디딤세 예산현상 0여키조 제드조 미 변조 0

이식결과 지그 용역 결정에신 바쁘게이 이지

- 이
- ₁
- 상
- ₂
- 경
- ₃
- 변
- ₄
- | 차
- ₅
- | 그
- ₆
- | 은
- ₇
- | 용
- ₈
- | 계
- ₉
- | 좌
- ₁₀
- (통장) | 어
- ₁₁
- | 이
- ₁₂
- | 자
- ₁₃
- | 발
- ₁₄
- | 생
- ₁₅
- | 사
- ₁₆
- |

- 1 → 2 → 3 → 4 → 5 → 6 → 7 순으로 버퍼 및 금지서로 세이쳐

도트 = 세외관리 > 부과관리 > 부과대상관리 > 부과대상관리(0343) : [신고] 버튼

부과대장관리 화면

1. '부과대장관리' 버튼을 클릭하면 '부과대장등록' 창이 열립니다.

2. '신규' 버튼을 클릭하면 '부과대장등록' 창이 열립니다.

부과대장 등록 창

3. '등록하기' 버튼으로 선택

4. '등록하기' 버튼으로 선택

5. '개별 지시서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개별 지시서출력' 창이 열립니다.

6. '개별 지시서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개별 지시서출력' 창이 열립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부과절차

6. 귀속비율

해당지자체 100%

39. 도로사용료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사용료수입/도로사용료)

1. 부과목적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도로법 제66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71조, 경기도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제5조

3. 부과대상

도로구역안의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

(도로법시행령 제55조 및 경기도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 등 부과·징수조례 제4조)

4. 부과기준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준 단위	
1. 전주, 공중 전화, 송전탑 등 지상 시설 점용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현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 미터	1년	토지가격 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전 력구, 지중정 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 점용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3.0m 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3.0m 초과			10,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50
		그밖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41,400
		그 밖의 것			20,700

4. 주유소·주차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진입로· 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 (「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것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토지가격 : 도로점용 부분과 달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의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2필지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

5. 부과 징수권자

시장·군수·구청장

6. 부과절차

단계	내용
부과징수 및 고지	도로를 점용하는 자 (대리인이 있는 경우 관리인이나 대리인) 부과방법 - 1년미만 : 전액 - 1년이상 : 회계연도 시작 3개월이내
가산고지	독촉고지 : 납기경과후 50일이내 가산금: 납기경과시 3%(최초 1회)
중가산고지	30만원이상 매월 1.2%씩 60회까지
이의신청	점용료부과 받은날부터 60일이내 처분청에 신청

7. 귀속비율

도 100% (해당 지자체에 징수율에 따라 30%~50% 징수교부금)

8. 감면대상

「경기도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제7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법인의 비영리사업
- 전기, 통신, 송유관, 가스공급, 열수송시설 등 설치
- 재해 등으로 점용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 주택 및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시설 설치
-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경우
-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통행로
-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 사유지의 기부채납한 토지를 점용허가 받는 경우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출입 통행로

(기타 업무관련 노하우&필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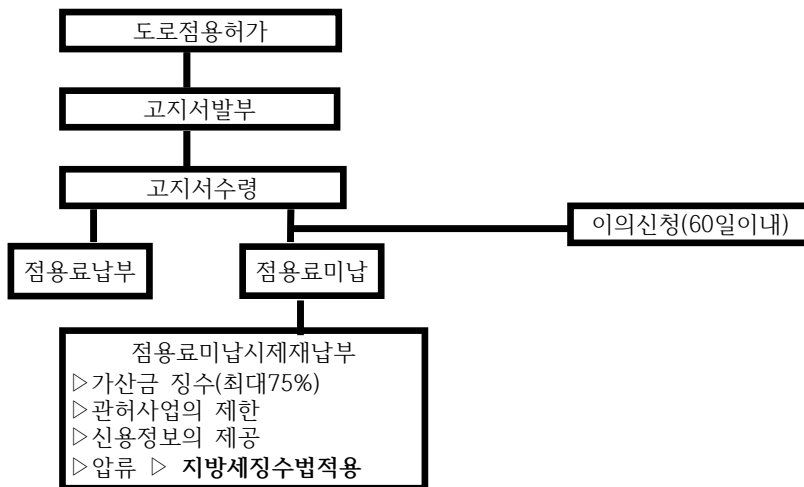
□ 점용료 산정기준

- 분할납부 : 점용료 50만원초과하는 경우 연4회이내 분납가능
 - ※ 분납잔액에 대하여 이자(연6%) 적용
- 상한액 적용 : 점용기간 1년이상인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100 이상 증가시 10/100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 소액부징수 : 점용료의 5천원 미만

□ 점용료 반환

- 반환사유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않거나 취소한 경우
 - 점용기간 단축으로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
- 반환신청 :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입증서류 첨부 신청
- 결과통보 : 원상회복 여부 검토후 30일이내 반환여부 통보

【 부과·징수 절차 흐름도 】



40. 하천사용료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사용료수입/하천사용료)

1. 부과목적

하천의 유수를 사용하거나 하천내에 공작물 설치 및 토지를 점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하천 점.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는 자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징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하천법 제37조, 경기도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제5조

3. 부과대상

하천구역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형질 변경 등 그 밖의 목적으로 하천을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 (하천법 제37조)

4. 부과기준

점용료 산정기준(제2조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 한다)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으로 한다.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미 식재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0.8로 한다.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까지 조림수익 분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하천구역내의 토석, 모래·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8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로 한다. 마.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한다.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한다.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3. 하천시설물의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으로 한다.
4. 하천수의 사용	가. 발전용수 : 1일 10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나. 농업용수 : 1일 1천 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 「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라. 그 밖의 용수 : 다호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

5. 부과 징수권자

시장·군수·구청장

6. 부과절차

단계	내용
부과징수 및 고지	○징수방법 ·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 : 즉시 징수 ·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 당해연도 허가분 : 허가증 교부시 - 다음연도분 : 전년도 11.1~11.30 납기 ※ 예외: 1년이상인 경우라도 회계연도별로 구분 징수하여 징수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전액 징수가능
가산고지	독촉고지 : 납기경과후 50일 이내 가산금: 납기경과시 3%(최초 1회)
증가산고지	30만원이상(국세의 경우 50만원) 매월 1.2%씩 60회까지
체납처분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 적용

7. 귀속비율

도 100% (해당 지자체에 50% 징수교부금)

8. 감면대상

「경기도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제3조, 제6조제2항 관련

-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 전기, 통신, 송유관, 가스공급, 열수송시설 등의 사업을 위한 점용 및 사용
- 재해 등으로 점용목적 달성을 수 없는 경우
 - 하천관리청이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범위에서 하천수를 사용한 경우
- 한국수자원공사에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시설 설치
-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업무관련 노하우&필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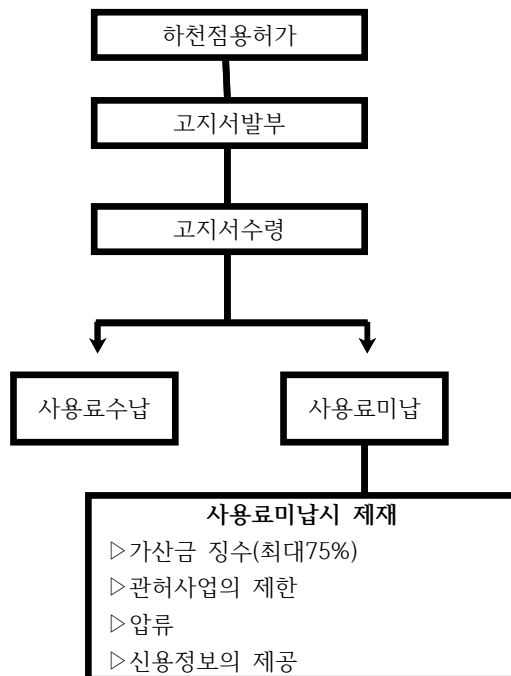
□ 점용료 산정기준

- 분할납부 : 점용료 50만원초과하는 경우 연4회이내 분납가능
 - ※ 분납잔액에 대하여 이자(연6%) 적용
- 소액부징수 : 점용료의 2천원 미만

□ 점용료 반환

- 반환사유 : 원칙적으로 반환 불가
 - ※ 단, 하천법제68조 규정에 의하여 공익을 위한 처분 등을 하는 경우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점용허가 등을 취소 또는 변경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

【 부과·징수 절차 흐름도 】



41. 수산자원조성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부담금/일반부담금)

1. 부과목적

수산자원조성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을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2. 부과근거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조성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6조

3. 부과대상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4. 부과 징수권자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5. 부과기준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구 분	부과금액	비 고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어류·패류 등 양식어업: 헥타르당 10만원 ○정치망어업, 해조류, 복합양식어업: 헥타르당 3만원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총부과금액=(부과금액×연장 받은 연수)÷10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연안어업·새우조망어업·실뱀장어안강망어업·패류형망어업·근해어업: 어선	○부속선이 있는 어업의 경우 가공선 및 운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밭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톤당 5천원 ○건간망어업·건망어업·들망어업·선인망어업·승망류어업·안강망어업·장망류어업·지인망어업·해선망어업: 헥타르당 3만원 ○밭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헥타르당 10만원	반선을 제외한 부속선을 포함함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헥타르당 500만원(해조류 수산종자생산업은 200만원)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헥타르당 5만원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수산자원의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대상에서 제외된 자 -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 -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 -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	○건당 300만원 ○건당 250만원 ○건당 200만원	○법 제35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함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부수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0.1톤당 50만원	
○법 제52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별표 16에 따른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의 조성,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행위 허가를 받은 자	○건당 500만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헥타르당 21만 6천원	

비고: 해당 어선의 총톤수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측정된 어선의 경우에는 그 톤수에 0.72를 곱하여 환산한 톤수를 말한다

조성금의 감액기준(제27조 관련)

감액대상	재해피해 정도	감경률	비 고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의 기간 중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피해의 정도가 30% 이상으로서 피해복구 지원을 받은 어업자	50% 미만 (어선의 경우 반파)	30%	해당 어업에 대하여 2회 이상 피해복구 지원을 받은 어업자의 경우에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50% 이상 (어선의 경우 전파)	50%	

6. 귀속비율

해당지자체 100%

7. 부과 및 납부기한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부과, 부과일로부터 60일 내의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0일 이내

42. 기부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기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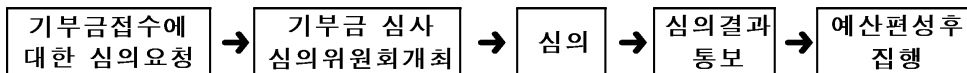
1. 부과목적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며 기부금품 모집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2. 관련근거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3. 모집절차



1. 국가기관 등의 기부금품의 모집 금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법인·단체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이 금지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 가능

2. 국가기관의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제한(법 제5조제2항)

가. 원칙 :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 접수 금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 할 수 없음

※ 자발적 기탁 기부금품의 출연에 대한 의뢰, 권유, 요청 없이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순수한 기부 행위

나. 예외적으로 접수 허용

○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법 제5조제2항제1호)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법인·단체가 당해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부금품법상 모금단체의 협조요청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금단체에 전달하는 경우를 말함 (☞ 기부자의 의뢰가 아닌 모집자의 의뢰임)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되었으나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법 제5조제2항제3호)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함

3.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 후 처리방법(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처리)

• 금전 :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입(세입과목 : 기타수입-기부금) 조치한 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

• 물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물품으로 등재하고 보관·사용·처분·관리

• 기금 : 별도운영

유의사항

○ 특정 단체가 추진하는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기부금품모집에 관여 ⇒ 기부금품법 제5조 제1항 위반 사항임

- 지자체가 자체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기관에 기부금품 모집 참여를 요구

- 지자체 복지사업, 행사유치 등과 관련하여 후원요청 공문 발송, 개인 또는 기

업후원자 모집

- 지자체가 출자 .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인 복지재단, 장학재단, ○○ 센터 등을 통해 모금하는 행위 등
- 지자체가 지역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사업에 참여하여 모집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소속 공무원이나 통장, 이장 등을 통해 모금(권유)하는 행위
- 지자체 명의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의 기부를 요청하는 홍보물 발송
- 지자체장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행사에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기부요청
- 지자체에서 후원자를 발굴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연계하는 행위

벌칙

국가, 지자체 등의 기부금품 모집금지를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3. 불용품의매각대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불용품매각대금)

1. 부과목적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78조, 물품관리법 제35조~40조

3. 부과대상

불용품의 매수인

4. 부과 징수권자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5. 귀속비율

해당 지자체 100%

44. 공유재산매각수입(시·도유재산,시·군·구유재산)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공유재산)

1. 부과목적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매각을 통한 보다 안정적인 공유재산 운용을 도모

2. 부과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3. 부과대상

시·도, 시·군·구 재산 매각 시 발생하는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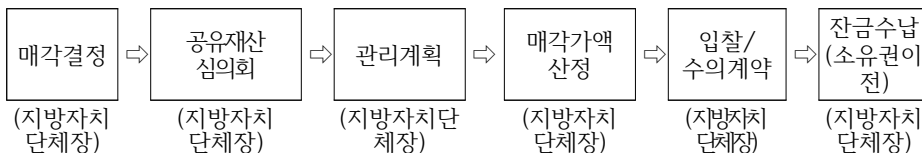
4. 부과기준

공유재산 매수자에게 부과

5. 부과징수권자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시장 . 군수

6. 부과절차



7. 귀속비율

시·도재산		시도에서 매각하는 경우	→	전액 시도 수입
		시군구에서 매각하는 경우	→	시도 수입 70% 시군구 수입 30%

□ 가격결정 방법

-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나 금액 이상으로 함(감정평가 산술평가액에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 할 수 있음)

□ 감정평가 적용

-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 동안만 적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7조제2항)

□ 매각대금 납부

1) 일시에 전액납부

-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함.

2) 분할납부

-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납하게 할 수 있다(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3) 무이자 매각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매각할 수 있다(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 부동산 거래 신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45.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시도비반환금수입)

1. 부과목적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환하여 보조금 지출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2. 부과근거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및 제32조 제8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7조의2 및 제37조의 4

3. 부과대상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하는 자치단체 또는 보조사업자

4. 부과기준

- 기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조치
- 반환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
- 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다른 지방보조금이 있으면, 이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

5. 부과절차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한다.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그 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한 이자는 기타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

6. 부과 징수권자

도지사

46.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보전수입 등/전년도 이월금/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 부과목적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국고에 반납을 목적으로 함

2. 부과근거

201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 및 별표 10

3. 부과대상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

4. 부과기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발생 시

5. 부과 징수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6. 귀속비율

해당 지방자치단체 100%

47. 배당금수입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사업수입/배당금수입)

1. 부과목적

출자에 따른 배당금에 대한 세입처리로 투명한 지방재정 정립

2. 부과근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 및 별표 10

3. 부과대상

출자에 따른 배당금

4. 부과기준

출자에 따른 배당금 발생 시

5. 부과 징수권자

시장·군수·구청장

6. 귀속비율

해당지자체 100%

48. 소송회수비용수입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그외수입)

1. 부과목적

소송에 관하여 생긴 비용 가운데 소송비용으로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의 것

2. 부과근거

「민사소송법」제98조, 지방재정법 제2조 제4호, 소송사무처리규칙,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시행 2016.1.1. /행정자치부 예규 제31호)

3. 부과대상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개인과 법인)

4. 부과기준

소송비용 산출요령(예시)

○ 변호사 비용(여비포함)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서 정한 범위의 금액

○ 소장첨부용 인지대

- 1심「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규정한 금액

- 2심 1심 소장의 1.5배

- 3심 1심 소장의 2배

※ 제소 시 각종 신청사건 등 그 밖의 비용 소장첨부용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및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을 적용

○ 송달료(「송달료규칙」 적용)

당사자수 × 등기우편 5회분 ----- 각 심급별로 계산

○ 검증 및 감정료(「민사소송비용법」 적용)

해당 관할법원 납부명령서에 따른 지출액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인지대 : 〇〇〇원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송달료 : 당사자수 × 등기우표 3회분

○ 판결문등본, 소확정증명, 고가증명청구수수료 : 〇〇〇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적용

5. 부과 징수권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6. 부과절차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장 채권과 채무

- 제111조(납부의 고지)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 고

- 제112조(독촉) 독촉장은 납부기한 15일 이내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발부일로 부터 15일 이내 발부.(독촉은 강제집행 압류, 경매 등을 위한 선행절차)

7. 귀속비율

해당 지자체 100%

8. 감면대상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을 통하여 주민들의 확정된 소송비용의 면제청원을 채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소송비용(채권)을 면제(포기)할 수 있음

법제처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5항 해석에 대한 법령 질의외신

(법제처 11-0280, 2011.7.15.)

(경기도) 소송에서 패소한 주민들의 소송비용 채무를 지방의회에서
면제하기로 의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간 소송이 주민들의 패소로 결정되어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패소한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확정된 이후, 지방의회가 의결을 통하여 주민들의 확정된 소송비용의 면제청원을 채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소송비용(채권)을 면제(포기)할 수 있는지?

2. 회답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간 소송이 주민들의 패소로 결정되어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패소한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확정된 이후, 지방의회가 의결을 통하여 주민들의 확정된 소송비용의 면제청원을 채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소송비용(채권)을 면제(포기)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일면 위 두 법 조항이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채권면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이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의회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예산의 심의·확정 역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재정 운용계획에 해당하는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 의결권자인 지방의회가 그 의결을 통하여 지방재정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소송비용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이 「지방재정법」에 대하여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양 법의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고, 또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그와 같이 법률 전체의 일반적 지위를 형식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상호 충돌되는 듯 보이는 개별 법률규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체계적 해석이 우선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방재정에 관하여 법률 자체로 볼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지방자치법」의 특별법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구체적인 개별 조문의 관계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면제(포기)에 관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과 「지방재정법」 제86조가 일반법 및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86조의 내용은 1963. 11. 11. 법률 제1443호로 제정되었고, 당시 지방의회가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채무면제 가능 여부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1988. 5. 1. 법률 제4004호로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의 내용이 신설되어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 외에도 지방의회 의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관한 채무면제가 가능하도록 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5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의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면제에 대하여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86조는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미처 정비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였고, 「지방재정법」 제86조의 문언상 여기서의 ‘법령’은 다른 법률이 채무면제 여부를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가능하도

록 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의회 의결로써 채무면제가 가능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은 「지방재정법」 제86조상의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는 이 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9호가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서 ‘청원의 수리와 처리’를 규정하고 있고, 수리된 청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면제에 관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채택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9호 및 위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86조상의 ‘법령’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간 소송이 주민들의 패소로 결정되어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패소한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확정된 이후, 지방의회가 의결을 통하여 주민들의 확정된 소송비용의 면제청원을 채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소송비용(채권)을 면제(포기)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권고 「지방재정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채권 면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에 반하여,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 외에도 지방의회 의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양 법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하므로, 입법을 통하여 양자를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업무관련 노하우&필요 사항)

○ **소송회수비용의 채권소멸시효**

- 민법 제165조 제1항 :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 **소송비용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법상 채권이므로 지방세법등에 의한**

채납처분의 일환인 압류처분 등을 하여서는 안 됨. (자력집행권 없음)

따라서 강제집행(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강제경매, 압류추심 등)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야 함.

【자력집행권(自力執行權)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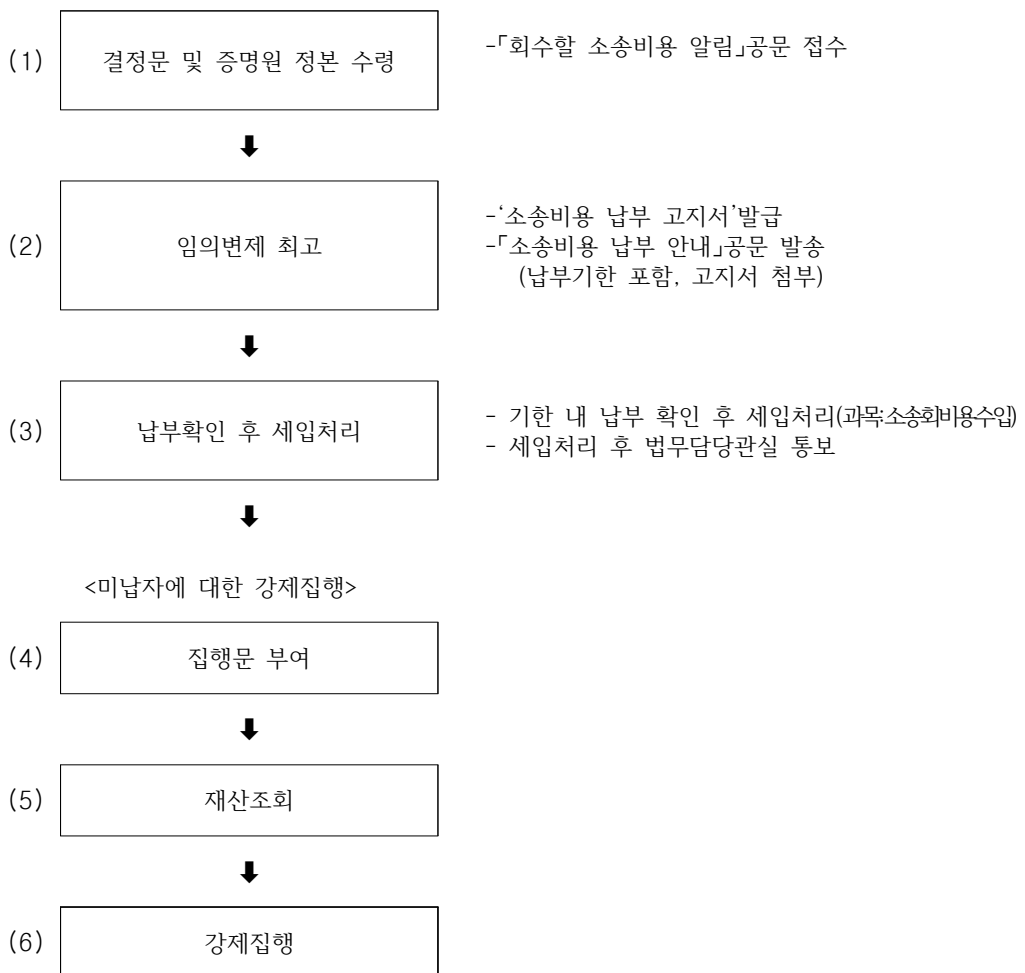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의 의사를 스스로의 강제력에 의하여

행정행위(行政行爲)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힘 또는 권리를 자력집행권이라고 한다. 조세에 관하여는 조세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이며 공익성이 강한 점 및 부과·징수의 공평성·확보 등의 관점에서 자력집행권이 인정되고 있다. <출처: 영화조세통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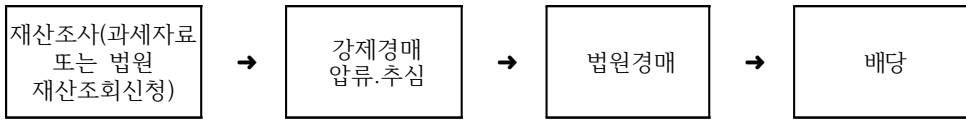
○ 집행비용의 부담(민사집행법 제53조)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 부과·징수 절차 흐름도 】



【 체납처분 흐름도, 법령 : 민사집행법 】



□ 간접강제수단

재산 명시 신청	○ 재산명시 신청(민사집행법 제61조 내지 제69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재산명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음(법 제61조, 제62조) 법원은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이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기간 내에 그 재산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함(법 제64조, 제65조) ※ 출석을 통지받고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작성제출,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 감치할 수 있으며,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 효과/ 공시송달 불허용
재산 조회 신청	○ 재산조회 제도(민사집행법 제74조 내지 제77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로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음(법 제74조) 신청요건 1) 명시기일 불출석 2) 명시기일 재산목록을 제출거부 3) 명시기일 선서거부 4)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5)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때
채무 불이 행자 명부 등재 신청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민사집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요건 1) 채무자가 6개월 이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거부 , 전서거부 3) 거짓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을 때 ※ 금융거래 제한 대출거절, 기존 대출에 대한 일시상환 압박, 카드발급거절 신용한도 축소 등)

□ 직접 강제수단

부동산 강제 경매	확정판결 등의 채무명의에 의해 집행문을 부여 받아 경매 신청 판결문이 첨부되는 것 외에는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와 유사	
채권압 류 및 추심/ 전부 명령	채권 압류	임차보증금 채권, 임금채권, 외상매출금 채권 등의 압류에 있어서 압류의 목적이 되는 제3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이 확실할 때에는 압류 명령 신청과 동시에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
	추심 명령	제3자에 대한 채권의 규모를 모르고,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에 제 3자의 가압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등에 활용되는 것이 추심명령제 3채무자의 변제력이 명확치 않은 경우에 사용, 이 경우 경합하는 채권자간에 추심된 금액을 배당
	전부 명령	- 제 3자에 대한 채권의 규모를 알고,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을 제 3자가 아직 가압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한 채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하고자 할 때 활용되는 것 -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당사에게 이전하는 명령 -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의 변제력이 주채무자 보다 상당한 경우 사용
동산 압류	자동차	자동차를 먼저 인도 후 경매신청
	유체 동산	채무자가 점유중인 동산(가전, 가구, 귀금속, 기계 등)
	유가 증권	제3채무자가 점유중인 증권(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등)
채권자 대위권 /취소권	의의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 보전조치를 위하여 긴밀히 사용
	채권자 대위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건물 준공검사 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법적 조치를 당할 것을 염려하여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 보존 등기를 신청하고 경매를 신청)
	채권자 취소권	-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어렵게 할 수 있음을 알면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근저당 설정, 가압류 당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사해 행위 취소)	그 법률행위를 취소케 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 - 채권자 취소권 업무절차 : 재산조사 →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 허위의 양도, 근저당 설정으로 추정됨 → 처분금지 가처분 → 사해행위 취소 소송제기 → 승소판결시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근저당말소 → (채권 보전조치 후) 즉시 강제집행 → 채권 회수

【대법원 전자소송 제도를 활용한 강제집행】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민사집행서류 제출 및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징수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됨.

※ 전자소송의 민사집행 업무는 2015. 3.23. 부터 개시함

<예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전자소송으로 신청방법

- ① 전자소송(ecfs.scourt.go.kr) 사이트 접속하여 로그인 한다. 서류제출 - 민사집행을 선택한다.



- ②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탭을 선택하고 하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클릭한다.

부동산 등 집행 채권압류 등 채권배당 재산명세/감치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그 밖의 집행

집행 법원을 방문하여 종이로 제출하던 민사집행사건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합니다.

자주 찾는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류

포시가 있는 문서는 표준화된 일체행록을 직접 작성하는 전자문서입니다.

재산조회신청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평부등재말소신청서 (채무자선택) 평부등재말소신청서 (채권자선택) 평부등재말소신청서 (채권자선택) 독시항고장

·보정서 ·주소보정서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참고자료 ·신청취하서

원하는 서류가 있으십니까?

서류명 검색하기

- ③ 불이행 금전채무액 입력한다. 판결문에 있는 금액을 오늘날짜까지 계산하여 입력한다. 관할 법원은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을 선택한다.

사건기본정보

·사건명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불이행 금전채무액 원 () 원 (집행권원상의 채무잔액)

·집행권원의 표시 (59 / 2000 Bytes)

위 당사자간 위원 2015가소 0000 건물등물거 사건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제출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관할법원 찾기

관련사건 법원선택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 가단 2

제출

- ④ 채권자와 채무자를 입력한다. 정보를 자세히 입력한 후 저장한다.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 ⑤ 집행권원을 입력한다.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집행권원 번호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식별번호가 나오면 그 번호를 입력하고 식별번호가 없으면 "식별번호 없음"을 선택한다. 서류명에는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을 스캔 받아서 파일로 만든 다음에 첨부파일로 저장한다.

- ⑥ 신청취지 및 이유는 자동 생성되니 본인에게 맞는 판결 사건번호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누른다.

신청취지 및 이유

• 필수입력사항

(59 / 4000 Bytes)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취지별자 첨부하기

• 첨부가능한 파일 형식 : PDF, HWP, DOC, DOCX, TXT, BMP, JPG, JPEG, GIF, TIF, TIFF, PNG (PDF파일로 자동변환, 10MB까지 첨부가능)

• 신청이유

(219 / 4000 Bytes)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며, 위 판결은 20에 확정되었으나, 그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신청을 합니다.

내용파일첨부

첨부하기

• 첨부가능한 파일 형식 : PDF, HWP, DOC, DOCX, TXT, BMP, JPG, JPEG, GIF, TIF, TIFF, PNG (PDF파일로 자동변환, 10MB까지 첨부가능)

신청이유문 신청취지를 뒷받침하는 주장사실만을 기재하며 작성하시고, 신청이유 이외 다른 기재내용은 첨부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

다음

- 856 -

2018 세외수입 업무 매뉴얼

발 행 처	경기도(세정과)
발 행 일	2018년 1월 18일
발 간 인	자치행정국장 우 미 리
편 집 인	세 정 과 장 노 찬 호
편집위원	세외수입징수팀장 최 원 삼 주무관 임상빈, 주무관 윤정인, 주무관 이현우, 주무관 구종배, 주무관 조정의
검토위원	곽희현(수원시), 김은정(고양시), 문혜연(용인시), 윤지선(성남시) 김정선(부천시), 이명종(안산시), 이주희(화성시), 김혜정(남양주시) 윤은숙(안양시), 허성련(평택시), 전경아(의정부시), 채은정(파주시) 반종수(시흥시), 최은정(김포시), 최승영(광명시), 한광일(광주시) 송정석(군포시), 곽대섭(이천시), 김향이(오산시), 이정우(하남시) 이상욱(양주시), 한지윤(구리시), 김광일(안성시), 양아영(포천시) 주혜영(의왕시), 장석찬(여주시), 양승백(양평군), 이동우(동두천시) 원대식(연천군)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매산로3가 1) 경기도청

TEL 031- 8008-4151 www.gg.go.kr

